재공람도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2025. 01.

양 천 구

목 차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0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4
0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5
0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26
0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28
0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64

Ⅱ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0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66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68
0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73
0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75
05.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 76

Ⅲ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서

01.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서 ····· 80

Ⅳ 기초조사 조서

01.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 120
02. 토지조서 및 건축물 조서 ····· 145

Ⅴ 계획설명서

01. 계획의 개요 ····· 147
02.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150
03. 현황분석 ····· 163
04. 건축계획(안) ····· 186
05.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190
06. 경관에 관한 계획 ····· 192
07.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195

Ⅵ 관련 도면

Ⅶ 교통성 검토서

Ⅷ 경관성 검토서

Ⅸ 환경성 검토서

Ⅹ 첨부자료

01.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결과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4,371,097.4	증)7,226.6	4,378.324.0	최초결정일 (1994.2.1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 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4,371,097.4	증)7,226.6	4,378.324.0	• 세부개발계획(특별계획구역8)에 따라 입체보행교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이하여백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71,097.4	증) 7,226.6	4,378,324.0	100.0	-
주거지역	소계	3,171,522.3	-	3,171,522.3	72.4	-
	제1종일반주거지역	261,315.2	-	261,315.2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4,953.8	-	234,953.8	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6,609.2	-	606,609.2	1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68,644.1	증) 7,226.6	2,075,870.7	47.4	-
중심지역	소계	568,384.8	-	568,384.8	13.0	-
	일반상업지역	568,384.8	-	568,384.8	13.0	-
공업지역	소계	73,561.2	-	73,561.2	1.7	-
	준공업지역	73,561.2	-	73,561.2	1.7	-
녹지지역	소계	557,629.1	-	557,629.1	12.7	-
	자연녹지지역	557,629.1	-	557,629.1	12.7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비 고
	기정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1번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730.1	• 공동주택 획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2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53.1	• 녹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5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4.5	•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18.7	• 녹지 및 어린이공원 계획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미관지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04.18)에 따라 미관지구 일괄 폐지

나. 고도지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3호(2019.04.25)에 따라 고도지구 일괄 폐지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 기정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106	57,399	967,401	19	6,072	179,611	41	26,233	270,420	46	25,094	517,37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4,717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8,426
중로	23	9,576	184,584	-	-	-	20	9,254	180,477	3	322	4,107
소로	45	5,780	63,463	17	2,499	33,837	16	2,647	24,789	12	634	4,837

■ 도로 총괄표 : 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106	57,406	967,863	18	6,008	178,913	41	26,233	270,420	47	25,165	518,53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5,634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9,343
중로	23	9,576	184,584	-	-	-	20	9,254	180,477	3	322	4,107
소로	45	5,787	63,008	16	2,435	33,139	16	2,647	24,789	13	705	5,080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2	50	주간선	1,750	안양천교	목1동 407-20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상수공급설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1	78	10.8 ~14 7.5	주간선	7,530	신월동 835	여의도동 2-11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시 2013-318 (2013.10.04.)	입체적 결정 (도로,교통광장, 공원 일부 중복)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	3,663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신월로
기정	대로	2	37	30	주간선	1,600	도림동	신길동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소로3-A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38	30	주간선	7,250	외발산동	고척동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73	30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2	79	42	주간선	1,550	오목교	목동오거리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86	25~ 33.5	보조간선	6,950	양화동	광명시계	일반도로	-	〃	제방과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6	25	보조간선	2,170	경인 고속국도	강서구 목동 136-2	일반도로	-	〃	중앙로 (강서로)
기정	대로	3	147	25	보조간선	1,527	대 2-79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8**	**25~ 28**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일부 폭원 변경**
기정	대로	3	149	25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83-5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0	25	집산도로	383	대 3-169	대 3-148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1	25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3	152	25~ 30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3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3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4	25	보조간선	230	신정동 36-1	고척동 186-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5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6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7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8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59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0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1	25	집산도로	150	대 3-148	대 3-150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3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신정동 868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4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5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6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7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8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9	25	주간선 도로	529	대 3-86 (구역계)	대 3-173 (대 3-17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0	25	보조간선	30	대 3-149	목동중교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1	25	보조간선	880	구로구 고척동 41-1	강서구 신정동 171-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간선	323	대 3-148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3	25	주간선	150	대 3-150	대 3-148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74	25	보조간선	894	-	-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05	25	집산도로	150	대로3-147	대로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5	보조간선	330	대 3-152	목동 914-3	일반도로	-	양천구공고 225호 (04.07.05)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사잇길
기정	중로	2	263	15	집산도로	54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중로	2	264	15	집산도로	255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5	15	집산도로	463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6	15	집산도로	49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8	15	집산도로	534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9	15	집산도로	365	중 2-271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0	15	집산도로	516	중 2-271	대 2-73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1	15	집산도로	350	대 3-149	신정동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2	1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3	15	집산도로	370	중 2-276	대 3-154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4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75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6	15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7	15	집산도로	582	대 2-37	신정동 331-1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8	15	집산도로	960	대 3-86	강서구 신정동 294-4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9	15	집산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0	19	집산도로	501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1	15	집산도로	326	신정동 76-22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2	15	집산도로	290	대 3-147	목동 408-115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261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262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338	12	집산도로	22	대 3-171	신정동 330-1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4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4-1	목동 924-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3-1	목동 924-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19-4	신정동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20-3	신정동 319-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60	신정동 322-3	신정동 321-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9	7	국지도로	7	신정동 312-3	신정동 1126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0	대 3-147	신정동 31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150	대 3-151	대 3-15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0	목동 908-38	목동 908-35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85	목동 908-35	대 3-15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95	광 1-12	대 3-159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170	대 3-168	대 2-73	보행자 전용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7	11	특수도로	184	대로3-173	대로2-79 (오목로)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8	10~27	특수도로	184	대로2-79 (오목로)	목동 408-17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300	목동 900-8	목동 909-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300	신정동 324-3	신정동 323-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380	목동 908-1	목동 907-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260	신정동 323-1	신정동 322-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대 3-163	신정 318-1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10	대 3-147	대 3-16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4	대 3-147	대 3-16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6	대 3-14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92	대 3-149	대 3-16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2	대 3-147	대 3-16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80	대 3-152	대 3-15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0	대 3-151	대 3-15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0	대 3-152	목동 905-2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90	대 3-16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90	대 3-168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217	대 3-146 목동 산 29-3	목동 231-217	일반도로	-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5	신정동 296-7	신정동 296-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5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6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9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5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5	6~10	국지도로	130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	6~8	국지도로	120	대 3-15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36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5	목동 905-1	목동 905-3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32	대 3-151	소로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22	소로 3-18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A**	**5**	**특수도로**	**71**	**신정동 314-2**	**신정동 313-3**	**보행자 전용도로**	**-**	**-**	**대로2-37과 중복결정, 녹지와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8	대로 3-148	• 구역 내 도로 확폭 - B = 25m → 25~28m(증 3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 내 도로 확폭
소로1-10	-	• 도로 폐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3-A	•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폭원 5m), 입체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라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노외주차장	목동915	100,824.3	-	100,824.3	서고시 422호 (94.12.27)	목동유수지와 중복결정
기정	②	노외주차장	목동907-8	1,188.4	-	1,188.4	-	-
기정	③	〃	목동 907-19	1,124.2	-	1,124.2	-	-
기정	④	〃	목동 905-29	684.7	-	684.7	-	-
기정	⑤	〃	신정동 318-2	852.0	-	852.0	-	-
기정	⑥	〃	신정동 322-5	1,139.0	-	1,139.0	-	-
기정	⑦	〃	신정동 323-18	607.0	-	607.0	-	-
기정	⑧	〃	신정동 323-13	608.2	-	608.2	-	-
기정	⑨	〃	목동 905-21	892.8	-	892.8	-	-
기정	⑩	〃	신정동 323-25	726.5	-	726.5	-	-
기정	⑪	〃	신정동 323-33	749.2	-	749.2	-	-
기정	⑫	〃	신정동 322-12	1,157.4	-	1,157.4	-	-
기정	⑬	〃	신정동 319-21,22	1,513.2	-	1,513.2	(06.04.20)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기준

- 층수 : 7층 이하
-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부대시설 비율 : 30% 이내

3) 철도 (변경없음)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로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연결선)	신정동 1092일대 (신도림역~까치산역)	6,150 (58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2호선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5호선)	목동 927-8일대 (목동역~오목교역)	19,000 (50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5호선

나. 공간시설 (변경)

1) 공원 (변경)

■ 공원 총괄표 : 기정

구 분	개 소	면 적(㎡)
합 계	23	169,687.0
근린공원	4	84,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8	55,573.3

■ 공원 총괄표 :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합 계	23	173,841.4
근린공원	4	84,494.40
문화공원	1	29,619.30
어린이공원	18	59,727.7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1-2	2,299.5	-	2,299.5	서고시 422호 (94.12.27)	1단지
기정	②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2-2	4,211.4	-	4,211.4	〃	2단지
기정	③	제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03-2	2,985.4	-	2,985.4	〃	3단지
기정	④	제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04-1	6,517.0	-	6,517.0	〃	4단지
기정	⑥	제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2-1	3,963.8	-	3,963.8	〃	5단지
기정	⑦	제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3-1	3,815.8	-	3,815.8	〃	5단지
기정	⑧	제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25-1	2,375.1	-	2,375.1	〃	7단지
폐지	**⑨**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4-1**	**3,730.1**	**감)3,730.1**	**-**	**〃**	**8단지**
신설	**⑨**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3 일대**	**-**	**증)7,884.5**	**7,884.5**	**-**	**8단지**
기정	⑩	제10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3-2	1,738.6	-	1,738.6	〃	9단지
기정	⑪	제1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2-2	3,500.0	-	3,500.0	〃	9단지
기정	⑫	제1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1-1	3,148.2	-	3,148.2	〃	10단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⑬	제1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5-2	2,498.5	-	2,498.5	〃	11단지
기정	⑭	제1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6-2	3,399.7	-	3,399.7	〃	12단지
기정	⑮	제1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7-1	2,265.5	-	2,265.5	〃	13단지
기정	⑯	제1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8-1	2,149.8	-	2,149.8	〃	13단지
기정	⑰	제1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9-2	2,433.9	-	2,433.9	〃	14단지
기정	⑱	제1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32-1	2,511.3	-	2,511.3	〃	14단지
기정	⑲	제1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30-1	2,029.7	-	2,029.7	〃	14단지
기정	근-①	신트리공원	근린공원	신정동310-7	16,409.3	-	16,409.3	〃	-
기정	근-②	목마공원	근린공원	목동 910	12,816.8	-	12,816.8	〃	-
기정	근-③	오목공원	근린공원	목동 921	21,470.4	-	21,470.4	〃	-
기정	근-④	양천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0	33,797.9	-	33,797.9	〃	-
기정	문-①	파리공원	문화공원	목동 906	29,619.3	-	29,619.3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⑨	제9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⑨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2)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3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3-7,8, 10~17	1,280.0	-	1,280.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②	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04-2	14,793.8	-	14,793.8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③	4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4-5, 6,7,20~24	1,970.4	-	1,970.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④	6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1-8	4,987.7	-	4,987.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⑤	5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3-2	11,735.9	-	11,735.9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로 인한 녹지 분할
기정	⑥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914-1	6,498.7	-	6,498.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⑦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911-7	7,207.9	-	7,207.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⑧	916-1 도 남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6-2	1,891.6	-	1,891.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⑨	7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25-8	8,854.0	-	8,854.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⑩	목동 927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2	862.5	-	862.5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⑪	927-9구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27-10	787.4	-	787.4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서측
기정	⑫	진명여고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 -11,12,13,14	6,622.8	-	6,622.8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⑬**	**8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314-2,3**	**12,760.9**	**감)4,154.4**	**8,606.5**	**서고시 422호 (94.12.27)**	**8단지 서측, 소로3-A와 중복결정**
기정	⑭	9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3-3	6,217.1	-	6,217.1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⑮	9,10단지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2 -4,6,7,8,9,10,1 1,12,13,14,15, 16,17 313-5,7	2,726.5	-	2,726.5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⑯	10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1-2	2,270.6	-	2,270.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⑰	양명초등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0-5	803.0	-	803.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⑱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4	10,815.9	-	10,815.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⑲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9	7,896.9	-	7,896.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⑳	11단지 남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 -13,14	3,031.9	-	3,031.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㉑	12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6-1	2,347.9	-	2,347.9	서고시 422호 (94.12.27)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㉒	13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8-2	6,013.1	-	6,013.1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㉓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9-1	6,833.6	-	6,833.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㉔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6	3,867.5	-	3,867.5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㉕	목동중학교 서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9-10	102.4	-	102.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㉖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 -16,23	411.5	-	411.5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㉗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17	341.9	-	341.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	6단지 동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1 일대	2,812.3	-	2,812.3	서고시 제2024-401호 (24.8.16)	-

※ 시설번호(ⓐ)는 임시번호 부여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⑬	8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A = 12,760.9㎡ → 8,606.5㎡ (감 4,154.4㎡)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 이하여백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광역 송수관	목동911-12 → 목동904-8	16,531.6	-	16,531.6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2) 공동구 (변경없음)

■ 공동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환기구	환기구	목동903-9	7.6	-	7.6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②	환기구	환기구	목동911-13	5.7	-	5.7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③	공동구	공동구	목동925-2	4,634.2	-	4,634.2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④	공동구	공동구	목동926-1	2,130.7	-	2,130.7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⑤	공동구	공동구	목동927-1	1,035.6	-	1,035.6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3)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열병합발전소	목동900	77,960.7	-	77,960.7	건고 282호 (91.06.05)	
기정	②	전기공급설비	신정동 319-1	7,702.3	-	7,702.3	서고시 422호 (91.12.27)	변전소
기정	③	전기공급설비	목동 905-10	1,584.5	-	1,584.5	〃	

4) 방송·통신시설 (변경없음)

■ 방송·통신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방송·통신시설	목동 918-1	7,692.9	-	7,692.9	서고시 422호 (94.12.27)	전신전화국
기정	②	방송·통신시설	목동 917-1	6,730.0	-	6,730.0	〃	기독교 방송국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운동장 (변경없음)

■ 운동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운동장	목동914	126,133.4	-	126,133.4	서고시 422호 (94.12.27)	-

2) 체육시설 (변경없음)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체육시설	목동914-5	20,783.3	-	20,783.3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②	체육시설	신정동 322-10	6,877.1	-	6,877.1	〃	-

3)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공공 청사	의약품 안전청	목동900-2	657.0	-	657.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②	공공 청사	소방서	목동900-11	4,327.2	-	4,327.2	〃	-
기정	③	공공 청사	의약품 안전청	목동900-12	8,313.0	-	8,313.0	〃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④	공공청사	목4동 주민센터	목동904-19	720.0	-	720.0	〃	-
기정	⑤	공공청사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신정동313-1	29,668.9	-	29,668.9	〃	-
기정	⑥	공공청사	신정2동 치안센터, 주민센터	신정동329-9	660.0	-	660.0	〃	-
기정	⑦	공공청사	구민회관	신정동 322	4,685.7	-	4,685.7	〃	-
기정	⑧	공공청사	경찰서	신정동 321, 321-2	6,862.2	-	6,862.2	〃	-
기정	⑨	공공청사	구청	신정동 321-4	7,461.4	-	7,461.4	〃	-
기정	⑩	공공청사	동파출소	목동 907-3	760.1	-	760.1	〃	-
기정	⑪	공공청사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정동 319-2	4,121.2	-	4,121.2	〃	-
기정	⑫	공공청사	세무서	신정동 319-12	4,067.9	-	4,067.9	〃	-
기정	⑬	공공청사	구의회	신정동 321-1	1,947.8	-	1,947.8	〃	-
기정	⑭	공공청사	수도 사업소	신정동 319-15	1,954.5	-	1,954.5	〃	-
기정	⑮	공공청사	다목적 회관	신정동 322-11	2,958.5	-	2,958.5	2006.04.20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기정	⑯	공공청사	동파출소	신정동 322-9	1,008.5	-	1,008.5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⑰	공공청사	동파출소	신정동 324-5	656.2	-	656.2	〃	-
기정	⑱	공공청사	동사무소	목동 919-3, 919-5	1,554.7	-	1,554.7	양천구고시 제2019-43호 (2019.06.13.)	-
기정	⑲	공공청사	소방서	목동 919-6	4,459.9	-	4,459.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⑳	공공청사	-	신정동 322-15	1,360.1	-	1,360.1	〃	-
기정	㉑	공공청사	보건소	신정동 321-5	2,249.5	-	2,249.5	〃	-
기정	㉒	공공청사	-	목동 908-32	1,013.7	-	1,013.7	2006.04.20	-
기정	ⓐ	공공청사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목동911 일대	1,600.0	-	1,600.0	서고시 제2024-401호 (24.8.16)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토지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 고
		지번	입체공간						
기정	공공청사	신정동 322-11	지상1층~5층	2,958.5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2006.04.20	-
			잔여층		비도시계획시설	-	비도시계획시설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②	〃	〃	〃	
기정	③	〃	〃	〃	〃
기정	④	〃	〃	〃	〃
기정	⑤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⑥	〃	250% 이하	-	〃
기정	⑦	60% 이하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8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⑧	〃	〃	〃	〃
기정	⑨	〃	〃	〃	〃
기정	⑩	〃	〃	100m 이하	〃
기정	⑪	〃	〃	80m 이하	〃
기정	⑫	〃	〃	〃	〃
기정	⑬	〃	〃	〃	〃
기정	⑭	〃	〃	〃	
기정	⑮	〃	〃	〃	〃
기정	⑯	〃	〃	〃	〃
기정	⑰	〃	〃	〃	〃
기정	⑱	〃	〃	120m 이하	〃
기정	⑲	〃	〃	〃	〃
기정	⑳	〃	〃	80m 이하	〃
기정	㉑	〃	〃	〃	〃
기정	㉒	〃	〃	100m 이하	〃
기정	ⓐ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4) 문화시설 (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양천도서관	도서관	목동905, 905-32	5,474.3	-	5,474.3	94.12.27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120m 이하	일반상업지역

5) 학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원촌초교	초등학교	목동901-1	12,067.7	-	12,067.7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②	영도초교	초등학교	목동903-1	12,605.6	-	12,605.6		
기정	③	경인초교	초등학교	목동911-4	11,525.8	-	11,525.8		
기정	④	서정초교	초등학교	목동927-5	12,556.4	-	12,556.4		
기정	⑤	신서초교	초등학교	신정동312-1	12,618.7	-	12,618.7		
기정	⑥	계남초교	초등학교	신정동325-7	18,932.9	-	18,932.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⑦	갈산초교	초등학교	신정동330-10	12,659.4	-	12,659.4		
기정	⑧	신목중교	중학교	목동902-1	12,435.9	-	12,435.9		
기정	⑨	양정중교	중학교	목동911-2	19,889.6	-	19,889.6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⑩	목일중교	중학교	신정동330-2	12,771.5	-	12,771.5		
기정	⑪	목동중교	중학교	신정동319-8	1,020.0	-	1,020.0		
기정	⑫	양정고교	고등학교	목동911-3	19,869.1	-	19,869.1		
기정	⑬	진명여고	고등학교	목동927-6	19,834.9	-	19,834.9		
기정	⑭	목동고교	고등학교	신정동325-8	13,510.2	-	13,510.2	서고시 제2010-177호 (2010.5.13.)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⑮	신목고교	고등학교	신정동330-3	13,937.3	-	13,937.3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⑯	세신유치원	유치원	신정동311-3	730.7	-	730.7		
기정	⑰	13단지유치원	유치원	신정동328-3	992.0	-	992.0		
기정	⑱	월촌중교	중학교	목동909	10,772.8	-	10,772.8	2006.04.20	중심 지역
기정	⑲	한가람고교	중학교	목동909-12	10,352.7	-	10,352.7	〃	
기정	⑳	목운초중교	초등학교, 중학교	목동922	13,621.7	-	13,621.7	2004.01.15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②	〃	〃	〃	〃
기정	③	〃	〃	〃	〃
기정	④	〃	〃	〃	〃
기정	⑤	〃	〃	〃	〃
기정	⑥	〃	〃	〃	〃
기정	⑦	〃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12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⑧	〃	〃	80m 이하	〃

6)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어린이집(3단지)	사회복지 시설	목동903-3	1,012.4	-	1,012.4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②	어린이집(10단지)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310-11	718.3	-	718.3	〃	
기정	③	노인종합복지관 (11단지)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325-3	2,141.7	-	2,141.7	〃	
기정	④	어린이집(14단지)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329-4	1,247.1	-	1,247.1	〃	
기정	⑤	남부준법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330-11	3,353.8	-	3,353.8	〃	
기정	⑥	어린이집, 여성교실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330-13	1,580.7	-	1,580.7	〃	
기정	⑦	청소년회관	사회복지 시설	목동 918	5,473.8	-	5,473.8	〃	
기정	⑧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319-13	1,987.0	-	1,987.0	〃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②	〃	〃	〃	〃
기정	③	〃	〃	〃	〃
기정	④	〃	〃	〃	〃
기정	⑤	〃	〃	〃	〃
기정	⑥	〃	〃	〃	〃
기정	⑦	〃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12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⑧	〃	〃	80m 이하	〃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목동 (신정1)	유수지	목동914-6,915	104,961.0	-	104,961.0	서고시 422호 (94.12.27)	노외주차장과 일부중복결정
기정	②	오금 (신정2)	유수지	신정동330-4	38,239.5	-	38,239.5	〃	
				신정동330-14	4,015.5	-	4,015.5	〃	

2) 제방 (변경없음)

■ 제방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제방	-	목동900-9	15,527.0	-	15,527.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일부 중복결정
				목동900-10	38,377.8	-	38,377.8	〃	
				목동910-2	6,037.7	-	6,037.7	〃	
				목동911-10	18,829.4	-	18,829.4	〃	
				목동914-3	44,335.3	-	44,335.3	〃	
기정	②	제방	-	신정동330-5	3,974.1	-	3,974.1	〃	도로와 일부 중복결정
				신정동330-8	28,605.5	-	28,605.5	〃	
				신정동330-18	357.4	-	357.4	〃	
				신정동330-19	2,336.0	-	2,336.0	〃	
				신정동330-20	11.5	-	11.5	〃	
				신정동330-21	1,365.2	-	1,365.2	〃	

바. 보건위생시설 (변경없음)

1)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이대병원	종합병원	목동 911-1	27,805.4	-	27,805.4	서고시 422호 (94.12.27)	

사.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하수도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중앙수로 (7단지)	하수도	목동925-4	12,671.8	-	12,671.8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②	중앙수로변 (7단지)	하수도	목동926-4, 927-9	1,978.4	-	1,978.4	〃	7단지 서측
기정	③	하수도 (7단지 변)	하수도	목동926-6	615.4	-	615.4	〃	7단지 남측
기정	④	고지수로	하수도	신정동310-1	4,771.0	-	4,771.0	〃	10단지
기정	⑤	하수도	하수도	신정동331-1	461.8	-	461.8	〃	14단지 동측
기정	⑥	고지수로	하수도	신정동330-15	3,465.7	-	3,465.7	〃	14단지 남측

- 이하여백 -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계획 (변경없음)

■ 가구 결정조서

구분	신 설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가구 -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A1	96,186.0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가구 계획 수립
	A2	177,564.6	
	A3	171,688.4	
	A4	163,149.1	
	A5	122,825.3	
	A6	80,923.2	
	A7	117,450.6	
	A8	181,713.1	
	A9	146,916.7	
	A10	104,961.0	
	A11	135,726.0	
	A12	40,339.4	
	A13	65,872.3	
	A14	89,260.9	
	A15	105,520.4	
	A16	115,397.0	
	A17	148,024.4	
	A18	40,343.7	
	A19	80,011.8	
	A20	79,831.2	
	A21	127,339.5	
	A22	114,140.1	
	A23	59,420.0	
	A24	3,878.3	
	A25	79,475.5	
	A26	95,644.5	
	A27	136,937.4	
	A28	17,593.8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주거지역 (목동중심지구)	BL1	12,816.8	B1	12,816.8	구역통합에 따른 가구번호 변경
	BL2	28,040.7	B2	28,040.7	
	BL3	21,071.8	B3	21,071.8	
	BL4	26,305.8	B4	26,305.8	
	BL5	29,619.3	B5	29,619.3	
	BL6	45,602.7	B6	45,602.7	
	BL7	33,246.0	B7	33,246.0	
	BL8	24,367.7	B8	24,367.7	
	BL9	49,207.0	B9	49,207.0	
	BL10	26,840.5	B10	26,840.5	
	BL11	22,945.9	B11	22,945.9	
	BL12	21,602.5	B12	21,602.5	
	BL13	16,835.0	B13	16,835.0	
		23,863.0		23,863.0	
	BL14	27,385.5	B14	27,385.5	
	BL15	29,559.5	B15	29,559.5	
	BL16	33,797.9	B16	33,797.9	
	BL17	22,220.7	B17	22,220.7	
	BL18	20,561.9	B18	20,561.9	
	BL19	18,044.4	B19	18,044.4	
	BL20	21,106.3	B20	21,106.3	

- 이하여백 -

나. 획지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변경)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①	A1	목동 900-4	3,302.8	-	-
기정	A1-②	〃	목동 900-2	657.0	-	공공청사
기정	A1-③	〃	목동 900-12	8,313.0	-	공공청사
기정	A1-④	〃	목동 900-11	4,327.2	-	공공청사
기정	A1-⑤	〃	목동 900	77,258.5	-	전기공급설비
기정	-	〃	목동 900-16	455.9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목동 900-17	1,169.5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①	A2	목동 901	163,197.4	특별계획구역1	1단지
기정	A3-①	A3	목동 902	155,041.1	특별계획구역2	2단지
기정	A4-①	A4	목동 903	146,538.1	특별계획구역3	3단지
기정	A5-①	A5	목동 904	101,514.5	특별계획구역4	4단지
기정	A6-①	A6	목동 913	70,485.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7-①	A7	목동 912	108,854.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8-①	A8	목동 911 일대	90,074.6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기정	A8-②	A8	목동 911 일대	1,600.0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공공청사
기정	A11-①	A11	목동 925, 925-3	119,955.9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2-①	A12	목동 926, 926-2	38,208.7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①	A13	목동 927	21,985.3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②	〃	목동 927-3	800.3	-	종교시설
기정	A13-③	〃	신정동 927-4	661.2	-	종교시설
기정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2,108.0	특별계획구역8	8단지
변경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0,493.4**	**특별계획구역8**	**8단지**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4-②	〃	신정동 314-4	661.9	-	종교시설
기정	A15-①	A15	신정동 313	67,895.8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6-①	A16	신정동 312	99,278.3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7-①	A17	신정동 311	141,874.9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8-①	A18	신정동 310, 310-2	34,051.4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9-①	A19	신정동 325	64,555.7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0-①	A20	신정동 325-1	39,491.2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1-①	A21	신정동 326	121,591.9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기정	A22-①	A22	신정동 327	111,874.6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3-①	A23	신정동 50,265.1	50,265.1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4-①	A24	신정동 329-8	1,320.0	-	종교시설
기정	A24-②	〃	신정동 329-10	1,238.3	-	근생시설
기정	A24-③	〃	신정동 329-12	660.0	-	종교시설
기정	A25-①	A25	신정동 329	68,960.9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①	A26	신정동 332	34,004.1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②	〃	신정동 331	52,143.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	〃	신정동 332-4	310.0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5	313.3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6	31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7	30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7-①	A27	신정동 330	61,448.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계획	• A14-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변경없음)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1-1	B1	목동 910	12,816.8	-	목마공원
기정	2-1	B2	목동 909	10,772.8	-	-
기정	2-2	〃	목동 909-12	10,352.7	-	-
기정	2-3	〃	목동 909-2	1,676.1	-	-
기정	2-4	〃	목동 909-3	641.3	-	-
기정	2-5	B2	목동 909-4	1,295.9	-	-
기정	2-6	〃	목동 909-5	1,009.7	-	-
기정	2-7	〃	목동 909-6	540.1	-	-
기정	2-8	〃	목동 909-7	540.1	-	-
기정	2-9	〃	목동 909-8	540.1	-	-
기정	2-10	〃	목동 909-9	671.9	-	-
기정	3-1	B3	목동 908	1,319.8	-	-
기정	3-2	〃	목동 908-25	697.9	-	-
기정	3-3	〃	목동 908-26	1,052.9	-	-
기정	3-4	〃	목동 908-27	1,052.6	-	-
기정	3-5	〃	목동 908-29	1,458.1	-	-
기정	3-6	〃	목동 908-31	728.2	-	-
기정	3-8	〃	목동 908-33	1,007.6	-	-
기정	3-7	〃	목동 908-32	1,013.7	-	-
기정	3-9	〃	목동 908-34	6,258.9	-	-
기정	3-10	〃	목동 908-28	6,482.1	-	-
기정	4-1	B4	목동 907	4,136.9	-	-
기정	4-2	〃	목동 907-4	1,442.9	-	-
기정	4-3	〃	목동 907-5	1,650.1	-	-
기정	4-4	〃	목동 907-6	899.9	-	-
기정	4-5	〃	목동 907-8	1,188.4	-	-
기정	4-6	〃	목동 907-7	900.3	-	-
기정	4-7	〃	목동 907-10	1,275.5	-	공동개발 완료
		〃	목동 907-11	1,500.2	-	
기정	4-8	〃	목동 907-12	2,000.0	-	-
기정	4-9	〃	목동 907-23	1,979.6	-	-
기정	4-10	〃	목동 907-13	779.9	-	-
기정	4-11	〃	목동 907-14	2,123.8	-	-
기정	4-12	〃	목동 907-19	1,124.2	-	-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4-13	〃	목동 907-16	972.0	-	-
기정	4-14	〃	목동 907-17	1,043.8	-	-
기정	4-15	〃	목동 907-18	690.0	-	-
기정	4-16	〃	목동 907-3	760.1	-	-
기정	4-17	〃	목동 907-2	1,838.2	-	-
기정	5	B5	목동 906	29,619.3	-	문화공원 (서고시 제2021-127호)
기정	6-1	B6	목동 918	5,743.8	-	-
기정	6-2	〃	목동 905-27	900.7	-	-
기정	6-3	〃	목동 905-28	500.0	-	-
기정	6-4	〃	목동 905-29	684.7	-	-
기정	6-5	〃	목동 905-30, 목동 905-31	1,184.6	-	획지합병
기정	6-7	〃	목동 905-34	874.5	-	-
기정	6-8	〃	목동 905-33	670.7	-	-
기정	6-9	〃	목동 905-10	1,584.5	-	-
기정	6-10	〃	목동 905-16	9,314.7	-	-
기정	6-11	〃	목동 905	4,244.4	-	도서관 부지
		〃	목동 905-32	1,229.9	-	
기정	6-12	〃	목동 905-3	3,025.1	-	-
기정	6-13	〃	목동 905-20	570.3	-	-
기정	6-14	〃	목동 905-21	892.8	-	-
기정	6-15	〃	목동 905-22	6,489.1	-	-
기정	6-16	〃	목동 918-1	7,692.9	-	-
기정	7-1	B7	목동 917-1	6,730.0	-	-
기정	7-2	〃	목동 917	9,905.7	-	-
기정	7-3	〃	목동 917-6	9,866.9	-	-
기정	7-4	〃	목동 917-9	6,725.1	-	-
		〃	목동 917-16	18.3	-	-
기정	8-1	B8	목동 916	24,367.7	-	대지분할가능
기정	9-1	B9	목동 920	14,114.9	-	-
기정	9-2	〃	목동 921	21,470.4	-	오목공원
기정	9-3	〃	목동 922	13,621.7	-	-
기정	10-1	B10	목동 919-8	10,578.4	특별계획구역3	-
기정	10-2	〃	목동 919-7	8,594.5	특별계획구역3	-
기정	10-3	〃	목동 919-6	4,459.9	-	-
기정	10-4	〃	목동 919	1,653.0	-	-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10-5	〃	목동 919-5, 919-3	1,544.7	-	양천구고시 제2019-43호
기정	11-1	B11	목동 924-5	4,359.5	-	공동개발 완료
			목동 924	6,459.9	-	
			목동 924-3	5,596.3	-	
기정	11-2	B11	목동 924-4	6,530.2	-	-
기정	12-1	B12	목동 923-6	4,379.5	-	-
기정	12-2	〃	목동 923-15	3,250.1	-	-
기정	12-3	〃	목동 923	1,493.6	-	-
기정	12-4	〃	목동 923-11	1,493.6	-	-
기정	12-5	〃	목동 923-12	1,545.6	-	공동개발 완료
		〃	목동 923-13	1,545.5	-	
기정	12-6	〃	목동 923-14	3,250.2	-	-
기정	12-7	〃	목동 923-5	4,644.4	-	-
기정	13-1	B13	목동 406-5 일대	8,531.0	특별계획구역1	-
기정	13-2	〃	목동 406-11 일대	8,304.0	특별계획구역1	-
기정	13-3	〃	목동 405 일대	10,212.0	특별계획구역2-1	-
기정	13-4	〃	목동 405 일대	13,651.0	특별계획구역2-1	-
기정	14-1	B14	신정동 318-6	1,062.1	-	-
기정	14-2	〃	신정동 318-5	901.5	-	-
기정	14-3	〃	신정동 318-19	1,039.8	-	-
		〃	신정동 318-71	927.6	-	-
기정	14-4	〃	신정동 318-3	794.8	-	-
기정	14-5	〃	신정동 318-2	852.0	-	-
기정	14-6	〃	신정동 318-1	2,126.8	-	-
기정	14-7	〃	신정동 318	3,593.7	-	-
		〃	신정동 1298-4	78.7	-	-
기정	14-8	〃	신정동 318-10	8,621.1	특별계획구역2-2	-
기정	14-9	〃	신정동 318-9	1,404.0	-	-
기정	14-10	〃	신정동 318-8	908.7	-	-
기정	14-11	〃	신정동 318-7	929.7	-	-
기정	14-12	〃	신정동 318-12	4,145.0	특별계획구역2-2	-
기정	15-1	B15	신정동 319-1	7,702.3	-	-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15-2	〃	신정동 319-17	591.4	-	-
기정	15-3	〃	신정동 319-18	567.1	-	-
기정	15-4	〃	신정동 319-19	567.5	-	-
기정	15-5	〃	신정동 319-20	567.6	-	-
기정	15-6	〃	신정동 319-21	865.1	-	-
기정	15-7	〃	신정동 319-22	648.1	-	-
기정	15-8	B15	신정동 319-23	647.9	-	-
기정	15-9	〃	신정동 319	2,085.5	-	-
기정	15-10	〃	신정동 319-26	1,076.4	-	-
기정	15-11	〃	신정동 319-11	2,110.0	-	-
기정	15-12	〃	신정동 319-12	4,067.9	-	-
기정	15-13	〃	신정동 319-13	1,987.0	-	-
기정	15-14	〃	신정동 319-15	1,954.5	-	-
기정	15-15	〃	신정동 319-2	4,121.2	-	-
기정	16	B16	신정동 320	33,797.9	-	양천공원
기정	17-1	B17	신정동 321-7	2,049.7	-	공동개발 완료
		〃	신정동 321-6	1,650.1	-	
기정	17-2	〃	신정동 321-5	2,249.5	-	-
기정	17-3	〃	신정동 321-1	1,947.8	-	-
기정	17-4	〃	신정동 321-4	7,461.4	-	-
기정	17-5	〃	신정동 321	6,556.1	-	-
		〃	신정동 321-2	306.1	-	-
기정	18-1	B18	신정동 322	4,658.7	-	-
기정	18-2	〃	신정동 322-15	1,360.1	-	-
기정	18-3	〃	신정동 322-5	1,139.3	-	-
기정	18-4	〃	신정동 322-1	742.0	-	-
기정	18-5	〃	신정동 322-9	1,008.5	-	-
기정	18-6	〃	신정동 322-10	6,877.1	-	-
기정	18-7	〃	신정동 322-11	2,958.5	-	-
기정	18-8	〃	신정동 322-2	660.2	-	-
기정	18-9	〃	신정동 322-12	1,157.5	-	-
기정	19-1	B19	신정동 323	614.0	-	-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19-2	〃	신정동 323-7	900.2	-	-
기정	19-3	〃	신정동 323-6	900.3	-	-
기정	19-4	〃	신정동 323-18	607.0	-	-
기정	19-5	〃	신정동 323-4	720.9	-	-
기정	19-6	〃	신정동 323-5	899.8	-	-
기정	19-7	B19	신정동 323-9	700.0	-	공동개발 완료
		〃	신정동 323-22	700.1	-	
		〃	신정동 323-23	843.7	-	
		〃	신정동 323-26	794.3	-	
기정	19-8	〃	신정동 323-24	604.1	-	-
기정	19-9	〃	신정동 323-25	726.5	-	-
기정	19-10	〃	신정동 323-12	900.1	-	-
기정	19-11	〃	신정동 323-20	614.0	-	-
기정	19-12	〃	신정동 323-13	608.2	-	-
기정	19-13	〃	신정동 323-11	900.0	-	-
기정	19-14	〃	신정동 323-10	899.8	-	-
기정	19-15	〃	신정동 323-16	719.7	-	-
기정	19-16	〃	신정동 323-31	700.2	-	공동개발 완료
		〃	신정동 323-30	700.0	-	
		〃	신정동 323-29	843.0	-	
기정	19-17	〃	신정동 323-17	795.1	-	-
기정	19-18	〃	신정동 323-33	749.2	-	-
기정	19-19	〃	신정동 323-32	604.2	-	-
기정	20-1	B20	신정동 324	1,672.5	-	-
기정	20-2	〃	신정동 324-7	2,669.9	-	-
기정	20-3	〃	신정동 324-8	2,670.2	-	-
기정	20-4	〃	신정동 324-9	1,104.3	-	-
기정	20-5	〃	신정동 324-2	660.2	-	-
기정	20-6	〃	신정동 324-10	4,757.0	-	-
기정	20-7	〃	신정동 324-11	4,912.1	-	-
기정	20-8	〃	신정동 324-12	1,123.9	-	공동개발 완료
		〃	신정동 324-1	880.0	-	
기정	20-9	〃	신정동 324-5	656.2	-	-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허용 및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전층	비 고
불허용도	공통사항	A	• 해당 제2·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용도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용도제한시설 • 지하층 주거시설	-
	목동 900-4	B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도	목동 900-4	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내지원시설중기숙사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 4의 ④항에 의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포함)은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관리청에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위 용도외에 추가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가목, 라목(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서고시 제2020-239호

■ 지정 및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전층	저층부 1층~2층	비 고
지정용도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특별계획구역)	a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3조에 의한 "단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커뮤니티활성화배치구간"에 설치
	종교용지	b	종교시설	-	건축물 연면적의 80%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 수용으로 간주
권장용도	기타지역 (기반시설 부지 제외)	1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저층부 가로활성화

※ 1) 상기 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를 말함

2) 권장용도 면적은 연면적 중 순수 당해용도에 사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때 연면적은 주차장, 부속시설(지하층 전기, 난방 등 기계실) 제외

3)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해당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보며,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증가 되는 전체연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이 되어야 함. 이 경우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은 제외하고 지하층 및 공용면적은 포함하여 산정

4) 획지 중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도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규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별도의 건축물 용도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이하여백 -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불허용도 (도면기호 U1)	비고
기정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예식장 : 다만 B7~B12 제외)주1),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동·식물원	_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 장례식장	-
	•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중 입시학원	-
	•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 위락시설	-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 창고시설 중 하역장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제외)	_
	• 자동차 관련 시설주2)	-
	• 쓰레기 처리장	-
	• 교정시설	-
	• 묘지 관련 시설	-
	• 운수시설	-

※ 1) 중심상업구역으로 설정한 B7 ~ B12의 경우 집회장(예식장) 불허용도 적용을 제외하되, 교통정체 및 주차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식장의 신축 혹은 용도변경 시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구 분	상세사항
교통처리계획서의 제출	• 불법 주정차 문제 및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허가권자는 허가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교통처리계획서(조치계획서)의 내용 (예시) ① 셔틀버스의 운영 대수와 동선 ② 교통영향을 줄이기 위한 셔틀버스의 주정차 계획 ③ 인접 도로에서의 방문객 불법 주정차 방지계획 ④ 기타 원활한 교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계획

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포함) : 자동차관련시설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불허용도에 해당하나(단독으로 설치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시에는 부설주차장을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의 주차장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함

■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기호		권장용도	비 고
기정	1	B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상업·주거 지원구역
		B3		
		B4		
		B19		
		B20		
	2	B6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복지 및 근린상업구역
		B18		
	3	B7	• 방송통신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중심상업구역 (상업·업무)
		B8		
		B9		
		B11		
		B12		
	4	B10	• 지역활성화 용도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주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주1),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주1), 방송통신시설 • 수익성 확보 용도 :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공공성 확보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주민편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연구소, 도서관, 운동시설	중심상업구역 (지역경제)
	5	B15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행정· 업무구역
		B17		

■ 지정용도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위치	면적(㎡)	변경		비고
				도면 기호	지정용도	
기정	B2-3	목동 909-2	1,676.1	S1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
	B4-17	목동 907-2	1,838.2			
	B6-12	목동 905-3	3,025.1			
	B14-7	신정동 318	3,593.7			
	B14-9	신정동 318-9	1,404.0			
	B15-11	신정동 319-11	2,110.0			
	B18-4	신정동 322-1	742.0			
	B18-8	신정동 322-2	660.2			
	B19-16	신정동 323-29, 30, 31	2,243.2			
	B20-5	신정동 324-2	660.2			
	B20-8	신정동 324-1,	2,003.9			
	B11-2	목동 924-4	6,530.2	S2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
	B15-4	신정동 319-19	567.5	S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계획 (변경없음)

1) 주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주거용지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50% 이하	서고시 제2020-239호 (1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위치	계획내용	비 고
상업지역	60% 이하	-

- 이하여백 -

나. 용적률 계획 (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분		용적률(%)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300% 이하**	**8단지**
그 외 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향후, 기본계획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 시설(국공유지면적),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서울시, 2024.12.)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 상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1.0×α건축물)

: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적용 산정

- α=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면적)/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 면적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이내] 적용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 이하여백 -

■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인센티브(용적률)</th></tr>
<tr><td>상업지역</td><td colspan="4">15%</td></tr>
<tr><td>장수명 주택</td><td colspan="2">우수등급이상</td><td colspan="2">10%</td></tr>
<tr><td>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td><td colspan="4"><table><tr><td>구분</td><td>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td><td>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td></tr><tr><td>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td><td>12%</td><td>8%</td></tr><tr><td>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td><td>8%</td><td>4%</td></tr></table></td></tr>
<tr><td>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td><td colspan="4"><table><tr><td>20% 초과</td><td>20% 이하 15% 초과</td><td>15% 이하 10% 초과</td></tr><tr><td>3%</td><td>2%</td><td>1%</td></tr></table></td></tr>
<tr><td>지능형 건축물</td><td colspan="4"><table><tr><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r><tr><td>15%</td><td>12%</td><td>9%</td><td>6%</td></tr></table></td></tr>
<tr><td>역사문화보전</td><td colspan="2">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td><td colspan="2">5%</td></tr>
<tr><td>합계</td><td colspan="4">최대 20% 이내</td></tr>
</table>

■ 기타지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친환경 인센티브 :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 충족
- 계획유도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규제적 성격의 인센티브 항목과 권장용도, 공개공지 추가확보 등 유도적 인센티브 항목으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 충족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체계

허용용적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친환경 계획 준수시(30%이상)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시 (70%이내)

-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자율적 공동개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
  - 단, 연면적 5,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 0.1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별표 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0.2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3	• 조성 형태(필로티, 개방형 구조 등)에 따라 계수 조정 가능(필로티, 개방형 구조 요율 = 1)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3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준용적률×(지정·권장용도 면적/연면적) ×1	• 20%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 ×1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 ×0.1	• 저층부 상업시설 + 전시시설 등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 ×0.5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 ×4 이내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등 계획 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900-4번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2015.12.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2020.06.11.)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 아래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목동 900-4번지에 한하여 적용함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70% 이내이어야 함

① 친환경 인센티브

구 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비 고
기정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공급률 20% 초과 : 3% 공급률 20% 이하 ~ 15% 초과 : 2% 공급률 15% 이하 ~ 10% 초과 : 1%		- 공급률 : 건축물의 총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 비율
	중수도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0.2		- 개방형구조(필로티 제외)

※ 1) 상기 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2) '15.7.9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항목 및 계획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기정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a = 개방형구조 : 3.0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a = 개방형구조 : 4.0 (필로티 제외)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500% 이하	800% 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1)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633%
2)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비율,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3)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서울시, 2019.01)개정에 따른 상산용적률 산식 적용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적률 결정조서

▪ 용적률 결정조서의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과 그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다음의 용적률을 적용함

위치	계획내용								비 고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주1)	80이상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미만	
목동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용적률(%)	500 이하	550 이하	600 이하	65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5호

※ 1)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본 지구단위계획의 밀도계획(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용적제)에 적합하여야 함
2) 용도변경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제3항에 의한 용적률 운용방식을 준용함
3) 특별계획3구역(BL10) - 별도 수립
주1) 공동주택 용도를 도입할 경우 "오피스텔 비율(%)"을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합계 연면적 비율"로 봄

- 이하여백 -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70% 이내이어야 함

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목동 중심지역 전 구역 공통

구 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비 고
기정	녹색 건축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0.4이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 0.1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별표 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0.2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1)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해 총 인센티브 대비 30% 초과 달성 시 계획유도 인센티브를 대체 가능하나,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초과 달성의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는 적용 불가

2) 특별계획3구역(BL10) - 별도 수립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 A구역(상업 · 주거지원구역, 행정 · 업무구역)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기정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0.5	-
		권장용도		기준용적률×(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0.5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주1)		기준용적률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도시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투시형 벽면	기준용적률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 시
			투시형 셔터	기준용적률	×0.02	1층부 투시형 셔터 사용 시
			아케이드	기준용적률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시주2),주3)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	×0.05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 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건물 내 일정 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연면적)	×0.5	준수 시

※ 1)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 (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중심지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 준수

③ 계획유도 인센티브 - B구역(문화복지 및 근린상업구역, 주거복합구역)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변경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0.5	-
		권장용도		기준용적률×(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0.5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주1)		기준용적률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	×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투시형 벽면	기준용적률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 시
			투시형 셔터	기준용적률	×0.02	1층부 투시형 셔터 사용 시
			아케이드	기준용적률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시주2),주3)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	×0.05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건물 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연면적)	×0.5	준수 시

※ 1)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 (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중심 지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

④ 계획유도 인센티브 - C구역(중심상업구역)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변경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2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0.5	-
		권장용도		기준용적률×(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0.5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기준용적률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	×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투시형 벽면	기준용적률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 시
			투시형 셔터	기준용적률	×0.02	1층부 투시형 셔터 사용 시
			아케이드	기준용적률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시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	×0.05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건물 내 일정 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 제외 연면적)	×0.5	준수 시

※ 1)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 (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중심 지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2) 특별계획3구역(BL10) - 별도 수립

다. 높이 계획 (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고
			기정	변경	
최고 높이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25층 이하	2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3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49층 이하	6단지, **8단지**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기타지역 : 변경없음

구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고
		기정	
최고높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20m 이상) : 60m 이하 이면부(20m 이하) : 40m 이하	서고시 제2023-408호 (23.9.14)
	준공업지역 (목동 900-4)	45m 이하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높이는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름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가구번호		최고높이 주1)	가구번호	최고높이 주1)	비고
B2		50m 이하	B12	130m 이하	-
B3		100m 이하	B13	180m 이하	-
B4		100m 이하	B14	130m 이하	-
B6		120m 이하	B15	80m 이하	-
B7		170m 이하	B17	80m 이하	-
B8		260m 이하	B18	80m 이하	-
B9		170m 이하	B19	80m 이하	-
B10		120m 이하	B20	80m 이하	-
B11	획지11-1	155m 이하	-	-	-
	획지11-2	130m 이하	-	-	-

※ 1)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주1) 최고높이 한도 내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사선제한(H=1.5D) 미적용

4.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계획(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도면
표시</th><th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3">계획기준</th></tr>
<tr><th>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th><th>기타지역</th><th>비고</th></tr>
<tr><td rowspan="7">건축한계선</td><td>Ⅰ</td><td>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접부 오목로변</td><td colspan="2">획지선으로부터 4m</td><td>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접가로</td></tr>
<tr><td rowspan="3">Ⅱ</td><td>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8길,
목동서로10길, 목동서로12길</td><td colspan="2">획지선으로부터 6m</td><td rowspan="2">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td></tr>
<tr><td>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td><td>획지선으로부터 6m</td><td>-</td></tr>
<tr><td>안양천로변, 신월로,</td><td>-</td><td>획지선으로부터 6m</td><td>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td></tr>
<tr><td>Ⅲ</td><td>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td><td>-</td><td>획지선으로부터 10m</td><td>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td></tr>
<tr><td>Ⅳ</td><td>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td><td>-</td><td>획지선으로부터 1m</td><td>기타지역
변 가로</td></tr>
<tr><td rowspan="2">Ⅴ</td><td>국회대로, 목동로</td><td>획지선으로부터 10m</td><td>획지선으로부터 6m</td><td rowspan="2">광역
통경축</td></tr>
<tr><td>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td><td>국회대로, 목동로</td><td>획지선으로부터 13m</td><td>-</td></tr>
</table>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름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구분	적용지역	비고
건축한계선	목동동로 (대상지 동측)	1m, 3m, 4m(B13), 15m(B8)
	목동동로 (대상지 서측)	1m(주차장), 3m, 4m(B6,13)
	블록간 도로	3m, 4m, 5m(B13), 15m(B8)
	보행자전용도로	1m, 3m, 4m, 5m(B11)
	기타	2m, 6m(B8), 7m, 8m(B18), 10m, 12m(B9)

※ 1)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나. 건축물 배치 및 형태·색채 등 계획 (변경없음)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공동주택 용지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기존 시가지변 및 안양천변으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15층 이하)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으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통경축 확보를 위해 국회대로·목동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하고,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함 • 국회대로 · 목동로변으로 면한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최고 층수부터 4개 층 이상 층수변화를 주어 V자형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 연출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 (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공동주택 용지	• 전면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3층 이하, 1층부 층고는 4m 이상으로 계획	-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구역 전체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 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아 1m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광고물 설치제한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다음 기준을 준수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	

- 이하여백 -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1층 바닥 높이	▪ 전 구역	▪ 1층 바닥면과 접한 보도나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지의 경우 높은 쪽을 기준) 30cm 이내로 함
개구부	▪ 폭25m 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 벽면의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하도록 설치 ▪ 출입구는 점포1개당 2개소이하로 제한
벽면처리	▪ 폭12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	▪ 개구부가 없는 벽면 금지
투시벽	▪ 폭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 ▪ 보행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	▪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투시형 셔터	▪ 폭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 ▪ 보행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	▪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아케이드	▪ 보행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	▪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건축물 외장	▪ 전 구역	▪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품격 있는 색조 사용
	▪ 도로에 면한 획지	▪ 쇼윈도의 설치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 권장 ▪ 10층 이상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권장(상향)

※ 1)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 옥외광고물 계획

구분		계획내용
가로형 간판	색채	▪ 바탕색은 벽면과 어울리는 색 사용 (외벽과 보색관계, 또는 색상대비가 큰 색 사용금지) ▪ 한 건물에 설치하는 여러 간판은 같은 계통의 바탕색을 사용하여야 함
	형상 및 크기	▪ 층별간 가로의 크기는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세로의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돌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돌출폭은 30cm이하로 하되, 층별 간 돌출폭을 동일하게 설치 / 변형간판은 입체형만 허용
	위치 및 개수	▪ 1개업소당 1개만 설치 / 판류형은 1층에만 허용 (세로형간판 금지) ▪ 입체형은 외벽 좌측 또는 우측설치
지주 이용 간판	색채	▪ 가로형 간판과 동일
	형상 및 크기	▪ 상단까지의 높이 : 10m이내 ▪ 1면의 면적(입체형일 경우 가장 넓은 면)은 10㎡ 이내로 하고 간판 면적의 합계는 40㎡를 초과할 수 없음
	위치 및 개수	▪ 건물 주출입구변에 2개 업소 이상 통합 연립 형으로 1개를 설치 ▪ 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 및 공공보행통로 부분 설치금지 / 네온, 전광, 점멸 금지 ▪ 보도의 경계로부터 50㎝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도로로부터 100㎝ 이상) 이격
돌출형 간판	색채	▪ 가로형 간판과 동일
	형상 및 크기	▪ 상단은 벽면높이 초과 금지 /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초과 금지 ▪ 세로길이 20m이내 / 간판두께는 50cm이내 ▪ 이·미용업소 두께 : 지름 30cm이내, 길이 150cm이내 / 벽면과 간판간격 필요시 30cm이내
	위치 및 개수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 표시 / 2개 이상 업소가 간판을 표시할 경우 상·하로 일직선에 위치 ▪ 2층이상부터 5층이하까지 허용 / 전면폭 10m이하인 건물은 한 줄로, 10m초과 시마다 다른 한 줄로 표시 ▪ 부조건물, 가설 건축물은 표시 금지

다. 대지 안의 공지 계획 (변경없음)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신설)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기타지역	비고
전면공지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획지와 건축선 사이의 구간에 단지내의 공공보행 통로와 연계된 보행공간 조성		결정도 참고
공공보행 통로	목동 900-4 안양천로변	-	폭원 4m : 1개소	결정도 참고
공개공지	목동 900-4	-	1개소 위치지정	결정도 참고 :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기정)	비고
공개공지	전 구역	• 보행자전용도로 활성화 및 근린공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곳에 공개공지를 조성	주1)
전면공지	전 구역	• 건축한계선에 의해 전면공지 조성	주2)
공공보행 통로	간선가로변 세장비율 과다필지	• 도로변 및 인접대지사이에 건축한계선을 후퇴하여 1m, 3m, 6m폭의 통로 확보 • 접하는 보도 및 도로, 인접대지와 단차발생금지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 1) 특별계획구역 (B13) - 기결정

주1)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공개공지 등의 확보) 준수

주2)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중 필요한 곳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 이하여백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목동 901 일대	165,496.9	-	165,496.9	목동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2	목동 902 일대	159,252.5	-	159,252.5	목동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3	목동 903 일대	150,543.5	-	150,543.5	목동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4	목동 904 일대	122,825.3	-	122,825.3	목동4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5	목동 912 일대	204,003.2	-	204,003.2	목동5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6	목동 911 일대	102,424.6	-	102,424.6	목동6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7	목동 925 일대	225,141.5	-	225,141.5	목동7단지
변경	**특별계획구역8**	**신정동 314 일대**	**88,599.0**	**증)243.3**	**88,842.3**	**목동8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9	신정동 312 일대	183,057.8	-	183,057.8	목동9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0	신정동 310 일대	194,686.2	-	194,686.2	목동10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1	신정동 325 일대	128,668.4	-	128,668.4	목동1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2	신정동 326 일대	127,339.5	-	127,339.5	목동1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3	신정동 327 일대	178,919.9	-	178,919.9	목동1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4	신정동 329 일대	250,722.1	-	250,722.1	목동14단지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1구역 획지 (BL1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6-5 일대	8,531.0	-	8,531.0	
		특별계획1구역 획지 (BL13-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6-11 일대	8,304.0	-	8,304.0	
기정	특별계획구역 2-1	특별계획2-1구역 획지 (BL13-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 일대	10,212.0	-	10,212.0	
		특별계획2-1구역 획지 (BL13-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 일대	13,651.0	-	13,651.0	
기정	특별계획구역 2-2	특별계획2-2구역 획지 (BL14-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8-10	8,621.1	-	8,621.1	
		특별계획2-2구역 획지 (BL14-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8-12	4,145.0	-	4,145.0	
기정	특별계획구역 3	특별계획3구역 (BL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7 외 1필지	19,172.9	-	19,172.9	

※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특별계획구역1~7,9~14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8 - 목동8단지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6">계 획 지 침</th><th rowspan="2">비 고</th></tr>
<tr><th colspan="3">기정</th><th colspan="3">변경</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colspan="6">•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
면적</td><td colspan="3">• 88,599.0㎡</td><td colspan="3">• 88,842.3㎡</td><td>증) 243.3㎡</td></tr>
<tr><td colspan="3">획지면적</td><td colspan="3">• 67,615.9㎡ (76.3%)</td><td colspan="3">• 70,493.4㎡ (79.3%)</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3">기반시설면적</td><td rowspan="3">20,983.1㎡
(23.7%)</td><td>근린공원</td><td>10,762.0㎡
(12.2%)</td><td rowspan="3">18,348.9㎡
(20.7%)</td><td>어린이공원</td><td>7,884.5㎡
(8.9%)</td><td>-</td></tr>
<tr><td>녹지</td><td>8,606.5㎡
(9.7%)</td><td>연결녹지</td><td>8,606.5㎡
(9.7%)</td><td>-</td></tr>
<tr><td>도로</td><td>1,614.6㎡
(1.8%)</td><td>도로</td><td>1,857.9㎡
(2.1%)</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6">•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2">기반시설 설치</td><td colspan="6">• 도로 폭원확장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보)
• 녹지 (폭원 20m) 면적 축소</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3">• 근린공원 신설</td><td colspan="3">• 어린이공원 신설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 입체보행교(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폭원 5m
- 입체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소로3-A)는 추후 목동 9단지와의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지 간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td></tr>
<tr><td rowspan="5">건축물의 용도 밀도</td><td rowspan="3">용도</td><td>불허용도 A</td><td colspan="6">•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td><td>-</td></tr>
<tr><td>지정용도 a</td><td colspan="6">•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td><td>[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6">• 5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colspan="3">•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td><td colspan="3">•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td><td>-</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3">• 최고높이 : 35층 이하</td><td colspan="3">• 최고높이 : 49층 이하</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6">※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td></tr>
<tr><td colspan="6">•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td></tr>
</tabl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정	변경	
배 치	저층부 건축 지정선 (2층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건축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m		-
		• 근린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삭제	
	부대복리 시설 건축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고층부 벽면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 근린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삭제	
	공공보행 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연결녹지 내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와 연계하여 보행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폭 15m의 보행로 조성	-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 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차량진출입구 설치에 따른 목동서로 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변경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정	변경	
배치 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
		• 목동로변	• 목동로8길변 일부 구간	
기타 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		-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 목동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목동로8길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3) 저층배치구간 및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인 건축계획 시 변경할 수 있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 •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철거 후 신축 시 적용)	결정도 참고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
단지 내 보행동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세부 지침도 참고

나.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보행자 우선도로	근린공원 주변	• 근린공원 인접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간선도로변 제외)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 가로변	• 간선가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대지의 입지 상 차량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허용)	
주차 출입구	전 구역	•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는 주차출입구가 표시된 지역에 설치 • 인접대지와 주차출입구를 공동으로 설치 유도	

※ 1) 포장재질, 색 및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2.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공기여계획 등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 분		내용
목동 900-4	공공기여내용	대상지 건축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건축물 건립한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공공기여량	부지면적의 20% 이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28.8% 상당 제시)
	관리청	서울시 또는 자치구(시 또는 자치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관리청 및 용도 결정)
	세부기준	공공기여량 산정 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 준용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 기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

■ 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시행계획

○ 본 사업 내 ·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소요되는 비용 부담의 주체는「교통영향평가 지침」제20조 의거하여 각 사업단지 별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시행자가 향후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 후 진행토록 하겠음.

제20조(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

①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각각 사업을 달리하는 개별 사업자를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본다. 다만, 이행분담률에 대하여 모든 이행의무자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 전단에도 불구하고 정량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 등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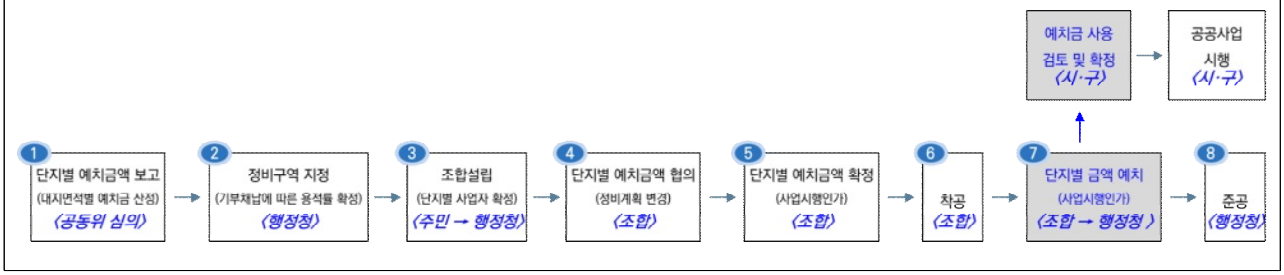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승인관청에게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승인관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지구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관련지역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 분		개선대책 내용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용부담
사업지내부	입체화시설	ㅁ 안양천로 입체화 시설 설치(3개소) ① 목동테니스장 남측 : L=220m, B=20.5m(양방향 4차로) ② 목동종합운동장 삼거리 : L=260m, B=20.5m(양방향 4차로) ③ 양정고교앞~목마공원구간 : L=910m, B=20.5m(양방향 4차로)	재건축 추진완료시	서울시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 안양천로 기능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입체화 - 기존 단일횡단보도 → 입체보행육교 설치(5개소)	재건축 추진완료시	양천구	양천구
	교량신설	■ 목동 단지 14 ~ 신도림동간 도로개설 (단기안) - L=0.25km, 6차로	재건축 추진완료시	서울시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 목동14단지~신도림동간 도로개설(장기안) 중 구로구 도로개설 구간 - L=0.35km, 6차로	신도림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완료시	신도림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	신도림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
		■ 목동6단지~당산동 간 도로개설 - L=0.33km, 4차로	재건축 추진완료시	서울시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사업지외부	도로확폭	■ 사업지구 내부 일방통행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① 대로3-151호선(목동서로) : L=1.2km, B=25.0 → 28.0m ② 대로3-148호선(목동서로) : L=2.1km, B=25.0 → 28.0m ③ 대로3-147호선(목동서로) : L=1.5km, B=25.0 → 28.0m ④ 대로3-149호선(목동동로) : L=1.4km, B=25.0 → 28.0m ⑤ 대로3-152호선(목동동로):L=1.0km, B=25.0→28.0m(5,6단지 구간) ⑥ 대로3-152호선(목동동로):L=0.6km,B=25.0→28.0m(목동운동장 구간)	①~⑤ :단지별 사업완료시 ⑥ : 재건축 추진완료시	①~⑤ :단지별 사업자 ⑥ : 서울시	①~⑤ :단지별 사업자 ⑥ :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 사업지구 외부 연결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① 대로3-146호선(목동중앙로) : L=2.2km, B=25.0 → 28.0m ② 중로2-271호선(중앙로32길) : L=0.9km, B=15.0 → 18.0m ③ 중로2-276호선(목동로3길) : L=1.2km, B=15.0 → 18.0m ④ 대로2-73호선(목동동로) : L=0.3km, B=30.0 → 36.0m	①~③ :단지별 사업완료시 ④ :재건축 추진완료시	①~③ :단지별 사업자 ④ :서울시	①~③ :단지별 사업자 ④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 사업지 외부개선대책 비용부담 세부추진내용

재건축 추진에 따른 예치금 절차



- 각 사업 단지별(목동아파트 14개단지)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충당 예정임.

※ 사업시행자는 사업지 외부교통대책 비용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시기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 공제

- 목동 14단지~신도림동 도로개설(장기안) 중 구로구 도로개설 구간은 해당 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부담 예정

※ 외부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비용 분담은『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호』제20조를 준용함.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0조 3항

: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본다.

■ 사업 외부 교통개선대책 우선순위 방안

- 본 사업 외부개선대책으로 사업지와 외부지역을 연결하는 연결교량 2개소와 교통량이 집중되는 안양천로의 입체화를 계획하였음.
- 현 시점에서는 단지별 재건축 추진시기, 추진방법 등의 세부계획이 미 수립되어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 또는현금기부채납(재건축 상한용적률) 등 외부개선대책을 위한 재원 조달비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우선순위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다만,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교통정체완화 측면에서는 별도의 도로점용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높은 안양천 연결교량 2개소를 우선 시공하고 이후 차로 점용이 불가피한 안양천로 입체화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교통악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단지별 재건축 추진(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대책 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목동 오거리 지하차도 사업비에 준하는 대체사업에 대한 공공시설 부담계획

- 당초 목동오거리의 상습정체 해소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목동오거리 지하차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목동역사 하부 통과 및 강북횡단선 노선 중복 등의 문제에 따라 지하차도 계획을 삭제하였으며, 추정 개략공사비는 약 1,000억원으로 예측하였음
- 계획 삭제에 따라 사업비에 준하는 대체사업을 강구하였으나, 사업지 주변으로 이미 대규모 교통개선사업(국회대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사업 외부개선 대책【① 안양천로 입체화 시설 설치】및【② 목동14단지 ~ 신도림동간 연결도로, ③ 목동6단지 ~ 당산동간 연결도로】이외의 추가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당초 목동오거리의 추정공사비인 약 1,000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 사업시행 시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공공교통개선사업(목동선 경전철 사업 등)의 건립비용으로 대체토록 검토함.
-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명확한 사업시행 시기를 가늠할 수 없으며, 상기 목동선 경전철 사업 등과 같은 주변지역 교통개선사업 또한 구체적인 사업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업시기의 불일치에 따라 비용 부담방식은 예치금 형식을 통해 부담하도록 함.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위 치	공공기여 용도	공공기여 내용	세부계획	공공기여량	관리청
도시계획 시설 (공공청사) 목동 905-6	건축법시행령[별표1] 중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박물관, 회의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폐지에 따른 시설 조성 후 관리청에 관리위탁	건축허가 전까지 공공기여 세부계획 (비용산정, 관리청 지원, 시설운영계획, 이행담보 방안 등)은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부지면적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관리위탁(20년) (우체국 부속토지 면적 제외) [계획 : 20%]	건축허가, 심의 등 개발계획 확정시 결정 (서울시, 양천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
지정용도 (금융업소) 목동 907-7 외 7필지	공개공지 또는 쌈지형공지	지정용도 (금융업소) 해제에 따른 공적공간(공개공지 또는 쌈지형공지) 조성		공공성용도 (공개공지 또는 쌈지형공지) 부지면적 10% 이상 조성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 제외)	
지정용도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목동 924 외 2필지	-	지정용도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해제에 따른 토지 또는 공공기여 건축물 건립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최대16%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기존 지정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량 최대 10% 차감) 다만, 기존 지정용도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를、건축물 연면적의 80%이상 유지하면서 증축 (당해 면적이 500㎡이하에 한함),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 시 공공기여 미적용.	

※ 공공기여 용도 변경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변경 가능

※ 목동 824 외 2필지 공공기여량 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71호에 따름

- 목동택지개발지구 계획 당시의 특수용도 지정취지, 규제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상제 운영기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기준 (20% 내외) 준용하되, 지정용도 면적기준(80%이상)을 감안하여 적용(최대16%)

→ 부지면적의 최대16% 이상으로 계획하고, 기존 지정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량 최대 10% 차감. 다만,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 신용시설)를 건축물 연면적의 80%이상 유지하면서 증축 (당해 면적이 500㎡이하에 한함),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 시 공공기여 미적용.

예시) 기존 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0% → 공공기여 16

기존 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50% → 공공기여 11%

기존 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100% → 공공기여 6%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법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계획의 입안) 제4항 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함

경미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또는 제18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 ·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 · 획지면적 ·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 용적률 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안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 · 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목동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	목동 중심지역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함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 쌈지형 공지의 위치, 조성밥법의 변경 및 신규설치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 내 통로의 위치 및 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설치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6.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변에서의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공동개발 변경 또는 대지분할에 의한 경우)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8.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이하여백 -

Ⅱ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5.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⑧	특별계획 구역8	신정동 314 일대	88,599.0	증)243.3	88,842.3	목동8단지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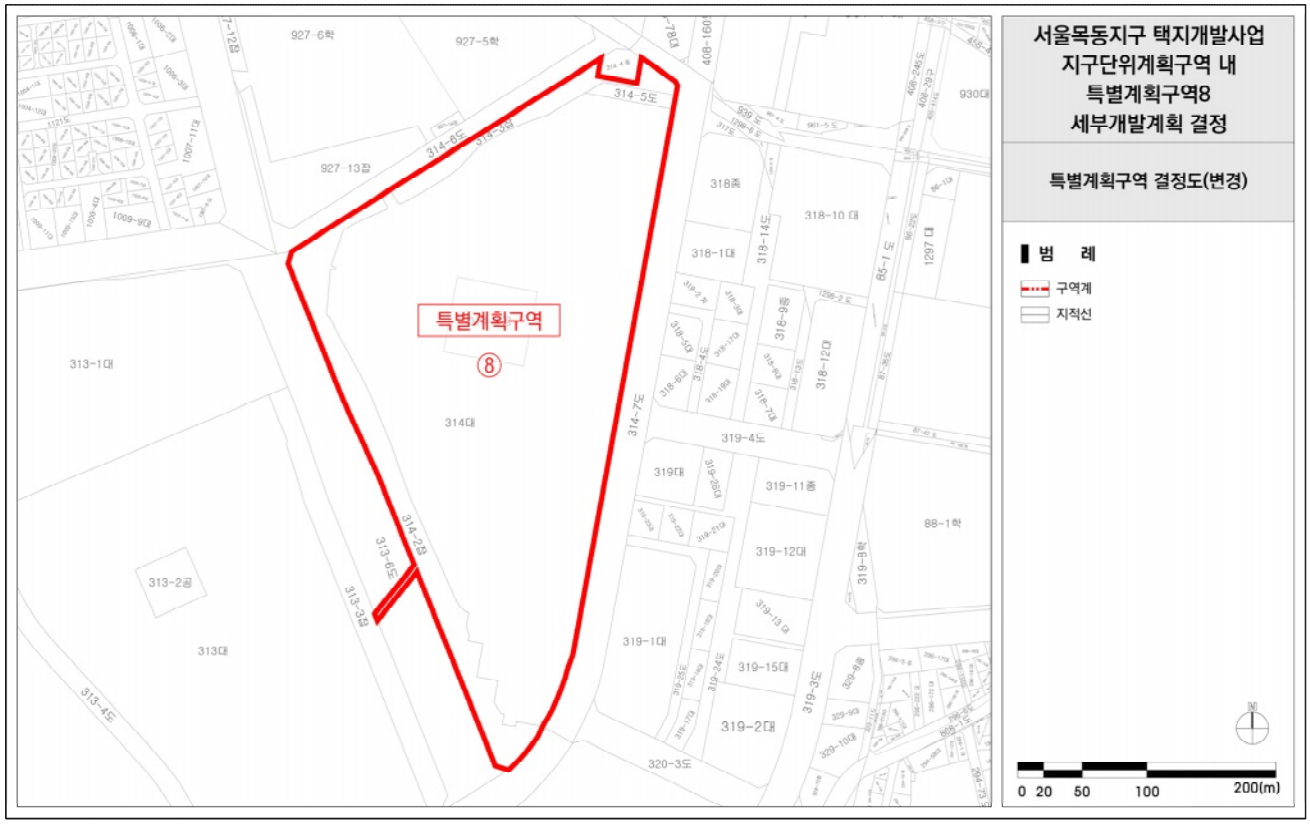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	특별계획구역8	• 구역 면적 및 선형 변경 - 88,599.0㎡ → 88,842.3㎡ (증) 243.3㎡	• 세부개발계획(특별계획구역8)에 따라 입체보행교 설치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변경	-

- 이하여백 -

〈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안)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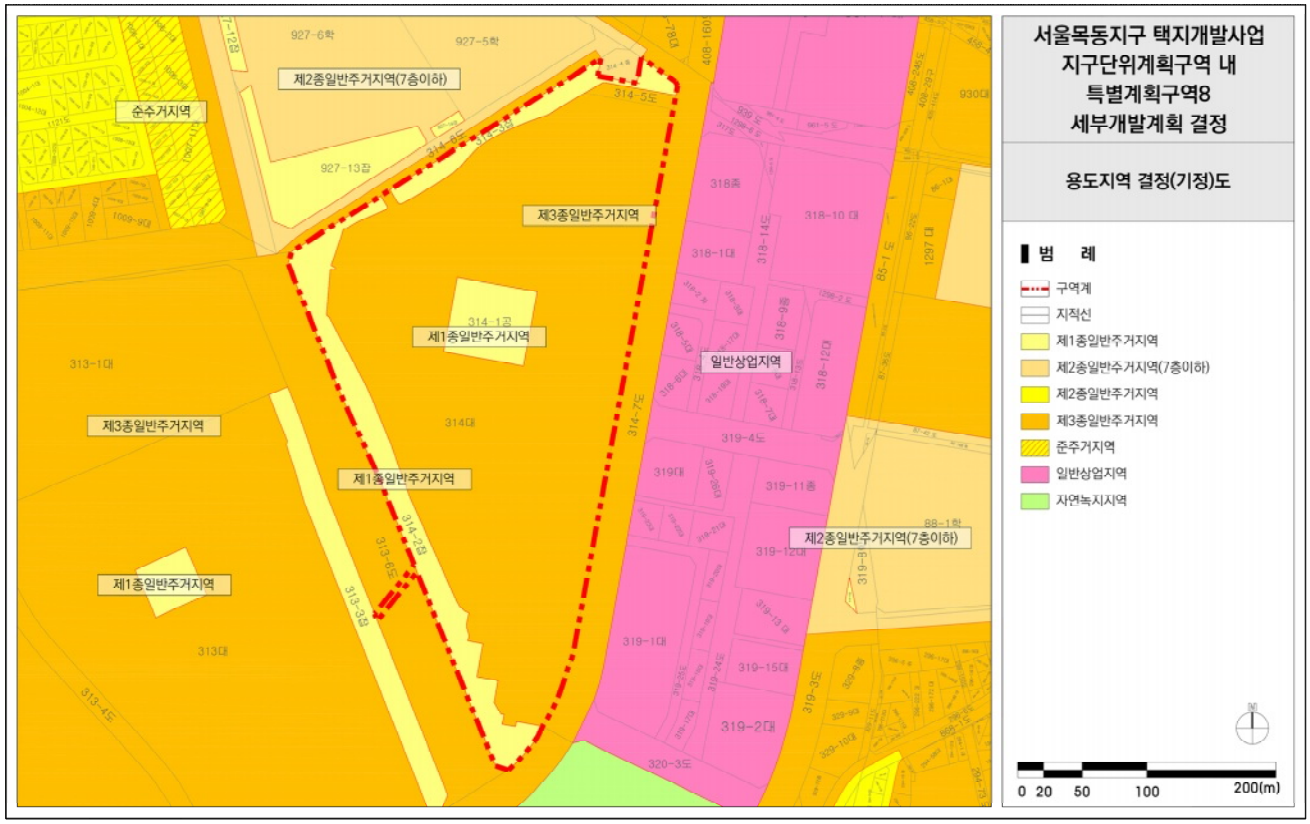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8,842.3	-	88,842.3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91.0	-	16,491.0	18.6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351.3	-	72,351.3	81.4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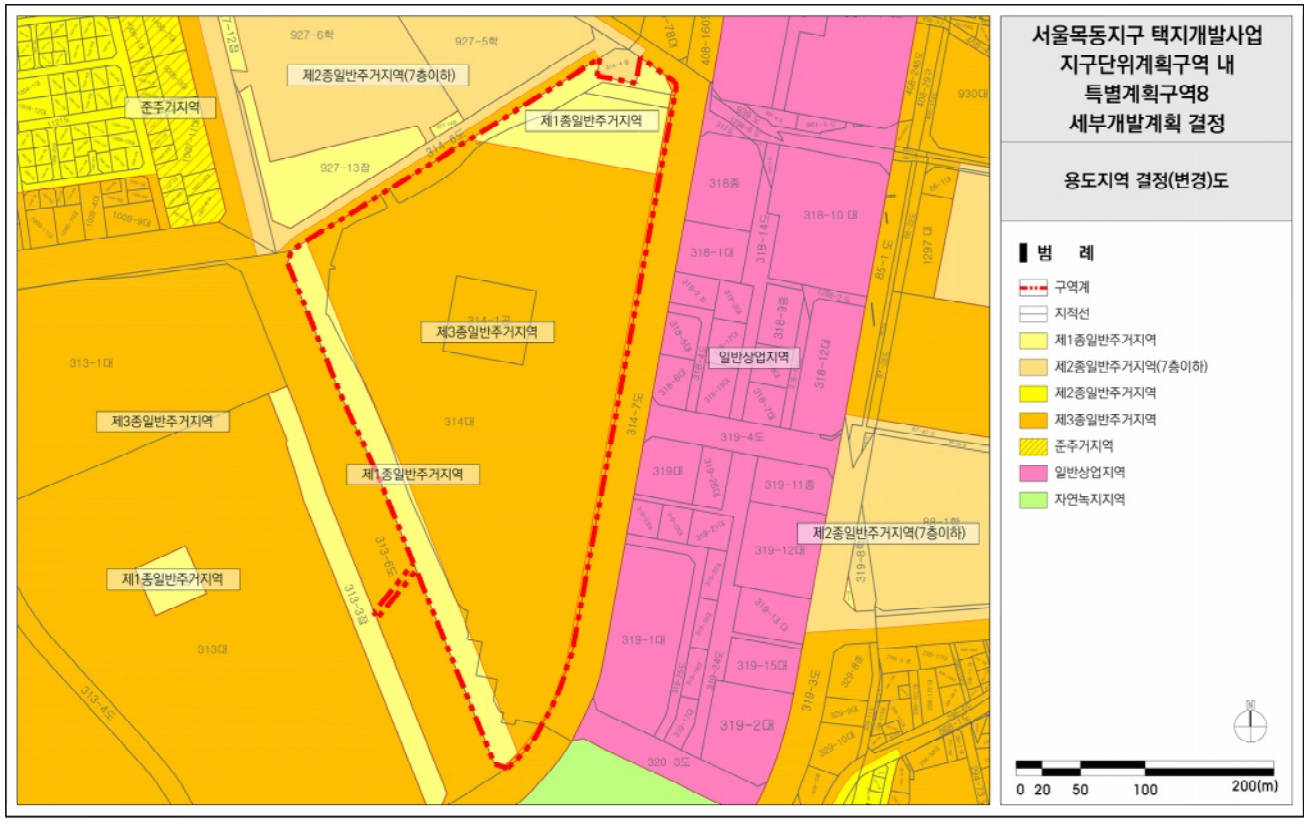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1번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730.1	• 공동주택 획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2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53.1	• 녹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5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4.5	•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18.7	• 녹지 및 어린이공원 계획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변경	-

- 이하여백 -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안) 〉



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8	25~28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일부 폭원 변경
폐지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A	5	특수도로	71	신정동 314-2	신정동 313-3	보행자 전용도로	-	〃	대로2-37과 중복결정, 녹지와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소로3-A)는 추후 목동9단지와의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지 간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8	대로 3-148	• 구역 내 도로 확폭 - B = 25m → 25~28m(증 3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 내 도로 확폭
소로1-10	-	• 도로 폐지	•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소로 1-10 폐지
-	소로3-A	•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폭원 5m) - 입체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보행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4-1	3,730.1	감)3,730.1	-	서고시 422호 (94.12.27)	8단지
신설	-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3 일대	-	증)7,884.5	7,884.5	-	-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제9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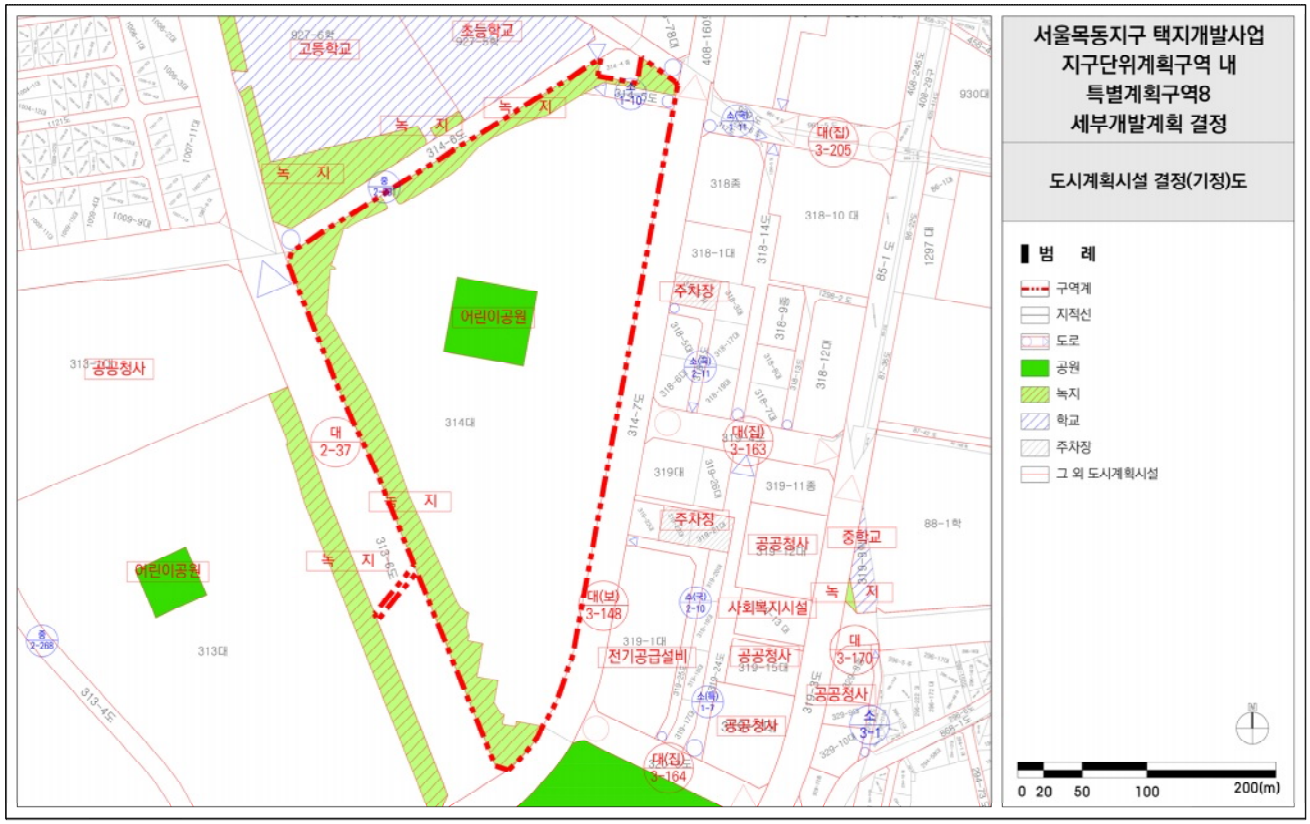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8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314-2,3	12,760.9	감)4,154.4	8,606.5	서고시 422호 (94.12.27)	8단지 서측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8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A = 12,760.9㎡ → 8,606.5㎡ (감 4,154.4㎡)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 이하여백 -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안)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A14	A14-①	신정동 314, 314-5	70,493.4	특별계획구역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분	전층	저층부 1층~2층	비 고
지정용도	•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3조에 의한 "단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커뮤니티활성화배치구간"에 설치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2)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9.95% 이하 / 300% 이하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 고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돌봄시설	
허용용적률	10%	5%	5%	총 20%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상한용적률	19.95%	50.05%	총 70.0%

3) 높이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49층 이하	-

다. 건축물 건축선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목동서로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부대복리시설)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6m
건축한계선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목동서로 (3층 이상 공동주택)	획지선으로부터 8m
	목동로8길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도면에 표기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원 : 15m • 연결녹지 내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와 연계하여 보행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폭15m의 보행로 조성 ※ 추후 분양공고 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내용을 명기하며, 공공보행통로의 기능 및 범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70조에 의한 지역권 설정을 이전고시 시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에 명기하고,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및 도면번호를 기록하도록 함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 •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 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5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3">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colspan="3">•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
면적</td><td colspan="3">• 88,842.3㎡</td><td>증) 243.3㎡</td></tr>
<tr><td colspan="3">획지면적</td><td colspan="3">• 70,493.4㎡ (79.3%)</td><td>획지1
(A14-①)</td></tr>
<tr><td colspan="3" rowspan="3">기반시설면적</td><td rowspan="3">18,348.9㎡
(20.7%)</td><td>어린이공원</td><td>7,884.5㎡ (8.9%)</td><td>-</td></tr>
<tr><td>연결녹지</td><td>8,606.5㎡ (9.7%)</td><td>-</td></tr>
<tr><td>도로</td><td>1,857.9㎡ (2.1%)</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3">•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 설치</td><td colspan="3">• 도로 폭원확장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보)
• 녹지 (폭원 20m) 면적 축소
• 어린이공원 신설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 입체보행교(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폭원 5m
- 입체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소로3-A)는 추후 목동 9단지와의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지 간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td><td>-</td></tr>
<tr><td rowspan="5">건축물의 용도 밀도</td><td rowspan="2">용도</td><td>불허용도 A</td><td colspan="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td><td>-</td></tr>
<tr><td>지정용도 a</td><td colspan="3">•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td><td>[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3">• 5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colspan="3">•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49.95%이하/300%이하</td><td>-</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3">• 최고높이 : 49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td><td>-</td></tr>
</tabl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배 치	저층부 건축 지정선 (2층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건축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 시설 건축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고층부 벽면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공공보행 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연결녹지 내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와 연계하여 보행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폭 15m의 보행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추후 분양공고 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내용을 명기하며, 공공보행통로의 기능 및 범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70조에 의한 지역권 설정을 이전고시 시 토지등기부등본 '을구'에 명기하고,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및 도면번호를 기록하도록 함	-
교통 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차량진출입구 설치에 따른 목동서로 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변경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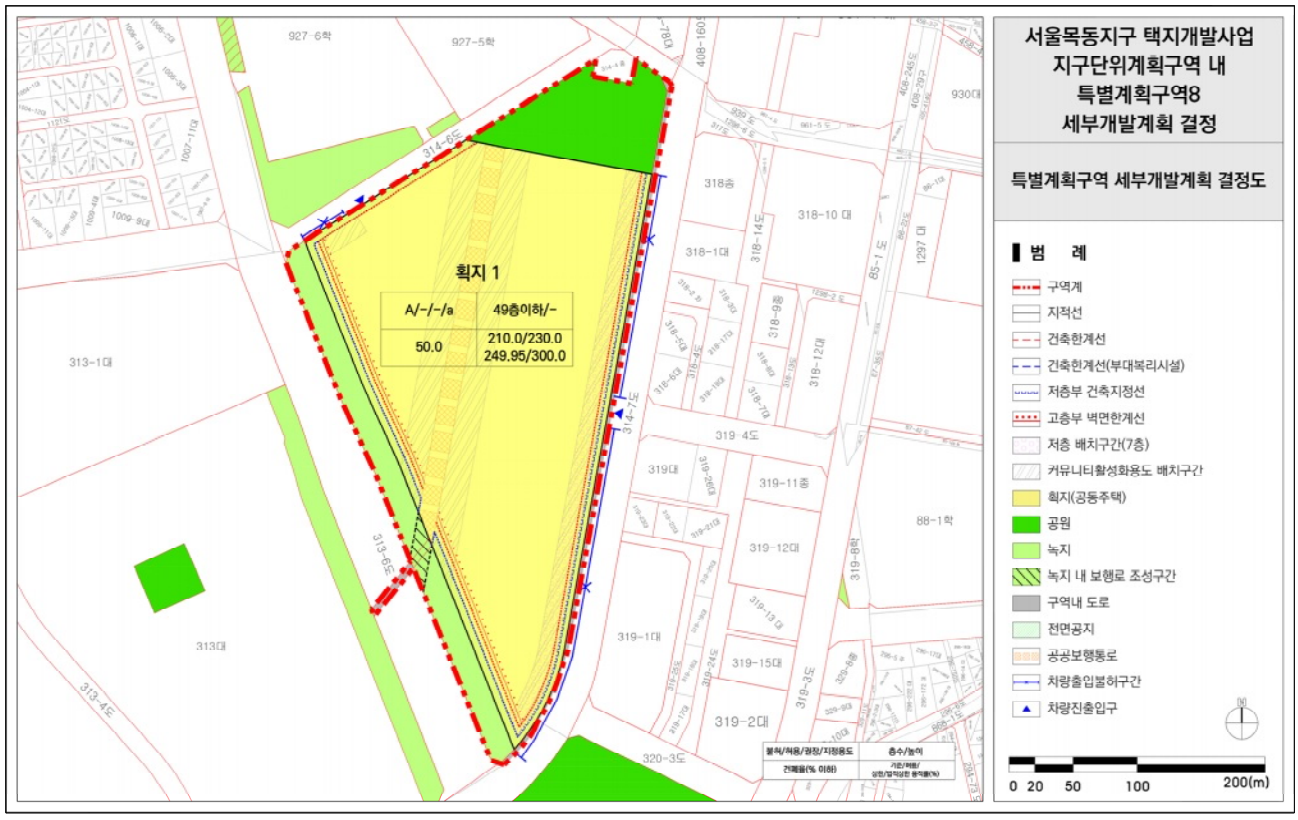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배치 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목동로8길변 일부 구간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
기타 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	-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목동로8길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3) 저층배치구간 및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인 건축계획 시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안) 〉



Ⅲ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서

1.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서

1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서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양천구 목동 8단지 일대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계획으로 선형 도시축 중심의 신시가지로서 자족적인 주거단지로 계획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나 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

○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서고시제2023-408호)을 통해 서남권 대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통합적 공간구조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계획의 목적

○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변화된 정책방향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필요

- 조건부 재건축으로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하여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정비구역 지정 필요
-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필요

○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단지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 방향 제시

- 목동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대상지 내외 공원 및 녹지시설 다수 분포, 주변 녹지 흐름을 고려한 기반시설 재편 필요
- 대상지 북측 학교, 중심지구 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필요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필요

나.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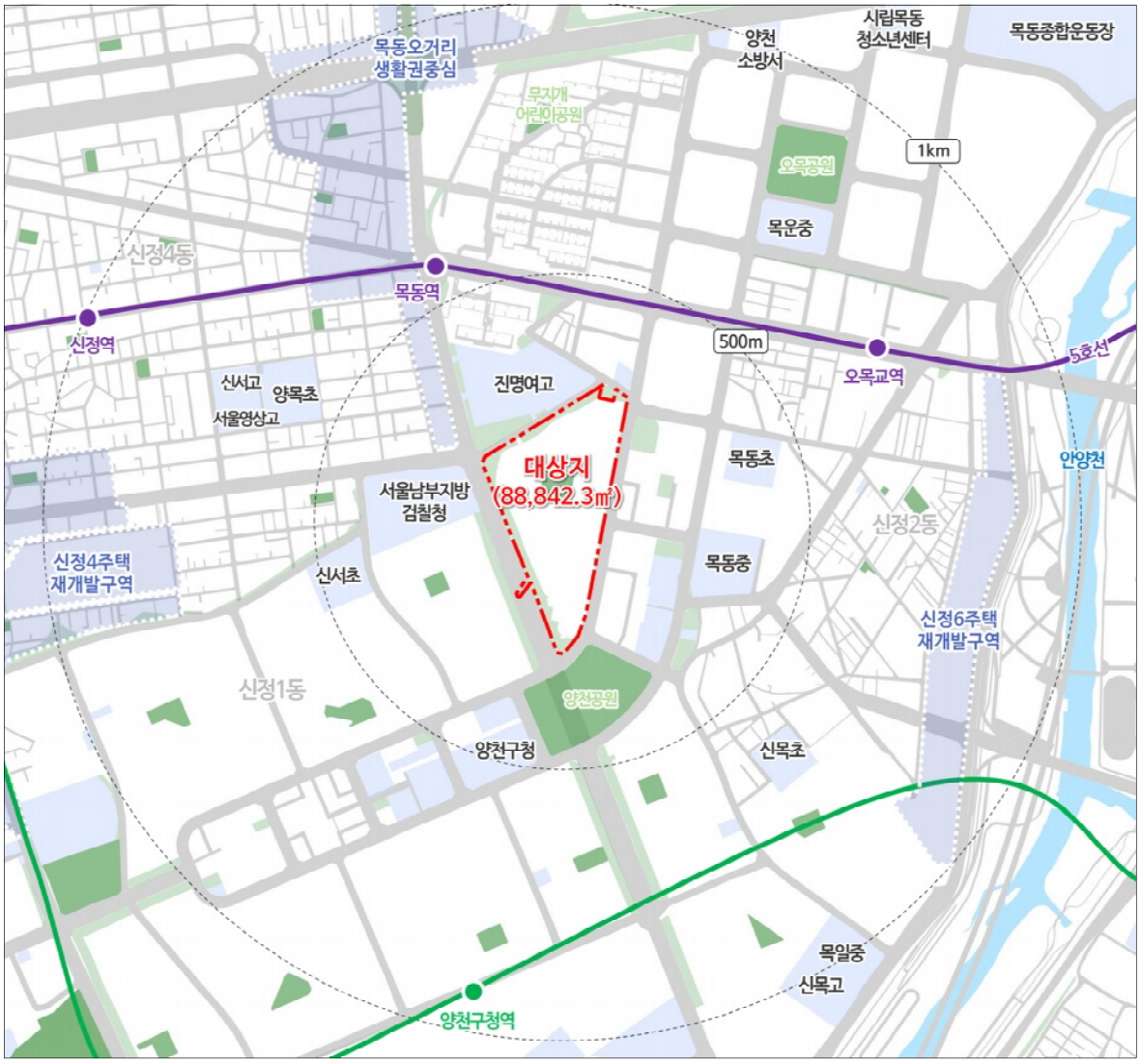
○ 면적 : 88,842.3㎡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년도 : 2030년(착공 2027년, 입주 2030년)

〈 위치도 〉



다.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

1) 계획의 수립절차



2) 계획의 추진현황

○ ’20.07. : 예비안전진단 통과

○ ’21.03. :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 ’23.02.28. : 조건부 재건축으로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

○ ’23.07.06. :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접수

○ ’23.08. : 관련부서 사전협의

○ ’23.09. :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확정

○ ’23.09.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 ’24.06. :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 자문회의 1차

○ ’24.10. :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2. 현황분석

가. 주변지역 현황

1) 주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및 대중교통 체계 변화로 인한 접근성 증대

○ 목동로, 목동서로 등 간선도로에 면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

○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사업('17.~23.),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1.09 개통) 등으로 인한 주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 경전철 목동선 노선 신설로 인해 지하철역 접근성 증대 예상

2) 공원, 학교와 연접하여 안전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 남측에 규모있는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책쉼터, 꿈마루 놀이터, 산책로 등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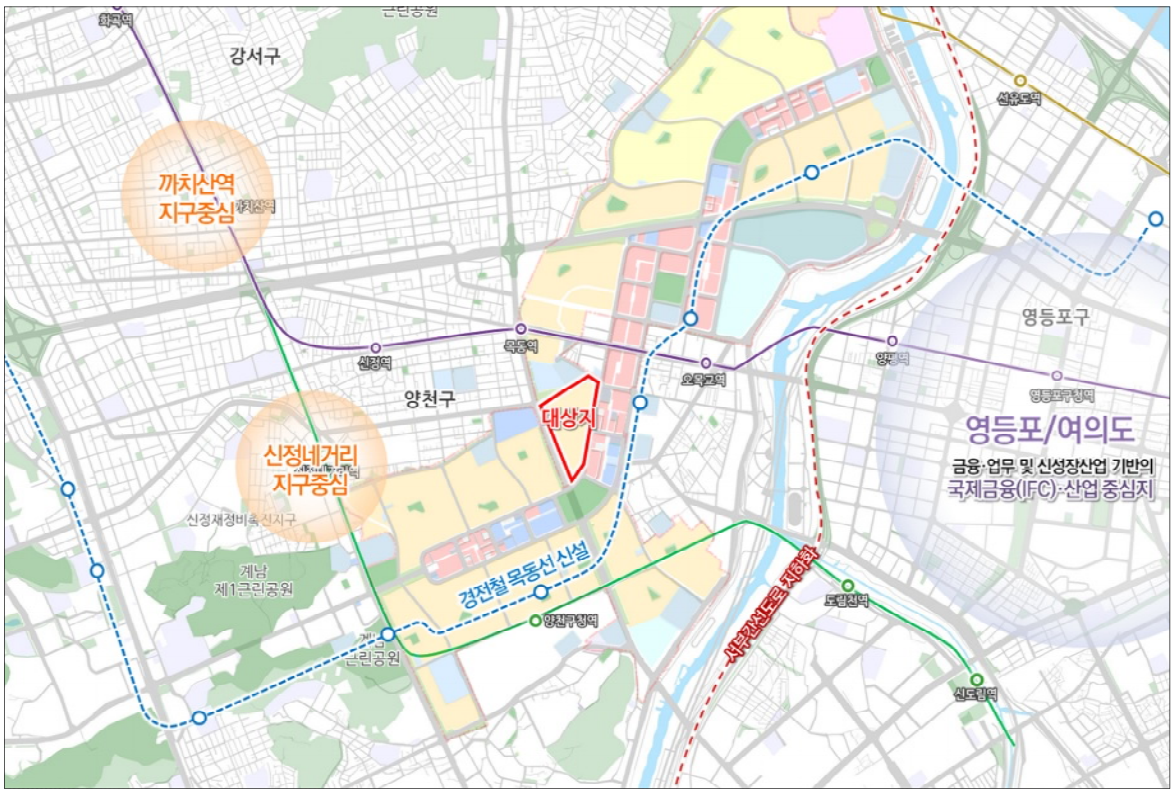
○ 북측으로 진명여고 및 서정초 위치

3) 목동 택지개발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단지

○ 상업 문화 중심지인 목동 중심지구와 목동9단지 사이에 위치

○ 양천구청, 법원·경찰청, 양천세무서 등 공공시설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

〈 광역현황도 〉



나. 정비사업 구역 현황

도시관리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타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	941.0㎡	-	-
			공원	3,730.1㎡		
			녹지	12,760.9㎡		

토지현황	구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 (관리청별)				비고
				소계	서울시	양천구	국유지	
	면적(㎡)	88,842.3	71,410.0	17,432.0	243.3	17,188.7	-	-
	필지수	6	1	5	1	4	-	-

건축물현황	구분	계	허가 유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고
			유허가	무허가	주거용			비주거용			
					소계	유허가	무허가	소계	유허가	무허가	
	동수	15	15	-	15	15	-	-	-	-	-
	호수	35	35	-	35	35	-	-	-	-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지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1,352	725	627	3,380	1,813	1,568	1,379	1,377	2	-	-

1)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

구분		노후·불량 비율 (%)	노후·불량 등의 유형			
			계	구조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타
구조별	**합계**	**93.3**	**14**	**14**	**-**	**-**
	철근·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93.3	14	14	-	-
	기타구조 (연와, 석조, 목조 등)	-	-	-	-	-
존치기간별	**합계**	**93.3**	**14**	**14**	**-**	**-**
	10년 미만	-	-	-	-	-
	10 ~ 19년	-	-	-	-	-
	20 ~ 29년	-	-	-	-	-
	30 ~ 39년	93.3	14	14	-	-
	40년 이상	-	-	-	-	-
허가별	**합계**	**93.3**	**14**	**14**	**-**	**-**
	유허가	93.3	14	14	-	-
	무허가	-	-	-	-	-

※ 노후·불량 비율 = 노후·불량동수 / 총 동수
※ 1) 상기사항은 건축물 총 동수(15동) 중 노후·불량건축물 14동에 관한 사항임
2)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가 누락된 경우, 건축물등기상 등기접수일자로 산정
3) 노후도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준용

2) 호수밀도 현황 : 해당없음

3) 주택접도율 현황 : 해당없음

4) 과소필지 현황 : 해당없음

5)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며,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임

○ 2023년 2월 28일, 조건부 재건축으로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하여 재건축 요건을 충족함

- 이하여백 -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건축물 존치기간별 현황도

0 40 100 200

N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10년 미만
- 10~19년
- 20~29년
- 30~39년
- 40년 이상

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가) 미래상 및 목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 미래상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7대 목표 설정

구 분	7대목표	주요 내용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보행일상권 조성'**	· 주거·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도보 30분 내에서 향유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물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편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기반시설 입체화'**	· 도심 속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 입체화 추진
서울의 성장 견인 "도시경쟁력"	미래성장거점 육성·연계 **'중심지 기능 혁신'**	·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지 기능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 신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미래교통 기반시설 마련
대전환시대 미래 서울의 "가치와 방향"	미래위기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공간계획의 주요 원칙,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서울로의 전환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도시계획 대전환'**	·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의 전환

나) 도시공간구조 설정

■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계 유지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

■ 중심지 체계와 광역교통망·대중교통체계·수변·산업거점 연계로 중심지 기능 고도화 지원

■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로 다기능 복합용도 유도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심지 육성 및 관리방안 마련

구 분		주요 육성방향
3 도심	한양도성,영등포·여의도,강남	·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도심의 정체성과 장소성 강화 ·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로 도심 가용지 확보 및 복합 개발 추진 · 3도심 간 직결체계 완성을 위하여 광역급행철도망 연계 및 도심 간 이동 수단 다양화
7 광역중심	용산,청량리·왕십리,창동·상계, 상암·수색,마곡,가산·대림,잠실	· 광역 경제권의 일다리 및 다기능 복합 중심지로 육성 · 중심지와 수변 명소 간 보행로 연계 및 중심지의 문화·여가 기능을 강화
12 지역중심	동대문,망우,미아,성수,신촌,마포·공덕,연신내·불광,**목동**,봉천,사당·이수,수서·문정,천호·길동	· 고용기반 및 고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역중심의 특화 육성
53 지구중심	-	·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생활권 중심지로 기능 ·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하여 지구중심 및 역세권의 다기능 복합개발 추진

2) 2030 서울생활권 계획

가) 목표 및 전략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교육중심도시 목동2생활권

■ 목표1 : 목동중심지의 문화상업기능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목동중심지구 상업,문화기능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목표2 :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계획적 관리 및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정비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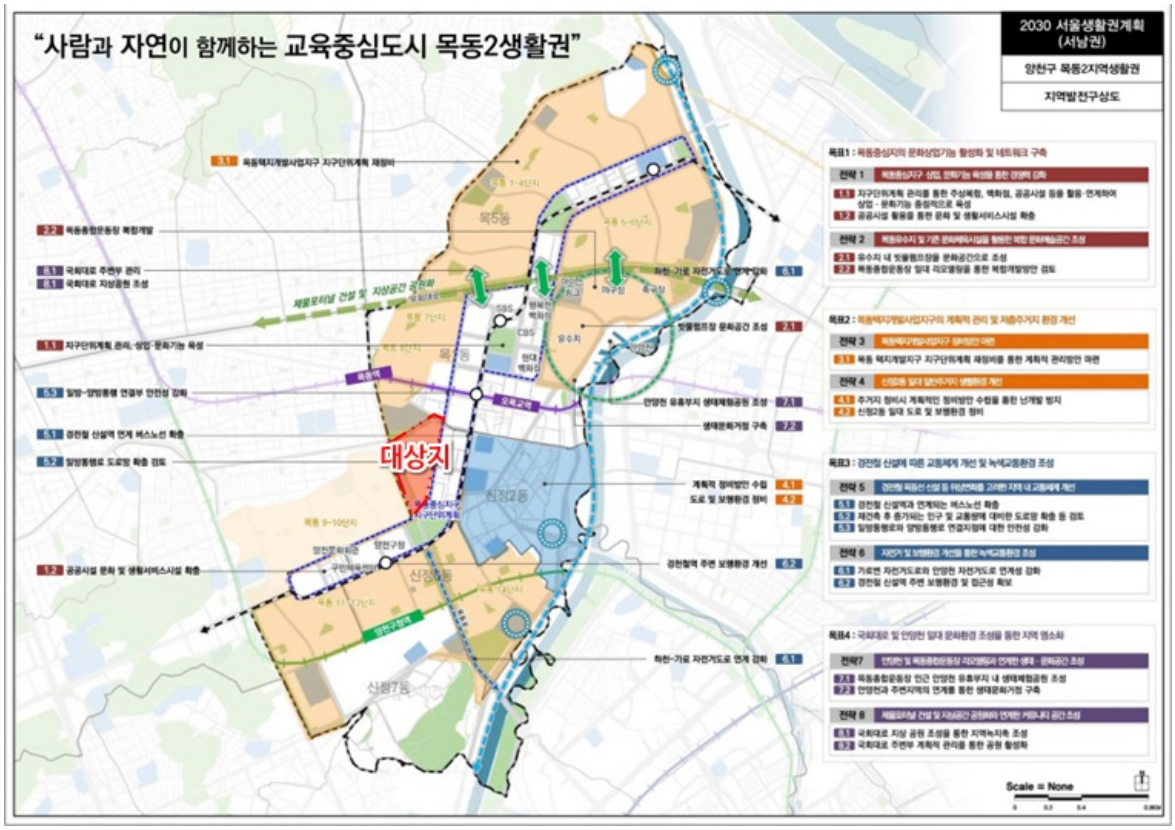
■ 목표3 : 경전철 신설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및 녹색교통환경 조성

- 경전철 목동선 시설 등 위상변화를 고려한 지역내 교통체계 개선

■ 목표4 : 국회대로 및 안양천 일대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 안양천 및 목동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연계한 생태·문화공간 조성

〈서남권 양천구 목동2 지역생활권 지역발전구상도〉



나) 생활서비스시설 분석

■ 목동2 생활서비스시설 분석 결과

○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대상 : 청소년아동복지시설

- 서비스소외지역이 일부 발생하며, 시 평균 대비 시설 개소가 1/3수준인 청소년아동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급/운영계획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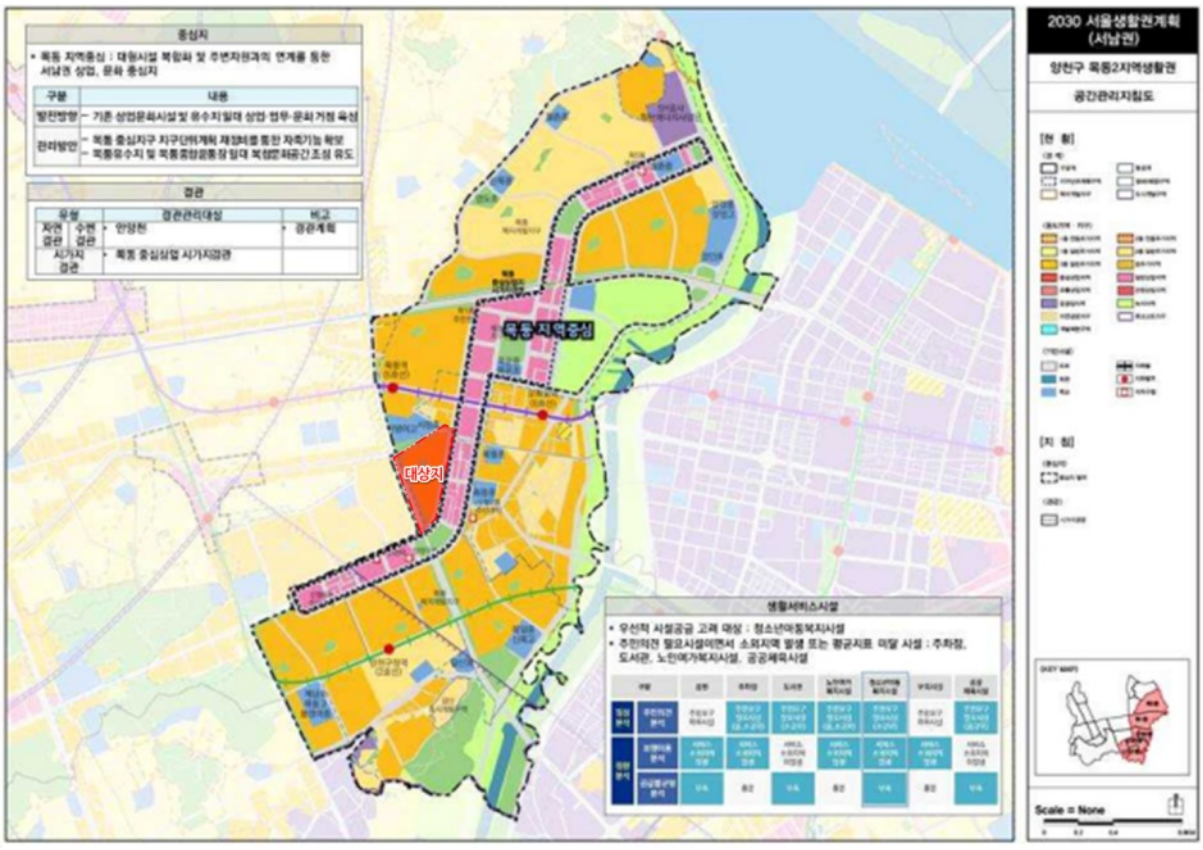
○ 주민의견분석 결과 필요시설

- 중규모시설 :다목적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노인종합복지관
- 소규모시설 : 소규모 공영주차장, 청소년독서실, 작은도서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서남권 양천구 목동2지역생활권 생활서비스시설 분석표〉

구분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정성 분석	주민의견 분석	주민요구 하위시설	주민요구 필요시설 (중,소규모)	주민요구 필요시설 (소규모)	주민요구 필요시설 (중,소규모)	주민요구 필요시설 (소규모)	주민요구 하위시설	주민요구 필요시설 (중규모)
정량 분석	보행이용 분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미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미발생
	공급불균형 분석	부족	충분	부족	충분	부족	충분	부족

〈서남권 양천구 목동2지역생활권 공간관리지침도〉



3)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중

가) 정비기본계획의 비전



■ 서남권역 주거지 중점계획방향

준공업지역 내 주공혼재지역의 주거환경정비	•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용도혼재 및 상충 •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 필요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시가지 관리	• **목동, 가양 등 노후한 계획시가지 관리**
구릉지, 준공업지역 배후주거지, 외국인 밀집지 등 관리	• 쪽방, 유곽 밀집지역, 대림, 가리봉 등 외국인 밀집지 • 구릉지에 대한 생활편익시설 확충

■ 양천구 중점계획

- 노후한 대규모 계획시가지의 정비 관리(리모델링, 재건축 등)
-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노후주거지에 대한 다양한 정비수법을 활용한 주거환경관리
- 도심(여의도)에 인접한 배후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의 점진적 개선

■ 목2 주거생활권 관리방향

○ 안양천변 주거지역은 수변공간을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서울 기본경관계획을 준용하고 보행환경개선 및 접근로를 다양화함

○ 80년대 초·중반에 건립된 목동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의 지속적 관리 및 재건축·리모델링 등에 대한 관리

■ 신정6동 주거생활권 관리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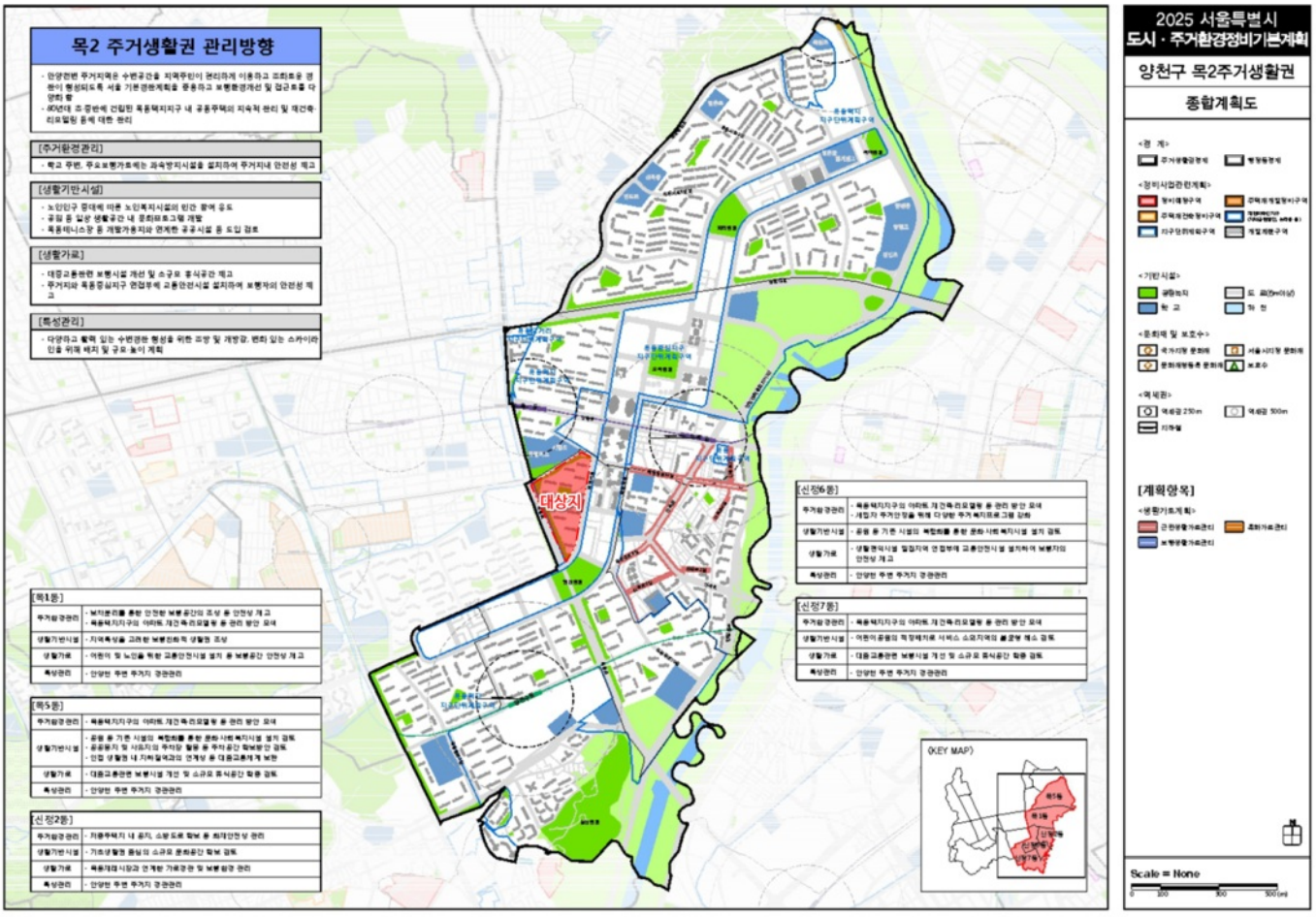
○ 주거환경관리 : 목동택지지구의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등 관리 방안 모색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복지프로그램 강화

○ 생활기반시설 : 공원 등 기존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문화 사회 복지시설 설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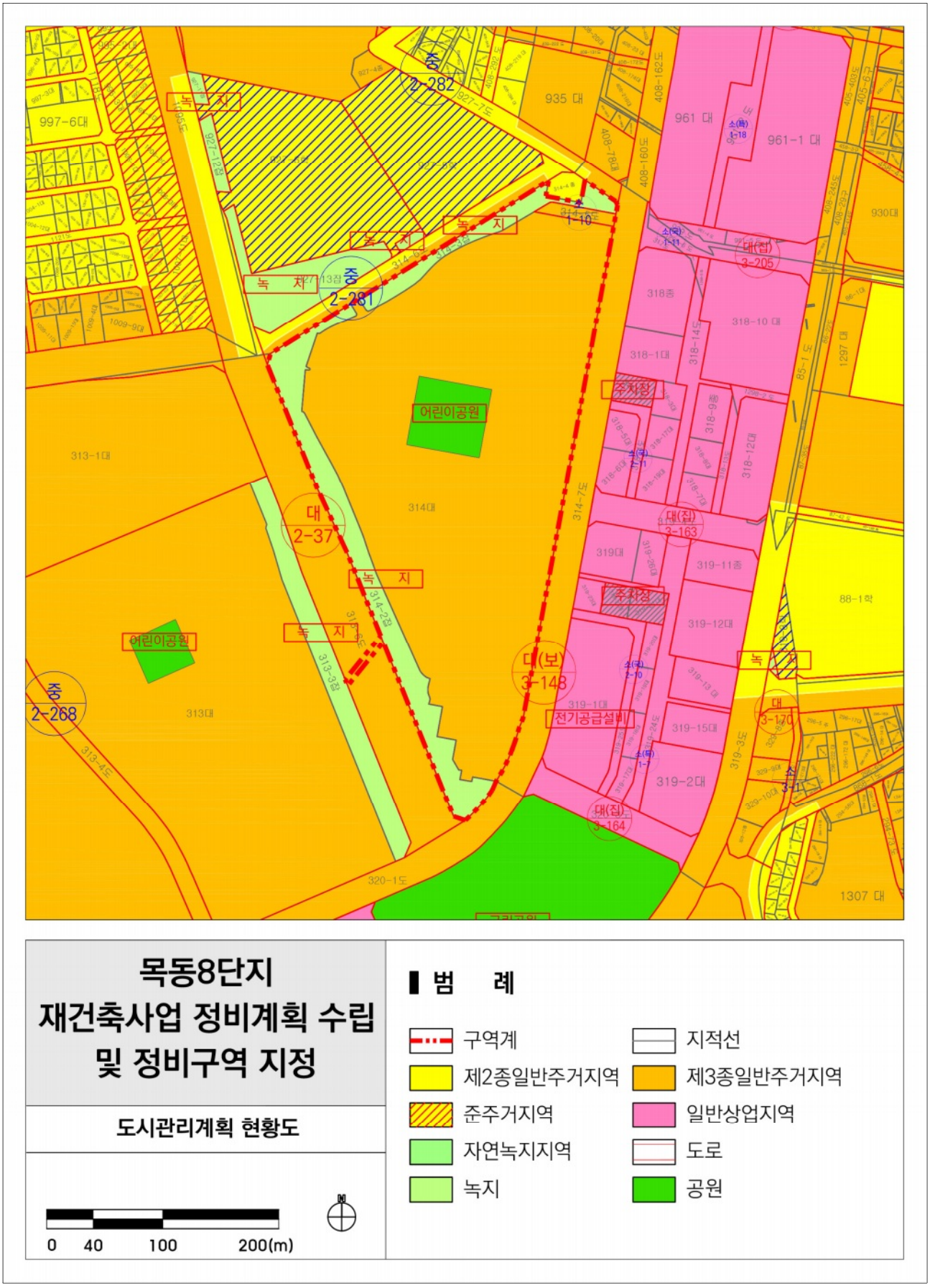
○ 생 활 가 로 : 생활편의시설 밀집지역 연접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

○ 특 성 관 리 : 안양천 주변 주거지 경관관리

〈양천구 목2주거생활권 종합계획도〉



4) 도시관리계획 현황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0 40 100 200(m)
범 례
구역계
지적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
녹지
공원
어린이공원
주차장
전기공급설비
935 대
961 대
961-1 대
997-6대
930대
1297 대
1307 대
313-1대
313대
314대
318-1대
318-10 대
318-12대
319대
319-11종
319-12대
319-15대
319-2대
88-1학
320-1도

라. 관련법규 검토

1) 정비구역 지정 요건

조 항	관 련 내 용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다.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밀집지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이상이 재건축 필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4.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 요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	②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제4호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재건축사업의 입안제안

조 항	관 련 내 용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도시정비법 제12조)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조 항	관 련 내 용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조 항	관 련 내 용
공원녹지법 제14조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 · 제3호 ·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2조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주택 확보 기준

조 항	관 련 내 용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정비법 제10조)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조 항	관 련 내 용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부~~교통부고시 2022-720호 제5조)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5)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기준

조 항	관 련 내 용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도시정비법 제54조)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

조 항	관 련 내 용
	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	①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도시정비법 제55조)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 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1) 서남권 대표 주거지로서 가치 상승 기대

○ 주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공간 변화 예상

○ 목동로, 목동서로 등 간선도로에 면해 있으며, 경전철 목동선 신설로 인한 접근성 증대

○ 목동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양천구청, 보건소, 양천세무서 등)과 인접 위치

2) 공원 및 학교와 어우러진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를 통해 남측 공원과 북측 학교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조성 가능

○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보행·녹지축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린 네트워크 조성 가능

바. 종합분석

1) 종합분석

가) 양호한 주거환경

○ 상업문화중심지인 목동 중심지구와 공원, 학교와 연접하여 안전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 단지 3면 중 2면이 학교, 성당, 공공시설 등 저밀 개발부지에 인접하여 주거환경 양호

나) 기존 정비기반시설 재편을 통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계획 수립 필요

○ 대상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계획 수립 필요

다) 양호한 대상지 주변 공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특성화된 공원계획 필요

○ 대상지 인근 양천공원, 국회대로 상부공원 등 대규모 공원 위치

○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축 연결을 통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 기존 공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공원 계획 필요

라) 합리적인 단지 진출입동선 계획 필요

○ 2개의 간선도로에 면하고 있으며, 현재 4개의 차량진출입구 운영 중

○ 도로 위계 및 동선 재편에 따라 진출입 동선계획 필요

〈 현황 종합분석도〉



3. 계획의 기본구상

가. 기본 방향

1) 개발여건 및 계획 과제

○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 기존 정비기반시설 재편

○ 공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특성화된 공원계획 필요

○ 합리적인 단지 진출입 동선 계획

2) 계획의 목표

녹지공간 중심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목동 8단지

도시맥락에 대응하는 가로중심의 주거단지

○ 가로 특성을 고려한 연도형 계획으로 가로활성화

학교, 공원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 거점공간 및 인접단지와 연결하는 보행 및 커뮤니티 축

다양한 풍경을 가지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

○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

〈 계획구상도 〉



나. 주요 계획지표 설정

1) 기본 방향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개발밀도 고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개발밀도 고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50%, 기준용적률 210%

3) 계획 규모

○ 현재의 개발 현황과 미래의 삶의 질이 고려된 장래 변화에 대응한 밀도 계획 수립

○ 주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고려한 계획

○ 주변 지역의 개발밀도 추세와 경관적 조화 고려

4) 주택공급 지표 설정

○ 주택규모별 배분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20호)에 의거하여 산정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로 건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4항1호에 따라 30%이상 50%이하)

5) 인구지표 설정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녹지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세대수와 인구수를 계획하여, 주변 기반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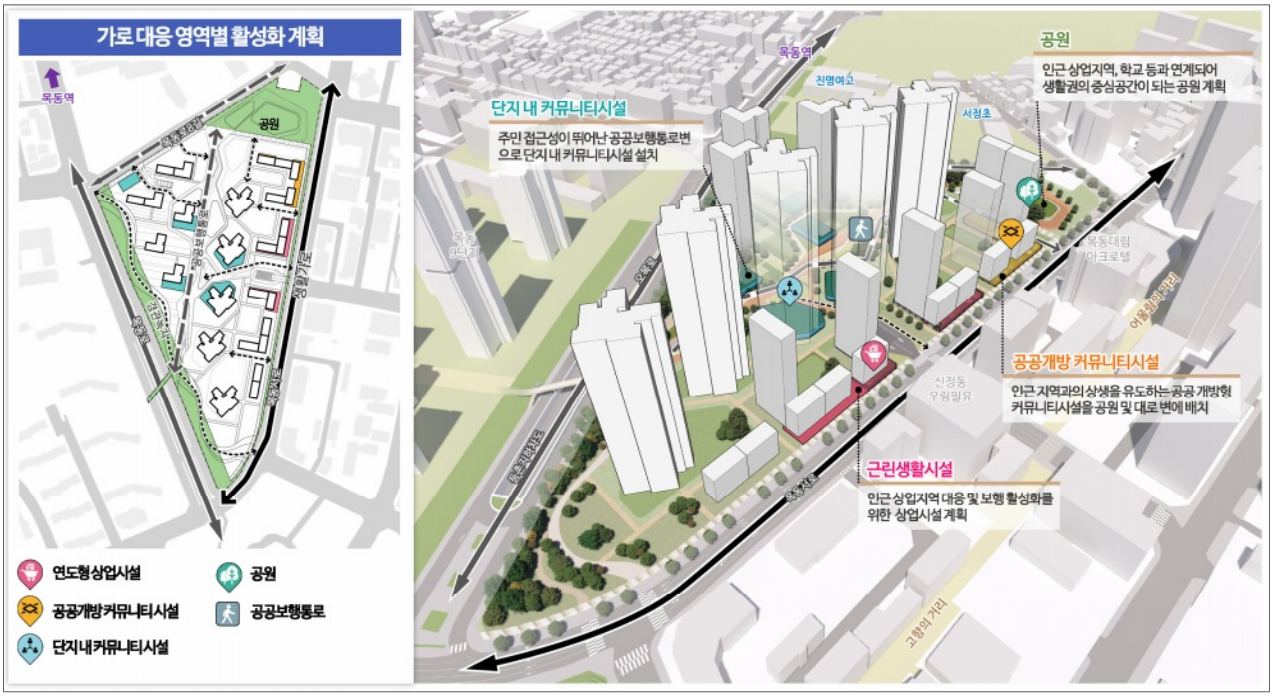
○ 대상지 계획 인구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 상 2030년 가구당인구 2.5인(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을 적용하여 인구수 산정

다. 개발 기본구상

1) 전략1 : 도시 맥락에 대응하는 가로중심의 주거단지

- ○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보행통로변으로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 ○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 인근 상업지역 대응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상업시설 계획
- ○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유도하는 공공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공원 및 대로변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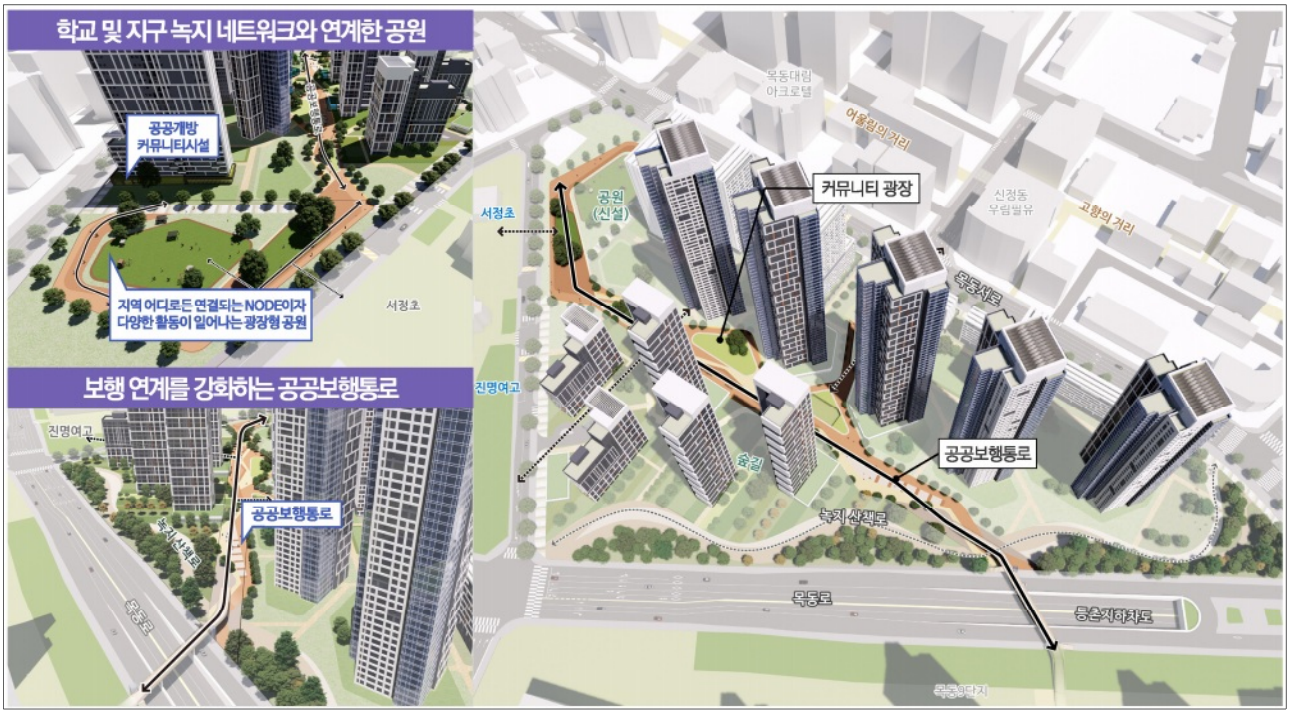
〈전략1 기본 구상도〉



2) 전략2 : 학교, 공원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 ○ 거점공간 및 인접단지와 연결하는 보행 및 커뮤니티 축
- ○ 학교 및 지구 녹지 네트워크와 연계한 공원 설치
- ○ 보행 연계를 강화하는 공공보행통로 배치

〈전략2 기본 구상도〉



3) 전략3 : 다양한 풍경을 가지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열린경관 형성

○ 열린 경관을 창출하는 통경축 계획

〈전략3 기본 구상도〉



4. 부문별 정비계획

가. 계획의 수립방향

○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단지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필요

○ 대상지 일대 위치한 공원,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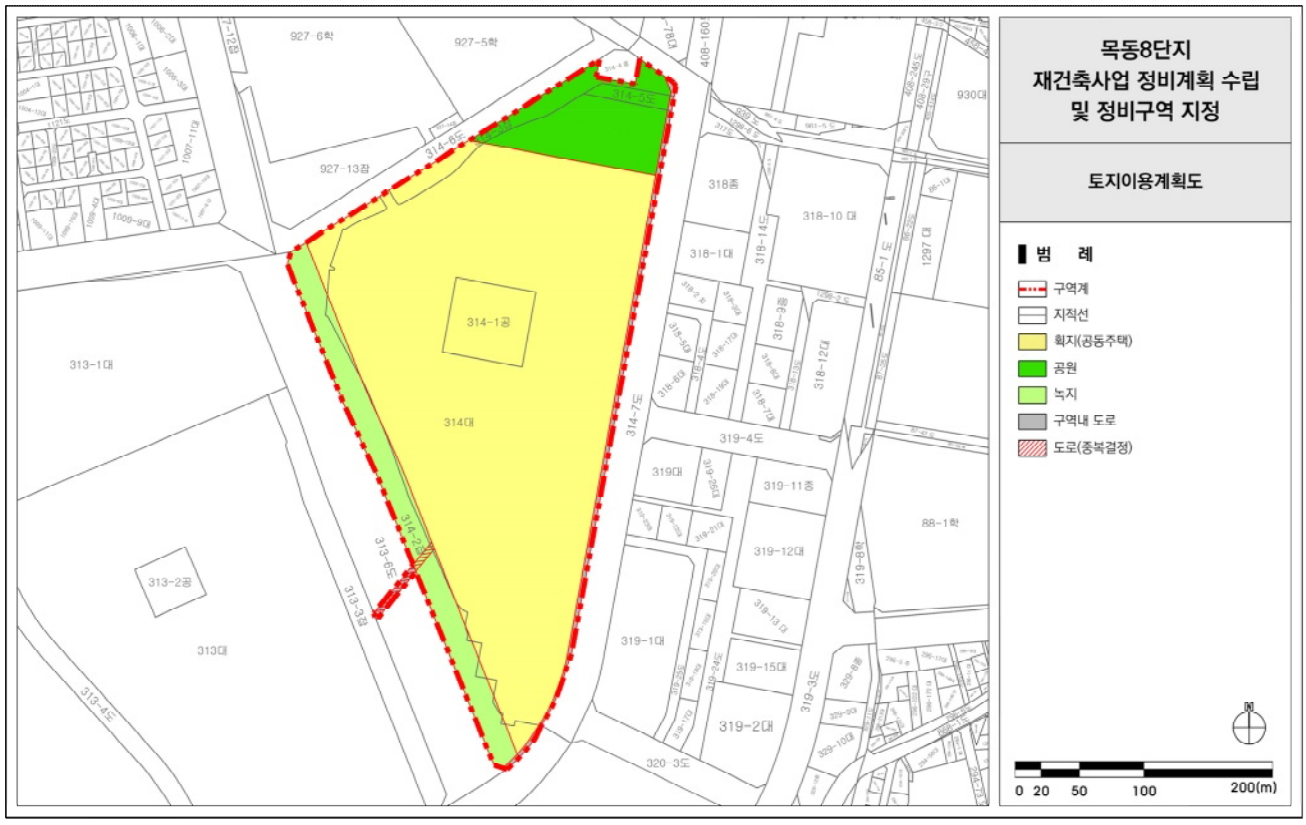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	-	증) 88,842.3	88,842.3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 수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조합	• 현황세대수: 1,352 • 계획세대수 : 1,881 • 증) 529대	-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8,842.3	100.0	-
획지	소계	70,493.4	79.3	-
	획지1	70,493.4	79.3	공동주택
정비 기반시설	소계	18,348.9	20.7	-
	녹지	8,606.5	9.7	연결녹지
	공원	7,884.5	8.9	어린이공원
	도로	1,857.9	2.1	-

〈 토지이용계획도 〉



라.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 획지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도지역 유지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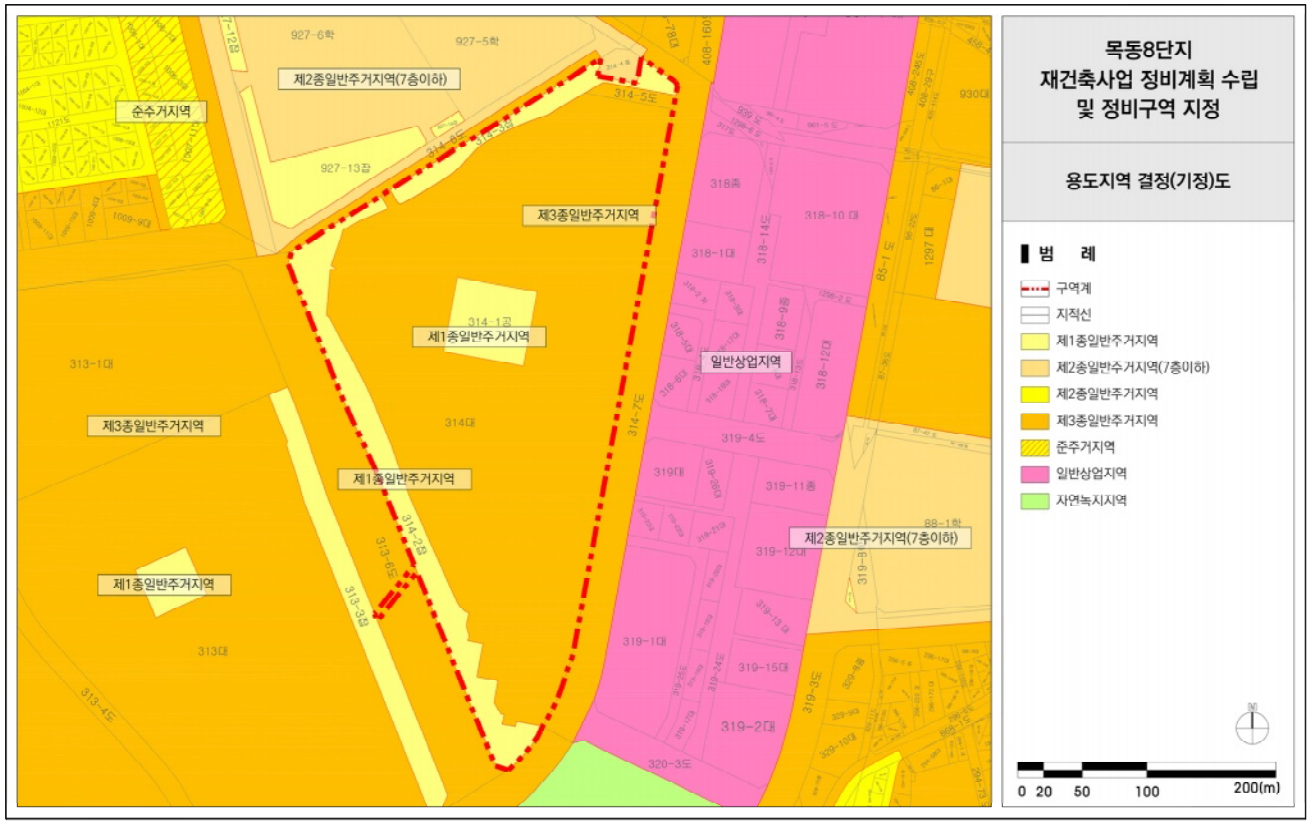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8,842.3	-	88,842.3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91.0	-	16,491.0	18.6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351.3	-	72,351.3	81.4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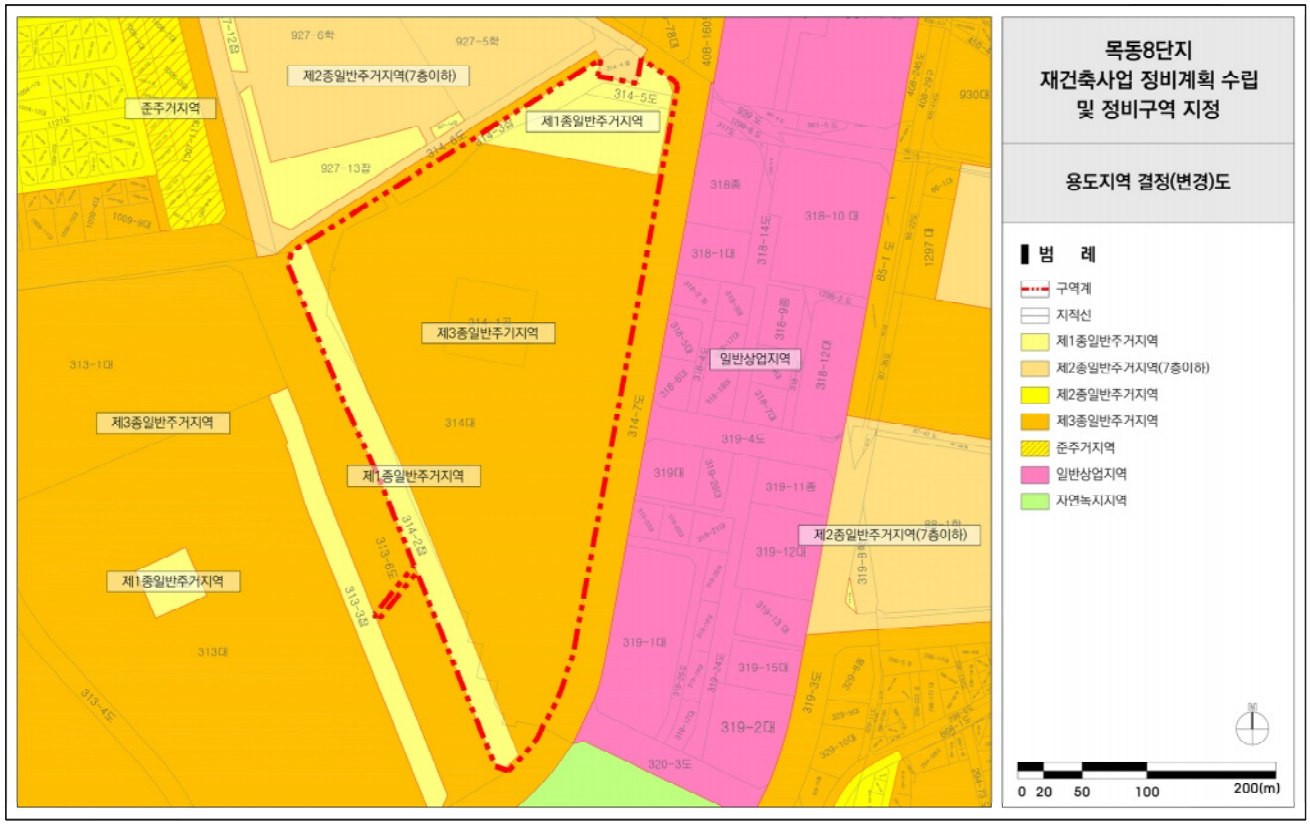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비 고
	기정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1번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730.1	• 공동주택 획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2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53.1	• 녹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5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4.5	•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18.7	• 녹지 및 어린이공원 계획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변경	-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안) 〉



마.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m)	위치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일반도로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	서고시422호 (94.12.27)	-
변경	대로	3	148	25~28	보조간선	일반도로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	〃	-
폐지	소로	1	10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	〃	-
신설	소로	3	A	5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도로	71	신정동 314-2	신정동 313-3	-	〃	대로2-37과 중복결정, 녹지와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소로3-A)는 추후 목동9단지와의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지 간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8	대로 3-148	• 구역 내 도로 확폭 - B = 25m → 25~28m(증 3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 내 도로 확폭
소로1-10	-	• 도로 폐지	•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소로 1-10 폐지
-	소로3-A	•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폭원 5m) - 입체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보행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1	3,730.1	감)3,730.1	-	서고시 422호 (94.12.27)	-
신설	-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3 일대	-	증)7,884.5	7,884.5	-	-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제9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나) 녹지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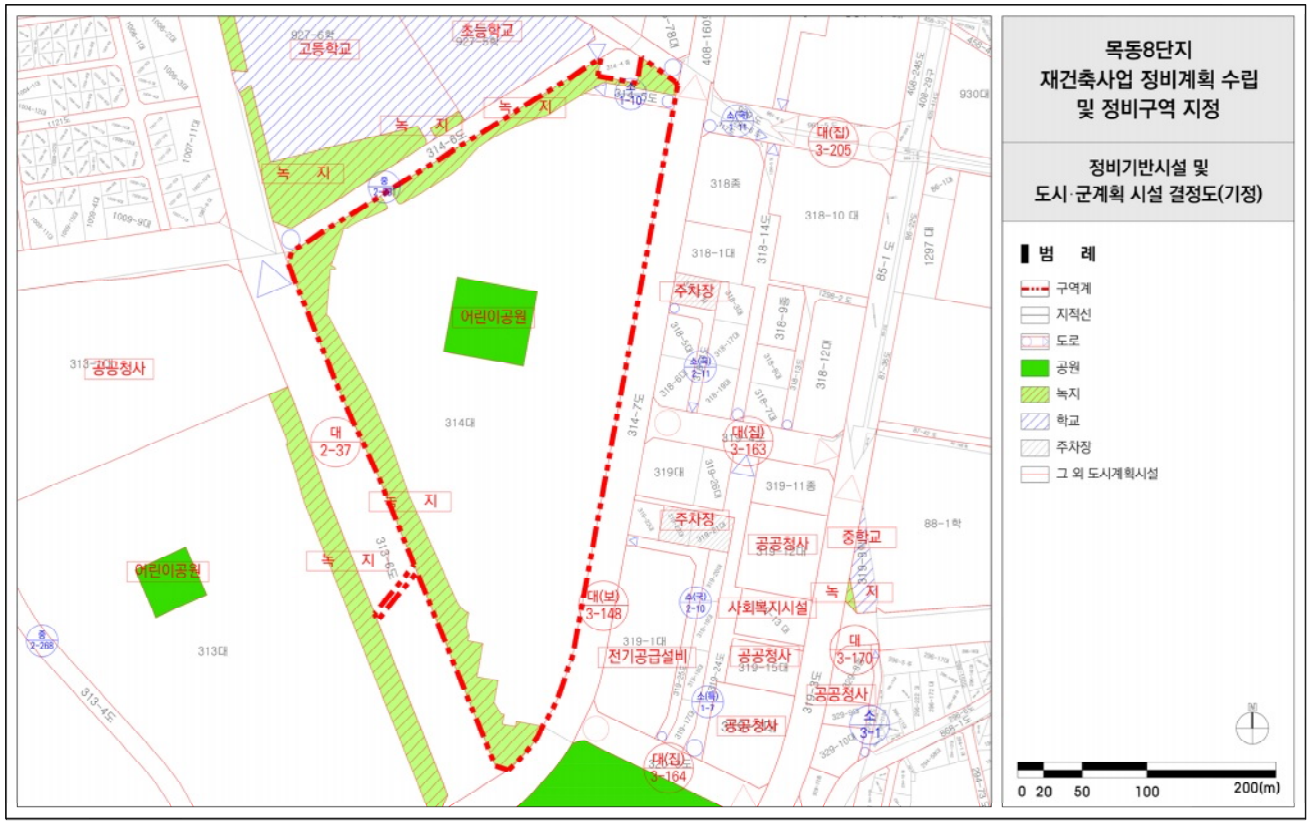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8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314-2,3	12.760.9	감)4,154.4	8,606.5	서고시 422호 (94.12.27)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8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A = 12,760.9㎡ → 8,606.5㎡ (감 4,154.4㎡)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 이하여백 -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변경)(안) 〉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증) 7,025.0	7,025.0	-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경로당	-	증) 725.0	725.0	725.0㎡ 이상
	어린이집	-	증) 800.0	800.0	725.0㎡ 이상
	작은도서관	-	증) 400.0	400.0	298.0㎡ 이상
	다함께 돌봄센터	-	증) 550.0	550.0	-
	주민운동시설	-	증) 1,000.0	1,000.0	-
	어린이놀이터	-	증) 1,500.0	1,500.0	-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공공개방)	-	증) 650.0	650.0	-
	커뮤니티(공공개방)	-	증) 350.0	350.0	-
	커뮤니티(미개방)	-	증) 800.0	800.0	-
	소계	-	증) 6,775.0	6,775.0	5,327.5㎡ 이상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	증) 250.0	250.0	101.7㎡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500㎡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설치:(500+1,881세대×2.0㎡)×1.25 = 5,327.5㎡

〈 공동이용시설 배치도(안) 〉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88,84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	15	-	-	-	15

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 ㅣ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참조

- 이하 여백 -

자. 건축물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 (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상한</th><th>법적 상한</th></tr>
<tr><td>신설</td><td>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구역</td><td>88,842.3</td><td>획지1</td><td>70,493.4</td><td>신정동 314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50% 이하</td><td>249.95 이하</td><td>300.0 이하</td><td>180m (최고 49층)</td></tr>
</table>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 수 : 1,881세대 (분양 1,588세대, 공공 293세대)
※ 초과용적률(법적상한-상한)에 따른 세대 수 : 407세대 (분양 199세대, 공공 208세대)

구 분		계획	
		세대수	비율(%)
계		1,881	100.0
분양주택	소 계	1,588	84.4
	50㎡ 이하	-	-
	50㎡ 초과~60㎡ 이하	279	14.8
	60㎡ 초과~85㎡ 이하	897	47.7
	85㎡ 초과	412	21.9
공공주택	소 계	293	15.6
	50㎡ 이하	-	-
	50㎡ 초과~60㎡ 이하	253	13.5
	60㎡ 초과~85㎡ 이하	40	2.1
	85㎡ 초과	-	-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0% 이상
→ 계획 : 78.1%(1,469세대)
-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85㎡ 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상한용적률 : 249.95%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계획용적률	초과용적률 (계획-정비계획)	50%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249.95%	299.88%	49.93%	24.96%	17,609㎡ (17,597㎡ 이상)

심의 완화 사항

•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 계획용적률 299.88%(법적상한 용적률 300.00%) - 정비계획 용적률(249.95%) = 49.93%의 50%인 24.96%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등 지정
- 공동주택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 등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도면참고
건축한계선 (부대복리시설)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획지 내 폭원 15m
연결녹지 내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와 연계하여 보행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폭 15m의 보행로 조성
※ 추후 분양공고 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내용을 명기하며, 공공보행통로의 기능 및 범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70조에 의한 지역권 설정을 이전고시 시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에 명기하고,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및 도면번호를 기록하도록 함

■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면적</td><td>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면적
①</td><td>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td><td>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③</td></tr>
<tr><td>88,842.3㎡</td><td>70,493.4㎡</td><td>22,334.2㎡</td><td>11,142.7㎡</td><td>6,289.3㎡</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순부담면적 = ① - ② - ③
= 22,334.2㎡ - 11,142.7㎡ - 6,289.3㎡
= 4,902.2㎡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면적
= [(도로+공원+녹지)] + [임대주택(대지지분+건축물)] + [입체보행교(건축물)]
= 18,348.9㎡ + (2,533.9㎡ + 1,310.5㎡) + 140.9㎡
= 22,334.2㎡
※ 임대주택 대지지분 및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대지지분
= 59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x 59형 세대수 + 84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x 84형 세대수
= 27.6㎡ x 69세대 + 39.2㎡ x 16세대
= 2,533.9㎡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임대주택 59형 지상 연면적 x 59형 기본형건축비 + 임대주택 84형 지상 연면적 x 84형 기본형건축비
+ 임대주택 지하 연면적 x 기본형건축비) ÷ 공시지가 2배
= (5,756.2㎡ x 2,065,152원/㎡ + 1,891.0㎡ x 1,974,344원/㎡ + 4,164.5㎡ x 917,273원/㎡)
÷ (7,419,409원 x 2)
= 1,310.5㎡
※ 입체보행교(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입체보행교 설치면적 x 설치 공사비 ÷ 공시지가 2배
= 357.7㎡ x 5,844,545원/㎡[1] ÷ (7,417,409 x 2)
= 140.9㎡
1)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2011년도 정책자료집)
: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성수, 가양, 서빙고 보행교) 사업비 평균값 적용(부가세 제외)</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 210.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5">•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0%)
= 210.0% + 20.0%(공공보행통로 10%,돌봄시설 5%,열린단지 5%) = 230.0%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용적률)</th><th>비고</th></tr>
<tr><td colspan="2">계</td><td>20% 적용
(최대 20%)</td></tr>
<tr><td>공공보행통로</td><td>• 공원, 학교를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 계획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a는 1이하)
= 210.0% × (4,570㎡/70,493.4㎡) × 1
= 13.6%</td><td>10%</td></tr>
<tr><td>돌봄시설</td><td>• 대상지 내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를무상으로 제공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주민공동시설 의무 면적) × a (※ a는 0.1이하)
= 210.0% × (1,275.0㎡ / 5,327.5㎡) × 0.1
= 5.0%</td><td>5%</td></tr>
<tr><td>열린단지</td><td>• 목동서로 변 연도형 상가 및 공공보행통로변 공동이용시설 배치,
그 외 도로변 담장 미설치로 열린 단지 조성</td><td>5%</td></tr>
</table>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
※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담장 미설치 : 관목 등 식재 불가</td></tr>
</table>

구분	내용
상한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1.0 x α(임대주택) + 0.7 x α(건축물)} = 230.0% x {1 + 1.3 x 1 x 0.05078 + 1.0 x 0.01928 + 0.7 x 0.00207} = 249.95% • 정비계획용적률 : 249.95%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230.0% / 230.0% = 1.0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450.8㎡ / (70,493.4㎡ - 2,533.9㎡) = 3,450.8㎡ / 67,959.5㎡ = 0.05078 α(임대주택)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10.5㎡ / (70,493.4㎡ - 2,533.9㎡) = 1,310.5㎡ / 67,959.5㎡ = 0.01928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40.9㎡ / (70,493.4㎡ - 2,533.9㎡) = 140.9㎡ / 67,959.5㎡ = 0.00207
법적상한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249.95% + 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하는 용적률 49.93% = 299.88%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주택)으로 건설]

차.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 목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11」 교통개선대책 반영 - 주변가로 확장 계획 및 차로운영방안 반영
	-	• 주변교차로 신호운영방안 제시:①,②,③,④,⑤,⑦교차로(6개소)
진출입 동 선	Ⓑ,⑦	• 목동로8길, 목동서로상에 진출입구 2개소 계획
	-	• 목동서로 사업지구간 1차로 확장(B=3.0m, 4차로→5차로)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상 본사업지 주변가로 진출입불허구간 변경(제안)
	-	• 진출입구 가각부 적정 회전반경 확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	• 단지내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계획
	㉮	• 목동로상 입체보행시설(육교) 설치 - 9단지 공공보행통로와 연결
	-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 20% 이상 설치 - 자전거보관소에 편의시설(공기주입기, 안내표지, 주차공간표시 등) 설치
주 차 계 획	-	• 향후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이상의 주차계획 수립 - 법정주차대수 : 2,126대, 주차수요(2031년) : 2,290대
	-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한 주차유형별 계획 수립 - 친환경자동차전용주차, 장애인전용주차, 조업주차, 확장형, 경형 등
교통안전 및 기타	-	• 차로운영계획에 부합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추가 설치
	-	• 주차장 진출입구 PIS 설치

주: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카.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벽면녹화, 틈새투수포장의 증가로 생태면적률 40.58%로 최대한 확보 • 폐기물 수거는 양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재난방지	•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 토목공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강우시 나출지에 임시비닐막이나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 긴급재난 구조차량 및 소방차 등의 접근 고려 • 자연재해 대비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합리적 설계 반영

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서정초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교육환경평가 협의 시 아래 사항을 검토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 시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해 학습권을 보호하겠음 -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통학안전 대책을 수립하겠음	100m 이내 위치

파.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하.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계	유허가	무허가
15	12	3	15	15	-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1,352	1,352	725	627	3,380	1,813	1,568	-
공동주택	1,352	1,352	725	627	3,380	1,813	1,568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유형별 거주현황

구분		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계		1,352	1,352	-	-	-
60㎡ 이하	소계	831	831	-	-	-
	30㎡ 이하	-	-	-	-	-
	30㎡ 초과 ~ 50㎡ 이하	-	-	-	-	-
	50㎡ 초과 ~ 60㎡ 이하	834	834	-	-	-
60㎡ 초과 ~ 85㎡ 이하		277	277	-	-	-
85㎡ 초과	소계	241	241	-	-	-
	85㎡ 초과 ~ 135㎡ 이하	241	241	-	-	-
	135㎡ 초과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작성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계		1,881	1,377	211	293	-
85㎡ 이하	소계	1,469	1,027	149	293	-
	60㎡ 이하	532	247	32	253	-
	60㎡ 초과 ~ 85㎡ 이하	937	780	117	40	-
85㎡ 초과		412	350	62	-	-

거. 세입자 주거대책

○ 도시정비법 제54조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도입 및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화 도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에 따름

○ 세입자 주거대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

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안전 및 범죄예방	• 단지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도로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획지	A14	70,493.4	A14-①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공동주택

러.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1)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안)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내용</th></tr>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td><td colspan="5">• 300.00%(299.88%)</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5">• 249.95%(249.95%)</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299.88% - 249.95% = 49.93%</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49.93% x 0.5 = 24.96%
• 70,493.4㎡ x 0.2496 = 17,597㎡</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17,597㎡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 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td><td>81.6㎡</td><td>184</td><td>15,011.9㎡</td><td rowspan="3">획지 1</td></tr>
<tr><td>74.9㎡</td><td>102.0㎡</td><td>13</td><td>1,325.8㎡</td></tr>
<tr><td>84.9㎡</td><td>115.6㎡</td><td>11</td><td>1,271.5㎡</td></tr>
<tr><td colspan="2">합계</td><td>208</td><td>17,609.2㎡</td><td>〉17,597㎡</td></tr>
</table>

2) 기부채납 주택 계획(안)

기부채납 주택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연면적
59㎡형	59.9㎡	81.6㎡	69	2,533.9	11,811.7㎡ (환산부지면적 : 1,310.5㎡)
84㎡형	84.9㎡	115.6㎡	16		

※ 기부채납 주택 면적 산출근거

- 기부채납 주택 전체 연면적 : 11,811.7㎡ (지상 연면적 : 7,647.2㎡ / 지하 연면적 : 4,164.5㎡)
- 대지지분
  = 59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x 59형 세대수 + 84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x 84형 세대수
  = 27.6㎡ x 69세대 + 39.2㎡ x 16세대 = 2,533.9㎡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임대주택 59형 지상 연면적 x 59형 기본형건축비 + 임대주택 84형 지상 연면적 x 84형 기본형건축비 + 임대주택 지하 연면적 x 기본형건축비) ÷ 공시지가 2배
  = (5,756.2㎡ x 2,065,152원/㎡ + 1,891.0㎡ x 1,974,344원/㎡ + 4,164.5㎡ x 917,273원/㎡) ÷ (7,419,409원 x 2)
  = 1,310.5㎡

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버.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2등급지 포함),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3등급지 포함)으로 조사됨	• 연결녹지,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녹지면적 Ⅲ, 녹지모양Ⅲ, 내부 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Ⅱ	•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 공사시 토양오염 최소화 계획 수립	-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지형변화 최소화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 적용 생태면적률 40.58%	•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 생태면적률을 높이도록 설계	-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토사유출량 변화예상 • 생활 오수 발생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
바람	바람길 확보	○	• 건축물 배치시 기상(바람)요소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 찬바람 유입을 위한 건물 배치 조정	-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 운영시 난방 및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가스, 온실가스 발생	•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
경관	가로녹시율 35%	○	• 대상지 내 녹시율은 32.6%	• 대상지 내 공원 조성	-
	조망권 확보	○	• 경관변화 발생	• 경관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
	Skyline 보전	○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공원, 획지 등을 조성	-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간조성	•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 대상지 내 자전거 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 대상지 내 배치예정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미고려	-	-

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어.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인구			주택수	
현황	계획		현황	계획
	가구당 인구	인구	가구수	세대수
3,380	2.5	4,703	1,352	1,881

저.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처.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터.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Ⅵ 관련도면 참고

- 이하여백 -

Ⅳ

기초조사 조서

1.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2. 토지조서 및 건축물 조서

1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주민	전체인구		가옥주		세입자		인구밀도 (인/ha)	호수밀도 (세대/ha)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1,352	3,380	725	1,813	627	1,568	380.1	152.0

산업	구분	서비스업	소매업	외식업
	업체수	27	29	-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과 소유현황

토지	구분	전체토지					비고
		합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나대지	정비기반시설 부지	
	필지수	6	1	-	-	5	-
	면적(㎡)	88,842.3	71,410.3	-	-	17,432.0	-

건축물	구 분		동 수			호수밀도 (동/ha)	건축면적 (㎡)	연면적 (㎡)
			전체 동수	불량 동수	불량 비율(%)			
	구조별	**합 계**	**15**	**14**	**93.3**	**1.58**	**8,163.93**	**125,713.97**
		철근·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및 강구조	15	14	93.3	1.58	8,163.93	125,713.97
		기타구조	-	-	-	-	-	-
	용도별	**합 계**	**15**	**14**	**93.3**	**1.58**	**8,163.93**	**125,713.97**
		주거시설	12	12	80.0	1.35	7,020.14	121,660.65
		근린생활시설	1	1	6.65	0.11	797.79	2,097.82
		교육연구시설	1	1	6.65	0.11	346.00	670.30
		기타시설	1	-	-	-	-	1,285.20
	경과년수별	**합 계**	**15**	**14**	**93.3**	**1.58**	**8,163.93**	**125,713.97**
		10년 미만	-	-	-	-	-	-
		10~19년	1	-	-	-	-	1,285.20
		20~29년	-	-	-	-	-	-
		30~39년	14	14	93.3	1.58	8,163.93	124,428.77
		40년 이상	-	-	-	-	-	-
	규모별 (㎡)	**합 계**	**15**	**14**	**93.3**	**1.58**	**8,163.93**	**125,713.97**
		1,000 미만	1	1	6.7		346.00	670.3
		1,000~5,000 미만	2	1	6.7		797.79	2,097.82
		5,000 이상	12	12	80.0		7,020.14	121,660.65

※ 1)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가 누락된 경우, 건축물등기상 등기접수일자로 산정

2) 노후도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준용

3) 규모별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가. 토지 이용 현황

1) 토지 지목별 현황

구분	필지수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	100.0	88,842.3	100.0	-
대지	1	16.7	71,410.3	80.4	-
도로	2	33.3	941.0	1.1	-
공원	1	16.7	3,730.1	4.2	-
잡종지	2	33.3	12,760.9	14.4	-

2) 토지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필지수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	100.0	88,842.3	100.0	-
사유지	1	16.7	71,410.3	80.4	-
국공유지	5	83.3	17,432.0	19.6	-
구유지	4	66.7	17,188.7	19.3	-
시도유지	1	16.7	243.3	0.3	-

3) 토지 규모별 현황

구분	필지수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	100.0	88,842.3	100.0	-
90㎡ 미만	0	0.0	0.0	0.0	-
90㎡ 이상 150㎡ 미만	0	0.0	0.0	0.0	-
150㎡ 이상 300㎡ 미만	1	16.7	243.3	0.3	-
300㎡ 이상 500㎡ 미만	0	0.0	0.0	0.0	-
500㎡ 이상 1,000㎡ 미만	1	16.7	697.7	0.8	-
1,000㎡ 이상	4	66.7	87,901.3	98.9	-

나. 건축물 이용 현황

1)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 분	동 수	구성비(%)	비고
계	15	100.0	-
공동, 단독주택	12	80.0	-
근린생활시설	1	6.7	-
교육연구시설	1	6.7	-
기타시설	1	6.6	-

2) 건축물 층수별 현황

구 분	동 수	구성비(%)	비고
계	15	100.0	-
5층 미만	3	20.0	-
5층 이상 10층 미만	-	-	-
10층 이상 15층 미만	2	13.4	-
15층 이상 20층 미만	5	33.3	-
20층 이상	5	33.3	-

3) 건축물 구조별 현황

구 분	동 수	구성비(%)	비고
계	15	100.0	-
철근 콘크리트구조	15	100.0	-
기타구조	-	-	-

4) 건축물 준공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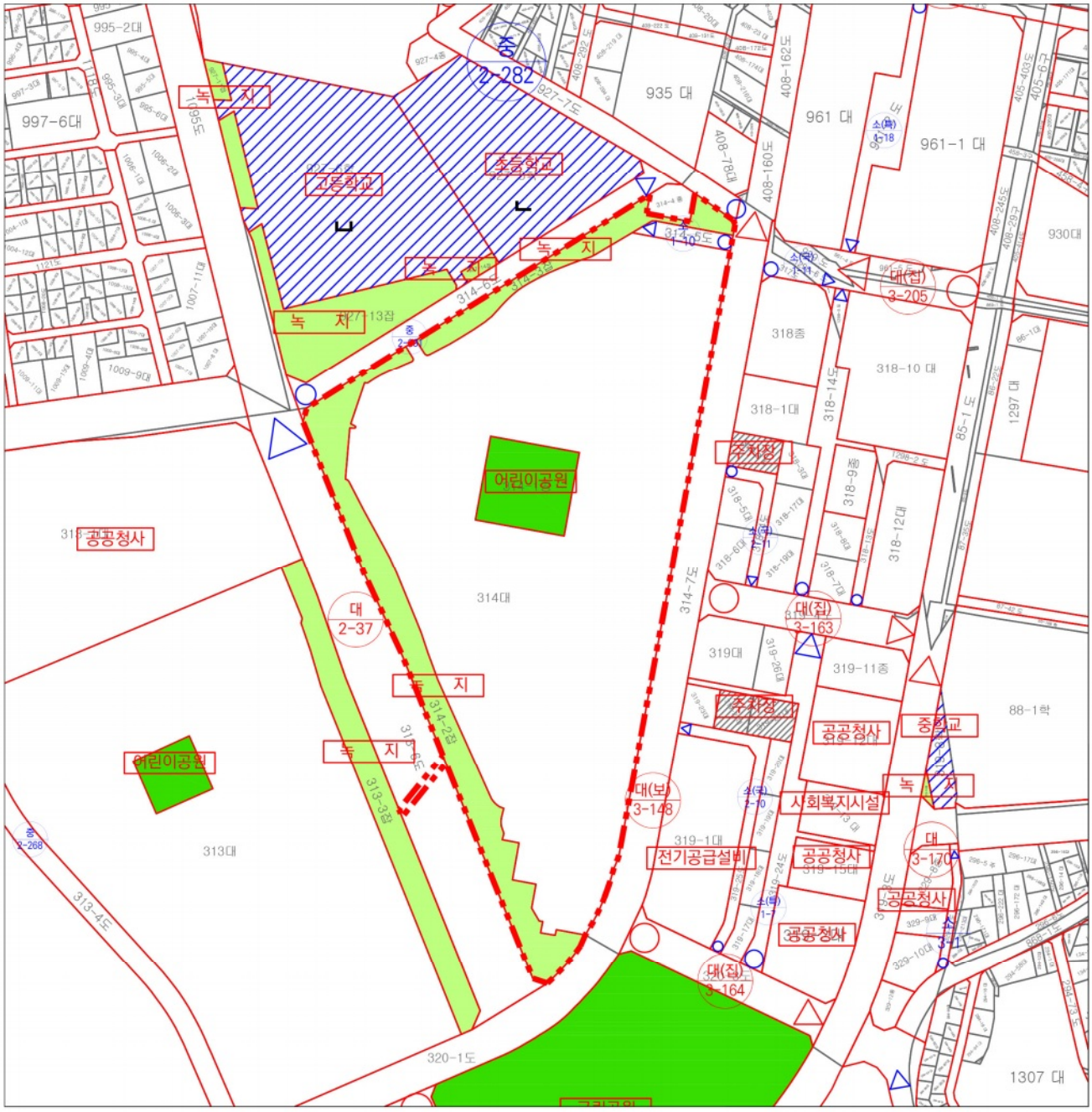
구 분	동 수	구성비(%)	비고
계	15	100.0	-
10년 이하	-	-	-
10~19년 이하	1	6.7	-
20~29년 이하	-	-	-
30~39년 이하	14	93.3	-
40년 초과	-	-	-

5) 건축물 허가 유무별 현황

구 분	동 수	구성비(%)	비고
계	15	100.0	-
유허가	15	100.0	-
무허가	-	-	-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기·종점)	규모 (면적 또는 폭원·연장)	최초 결정일	설치시설		
						설치 시기	설치 근거	설치 기관
기정	도로	소로 1-10	• 기점 : 대 3-147 • 종점 : 신월134-3	• 연장 : 64m	1994.12.27	-	서울시고시 422호	서울시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 신정동314-1	• 3,730.1㎡	1994.12.27	-	서울시고시 422호	서울시
기정	녹지	경관녹지	• 신정동314-2,3	• 12.760.9㎡	1994.12.27	-	서울시고시 422호	서울시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 현황도

0 40 100 200(m)

N

범 례

- 구역계
- 공원
- 학교
- 도로
- 지적선
- 녹지
- 주차장
- 그 외 도시계획시설

4.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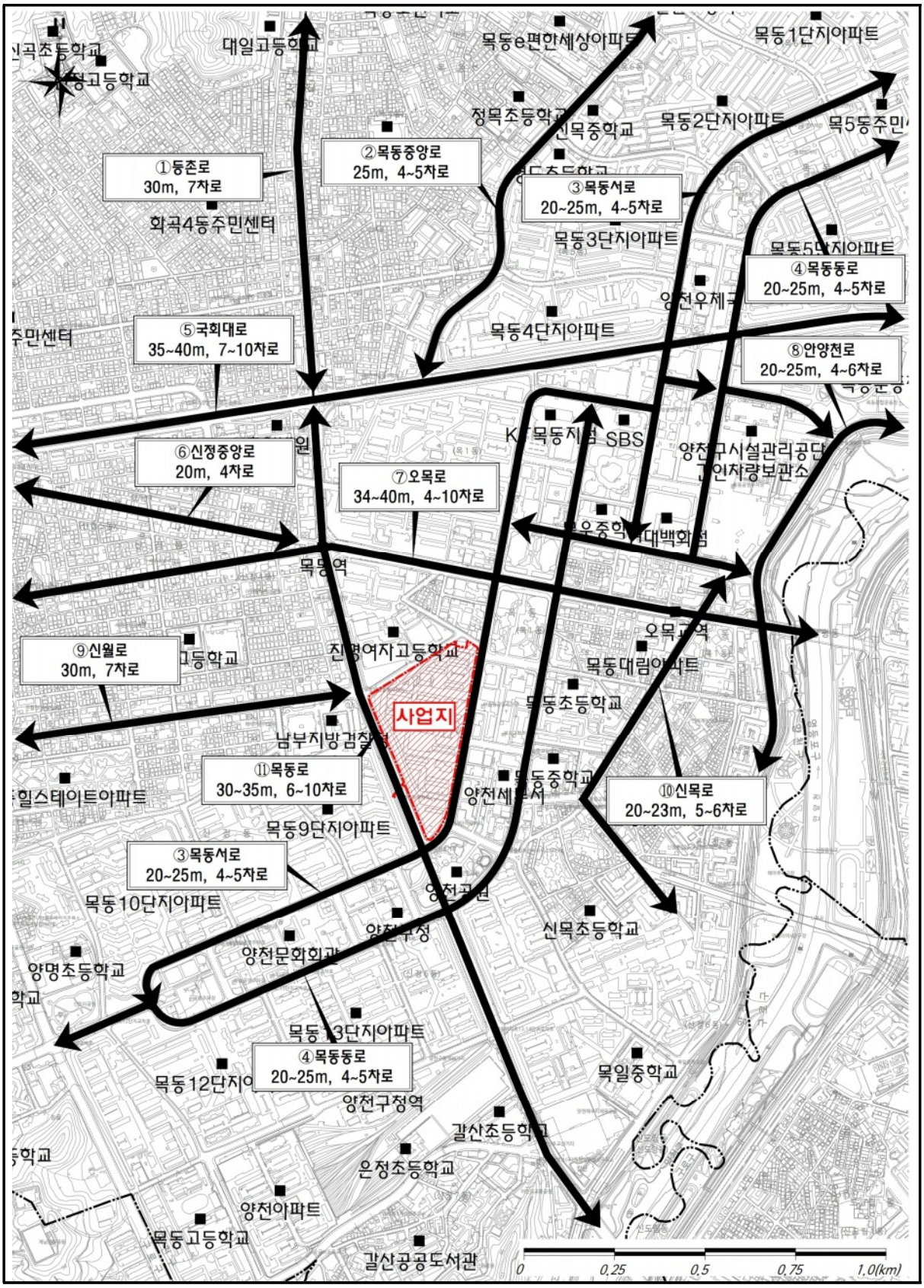
가. 사업지 주변 가로망 현황

○ 사업지 주변 가로망을 살펴보면, 사업지 인근으로 국회대로(7~10차로, 35~40m), 오목로(4~10차로, 15~40m)가 동서방향을 연결하고 있으며, 목동로(6~10차로, 30~35m), 목동서로(4~5차로, 20~25m)가 남북 방향을 연결하고 있음.

1) 가로망 현황

가로명	구간		차로수(왕복)	폭원(m)
	기점	종점		
① 등촌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807-13(국회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8-10(등촌삼거리)	7	30
② 목동중앙로	목동 802-9(국회대로)	목동 900-12(안양천로)	4~5	25
③ 목동서로	목동 900	신정동 324	4~5	20~25
④ 목동동로	신정동 1267	목동 911-1	4~5	20~25
⑤ 국회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신월I.C)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145-3(서강로)	7~10	35~40
⑥ 신정중앙로	신정동 934-2	신정동 994-2	4	20
⑦ 오목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524-1(남부순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489(오목교 동측)	4~10	15~40
⑧ 안양천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4~6	20~25
⑨ 신월로	신정동 781-15	신정동 313-1	7	30
⑩ 신목로	신정동 1279-1	목동 914-4	5~6	20~23
⑪ 영등포로	양평동3가 489	신길동 1348	6	30
⑫ 목동로	신정동 151-23	목동 807-6	6~10	3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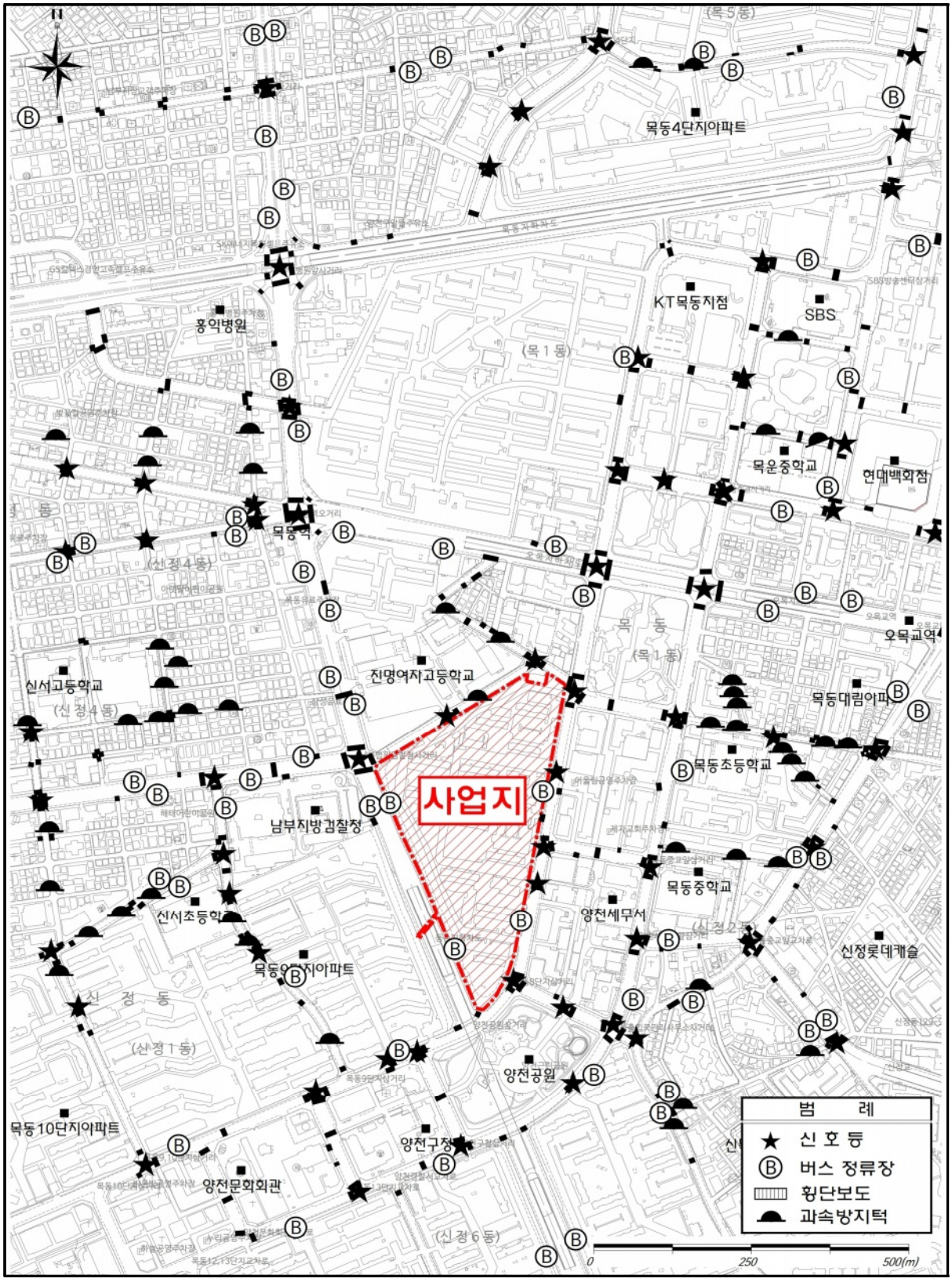
■ 가로망 현황도


①등촌로
30m, 7차로
②목동중앙로
25m, 4~5차로
③목동서로
20~25m, 4~5차로
④목동동로
20~25m, 4~5차로
⑤국회대로
35~40m, 7~10차로
⑥신정중앙로
20m, 4차로
⑦오목로
34~40m, 4~10차로
⑧안양천로
20~25m, 4~6차로
⑨신월로
30m, 7차로
⑩신목로
20~23m, 5~6차로
⑪목동로
30~35m, 6~10차로
사업지
대일고등학교
목동e편한세상아파트
목동1단지아파트
정목초등학교
신목중학교
목동2단지아파트
화곡4동주민센터
목동3단지아파트
목동4단지아파트
양천우체국
KBS
SBS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진명여자고등학교
목동대림아파트
목동초등학교
남부지방검찰청
양천세무서
목동9단지아파트
목동10단지아파트
양천문화회관
양명초등학교
신목초등학교
목동13단지아파트
목동12단지아파트
양천구청역
목일중학교
갈산초등학교
은정초등학교
양천아파트
목동고등학교
갈산공공도서관
0
0.25
0.5
0.75
1.0(km)

나. 사업지 주변 교차로 현황

1) 교통시설물 현황

○ 공간적 범위 안에 있는 교통시설물들의 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2)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 현황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지 주변 교차로 6개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교차로 기하구조는 교차로 서비스수준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교차로 분석시 변수적용의 타당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설정하여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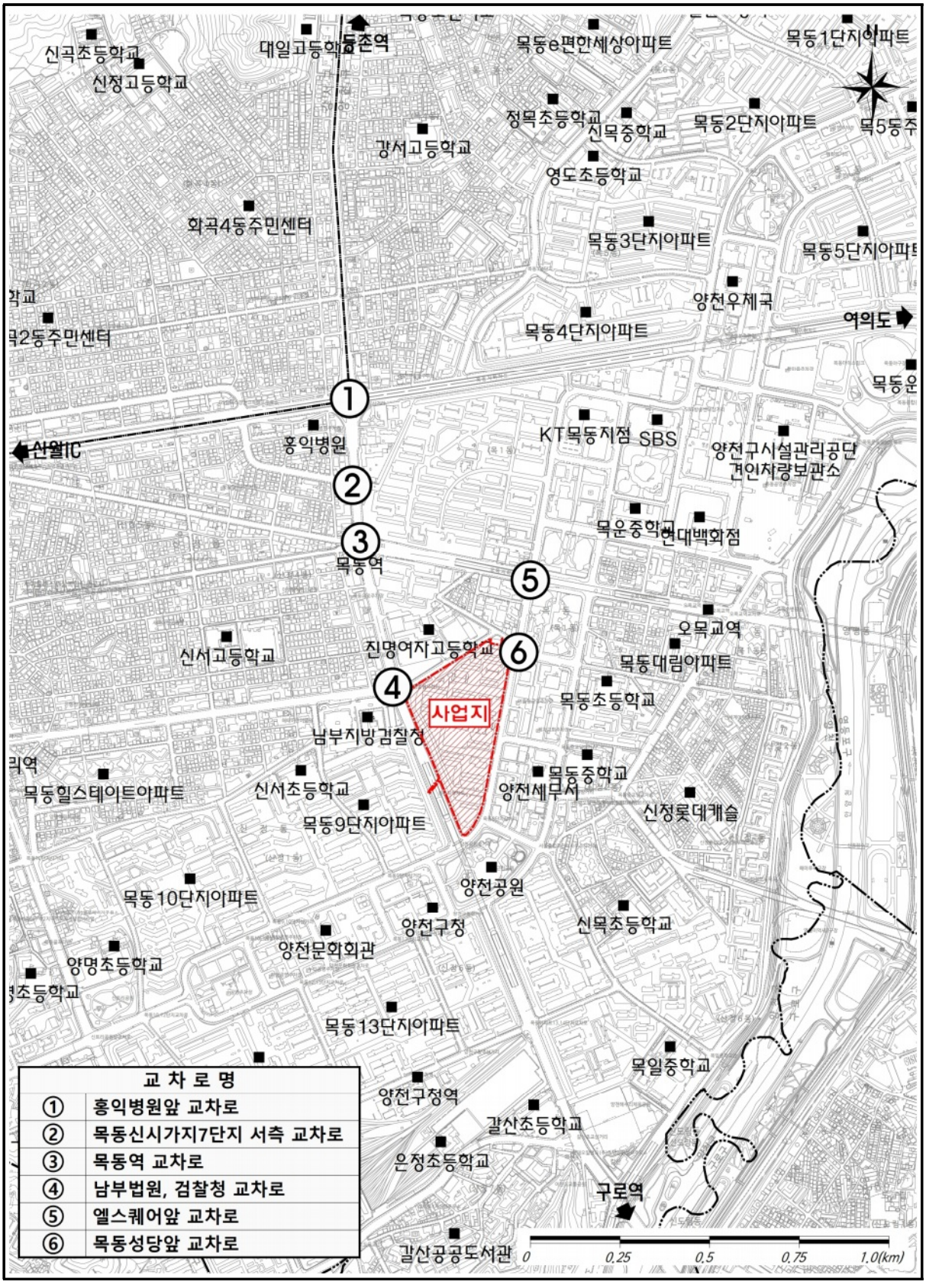
- 신호등 설치여부 및 신호현시
- 신호운영방법
- 차로수 및 차로폭
- 가각정리 여부 및 노면표시
- 횡단보도 및 차량정지선 위치
- 주차 및 버스정류장
- 버스베이 설치 여부
- 보도폭 및 보도시설물 설치 현황
- 도류화 및 교통섬 설치여부
- 인접교차로와의 거리

○ 분석대상 교차로를 조사항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현황

교 차 로 명	신호주기(초)	신호운영	현시	교차형태	횡단보도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160	신호	4	4지	○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130	신호	4	4지	○
③ 목동역 교차로	160	신호	5	4지	○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160	신호	4	4지	○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120	신호	4	4지	○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120	신호	3	3지	○

■ 분석대상 교차로 위치도


신곡초등학교
신정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등촌역
목동e편한세상아파트
목동1단지아파트
정목초등학교
신목중학교
목동2단지아파트
목5동주
강서고등학교
영도초등학교
화곡4동주민센터
목동3단지아파트
목동5단지아파트
양천우체국
목동4단지아파트
여의도
목동운
산월IC
홍익병원
KT목동지점
SBS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보관소
목운중학교
현대백화점
목동역
오목교역
신서고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
목동대림아파트
사업지
목동초등학교
남부지방검찰청
목동힐스테이트아파트
신서초등학교
양천세무서
목동중학교
신정롯데캐슬
목동9단지아파트
양천공원
목동10단지아파트
양천구청
신목초등학교
양천문화회관
양명초등학교
목동13단지아파트
목일중학교
양천구청역
갈산초등학교
은정초등학교
구로역
갈산공공도서관
0
0.25
0.5
0.75
1.0(km)
교 차 로 명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③ 목동역 교차로
④ 남부법원, 검찰청 교차로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3) 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

○ 사업지 주변가로 첨두시간대(08~09시)에 상기의 과정을 통해 가로구간 및 교차로 서비스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음

■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 (2023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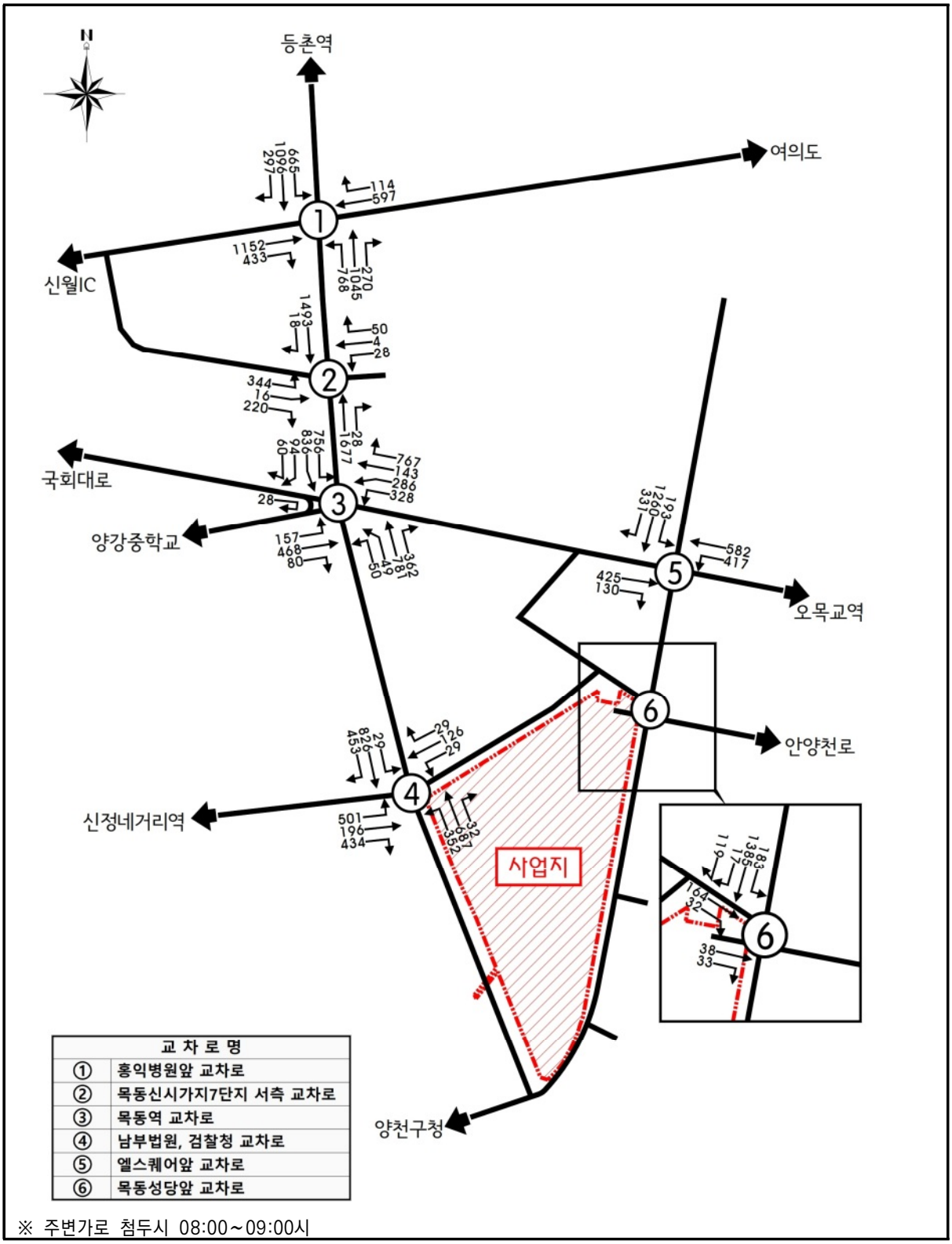
구 간		구간 길이 (㎞)	도로 유형	교통량 (pcu/h)	평균 통행 속도 (Km/h)	서비스 수준 (LOS)
목동로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24	Ⅲ	1,584	21.7	D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③ 목동역 교차로	0.17	Ⅲ	1,746	12.7	E
	③ 목동역 교차로 →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0.42	Ⅲ	1,344	23.4	D
	구간전체	0.83	Ⅲ	-	19.5	E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 ③ 목동역 교차로	0.42	Ⅲ	1,242	22.2	D
	③ 목동역 교차로 →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17	Ⅲ	1,705	16.6	E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0.24	Ⅲ	2,083	20.3	D
	구간전체	0.83	Ⅲ	-	20.2	D
오목로	③ 목동역 교차로 →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0.48	Ⅲ	594	26.1	D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 ③ 목동역 교차로	0.48	Ⅲ	1,524	21.6	D
목동서로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0.55	Ⅲ	1,704	33.8	C

■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2023년, 현황)

교 차 로	교통량(pcu/h)	평균제어지체(초/대)	서비스수준(LOS)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6,437	91.47	E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3,951	36.62	C
③ 목동역 교차로	5,245	85.59	E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3,820	64.93	D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3,396	39.47	C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1,971	30.02	C

다.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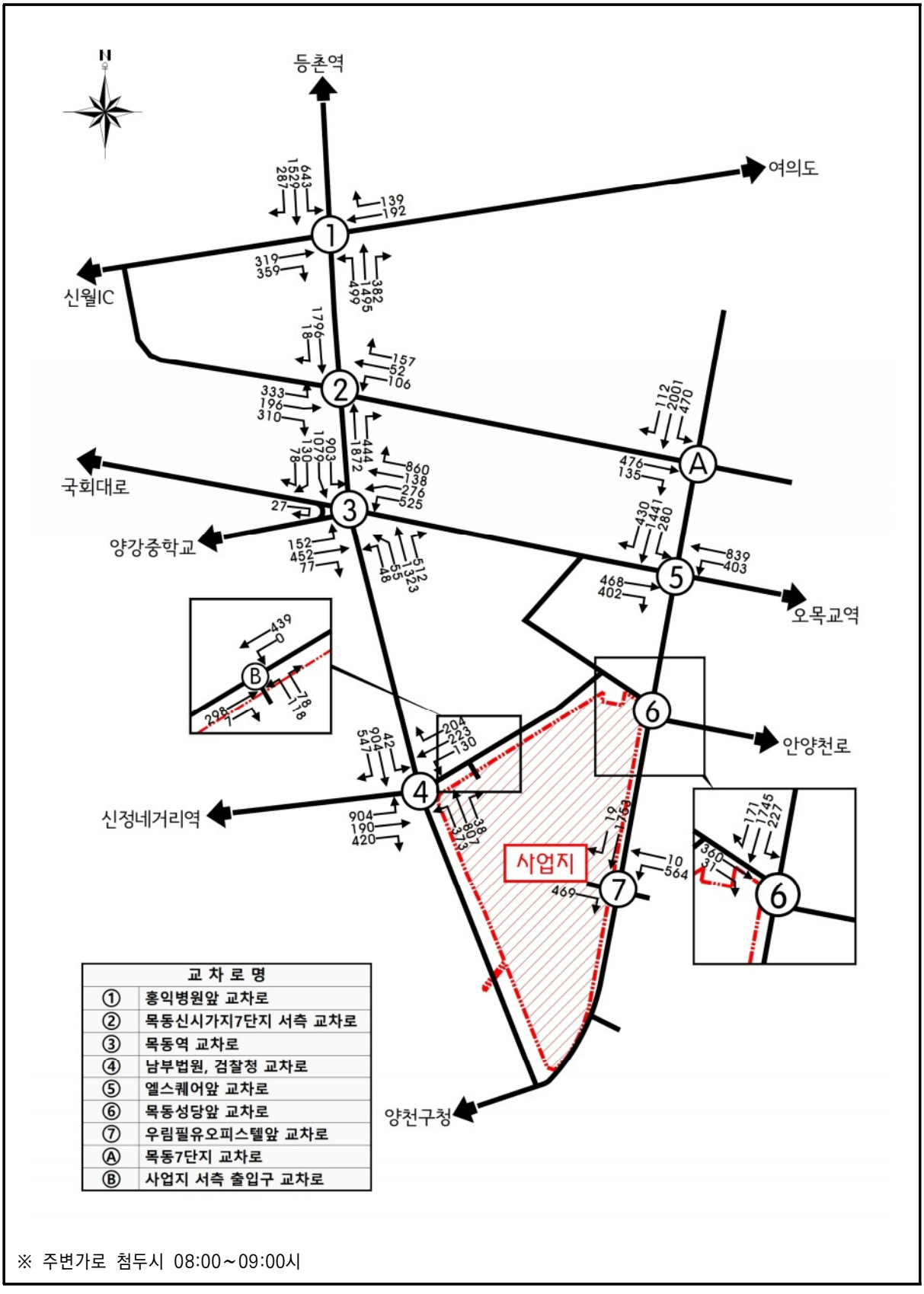
■ 현황 교차로 교통량도 (2023년, pcu/h)



교 차 로 명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③	목동역 교차로
④	남부법원, 검찰청 교차로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 주변가로 첨두시 08:00~09:00시

■ 사업시행시 교차로 교통량도 (2033년, pcu/h)



※ 주변가로 첨두시 08:00~09:00시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가. 공시지가 현황

○ 구역 내 필지의 2024.01 기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1㎡당 200만원초과 400만원이하 토지가 전체 필지수의 80.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시지가(㎡/만원)	면적(㎡)	필지수(필지)	비율(%)	비고
200 이하	-	-	-	-
200 초과~400 이하	17,432.0	5	80.0	-
400 초과~600 이하	-	-	-	-
600 초과~800 이하	-	-	-	-
800 초과	71,410.30	1	20.0	-
합 계	88,842.3	6	100.0	-

나. 건축물 가격

○ 구역 내 주택의 2023.08 기준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억 초과 9억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원)	건축물수(동)	비율(%)	비고
3억이하	-	-	-
3억 초과 ~6억 이하	-	-	-
6억 초과 ~ 9억 이하	8	66.7	-
9억 초과	4	33.3	-
합계	12	100.0	-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 노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 의지가 높음

7.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 해당사항 없음

8.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현황

가. 토지면적

구분	동의율 (%)	동의대상 총면적(㎡)			동의면적(㎡)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사유지	66.3%	71,410.3	71,410.3	-	47,346.0	47,346.0	-
국공유지	-	-	-	-	-	-	-
계	66.3%	71,410.3	71,410.3	-	47,346.0	47,346.0	-
기타	-	-	-	-	-	-	-

나. 토지등소유자

구분 / 권리유형	전체 토지등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소유자수				건축물
			계	사유지	국공유지	기타	
총소유자수	1,377명	1,377명	-	-	-	-	-
동의자수	908명	908명	-	-	-	-	-
동의율(%)	65.9%	65.9%	-	-	-	-	-

9. 기존 수목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이하여백 -

10.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 총 175인 응답

■ 정비구역 지정 동의 유뮤

구분	합계	찬성	반대	관심없음	비고
응답자	175	175	-	-	-
비율(%)	100.0	100.0	-	-	-

11.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 총 175인 응답

가. 구역 내 부동산 소유 또는 거주한 기간

구분	합계	1년 미만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비고
응답자	175	2	29	38	48	58	-
비율(%)	100.0	1.2	16.6	21.7	27.4	33.1	-

나. 향후 신축 예정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획

구분	합계	아파트 입주	매매	임대	현금청산	미정	비고
응답자	175	158	8	7	-	2	-
비율(%)	100.0	90.3	4.6	4.0	-	1.1	-

다. 아파트 분양을 희망할 경우 분양을 원하는 아파트의 규모

구분	합계	전용59㎡	전용84㎡	전용100㎡	전용114㎡	전용130㎡	전용130㎡ 이상	미정	비고
응답자	175	23	108	24	12	2	3	3	-
비율(%)	100.0	13.1	61.8	13.7	6.9	1.1	1.7	1.7	-

라. 적정 추가부담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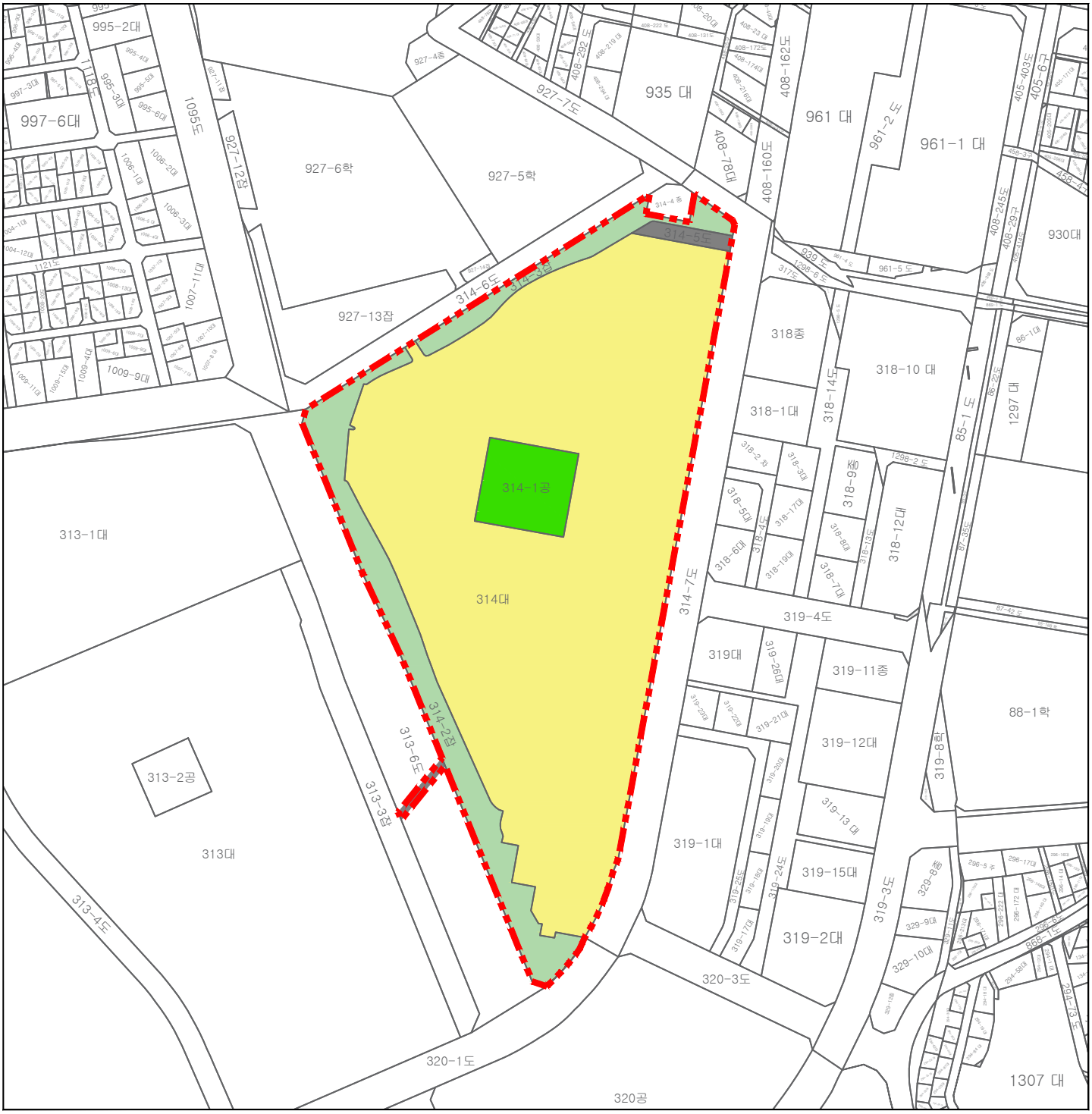
구분	합계	추가부담 능력없음	5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4억원 이상	비고
응답자	175	20	22	3	51	15	35	11	8	10	-
비율(%)	100.0	11.4	12.6	1.7	29.1	8.6	20.0	6.3	4.6	5.7	-

12.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 해당사항 없음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 해당사항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14. 기초조사 현황도(A4)

- 이하여백 -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토지지목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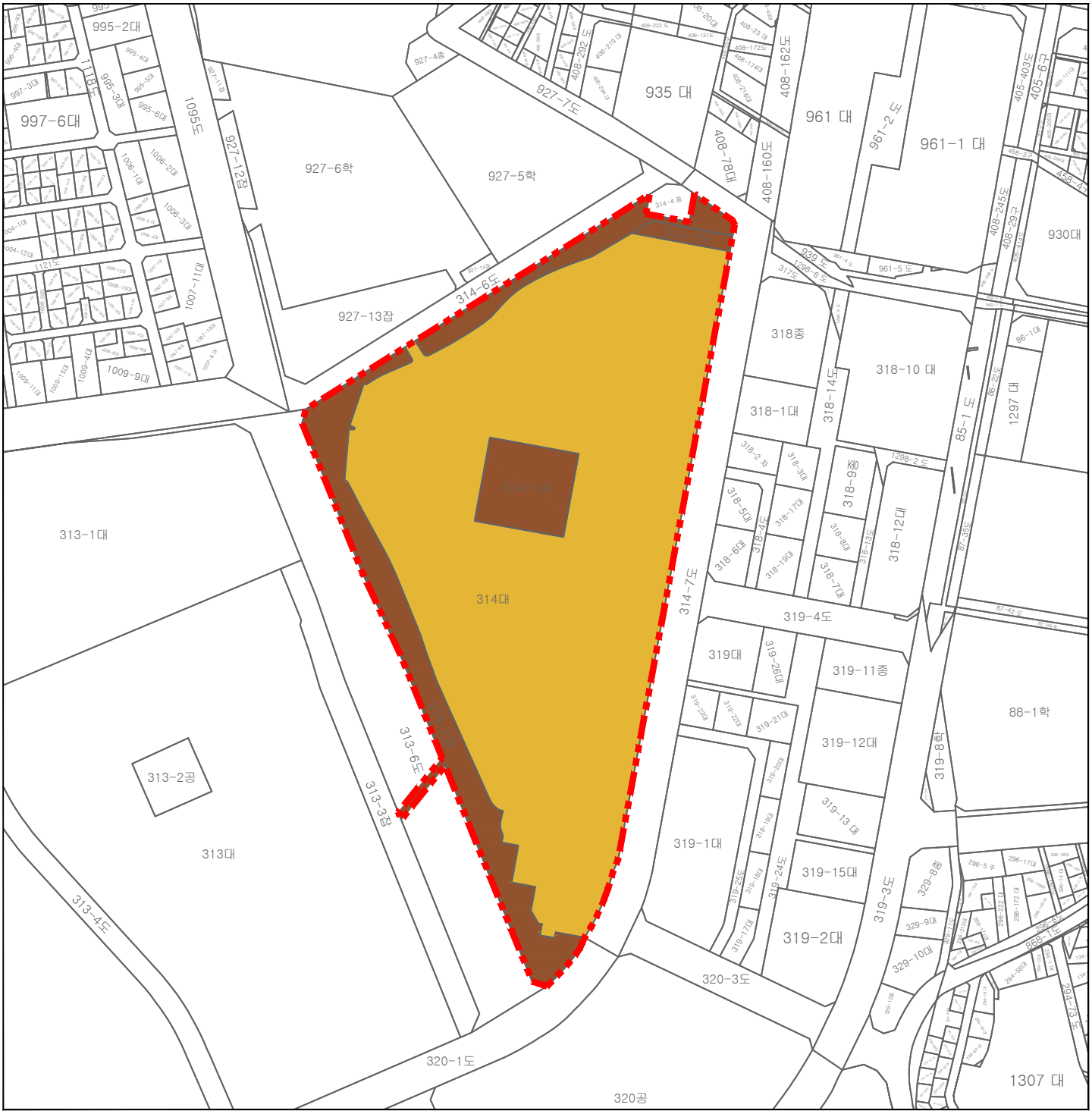
Scale = 1:4,000

0 40 100 200

N

범 례

- 구역계
- 대지
- 공원
- 지적선
- 도로
- 잡종지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토지소유자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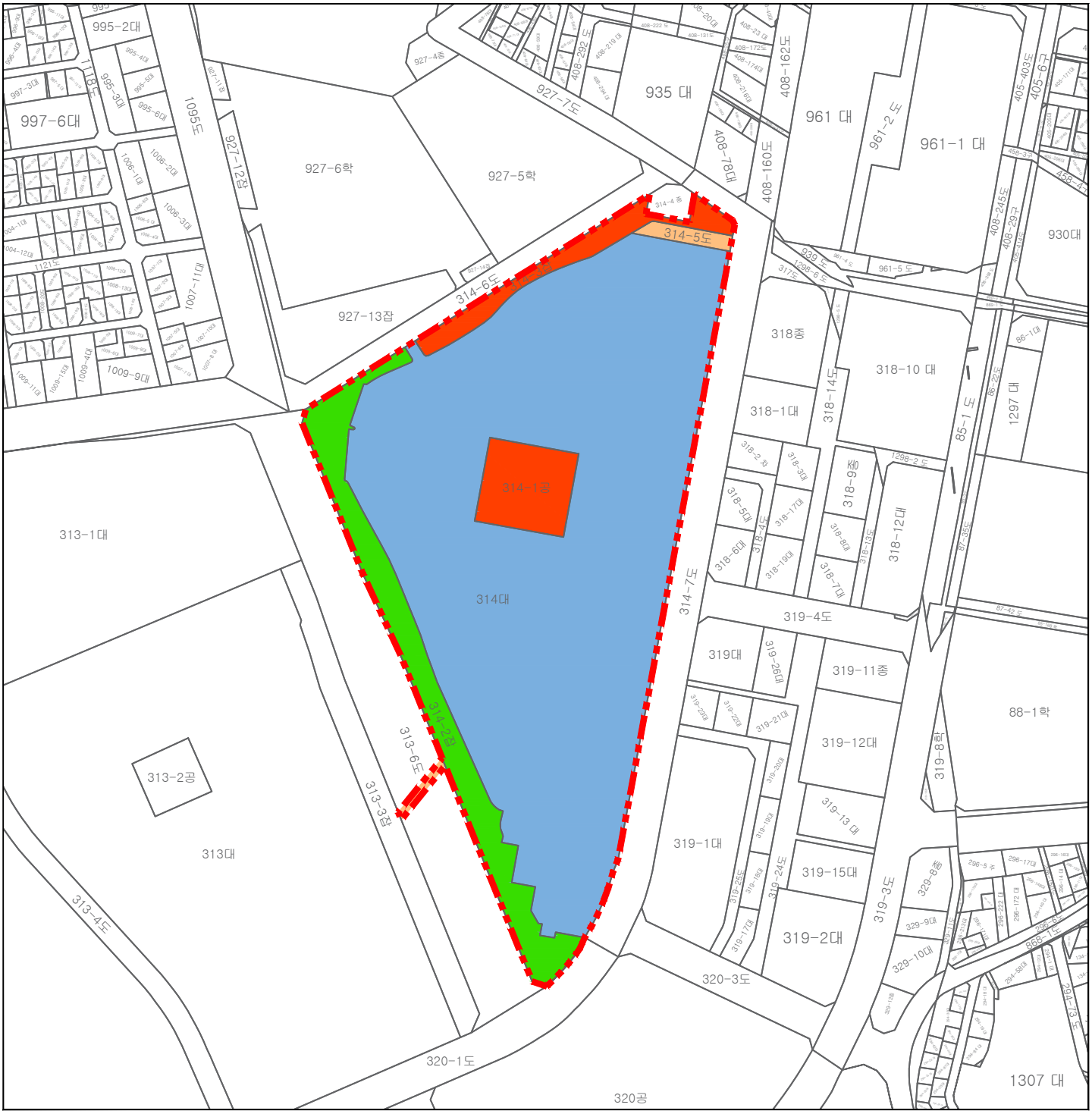
Scale = 1:4,000

0 40 100 200

N

범 례

- 구역계
- 개인(사유지)
- 지적선
- 구유지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토지규모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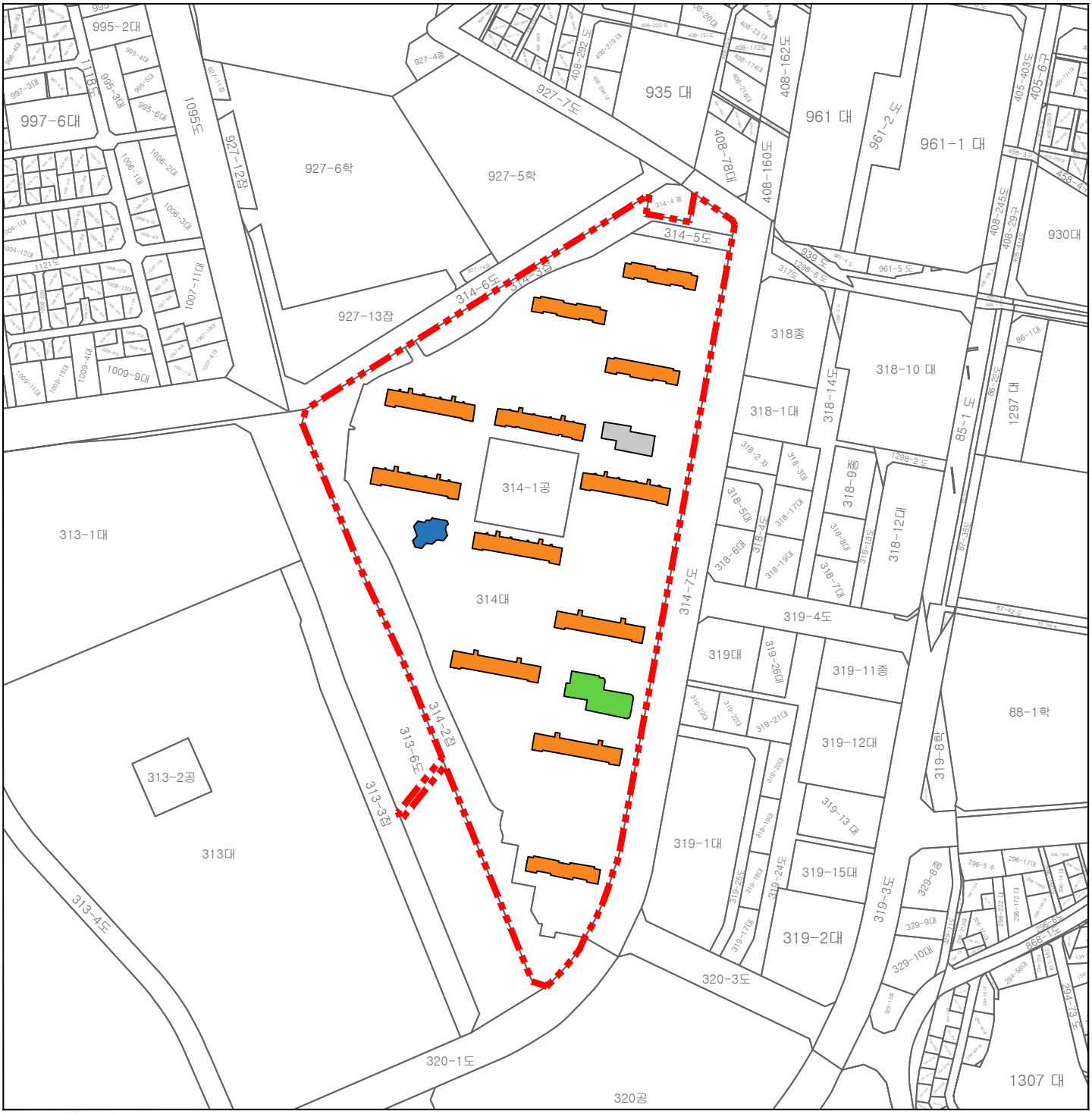
Scale = 1:4,000

0 40 100 200

N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1000㎡이하
- 1,000~5,000㎡
- 5,000~10,000㎡
- 10,000㎡ 이상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건축물 용도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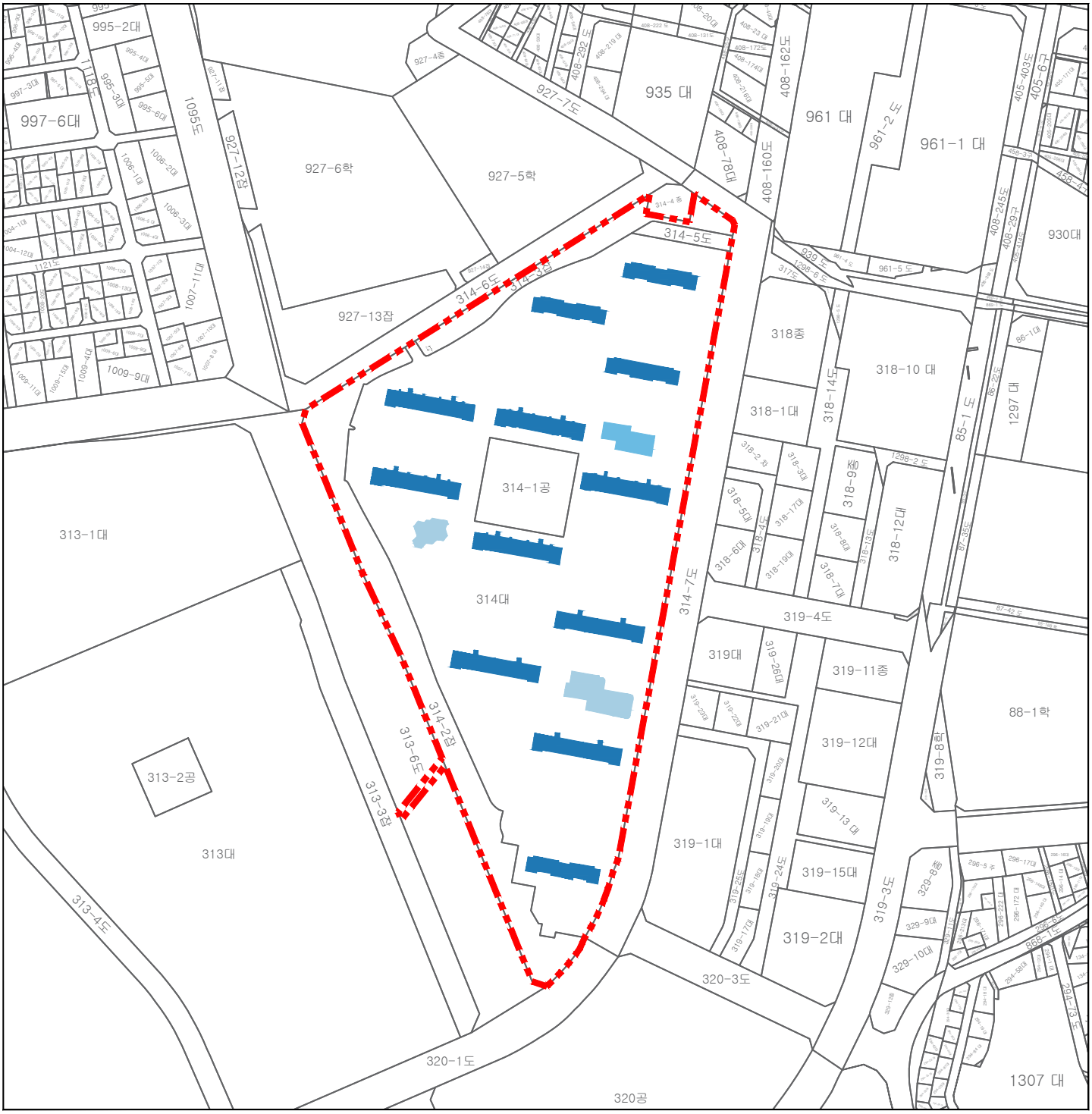
Scale = 1:4,000

0 40 100 200

N

범 례

- 구역계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지적선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기타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건축물 층수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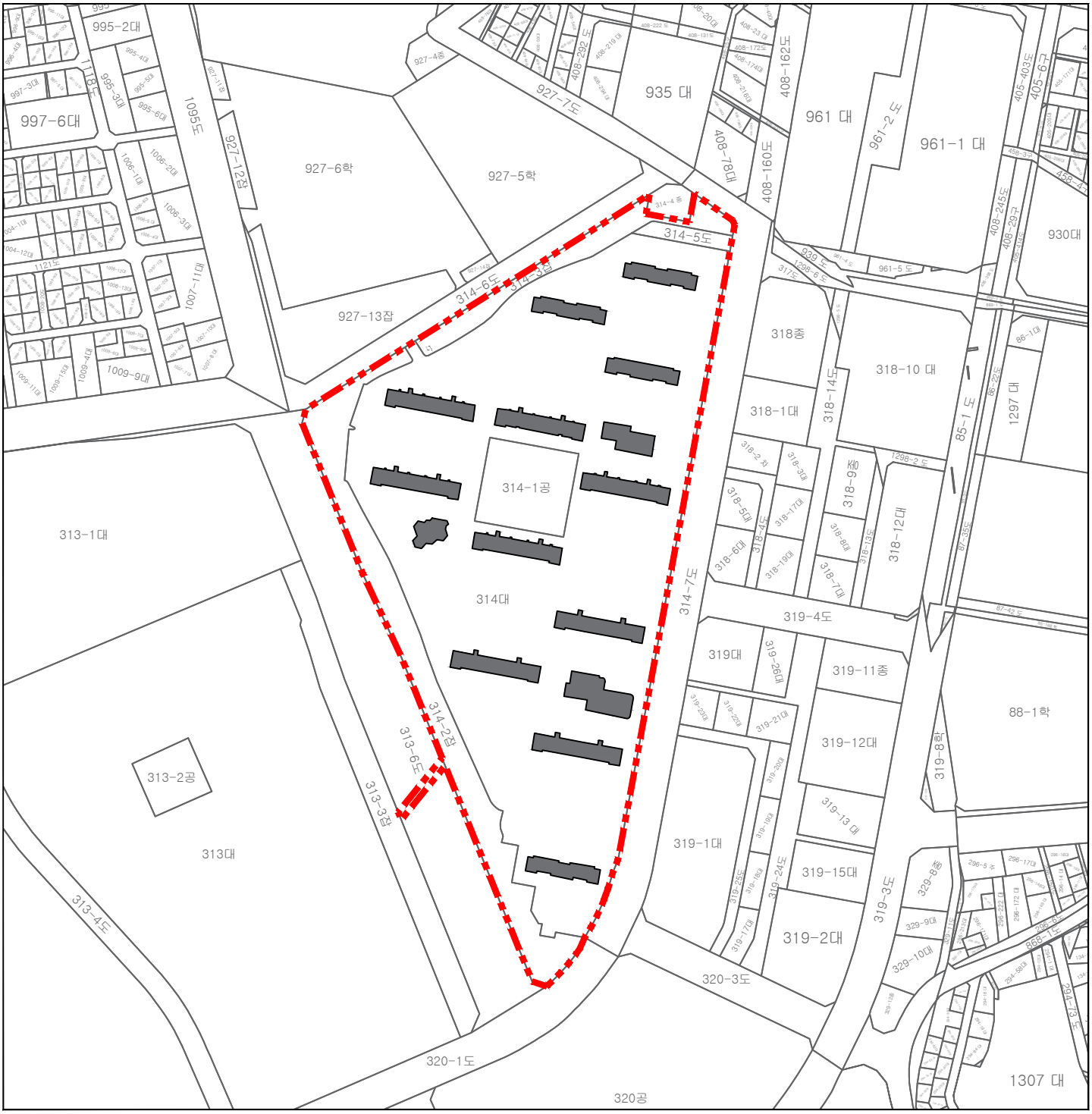
Scale = 1:4,000

0 40 100 200

N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이상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건축물 구조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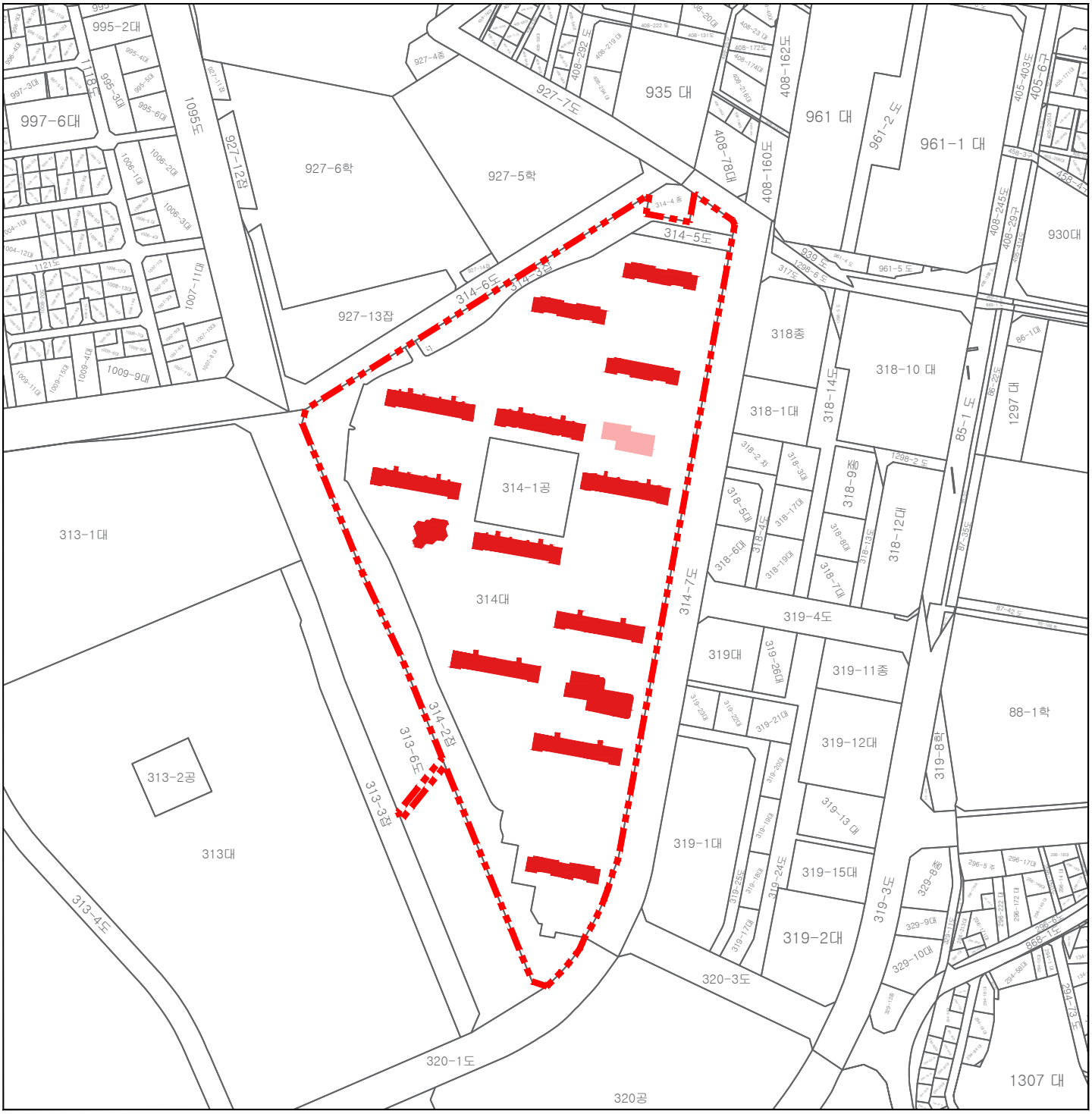
Scale = 1:4,000

0 40 100 200

N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철근콘크리트구조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건축물 존치기간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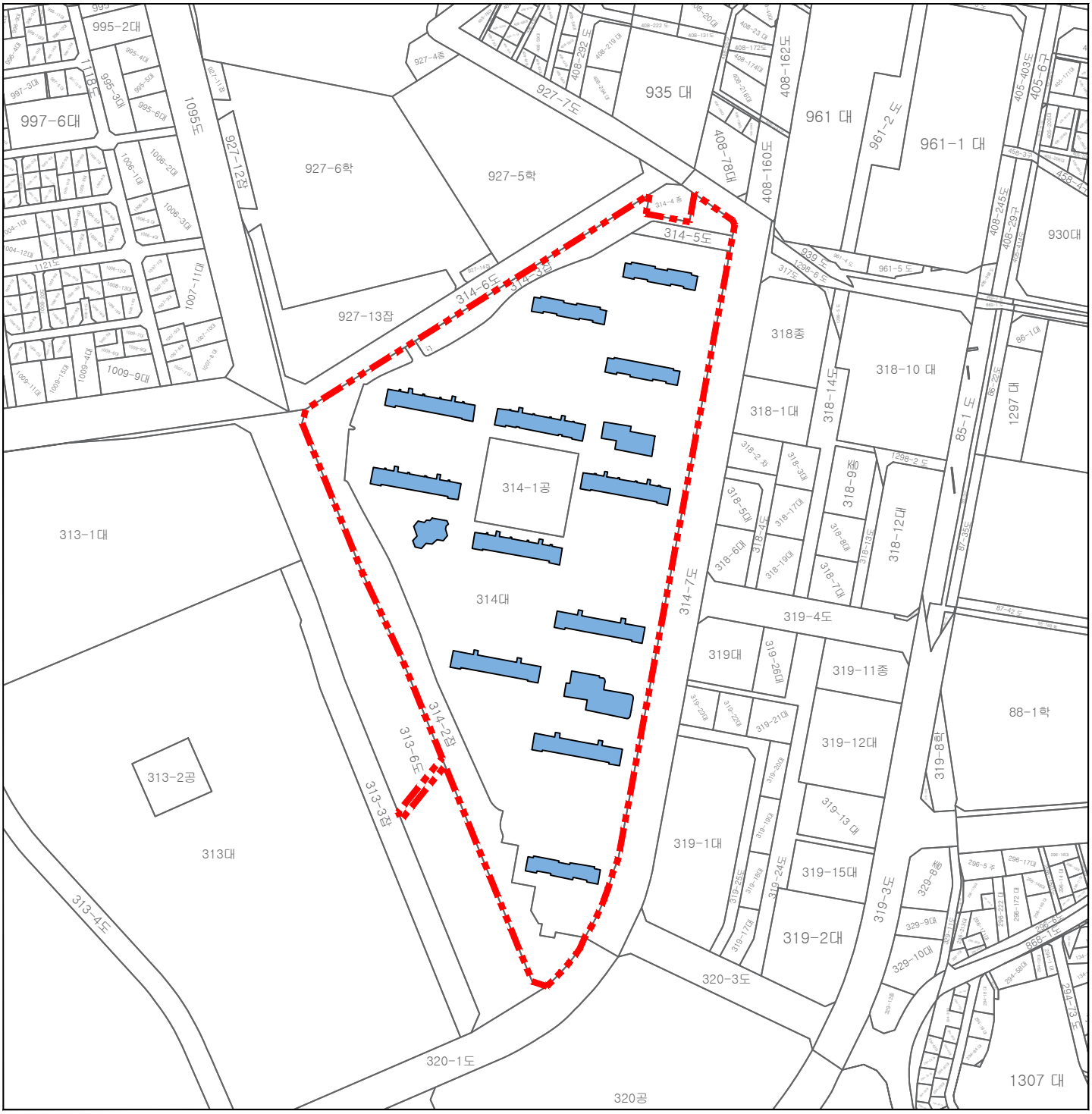
Scale = 1:4,000

0 40 100 200

N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10년 미만
- 10~19년
- 20~29년
- 30~39년
- 40년 이상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건축물 허가유무 현황도

Scale = 1:4,000

0 40 100 200

N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허가
- 무허가

2 토지조서 및 건축물 조서

1.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소유자	용도
계			107,046.70	88,842.30	-	-	-	-	-
1	양천구 신정동 313-6	도	18,447.70	243.30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도로	시유지	기반시설
2	양천구 신정동 314	대	71,410.30	71,410.30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사유지	주거
3	양천구 신정동 314-1	공	3,730.10	3,730.10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공원	구유지	기반시설
4	양천구 신정동 314-2	잡	9,656.60	9,656.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녹지	구유지	기반시설
5	양천구 신정동 314-3	잡	3,104.30	3,104.30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녹지	구유지	기반시설
6	양천구 신정동 314-5	도	697.70	697.70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도로	구유지	기반시설

※ 공동주택용지 : 71,410.30㎡

2. 건축물조서

연번	위치	주용도	주요구조	동수	호수	세대수	준공년도	규모				노후불량여부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지하층수	
계		-	-	15	35	1,352	-	8,163.93	125,713.97	-	-	-
1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4	60	1987	481.08	7,628.64	15	1	노후
2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4	60	1987	481.08	7,628.64	15	1	노후
3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4	60	1987	481.08	7,628.64	15	1	노후
4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8	160	1987	637.06	13,015.14	20	1	노후
5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8	160	1987	637.06	13,015.14	20	1	노후
6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8	96	1987	636.84	8,075.60	12	1	노후
7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8	96	1987	636.84	8,075.60	12	1	노후
8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8	160	1987	637.06	13,015.14	20	1	노후
9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8	160	1987	637.06	13,015.14	20	1	노후
10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8	160	1987	637.06	13,015.14	20	1	노후
11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8	120	1987	636.84	9,919.19	15	1	노후
12	양천구 신정동 314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1	4	60	1987	481.08	7,628.64	15	1	노후
13	양천구 신정동 314	유치원	철근콘크리트	1	3	-	1987	346	670.30	2	1	노후
14	양천구 신정동 314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철근콘크리트	1	8	-	1987	797.79	2,097.82	2	1	노후
15	양천구 신정동 314	기타시설	철근콘크리트	1	-	-	2011	정보없음	1,285.20	3	1	양호

주) 호수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따름
세대수 산정은 건축물대장 상 세대수를 따름

※ 공동주택수 : 15개동, 1,352세대

V

계획설명서

1. 계획의 개요
2.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3. 현황분석
4. 건축계획(안)
5.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6. 경관에 관한 계획
7.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계획의 개요

1.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지정내역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양천구 목동 314번지 일대	88,842.3	-

2.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양천구 목동 8단지 일대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계획으로 선형 도시축 중심의 신시가지로서 자족적인 주거단지로 계획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나 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

○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서고시제2023-408호)을 통해 서남권 대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통합적 공간구조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계획의 목적

○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변화된 정책방향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필요

- 조건부 재건축으로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하여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정비구역 지정 필요
-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필요

○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단지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 방향 제시

- 목동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대상지 내외 공원 및 녹지시설 다수 분포, 주변 녹지 흐름을 고려한 기반시설 재편 필요
- 대상지 북측 학교, 중심지구 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필요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필요

나.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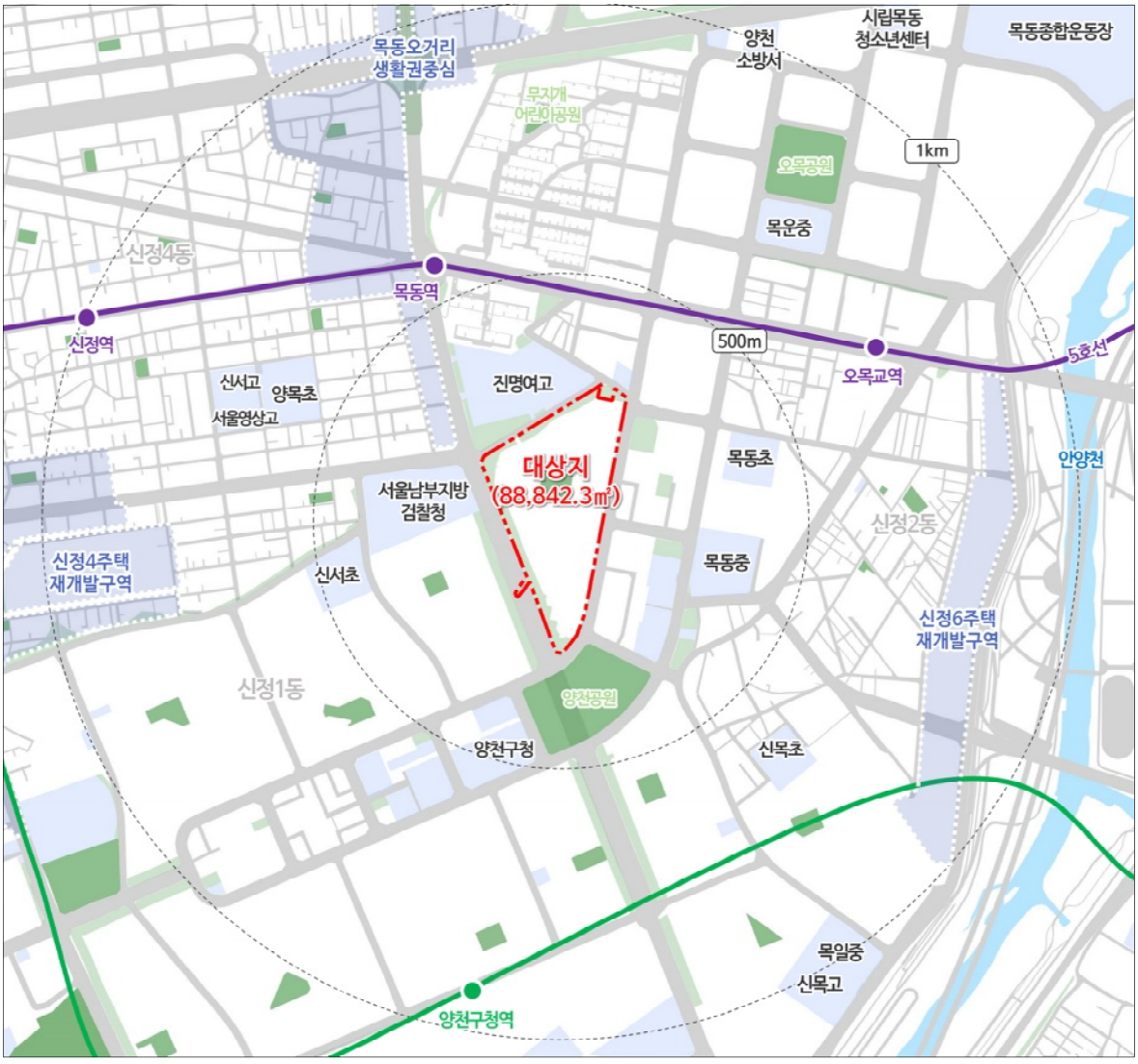
○ 면적 : 88,842.3㎡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년도 : 2030년(착공 2027년, 입주 2030년)

〈 위치도 〉



다.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

1) 계획의 수립절차



2) 계획의 추진현황

○ ’20.07. : 예비안전진단 통과

○ ’21.03. :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 ’23.02.28. : 조건부 재건축으로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

○ ’23.07.06. :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접수

○ ’23.08. : 관련부서 사전협의

○ ’23.09. :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확정

○ ’23.09.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 ’24.06. :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 자문회의 1차

○ ’24.10. :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2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1.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가. 미래상 및 목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 미래상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7대 목표 설정

구 분	7대목표	주요 내용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보행일상권 조성'**	· 주거·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도보 30분 내에서 향유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물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편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기반시설 입체화'**	· 도심 속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 입체화 추진
서울의 성장 견인 "도시경쟁력"	미래성장거점 육성·연계 **'중심지 기능 혁신'**	·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지 기능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 신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미래교통 기반시설 마련
대전환시대 미래 서울의 "가치와 방향"	미래위기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공간계획의 주요 원칙,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서울로의 전환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도시계획 대전환'**	·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의 전환

나. 도시공간구조 설정

■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계 유지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

■ 중심지 체계와 광역교통망·대중교통체계·수변·산업거점 연계로 중심지 기능 고도화 지원

■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로 다기능 복합용도 유도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심지 육성 및 관리방안 마련

구 분		주요 육성방향
3 도심	한양도성,영등포·여의도,강남	·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도심의 정체성과 장소성 강화 ·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로 도심 가용지 확보 및 복합 개발 추진 · 3도심 간 직결체계 완성을 위하여 광역급행철도망 연계 및 도심 간 이동 수단 다양화
7 광역중심	용산,청량리·왕십리,창동·상계, 상암·수색,마곡,가산·대림,잠실	· 광역 경제권의 일다리 및 다기능 복합 중심지로 육성 · 중심지와 수변 명소 간 보행로 연계 및 중심지의 문화·여가 기능을 강화
12 지역중심	동대문,망우,미아,성수,신촌,마포·공덕,연신내·불광,**목동**,봉천,사당·이수,수서·문정,천호·길동	· 고용기반 및 고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역중심의 특화 육성
53 지구중심	-	·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생활권 중심지로 기능 ·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하여 지구중심 및 역세권의 다기능 복합개발 추진

2. 2030 서울생활권 계획

가. 목표 및 전략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교육중심도시 목동2생활권

■ 목표1 : 목동중심지의 문화상업기능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목동중심지구 상업,문화기능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목표2 :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계획적 관리 및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정비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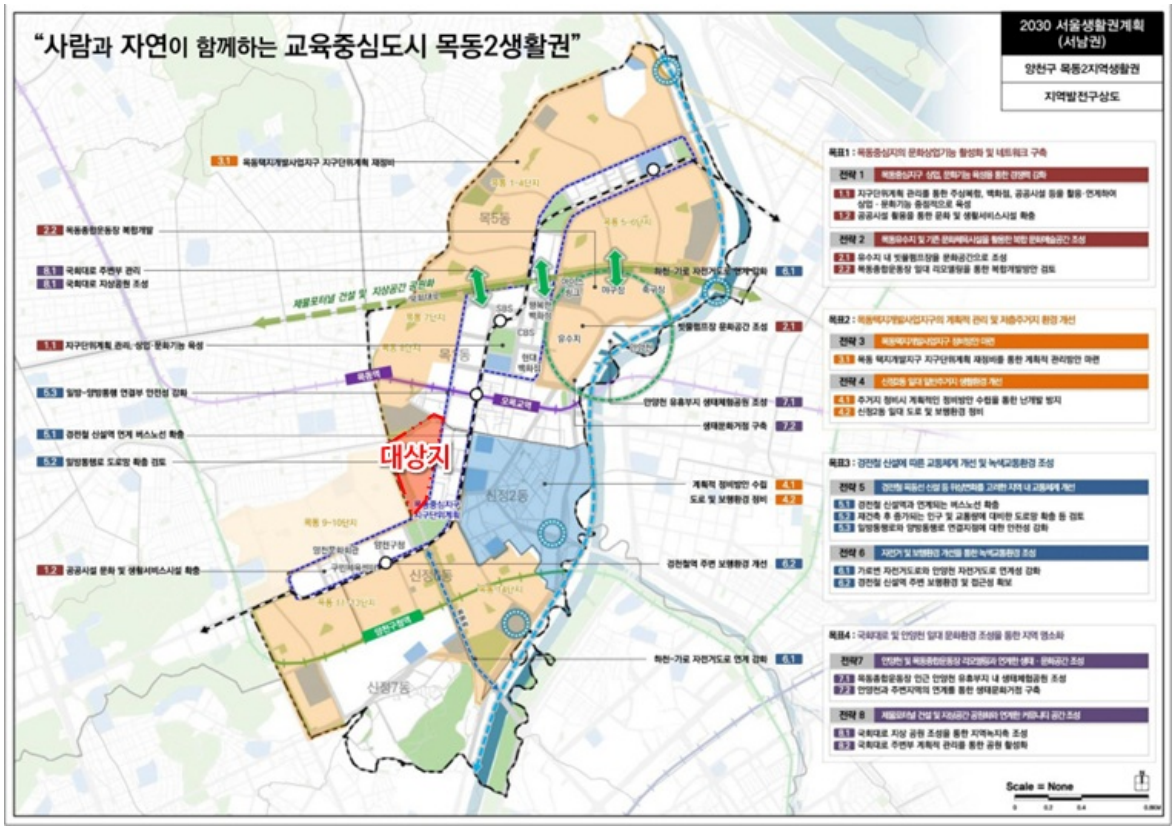
■ 목표3 : 경전철 신설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및 녹색교통환경 조성

- 경전철 목동선 시설 등 위상변화를 고려한 지역내 교통체계 개선

■ 목표4 : 국회대로 및 안양천 일대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 안양천 및 목동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연계한 생태·문화공간 조성

〈서남권 양천구 목동2 지역생활권 지역발전구상도〉



나. 생활서비스시설 분석

■ 목동2 생활서비스시설 분석 결과

○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대상 : 청소년아동복지시설

- 서비스소외지역이 일부 발생하며, 시 평균 대비 시설 개소가 1/3수준인 청소년아동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급/운영계획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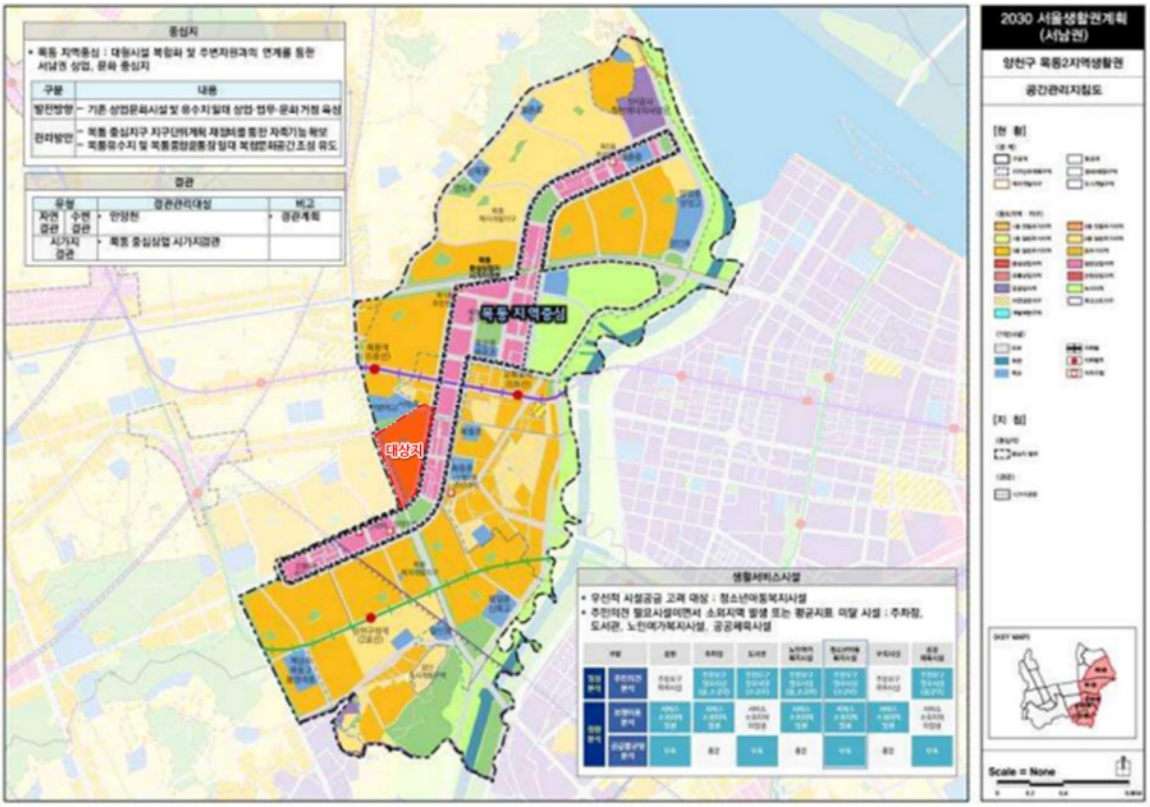
○ 주민의견분석 결과 필요시설

- 중규모시설 :다목적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노인종합복지관
- 소규모시설 : 소규모 공영주차장, 청소년독서실, 작은도서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서남권 양천구 목동2지역생활권 생활서비스시설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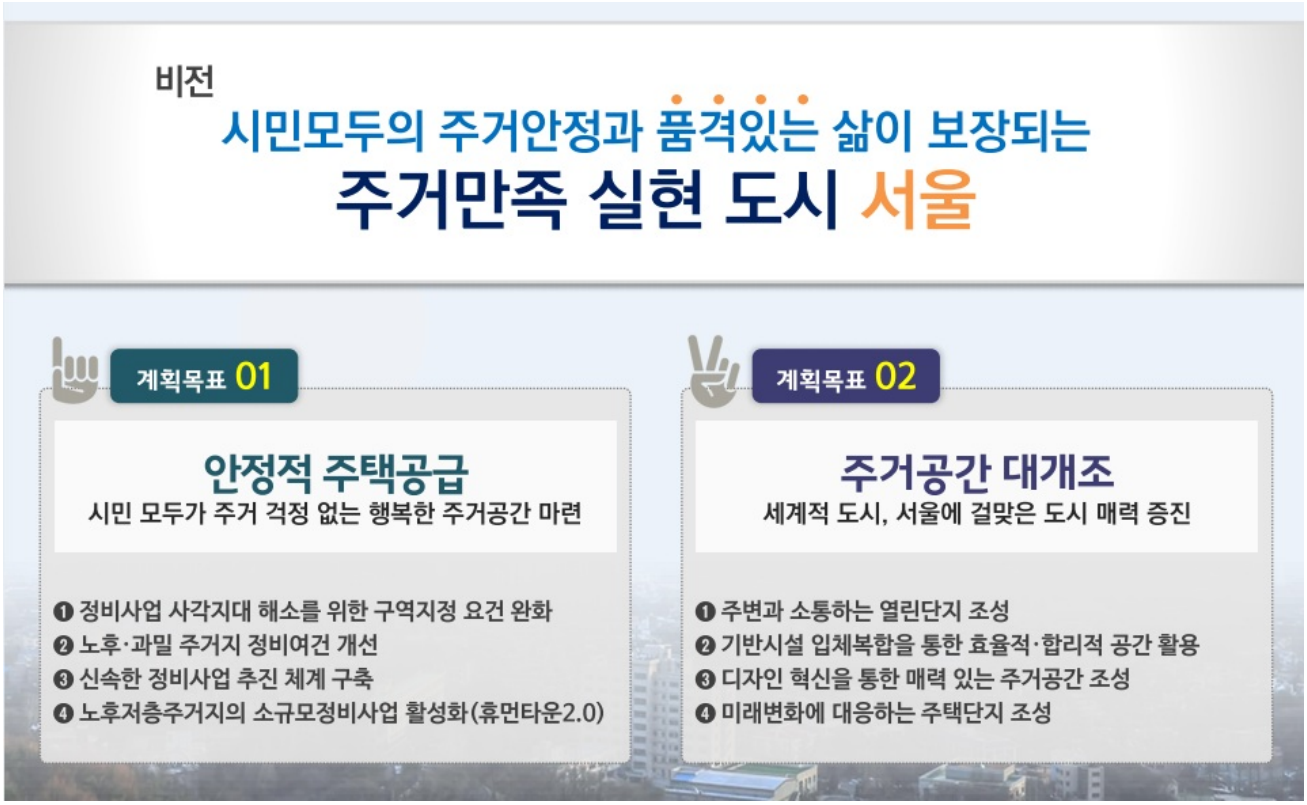
구분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정성 분석	주민의견 분석	주민요구 하위시설	주민요구 필요시설 (중,소규모)	주민요구 필요시설 (소규모)	주민요구 필요시설 (중,소규모)	주민요구 필요시설 (소규모)	주민요구 하위시설	주민요구 필요시설 (중규모)
정량 분석	보행이용 분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미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서비스 소외지역 미발생
	공급불균형 분석	부족	충분	부족	충분	부족	충분	부족

〈서남권 양천구 목동2지역생활권 공간관리지침도〉



3.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가. 정비기본계획의 비전



1) 정비기본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 목표1 : 안정적 주택공급

○ 전략1-1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전략1-2 : 저층주거지 사업추진 여건 개선

○ 전략2-1 : 현황용적률 인정 범위 확대 / 전략2-2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전략2-3 : 역세권 일대 준주거 상향 및 공공기여 완화

○ 전략3-1 :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 전략3-2 :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본격 추진

○ 전략4-1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 전략4-2 : 휴먼타운2.0 시범사업 추진

■ 목표2 : 주거공간 대개조

○ 전략1-1 : 생활공유가로, 담장없는 단지 계획

○ 전략2-1 : 입체복합시설

○ 전략3-1 : 창의혁신 우수디자인 적용 / 전략3-2 : 공공건축물 디자인·품질 제고 /
전략3-3 : 수변·녹지 연계 특화 디자인

○ 전략4-1 : 기후동행 인센티브 / 전략4-2 : 다양한 평형·평면 도입 /

전략4-3 : 로봇친화 미래지향형 조성 / 전략4-4 : 미래전략용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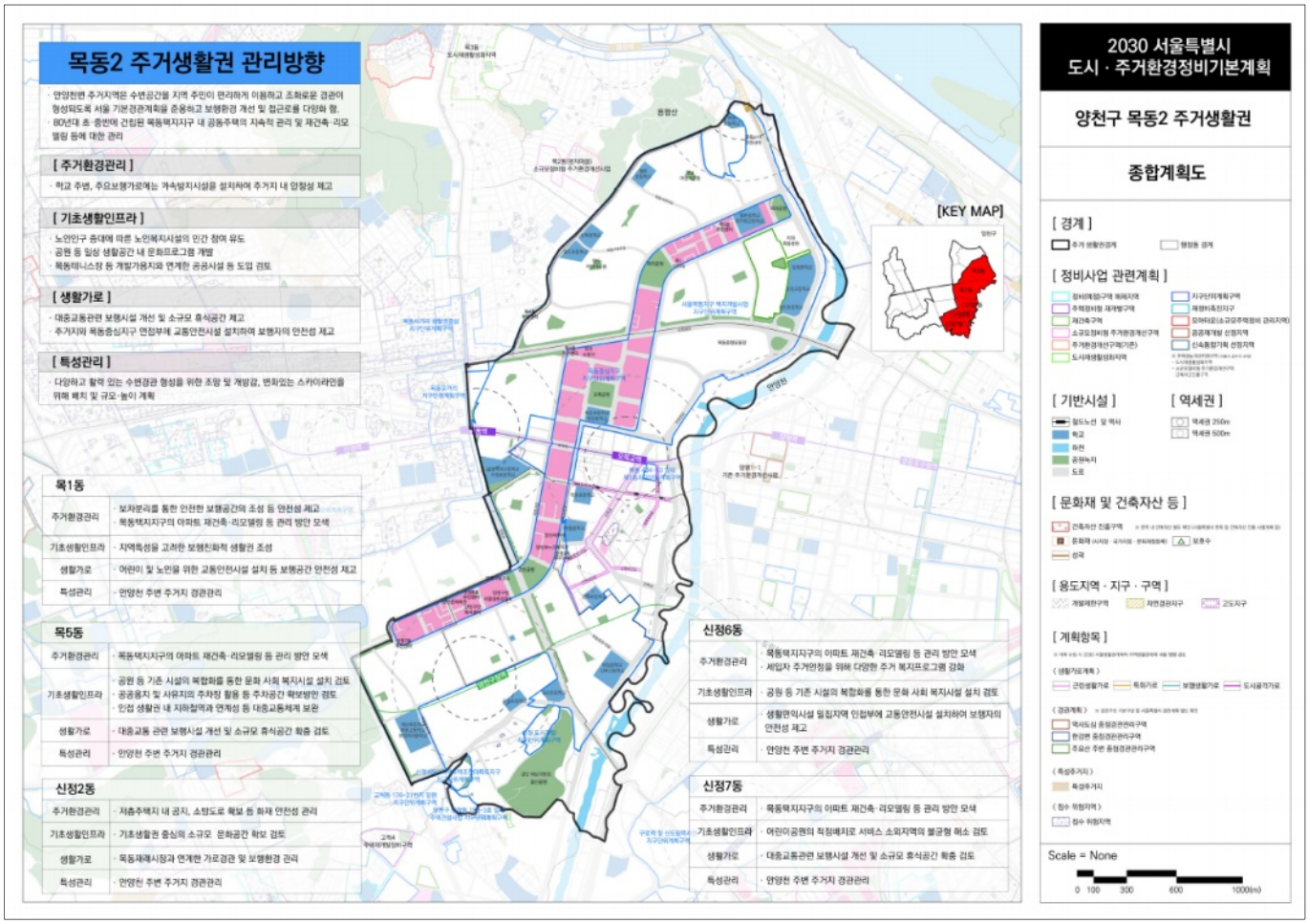
2) 목동2 주거생활권 관리방향

- 안양천변 주거지역은 수변공간을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서울 기본경관계획을 준용하고 보행환경 개선 및 접근로를 다양화함.
- 80년대 초중반에 건립된 목동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의 지속적 관리 및 재건축·리모델링 등에 대한 관리

■ 목1동 주거생활권 관리방향

- 주거환경관리 :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공간의 조성 등 안전성 제고
  목동택지지구의 아파트 재건축·리모델링 등 관리 방안 모색
- 기초생활인프라 :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행친화적 생활권 조성
- 생 활 가 로 :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공간 안전성 제고
- 특 성 관 리 : 안양천 주변 주거지 경관관리

〈양천구 목동2주거생활권 종합계획도〉



4. 관련법규 검토

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조 항	관 련 내 용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다. 노후 ·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밀집지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이상이 재건축 필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4.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 · 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 · 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 요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	②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제4호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재건축사업의 입안제안

조 항	관 련 내 용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도시정비법 제12조)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조 항	관 련 내 용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조 항	관 련 내 용
공원녹지법 제14조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 · 제3호 ·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2조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주택 확보 기준

조 항	관 련 내 용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정비법 제10조)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조 항	관 련 내 용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부~~교통부고시 2022-720호 제5조)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마.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기준

조 항	관 련 내 용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도시정비법 제54조)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

조 항	관 련 내 용
	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	①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도시정비법 제55조)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주요내용

조 항	관 련 내 용
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 (정의)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 할 수 있다. •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 ·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조 항	관 련 내 용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 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2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 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4조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

조 항	관 련 내 용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가. 주요내용

조 항	관 련 내 용
조례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 (정의)	•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 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 이하 이목에서는 같다)수가 가장 많은 층의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비구역의 면적 중 존치되는 공원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공원 및 존치되는 학교 면적을 제외한다. 라. 단독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바.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 "과소필지"란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 "주택접도율"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조례 제7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 내용)	•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 토지의 용도 소유자 · 규모별 현황 -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 · 불량 현황 -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 정비구역 내 유 · 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조 항	관 련 내 용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존 수목의 현황 -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의견
조례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등	•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조례 제1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 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조례 제3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용적 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인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 법 제101조의5 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법 제101조의6 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현황분석

1. 양천구 현황

가. 입지여건

○ 양천구는 서울특별시의 남서구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영등포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접하며, 남쪽으로는 구로구, 북쪽으로는 강서구와 마주하고 있음

○ 목1동 ~ 목5동, 신월1동 ~ 신월7동, 신정1동 ~ 신정7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형은 전반적으로 저평하나 부천시와 접하고 있는 서쪽이 동쪽보다 높은 편임

나. 인구 및 세대

○ 양천구 인구는 2017년 475,018인, 2021년 450,487인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 총 세대수는 2021년 181,404세대이며, 세대당 인구는 2.48인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구분	인구(인	인구증가율(%)	세대수(세대)	세대당인구(인)	비고
2017년	475,018	-1.42	176,649	2.67	-
2018년	468,145	-1.45	176,498	2.63	-
2019년	462,285	-1.25	177,256	2.58	-
2020년	457,781	-0.97	180,633	2.51	-
2021년	450,487	-0.98	181,404	2.48	-

※ 2022 양천구 통계연보

다. 주택

○ 주택유형별 현황은 2021년 기준 전체 주택수 145,843호 중 아파트가 92,278호(63.27%)로 가장 많으며, 다세대주택 41,185호(28.23%), 다가구주택 5,237호(3.59%)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주택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영업점용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2017년	137,056	845	5,712	1,813	85,758	4,265	37,784	879
2018년	137,850	699	5,515	1,776	85,921	4,225	38,855	859
2019년	139,938	641	5,400	1,777	87,387	4,144	37,730	859
2020년	143,769	617	5,319	1,762	90,788	4,042	40,382	859
2021년	145,843	600	5,237	1,760	92,278	3,954	41,185	829

※ 2022 양천구 통계연보

라. 기상 · 기후

○ 연평균 기온은 약 14.7℃로 온화한 편이며, 합계 강수량은 1,200.0mm임

○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월 평균기온이 36.6℃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17.3℃까지 강하함

구분	일기일수		기상개황							
	강수	폭풍	기온					합계 강수량	바람	
			평균	평균최고	최고극값	평균최저	최저극값		평균풍속	최대순간 풍속
2017년	126	-	13.7	18.3	36.9	9.9	-10.9	1,082.0	1.3	11.4
2018년	123	1	13.7	18.3	39.7	9.8	-16.9	1,154.5	1.4	14.8
2019년	79	-	14.4	19.1	38.8	10.5	-9.7	911.5	1.3	19.0
2020년	91	-	14.1	18.7	36.6	10.3	-11.8	1,490.5	1.4	10.6
2021년	107	-	14.7	19.4	36.6	10.7	-17.3	1,200.0	1.2	10.2

※ 2022 양천구 통계연보

마. 교육시설

○ 2022년 양천구 통계연보 기준으로 2021년의 양천구 교육시설은 유치원 39개소, 초등학교 30개소, 중학교 19개소, 고등학교 15개소를 포함해 총 103개의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 학급당 학생수는 2017년 총 19.86인에서 2021년 17.89인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며, 세부시설 중 초등학생 17.75인, 중학생 18.82인, 일반 고등학생 18.62인임

○ 대상지 주변 500m 이내에 초등학교 2개소(목동초, 서정초), 중학교 1개소(목동중), 고등학교 1개소(진명여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1km 이내에는 초등학교 1개소(신목초), 중학교 1개(목운중), 고등학교 1개소(신서고)가 입지하고 있음

구분	학교수	학급(과)수	교실수	학생수	학급당학생수
2017년	111	2,379	3,082	61,200	19.86
2018년	108	2,367	3,073	58,630	19.08
2019년	107	2,377	2,999	57,631	19.22
2020년	103	2,347	3,129	56,265	17.98
2021년	103	2,304	3,103	55,528	17.89
유치원	39	206	190	3,760	19.78
초등학교	30	1,006	1,322	23,469	17.75
중학교	19	607	861	16.208	18.82
일반고등학교	10	363	494	9,202	18.62
특수목적고등학교	-	-	-	-	-
특성화고등학교	3	67	120	1,171	9.76
자율고등학교	2	55	116	1,709	14.73

※ 2022 양천구 통계연보

2. 정비사업 구역 현황

가. 입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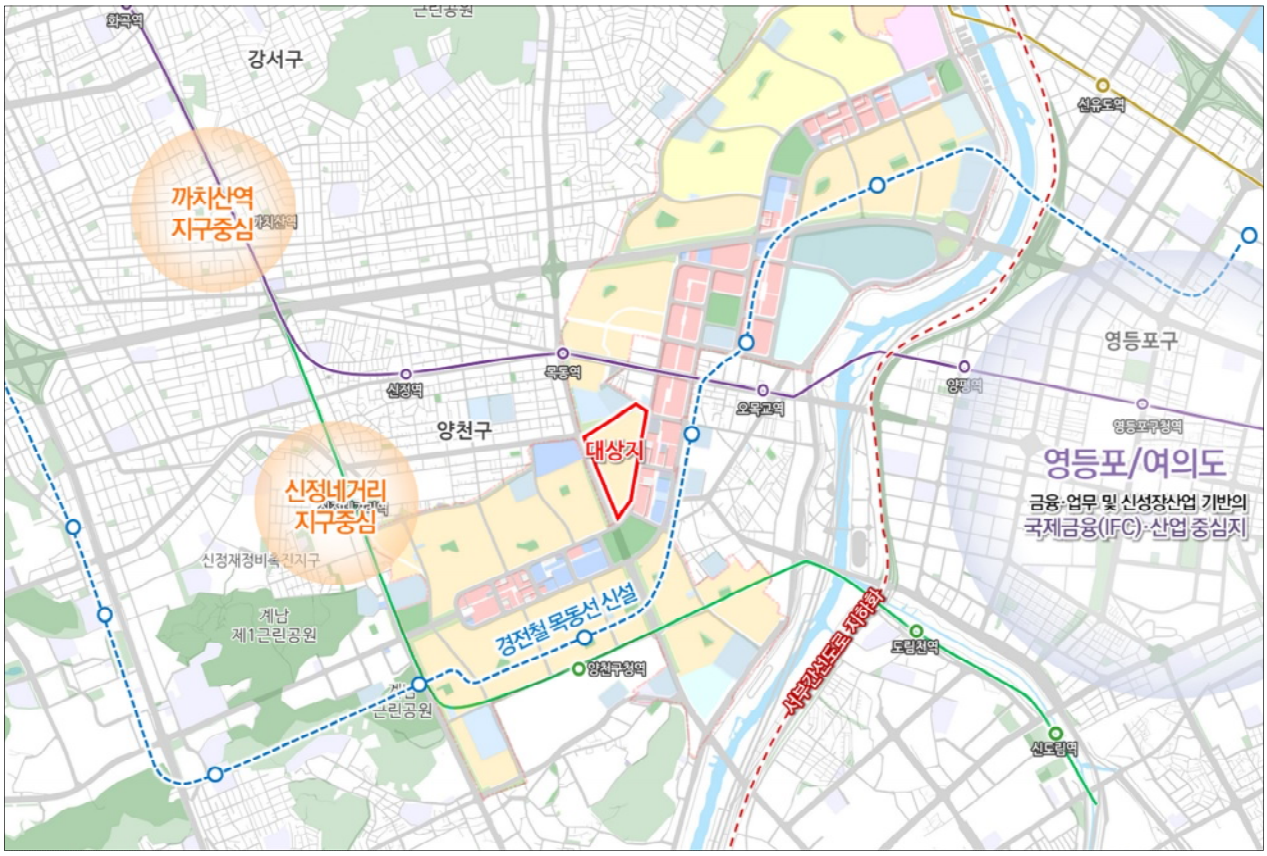
1) 주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및 대중교통 체계 변화로 인한 접근성 증대

- 목동로, 목동서로 등 간선도로에 면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
-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사업('17.~23.),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1.09 개통) 등으로 인한 주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 경전철 목동선 노선 신설로 인해 지하철역 접근성 증대 예상

2) 목동 택지개발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단지

- 목동 택지개발지구 중심부에 위치하며, 상업 문화 중심지인 목동 중심지구와 목동9단지 사이에 위치

〈 광역현황도 〉



나. 공간구조 분석

1) 공원, 학교와 연접하여 안전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 남측에 규모있는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책쉼터, 꿈마루 놀이터, 산책로 등 조성
- 북측으로 진명여고 및 서정초 위치

2) 목동 중심지구 및 양천구청, 법원·경찰청, 양천세무서 등 공공시설이 인접하여 위치

〈 공간구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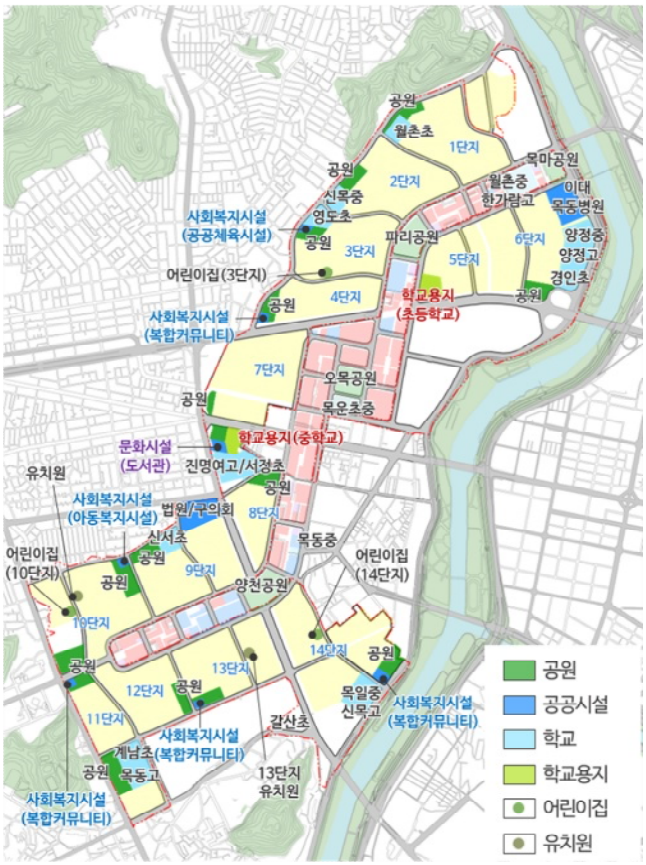
다. 공공시설 현황

○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각 단지별 기부채납 공공시설 기본 방향 제시

○ 각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 및 규모 구체화 필요

〈 목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현황 및 계획 〉

구분		현황	계획	비고
교 통	도로(도로율)	736,987.9㎡ (20.11%)	773,624.9㎡ (21.11%)	
공원·녹지 (공원·녹지 율)		365,899.2㎡ (9.98%)	433,228.3㎡ (11.82%)	•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최소기준)
교육시설	유치원	2	2	
	초등학교	8	9	• 학교 증설을 위한 학교용지 2개소 계획 (5단지, 7단지)
	중학교	6	7	
	고등학교	5	5	
공공청사	구청	1	1	• 양천구청
	경찰서	1	1	• 양천경찰서
	파출소	3	3	• 구역내 3개소
	법원	1	1	• 남부지방법원
	구의회	1	1	• 양천구의회
	주민센터	6	6	• 구역내 6개소
	소방소	2	2	• 구역내 2개소
	기타	5	5	• 우체국, 세무서 등
문화시설	공연시설	2	2	• 양천구 해누리타운 • 양천문화회관
	도서시설	1	2	• 양천도서관, 1개소 신설
복지시설	아동복지	4	5	•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신설
	노인복지	1	1	• 양천종합노인 복지관
	여성복지	-	-	-
	장애인 복지	1	1	• 장애인 복지관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1	1	• 양천구민 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1	1	• 목동 운동장 지역
복합시설 (문화,복지, 체육)	복합커뮤니티 센터	-	4	• 신설
	주민복합체육 센터	-	1	• 신설



라. 목동8단지 현황

○ 목동8단지는 공동주택 12동, 부속건물 3동으로 총 15개의 건축물이 있음

〈 건축물 및 외부시설 현황 〉



관리사무소	꿈나무 유치원
	
꿈동산 어린이 공원	**상가동**
	

○ 목동8단지는 총 1,352세대이며, 공급면적 75㎡형이 61.7%로 가장 많음

〈 목동8단지 평형대 현황 〉

공급(㎡)	전용(㎡)	세대수	비율(%)
127㎡	105.35㎡	232	17.1
112㎡	92.9㎡	8	0.6
98㎡	71.77㎡	278	20.6
75㎡	54.94㎡	834	61.7
합계		1,3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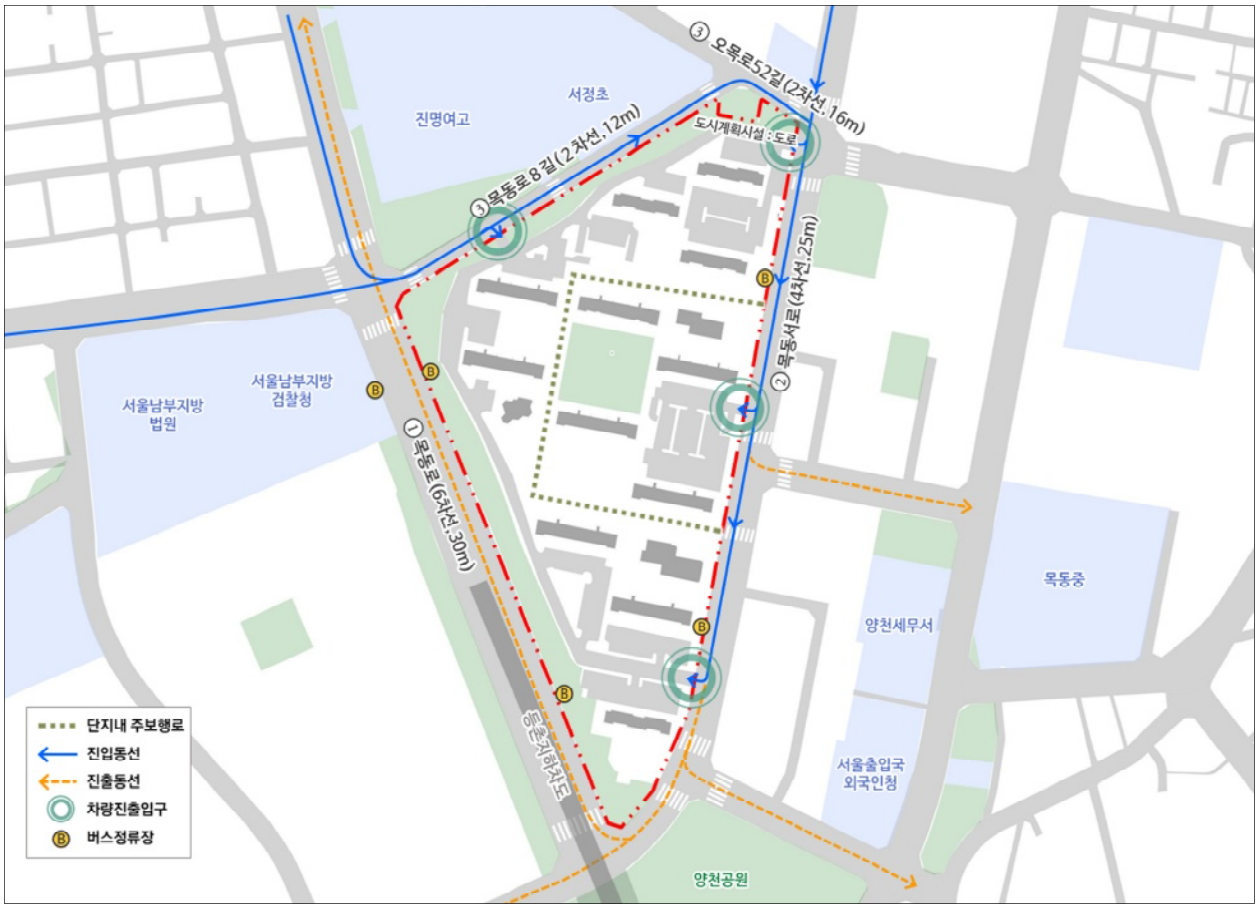
마. 교통 및 보행체계 현황

1) 교통 및 보행동선 현황

○ 4개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현재 4개의 차량진출입구 운영중

○ 도로 위계 및 동선 재편에 따라 진출입 동선계획 필요

〈 목동8단지 일대 교통동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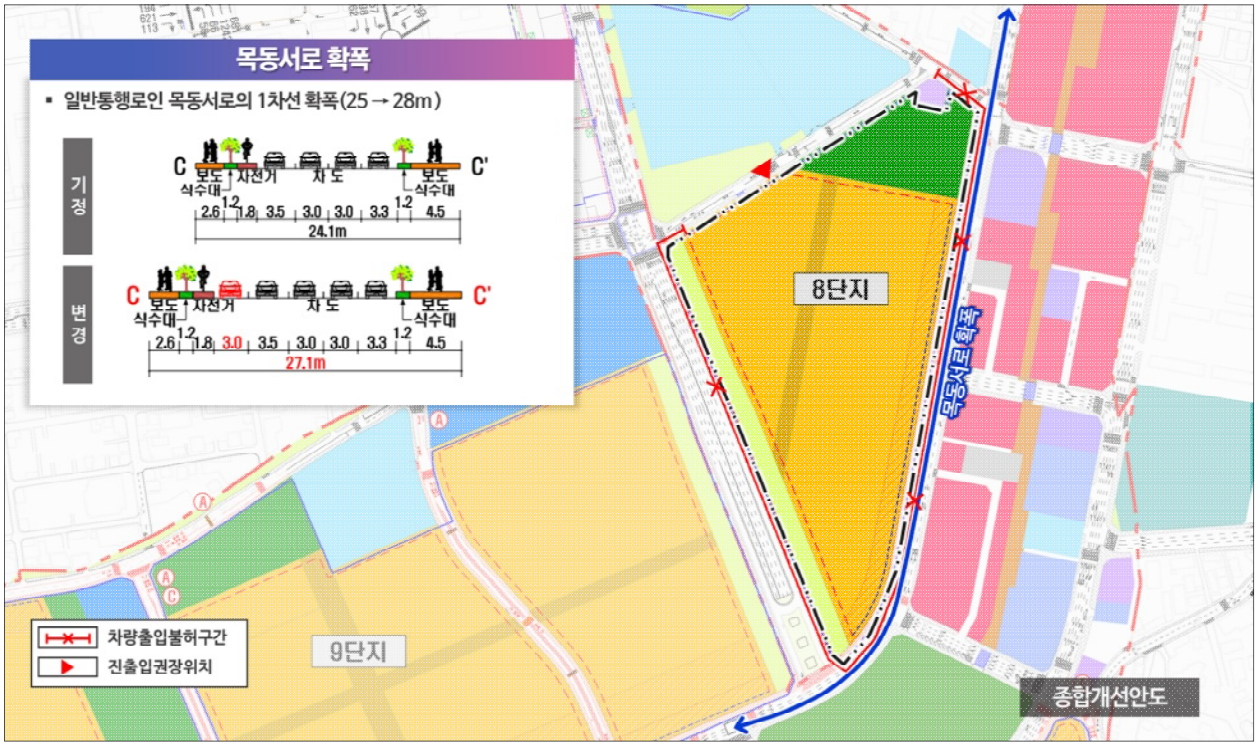
〈 목동8단지 일대 도로 현황〉

① 목동로	② 목동서로
• 목동역에서 이어지는 간선도로이며 등촌 지하차도 위치	• 목동중심지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남방향 일방통행
	
③ 목동로8길	④ 오목로52길
• 신월로, 목동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진명여고, 서정초 위치	• 목동서로, 목동로8길과 연결되는 도로
	

2)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결과

○ 일반통행로인 목동서로 확폭, 목동로8길 차량진출입 권장

〈 목동8단지 일대 종합개선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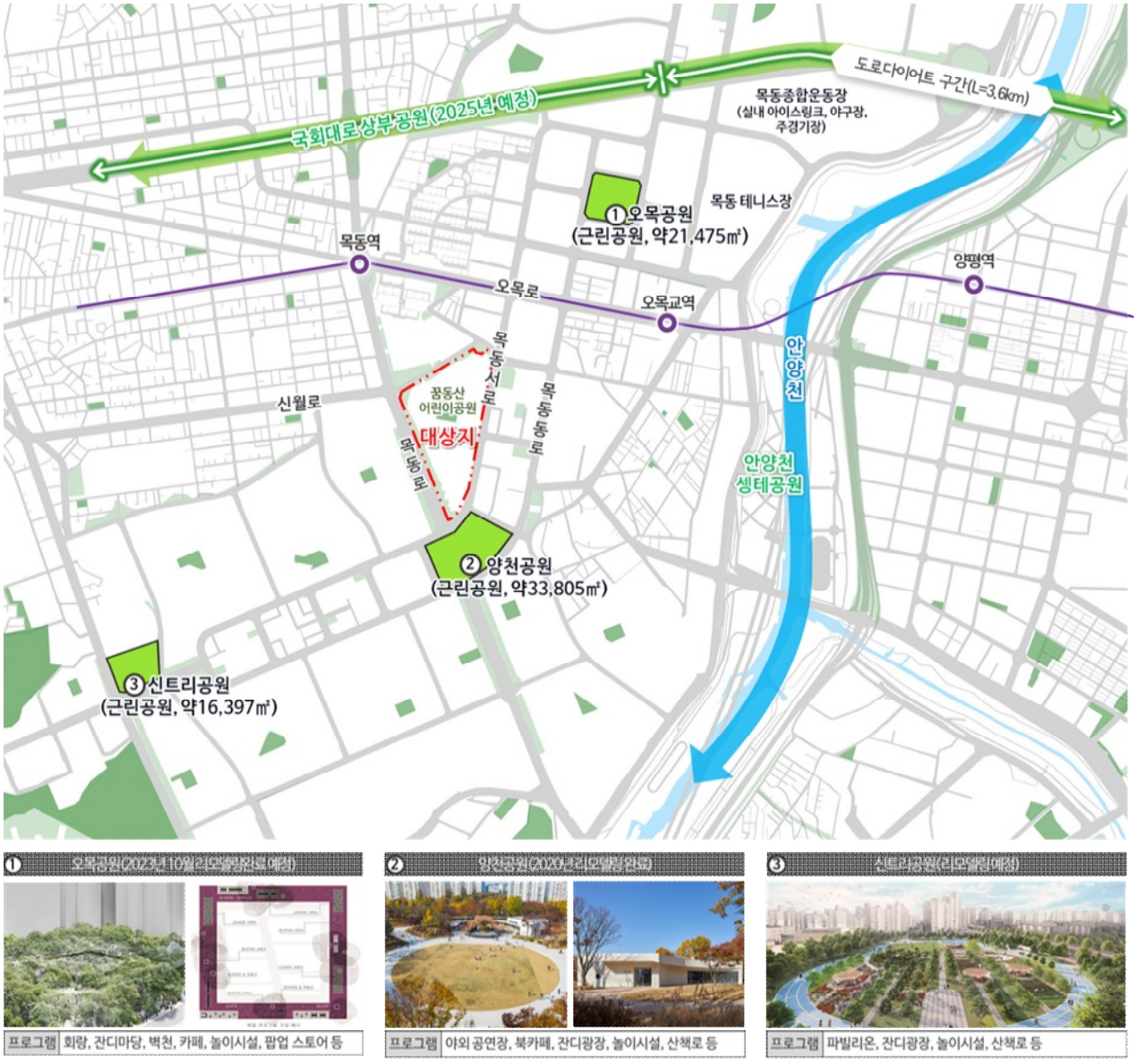


바. 도시계획 공원 현황

◦ 주택 건설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세대당 3㎡ 공원·녹지 조성 필수

◦ 대상지 일대 공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원 연계 계획 필요

〈 대상지 일대 공원 현황 〉



가. 주변지역 여건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사업대상지는 목동서로 서측에 위치하고 있음

○ 대상지 주변 지역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며, 인근에 진명여자고등학교, 서정초등학교, 양천공원 등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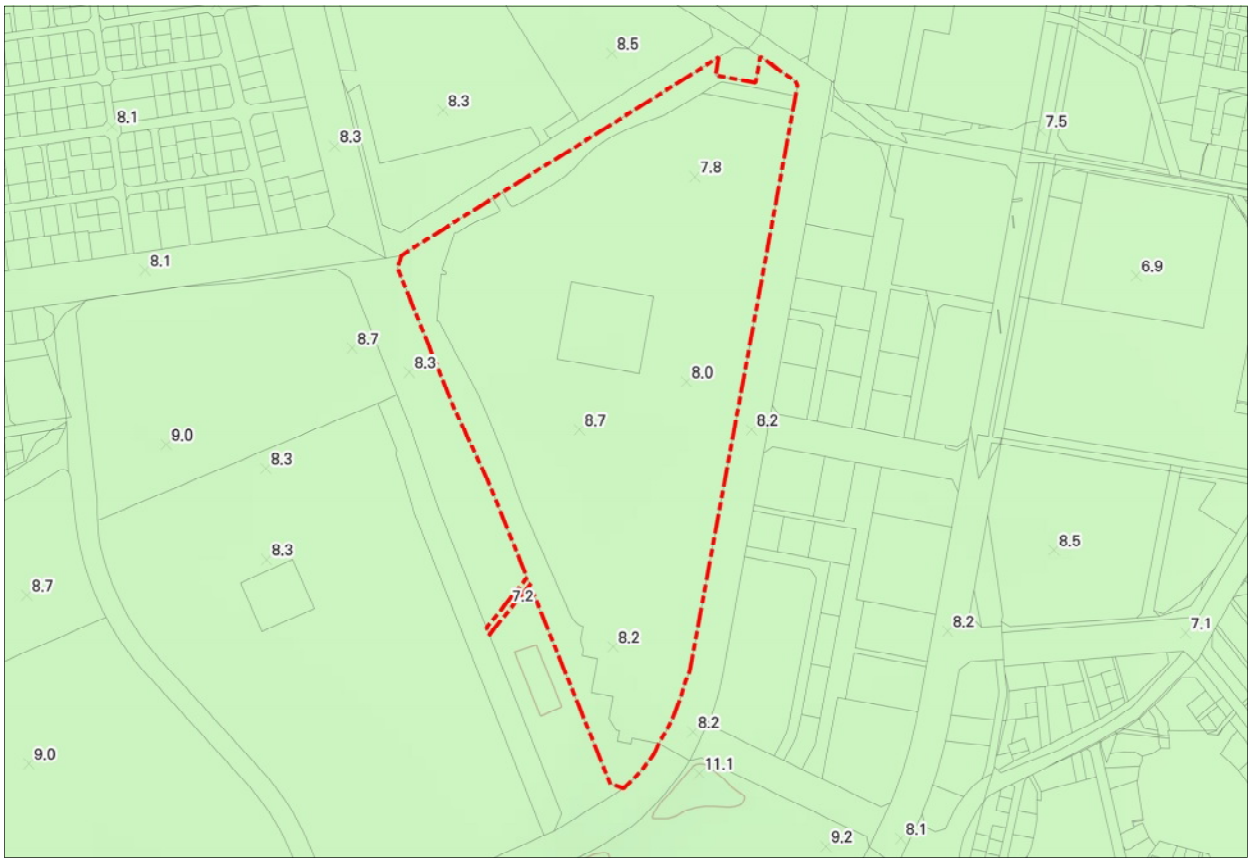
사. 표고 및 경사

○ 대부분 7m 이상 9m 미만으로, 표고차가 높지 않은 지역임

○ 대상지는 0° 이상 5° 미만 경사도 100%로 대상지 내 전체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표고	7m미만	264.7	0.3	-
	7m이상 9m미만	88,104.3	99.2	-
	9m이상	473.3	0.5	-
합계		88,842.3	100.0	-
경사	0이상 5미만	88,842.3	100.0	-
	5이상	-	-	-
합계		88,842.3	100.0	-

〈 대상지 표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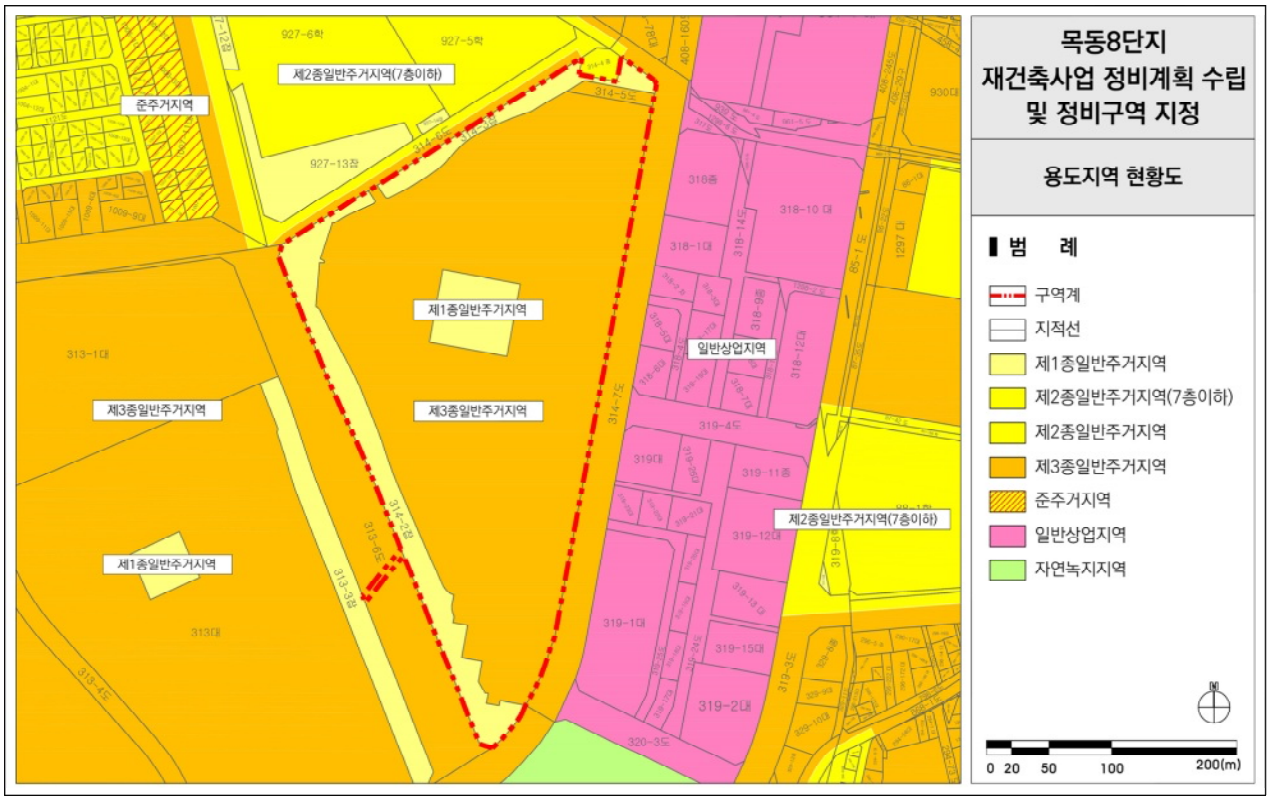
3. 도시관리계획 현황

가. 용도지역

-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18.6%)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81.4%)으로 구성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계	88,842.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91.0	18.6
제3종일반주거지역	72,351.3	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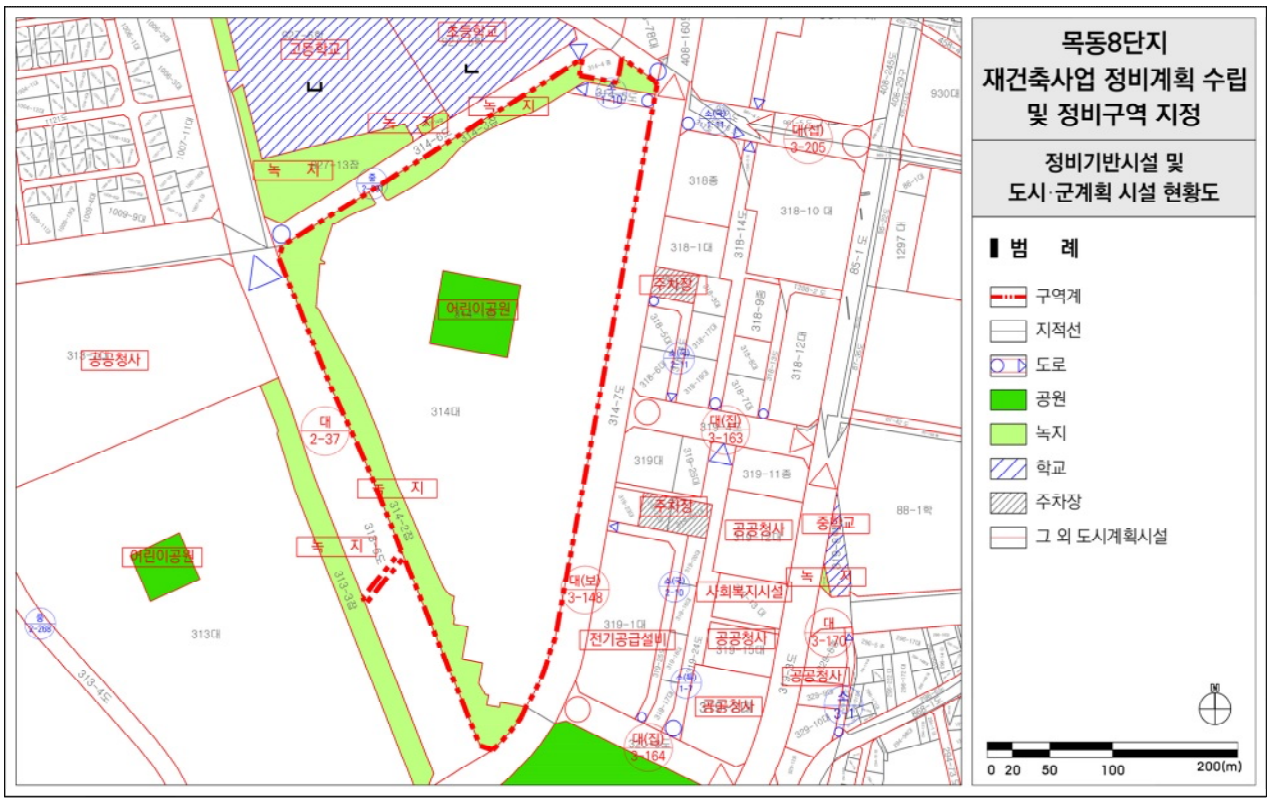
〈 용도지역 현황도 〉



나.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로 2개소,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

〈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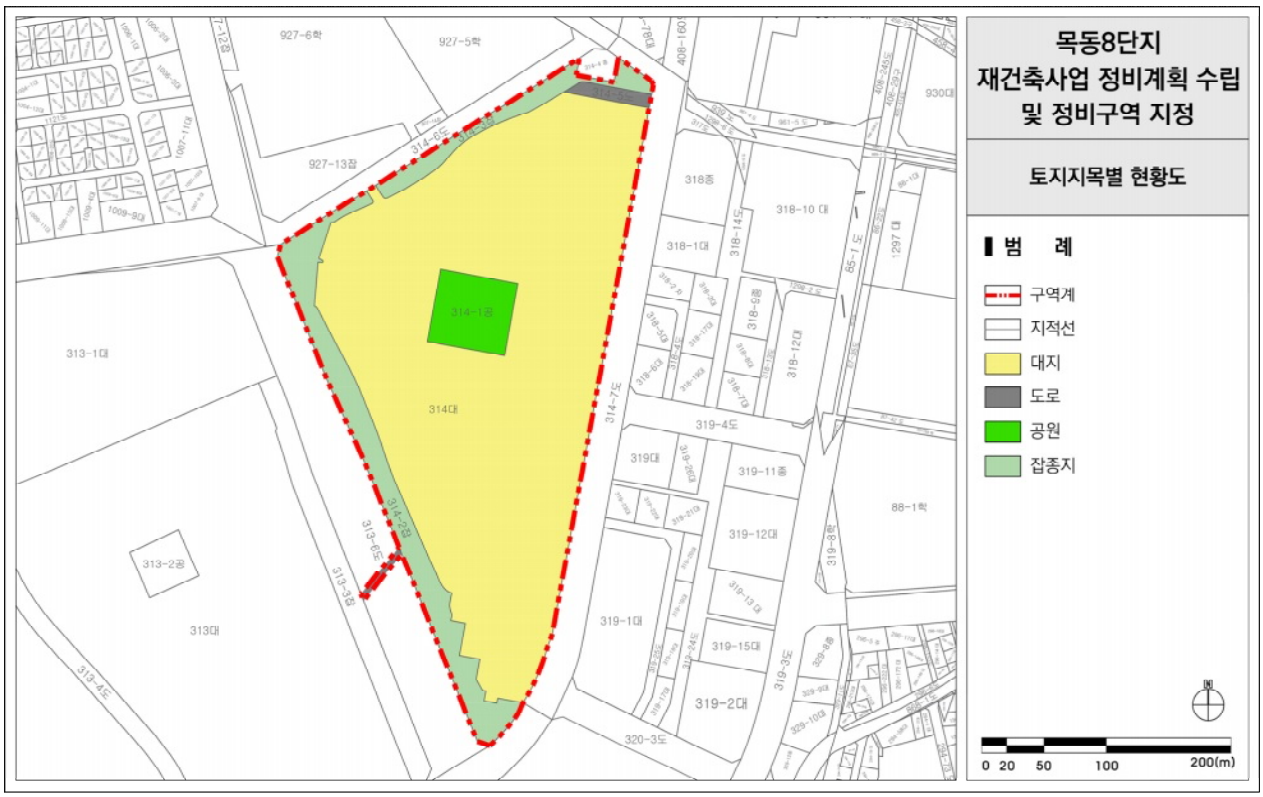
4. 토지 및 건축물 현황

가. 토지지목별 현황

- 대상지는 대지가 80.4%(71,410.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	88,842.3	100.0	-
대지	1	71,410.3	80.4	-
도로	2	941.0	1.1	-
잡종지	2	12,940.9	14.4	-
공원	1	3,730.1	4.2	-

〈 토지지목별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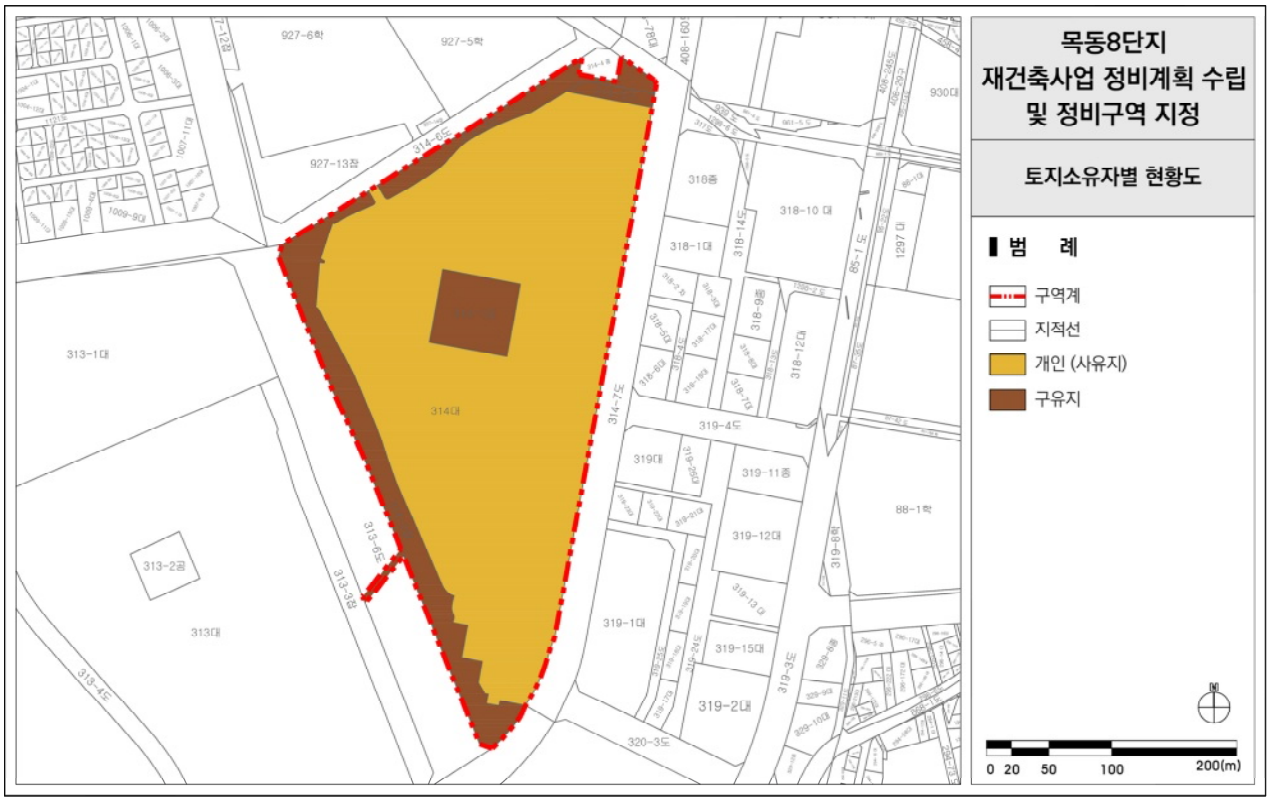


나. 토지소유자별 현황

- 대상지는 사유지가 80.4%(71,410.3㎡)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	88,842.3	100.0	-
사유지	1	71,410.3	80.4	-
국공유지	5	17,432.0	19.6	-
구유지	4	17,188.7	19.3	-
시·도유지	1	243.3	0.3	

〈 토지소유자별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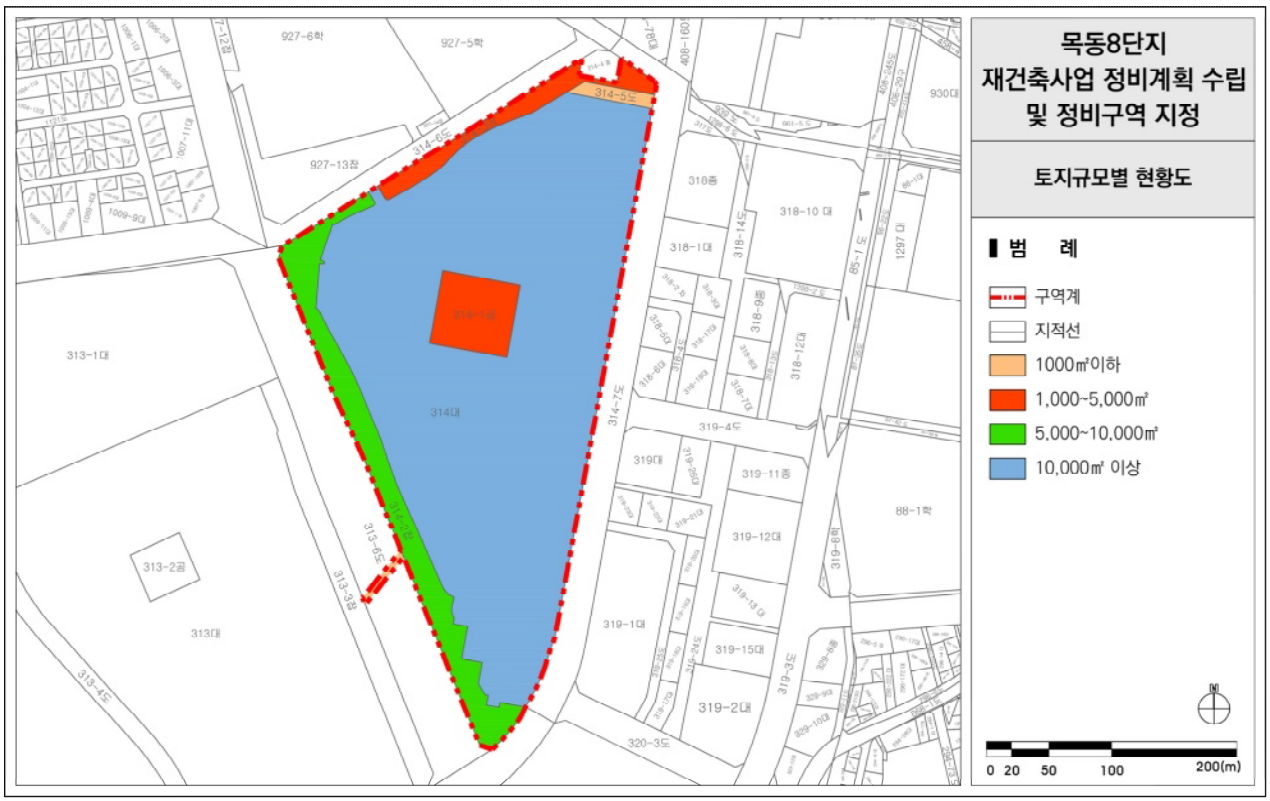


다. 토지 규모별 현황

• 대상지 내 대부분의 필지가 1,00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0㎡이하의 과소필지 없음

구분	필지수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	100.0	88,842.3	100.0	-
90㎡ 미만	-	-	-	-	-
90㎡ 이상 150㎡ 미만	-	-	-	-	-
150㎡ 이상 300㎡ 미만	1	16.7	243.3	0.3	-
300㎡ 이상 500㎡ 미만	-	-	-	-	-
500㎡ 이상 1,000㎡ 미만	1	16.7	697.7	0.8	-
1,000㎡ 이상	4	66.7	87,901.3	98.9	-

〈 토지규모별 현황도 〉



라. 건축물 용도 현황

- 대상지 내 건축물은 총 15동으로 공동·단독주택(12동), 근린생활시설(1동), 교육연구시설(1동), 기타(1동) 으로 나타남

구 분	동 수	구성비(%)	비고
계	15	100.0	-
공동, 단독주택	12	80.0	-
근린생활시설	1	6.6	-
교육연구시설	1	6.7	-
기타시설	1	6.7	-

〈 건축물 용도별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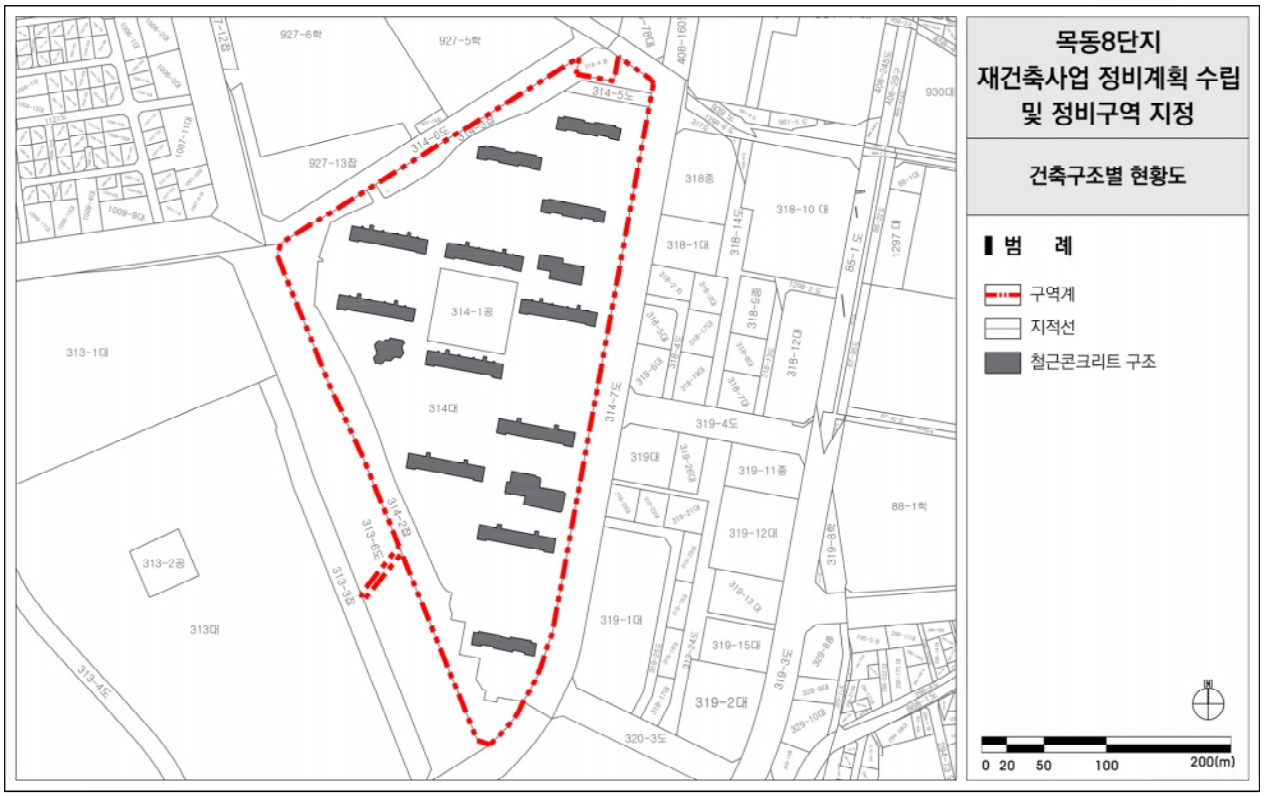


마. 건축물 구조 현황

- 대상지 내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15동(100.0%)으로 나타남

구 분	동 수	구성비(%)	비고
계	15	100.0	-
철근 콘크리트구조	15	100.0	-

〈 건축구조별 현황도 〉



바. 건축물 존치기간별 현황

• 대상지 내 건축물 존치기간별 현황은 30년 이상 14동(93.3%)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구 분	동 수	구성비(%)	비고
계	15	100.0	-
10년 이하	-	-	-
10~19년 이하	1	6.7	-
20~29년 이하	-	-	-
30~39년 이하	14	93.3	-
40년 초과	-	-	-

〈 건축물 존치기간별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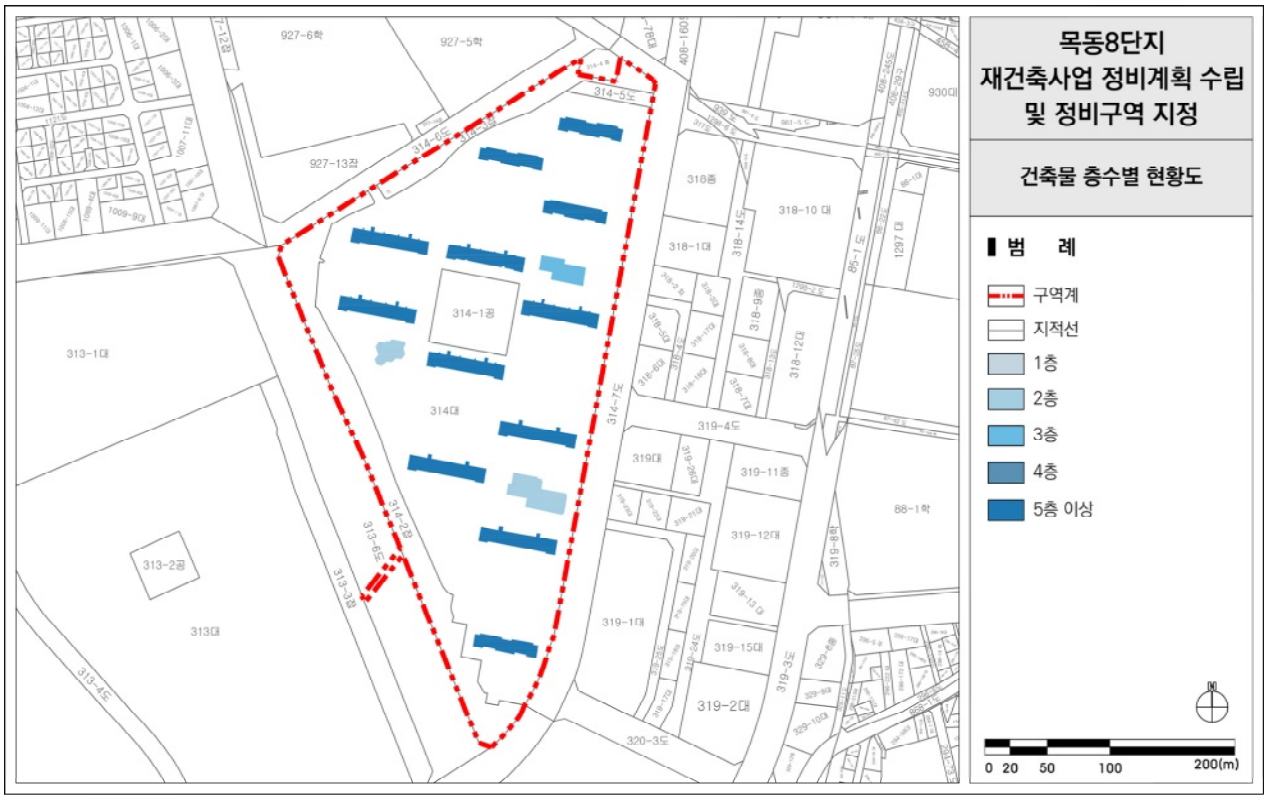


사. 건축물 층수별 현황

• 대상지 내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12동(80.0%)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구 분	동 수	구성비(%)	비고
계	15	100.0	-
1층	-	-	-
2층	2	13.3	-
3층	1	6.7	-
4층	-	-	-
5층 이상	12	80.0	-

〈 건축물 층수별 현황도 〉



5. 현황종합분석

1) 양호한 주거환경

- 상업문화중심지인 목동 중심지구와 공원, 학교와 연접하여 안전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 단지 3면 중 2면이 학교, 성당, 공공시설 등 저밀 개발부지에 인접하여 주거환경 양호

2) 기존 정비기반시설 재편을 통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계획 수립 필요

- 대상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계획 수립 필요

3) 양호한 대상지 주변 공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특성화된 공원계획 필요

- 대상지 인근 양천공원, 국회대로 상부공원 등 대규모 공원 위치
-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축 연결을 통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 기존 공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공원 계획 필요

4) 합리적인 단지 진출입동선 계획 필요

- 2개의 간선도로에 면하고 있으며, 현재 4개의 차량진출입구 운영 중
- 도로 위계 및 동선 재편에 따라 진출입 동선계획 필요

〈 현황 종합분석도〉



6. 정비기본구상

가. 개발여건 및 계획과제

- ■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 ■ 기존 정비기반시설 재편
- ■ 대상지 주변 공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특성화된 공원계획 필요
- ■ 합리적인 단지 진출입 동선 계획

나. 비전 및 목표

녹지공간 중심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목동 8단지

- ■ 도시맥락에 대응하는 가로중심의 주거단지
- ○ 가로 특성을 고려한 연도형 계획으로 가로활성화

- ■ 학교, 공원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 ○ 거점공간 및 인접단지와 연결하는 보행 및 커뮤니티 축

- ■ 다양한 풍경을 가지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
- ○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

〈 계획구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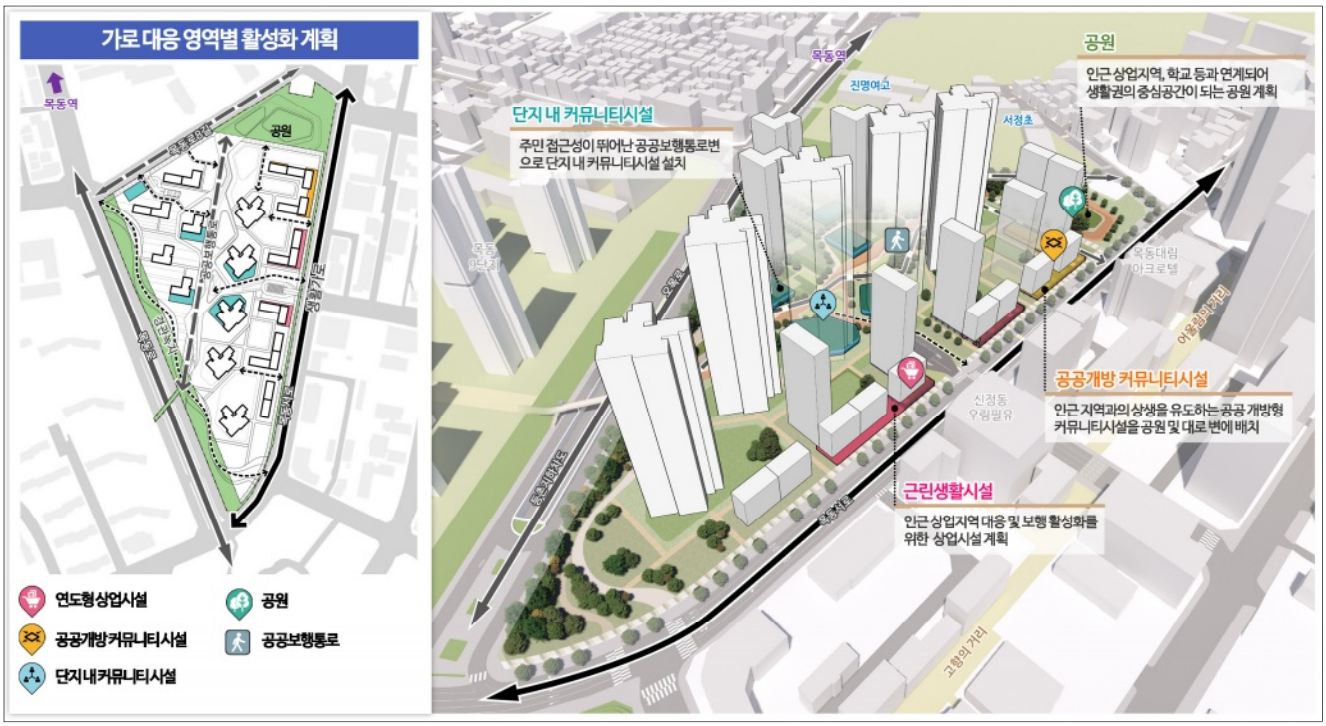


다. 전략별 세부 내용

1) 전략1 : 도시 맥락에 대응하는 가로중심의 주거단지

-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보행통로변으로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 인근 상업지역 대응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한연도형 상업시설 계획
-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유도하는 공공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공원 및 대로변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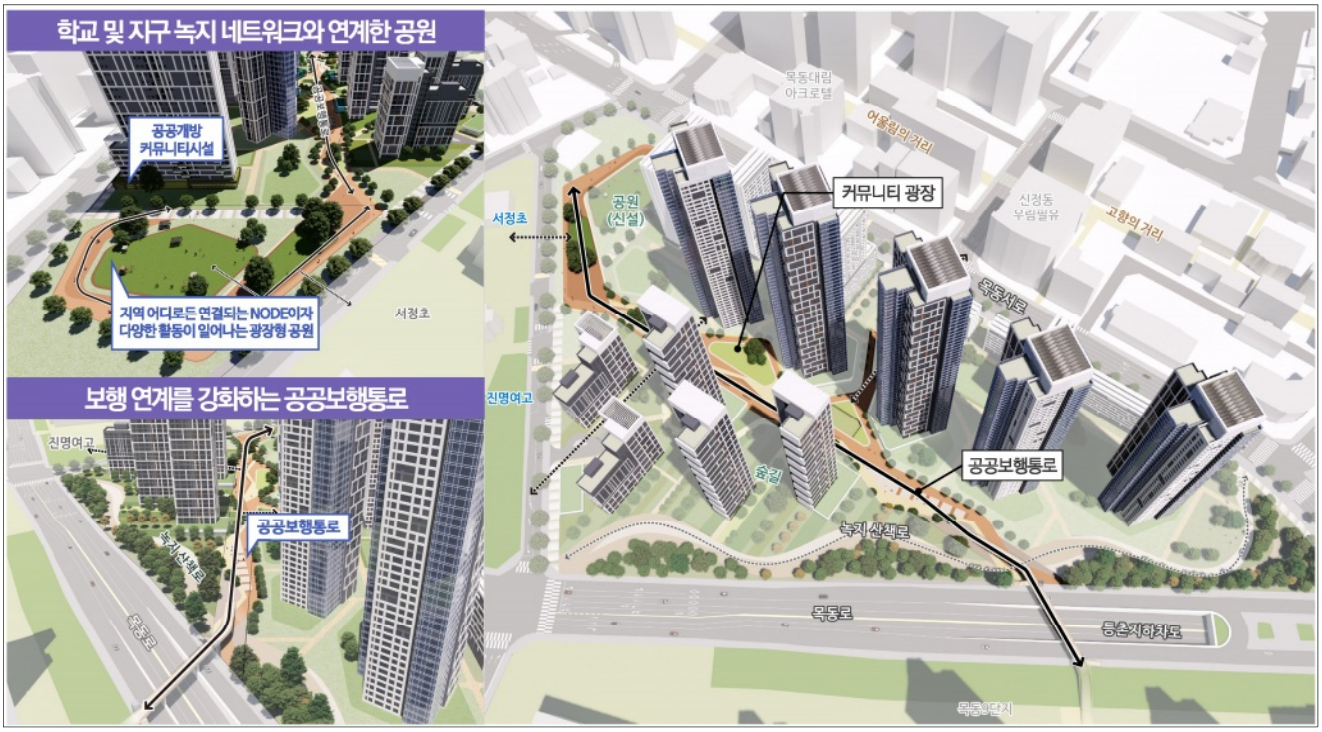
〈전략1 기본 구상도〉



2) 전략2 : 학교, 공원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 거점공간 및 인접단지와 연결하는 보행 및 커뮤니티 축
- 학교 및 지구 녹지 네트워크와 연계한 공원 설치
- 보행 연계를 강화하는 공공보행통로 배치

〈전략2 기본 구상도〉



3) 전략3 : 다양한 풍경을 가지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열린경관 형성

○ 열린 경관을 창출하는 통경축 계획

〈전략3 기본 구상도〉



4 건축계획(안)

1. 건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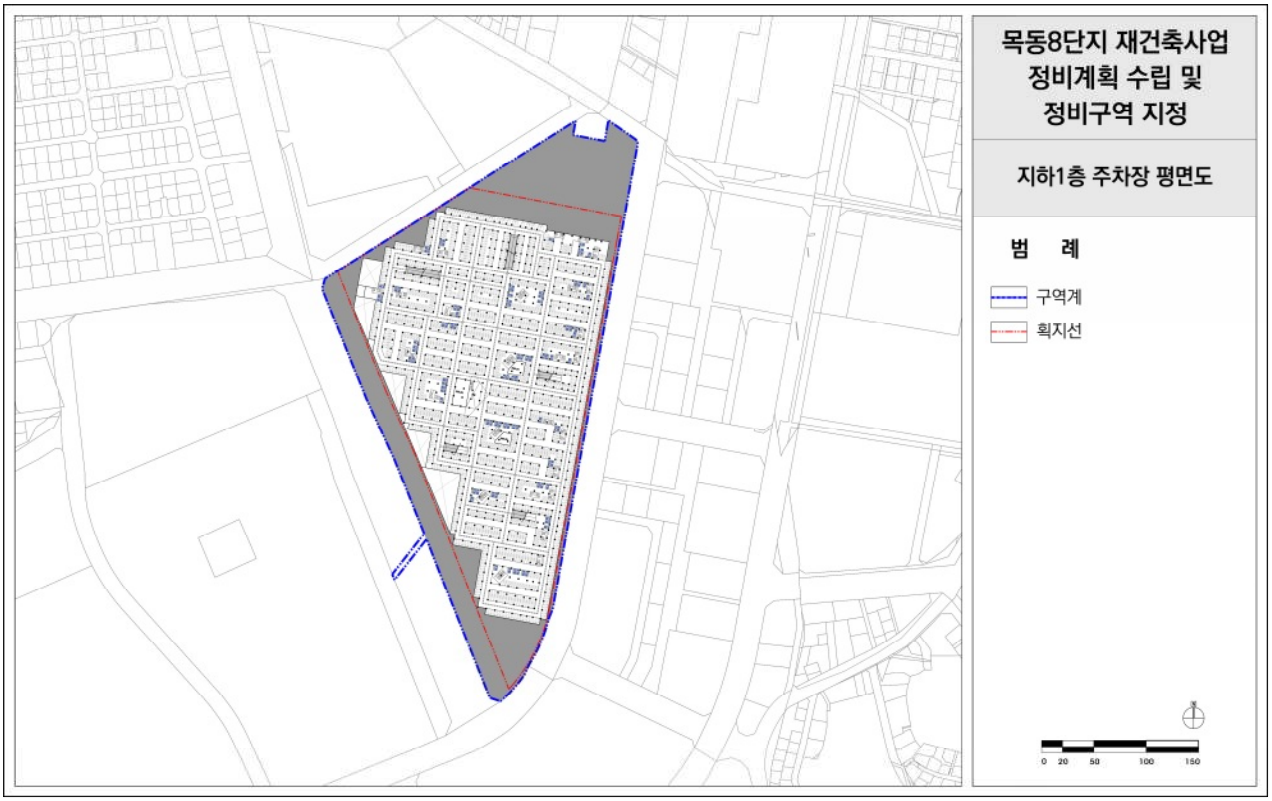
구 분		계획내용
도시관리계획 관련사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사업면적(㎡)		88,842.30㎡
대지면적(㎡)		70,493.40㎡
건축면적(㎡)		14,209.41㎡
연면적(㎡)	전체	330,732.62㎡
	지상	212,392.62㎡
	지하	118,340.00㎡
건폐율		20.16% (법정 : 50%)
용적률		299.88% (법정 : 300.00%)
건축규모		지상 49층 / 지하 2층
주차대수		2,974대 (법정 : 2,12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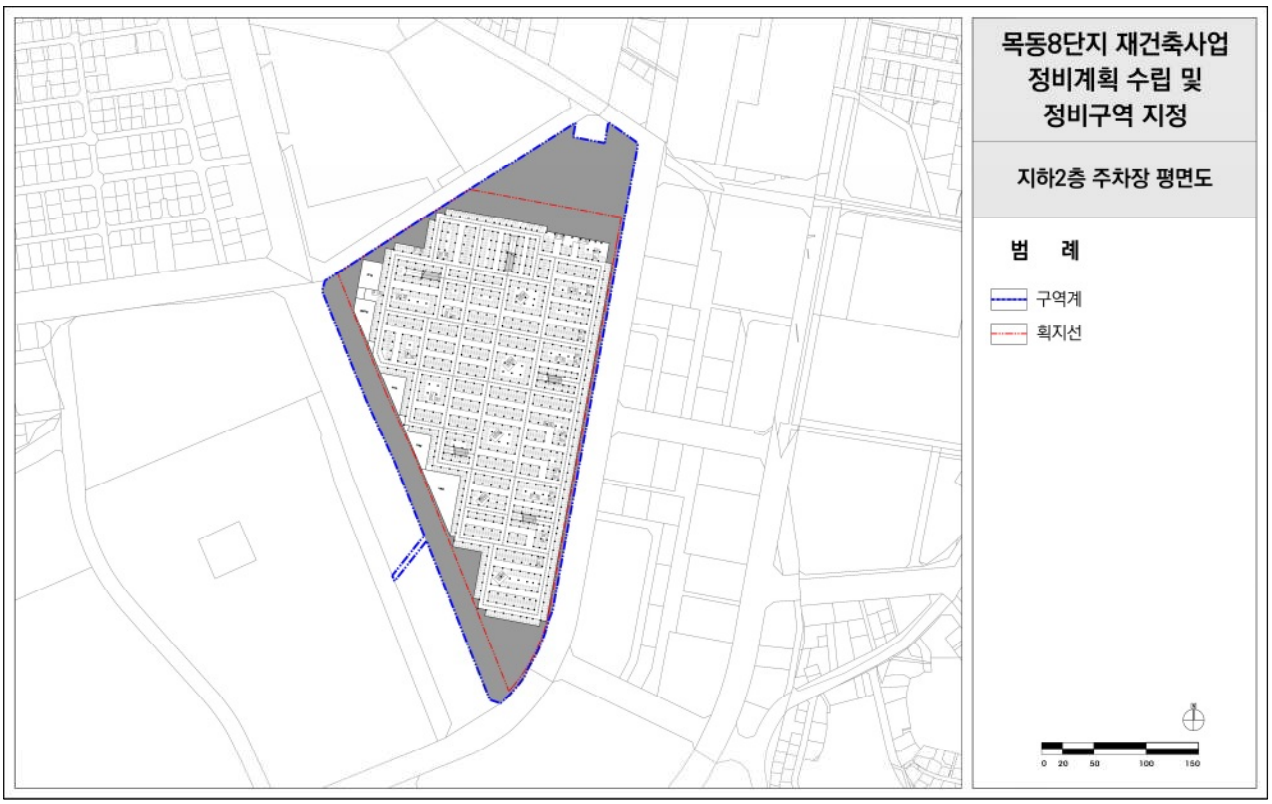
■ 배치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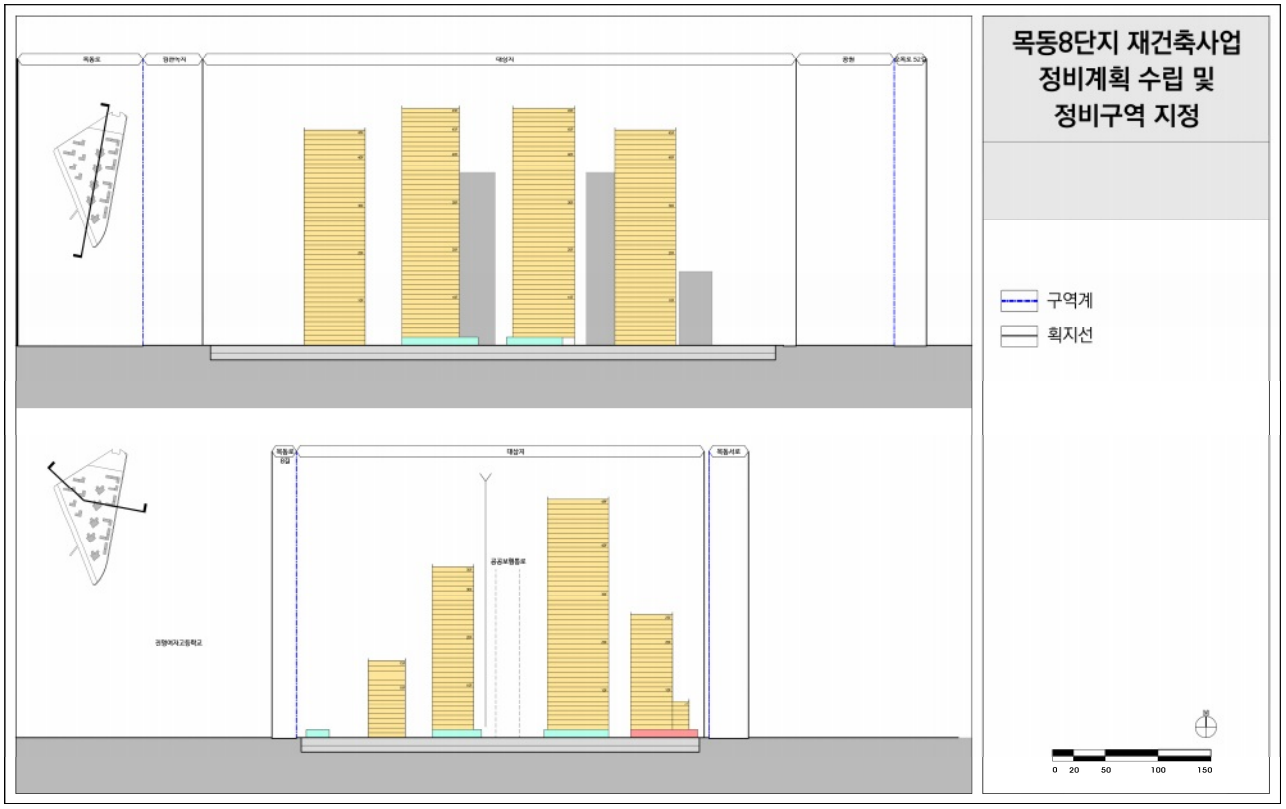
2. 관련 도면

가. 평면도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하1층 주차장 평면도
범 례
구역계
획지선
0 20 50 100 150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하2층 주차장 평면도
범 례
구역계
획지선
0 20 50 100 150

나. 단면도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역계
획지선
0 20 50 100 150

다. 조감도


서울 남부지법
서울 남부지검
진명여고
서정초
목동8단지
35F
49F
45F
42F
25F
7F
목동로8길
공원(신설)
목동서로
국회대로
경인고속도로


양천공원
양천구청
42F
양천공원
45F
49F
49F
45F
35F
25F
35F
35F
25F
목동9단지
목동서로
목중로
경관녹지
15F
15F
공원(신설)
서울 남부지검
목동로8길
서정초
진명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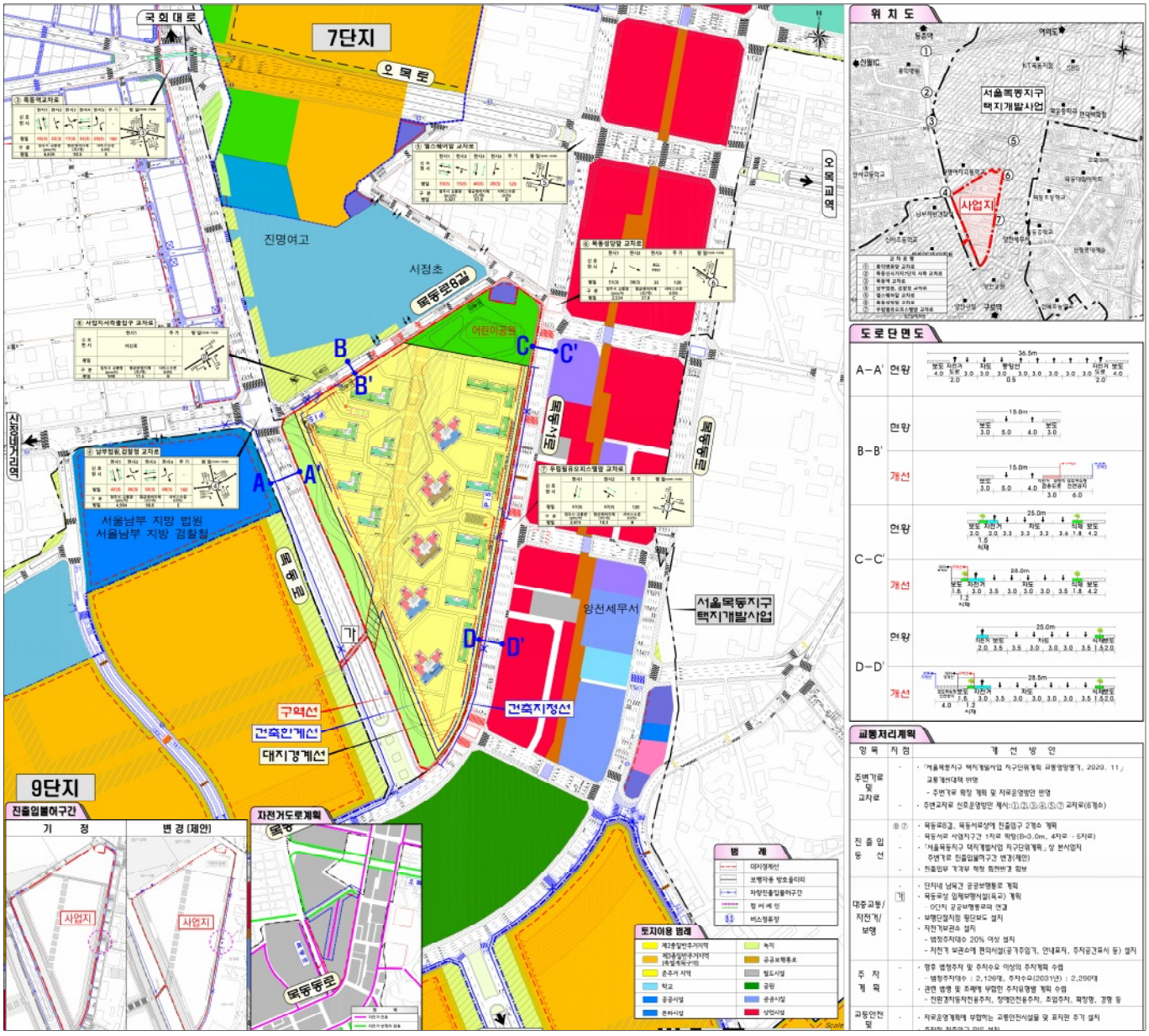
5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계획

항 목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11」 교통개선대책 반영 - 주변가로 확장 계획 및 차로운영방안 반영
	-	• 주변교차로 신호운영방안 제시:①,②,③,④,⑤,⑦교차로(6개소)
진출입 동 선	Ⓑ,⑦	• 목동로8길, 목동서로상에 진출입구 2개소 계획
	-	• 목동서로 사업지구간 1차로 확장(B=3.0m, 4차로→5차로)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상 본사업지 주변가로 진출입불허구간 변경(제안)
	-	• 진출입구 가각부 적정 회전반경 확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	• 단지내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계획
	㉮	• 목동로상 입체보행시설(육교) 설치 - 9단지 공공보행통로와 연결
	-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 20% 이상 설치 - 자전거보관소에 편의시설(공기주입기, 안내표지, 주차공간표시 등) 설치
주 차 계 획	-	• 향후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이상의 주차계획 수립 - 법정주차대수 : 2,126대, 주차수요(2031년) : 2,290대
	-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한 주차유형별 계획 수립 - 친환경자동차전용주차, 장애인전용주차, 조업주차, 확장형, 경형 등
교통안전 및 기타	-	• 차로운영계획에 부합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추가 설치
	-	• 주차장 진출입구 PIS 설치

주: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교통처리계획도〉


7단지
9단지
국회대로
오목로
오목교역
목동로8길
목동중로
목동동로
진명여고
시정초
어린이공원
서울남부 지방 법원
서울남부 지방 검찰청
양천세무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선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
건축지정선
A
A'
B
B'
C
C'
D
D'
가
위 치 도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지
도로단면도
A-A'
B-B'
C-C'
D-D'
현황
개선
교통처리계획
범 례
토지이용 범례
진출입불허구간
자전거도로계획
기 정
변 경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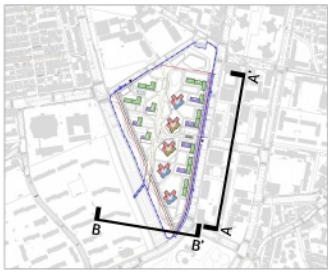
6 경관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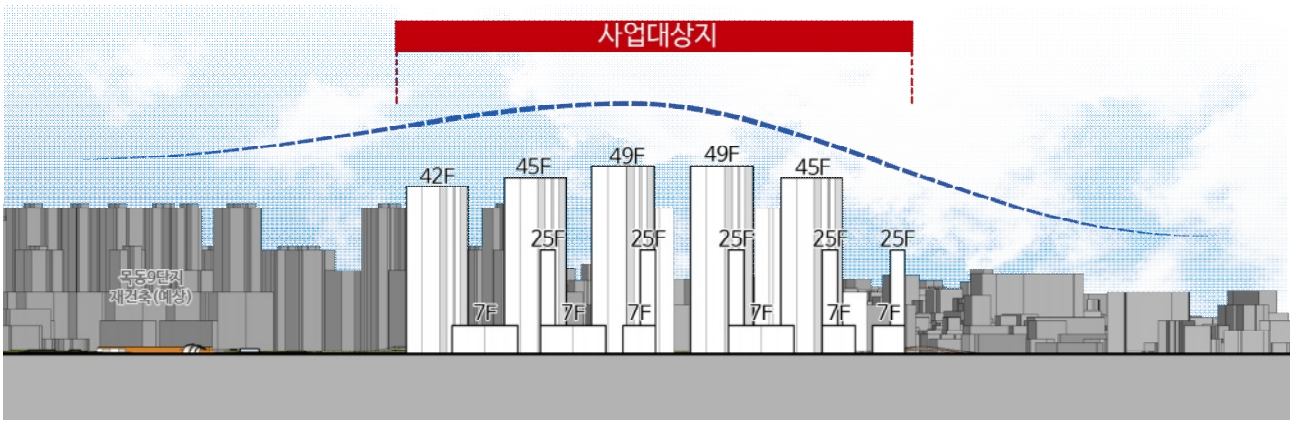
- 대상지 건축물과 일부 중첩되어 조망되는 인근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등과의 조화로운 경관 계획
- 대상지 남측에 있는 양천공원과 목동로에 연접한 완충녹지와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 저층부 가로활성화 시설과 연계되는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조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경관 계획
- 일대 개발 및 지역의 변화를 고려하여 위상에 걸맞은 경관 계획

2.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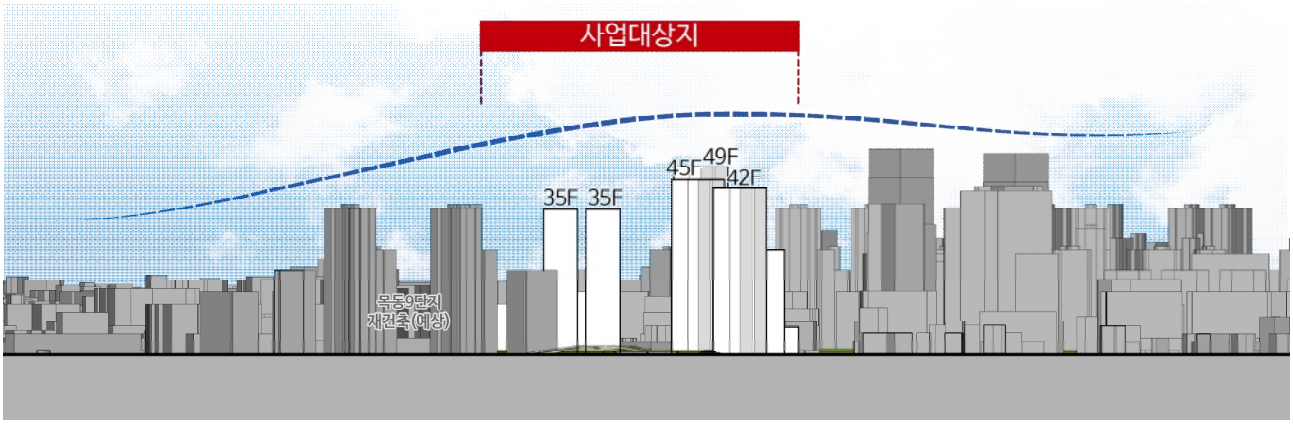
가. 스카이라인



1) A-A'



2) B-B'



나. 경관 시뮬레이션



① 양천구의회 앞 (근경 약 150m)





② 서울남부지법 앞 (근경, 약 250m)





③ 목동역교차로 (중경 약 500m)





④ 목동13단지교차로 (중경 약 600m)





② 신정교 (원경 약 1.25km)





7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2.20%

⇒ (2,935,714,226천원 - 1,108,796,150천원) ÷ 1,787,506,807천원 × 100 ≒ 102.20%

-총 수입 추정 : 2,935,714,226천원

-총 지출 추정 : 1,108,796,150천원

-종전자산총액 추정 : 1,787,506,807천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 국토교통부실거래가, 매도호가 및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되, KB부동산시세에 중점을 두어 감정평가사의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상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가전례 및 아파트 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약식추정함

구분		전유면적 (㎡)	공급면적 (㎡)	대지지분 (㎡)	세대수 (호수)	형별 평균가격 (천원)	추정금액 (천원)	비고
아파트	전용 54.94㎡	54.94	76.77	41.85	834	1,195,255	996,843,000	-
	전용 71.77㎡	71.77	98.70	54.68	278	1,489,464	414,071,000	-
	전용 92.90㎡	92.90	112.56	70.77	8	1,629,750	13,038,000	-
	전용105.35㎡	105.35	127.64	80.26	232	1,879,818	436,118,000	-
	소계	92,832.67	124,428.77	71,408.30	1,352	1,375,791	1,860,070,000	-
상가	상가동(1층)	620.57	692.50	381.21	(17)	1,123,235	19,094,986	국공유지 제외
	상가동(2층)	574.8	846.83	538.65	(15)	670,400	10,056,000	
	유치원동	633.36	670.3	960.21	(2)	6,191,000	12,382,000	-
	소계	1,828.73	2,332.98	1,880.07	(34)	7,101,968	41,532,986	-
종전자산추정계(1)		94,661.40	126,761.75	73,288.37	1,352(34)	8,477,759	1,901,602,986	-
종전자산추정계(2)		현금청산(5%가정)					114,096,179	-
비례율적용 종전자산계		(1)-(2)					1,787,506,807	-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산정방식=권리자분양가추정액-(종전자산추정액×추정비례율)

권리자분양가추정액(평균값)		추정권리가액	추정분담금(a-b)
전용54.94㎡	1,195,255	개별종전자산추정액 × 추정비례율(102.20%)	권리자분양가추정액 -추정권리가액 (+:부담/-:환급)
전용71.77㎡	1,489,464		
전용92.90㎡	1,629,750		
전용105.35㎡	1,879,818		
근생(1층, 17호)	1,123,235		
근생(2층, 15호)	670,400		
유치원(2호)	6,191,00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계산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 비례율 : (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 사업비(총지출액))
÷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조합원 총재산) = (A - B) ÷ C = 102.20%.

○ 총 수입 : A

구분		공급세대	공급면적	3.3㎡당 분양단가(천원)	세대별 분양금액(천원)	분양수입 (천원)	비고
공동주택소계		1,881	-	-	-	2,918,384,269	
조합원 분양	59.99	178	81.6	51,750	1,277,184	227,338,769	
	74.99	250	102.0	51,750	1,596,533	399,133,337	
	84.99	530	115.6	51,750	1,809,433	958,999,410	
	99.99	200	136.0	51,750	2,128,782	425,756,420	
	110.99	150	150.9	51,750	2,362,972	354,445,732	
일반 분양	59.99	101	81.6	57,500	1,419,093	143,328,437	
	74.99	37	102.0	57,500	1,773,926	65,635,259	
	84.99	80	115.6	57,500	2,010,481	160,838,475	
	99.99	32	136.0	57,500	2,365,313	75,690,030	
	110.99	30	150.9	57,500	2,625,524	78,765,718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59.99	184	81.6	5,332	131,840	24,258,543	
	74.99	13	102.0	5,328	164,690	2,140,970	
	84.99	11	115.6	5,328	186,652	2,053,169	
기부채납 임대주택	59.99	69	81.6	-	-	-	
	84.99	16	115.6	-	-	-	
근린생활시설		-	2,697.6	13,500	-	36,417,257	
부가가치세 수입차감액		-	-	-	-	-19,087,300	
총 수입		-	-	-	-	2,935,714,226	

※ 신축아파트의 면적기준 및 단가는 공급면적 기준이며, 신축 근린생활시설은 계약면적 기준임

※ 임대주택 분양단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표준건축비에 건축비 가산항목(지하층, 발코니 샷시 일괄시공)을 합산한 금액임

※ 소수점 이하 계산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 B

항목	금액(천원)	비고
공사비	800,372,933	-
보상비	114,096,179	현금청산(5%)
관리비	6,900,792	-
설계비	9,726,327	-
감리비	19,068,002	-
부대경비	93,733,773	-
예비비	64,898,144	-
총 사업비	1,108,796,150	-

※ 소수점 이하 계산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조합원 종전자산가격 : C

조합원 종전자산가격 : 아파트·상가·유치원 종전자산가격 - 현금청산추정계

= 1,901,602,986 - 114,096,179

= 1,787,506,807

가. 아파트 추정분담금

구분		기존 54.94㎡형	기존 71.77㎡형	기존 92.90㎡형	기존 105.35㎡형
종전자산추정가격(천원)		1,195,255	1,489,464	1,629,750	1,879,818
추정권리가액(천원) (비례율: 102.20%)		1,221,551	1,522,232	1,665,605	1,921,174
추정분담금(천원) (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전용 59.99㎡ (분양가 추정 1,277,184천원)	55,633	-245,048	-388,420	-643,990
	전용 74.99㎡ (분양가 추정 1,596,533천원)	374,983	74,301	-69,071	-324,641
	전용 84.99㎡ (분양가 추정 1,809,433천원)	587,882	287,201	143,828	-111,741
	전용 99.99㎡ (분양가 추정 2,128,782천원)	907,231	606,550	463,178	207,608
	전용 110.99㎡ (분양가 추정 2,362,972천원)	1,141,421	840,739	697,367	441,798

나. 상가 추정분담금

구분			1층 (17개호 평균)	2층 (15개호 평균)
종전자산 평균 계약면적(㎡)			40.73	65.1
종전자산 평균 추정가액(천원)			1,123,235	670,400
추정권리가액 (비례율: 102.20%)			1,147,946	685,149
추정분담금	계약면적(㎡)	분양단가 (천원/계약3.3㎡)	추정분담금(천원) (※ 추정분담금 = 종전자산과 동일한 면적 분양신청 시 신축 상가분양가 - 종전자산 유형별 호당 평균 권리가액)	
	종전자산 평균 계약면적	44,630	-597,104	195,279

※ 아파트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설계 상 분양호수가 구체화되지 않은 점, 상가 조합원의 상가 분양 선호도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체 근린생활시설 분양분을 일반분양가로 산정함

※ 상가의 추정분담금은 종전자산 상가 유형별 호당 평균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유형별 호당 평균 계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종후자산 상가를 분양 신청할 경우를 가정하여 분담금을 추정하였음

※ 상기 추정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안)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정책 변경, 감정평가 결과, 조합원 분양신청, 부동산시장 동향 등으로 본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가정 또는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정분담금도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분담금 중 (+)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
※ 상기 추정분담금에는 재건축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추정액은 약식 감정평가금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 상기 금액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관련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됨
※ 상가의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방식 및 설계의 구체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큼

3.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별첨)

Ⅵ

관련도면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계

SCALE = 1 : 6,500

0 50 100 200 400 800m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계

SCALE = 1 : 6,500

0 50 100 200 400 800m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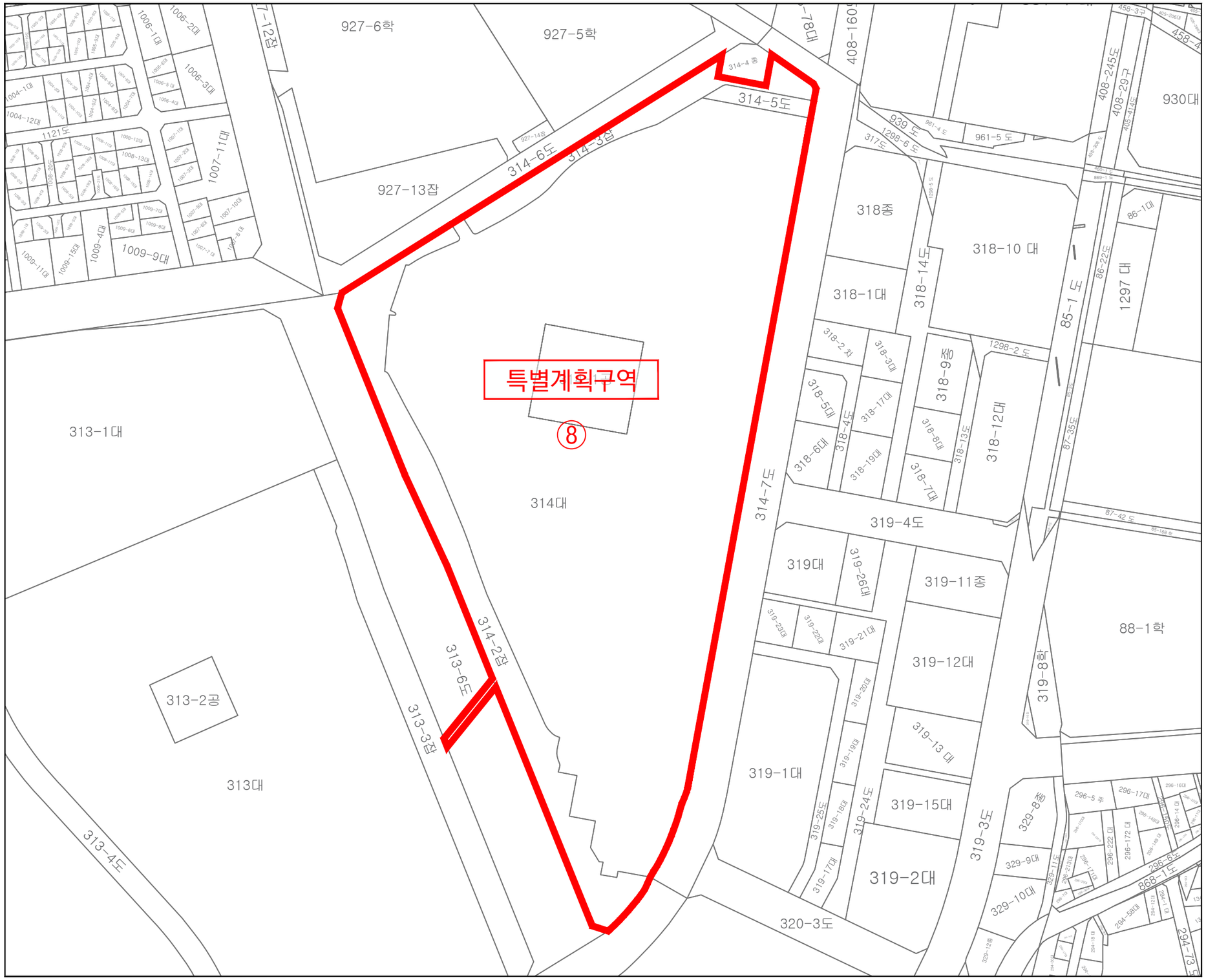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N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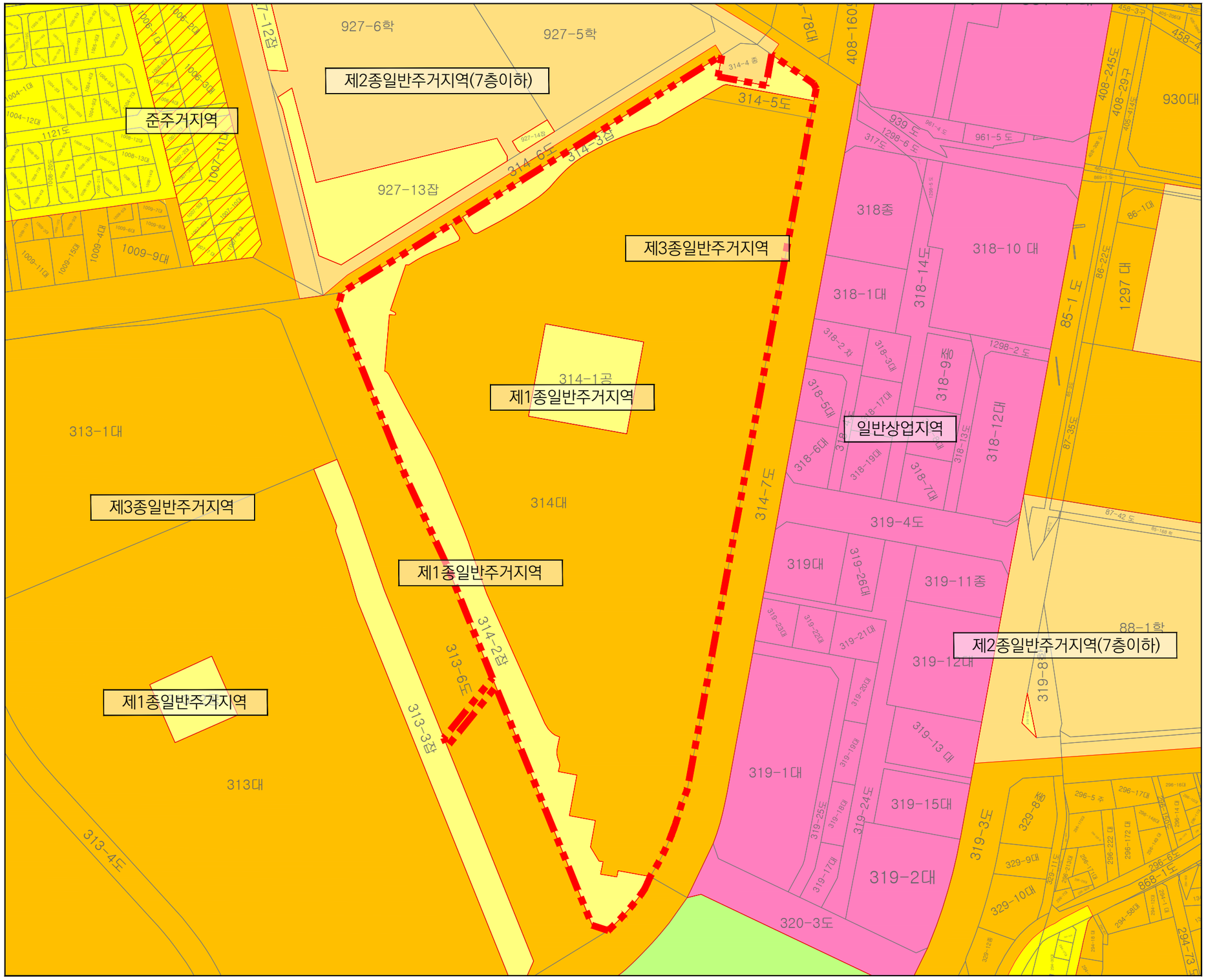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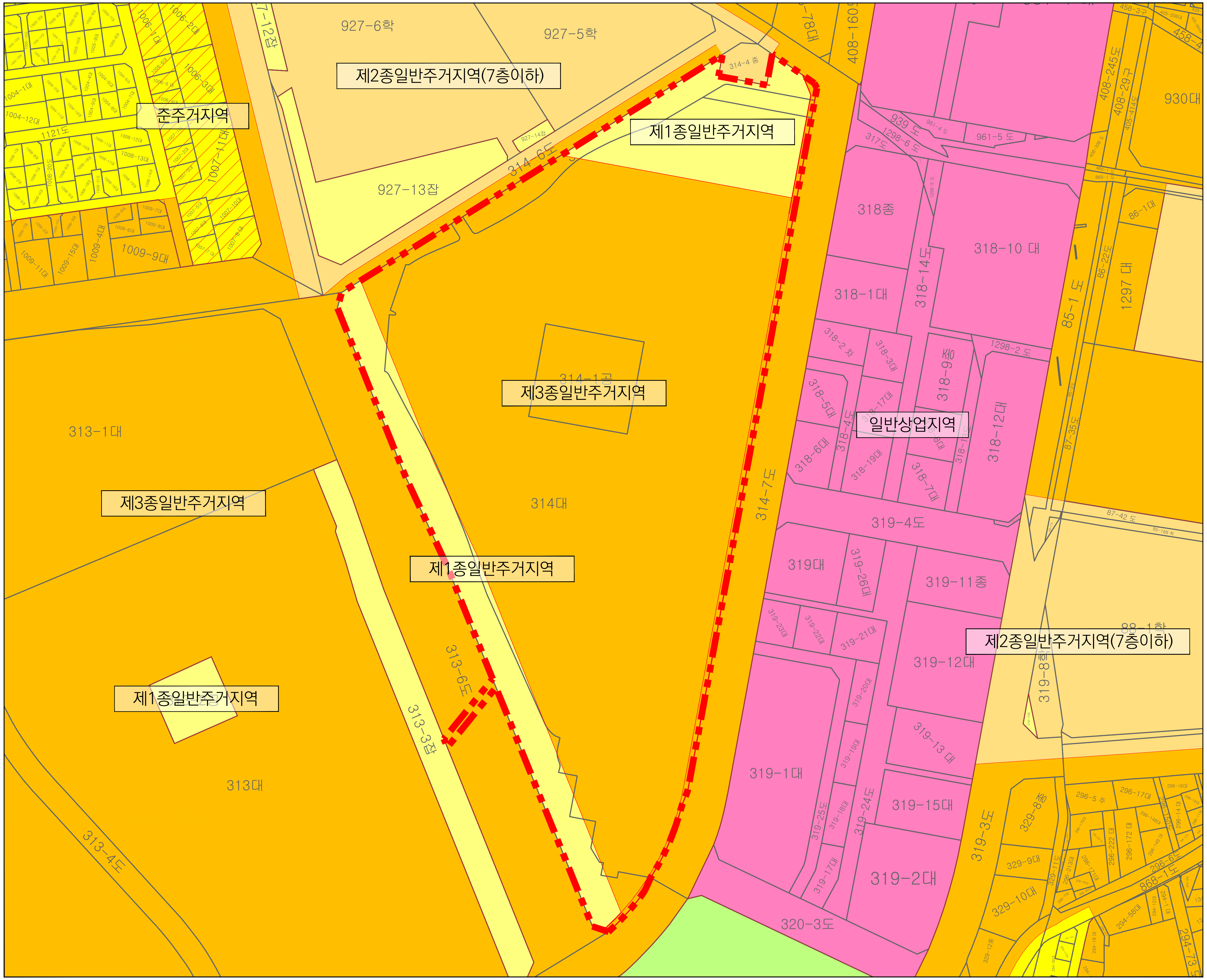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도로
- 공원
- 녹지
- 학교
- 주차장
- 그 외 도시계획시설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도로
- 공원
- 녹지
- 학교
- 주차장
- 그 외 도시계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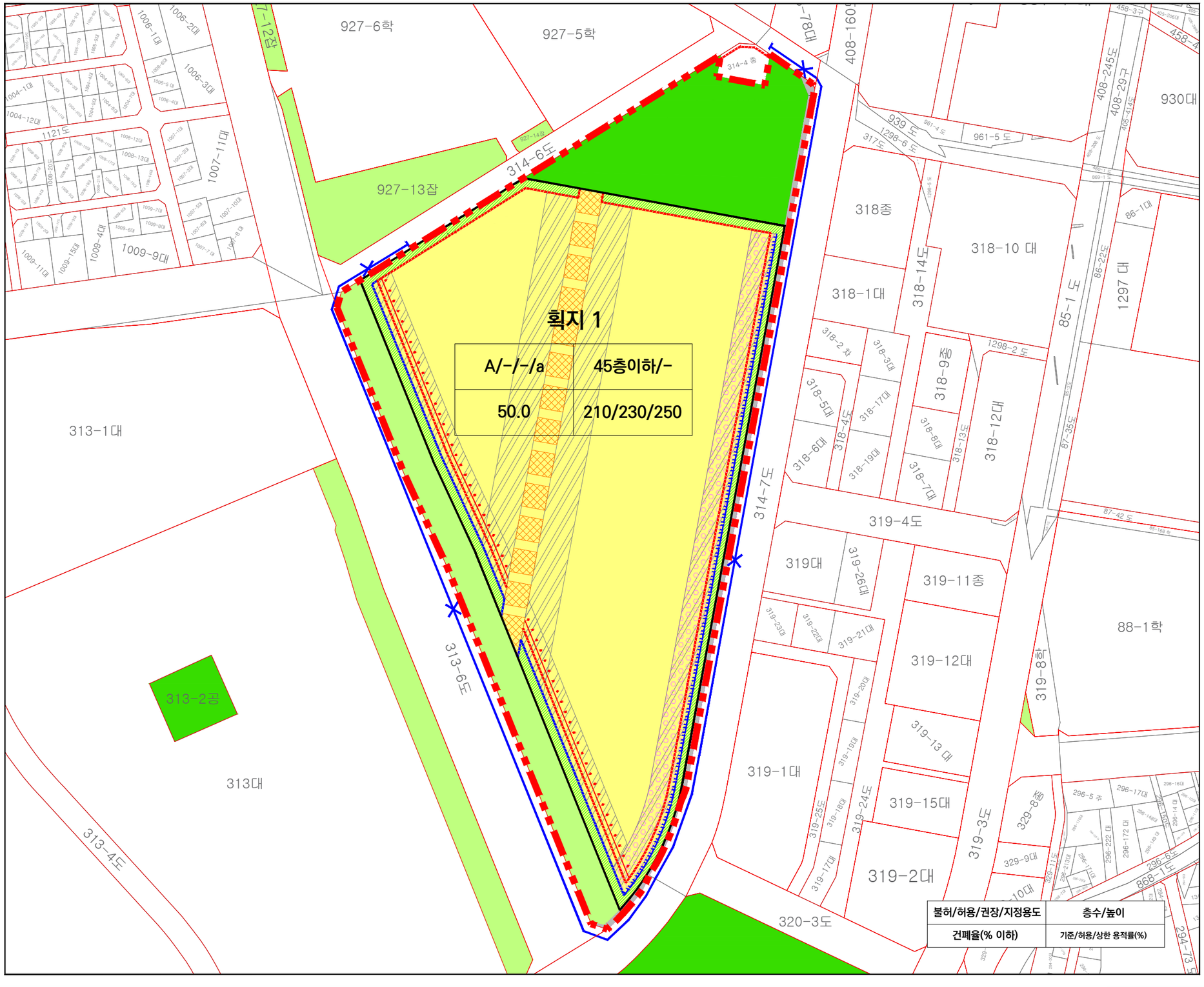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정)도



불허/허용/권장/지정용도	층수/높이
건폐율(% 이하)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부대복리시설)
- 저층부 건축지정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저층 배치구간(7층)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공동주택)
- 공원
- 녹지
- 구역내 도로
-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 차량출입불허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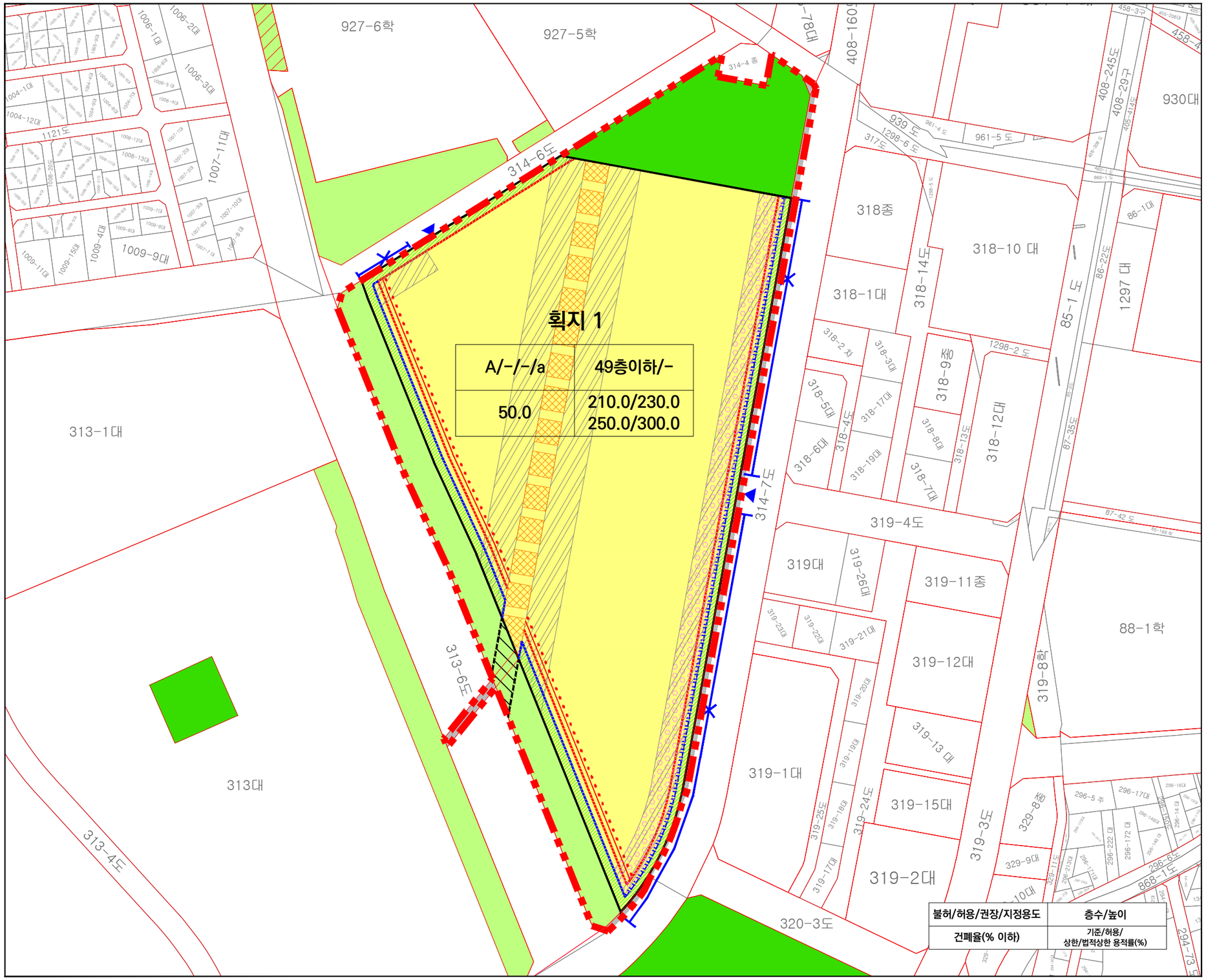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부대복리시설)
- 저층부 건축지정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저층 배치구간(7층)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공동주택)
- 공원
- 녹지
- 녹지 내 보행로 조성구간
- 구역내 도로
-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진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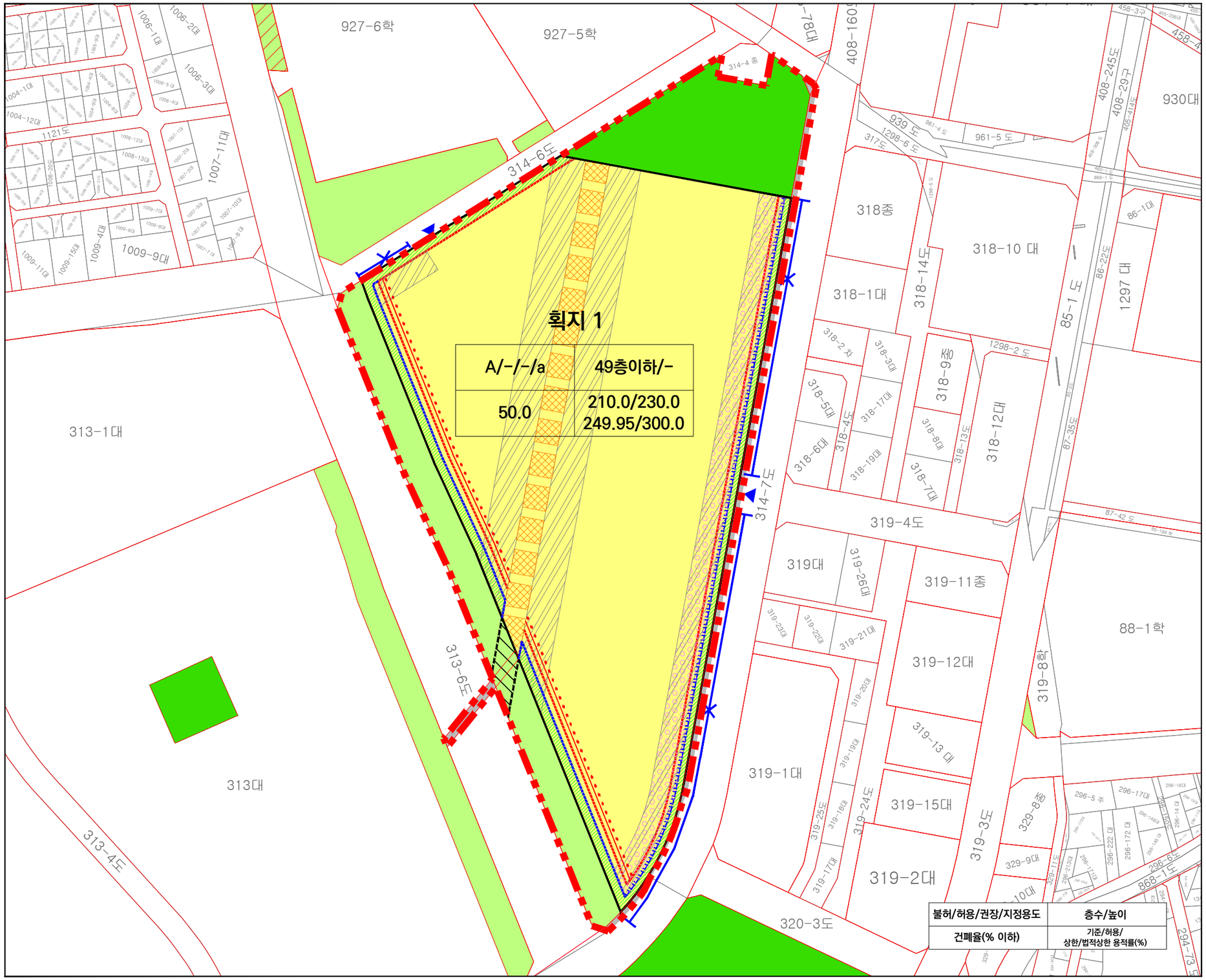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부대복리시설)
- 저층부 건축지정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저층 배치구간(7층)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공동주택)
- 공원
- 녹지
- 녹지 내 보행로 조성구간
- 구역내 도로
-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진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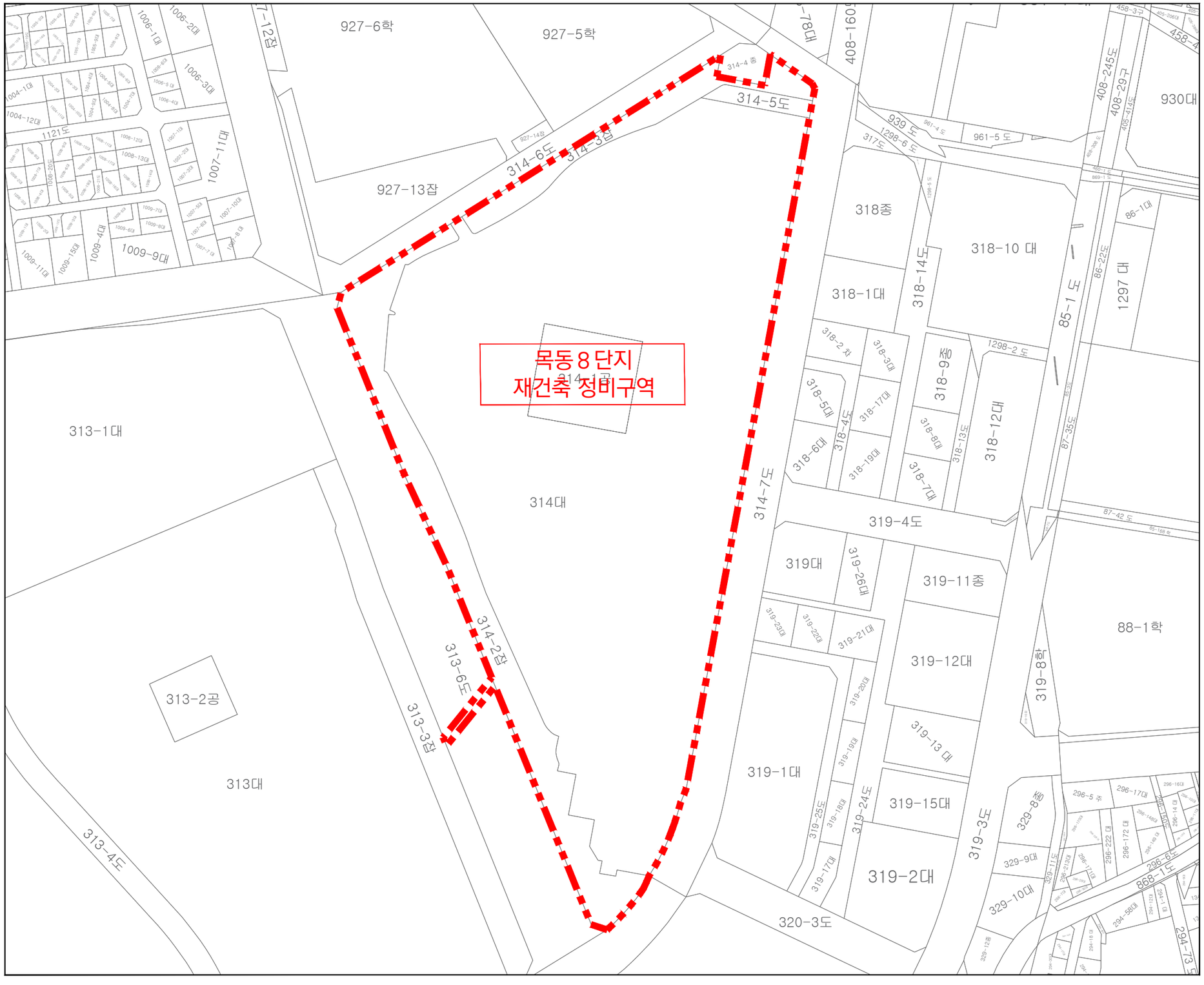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결정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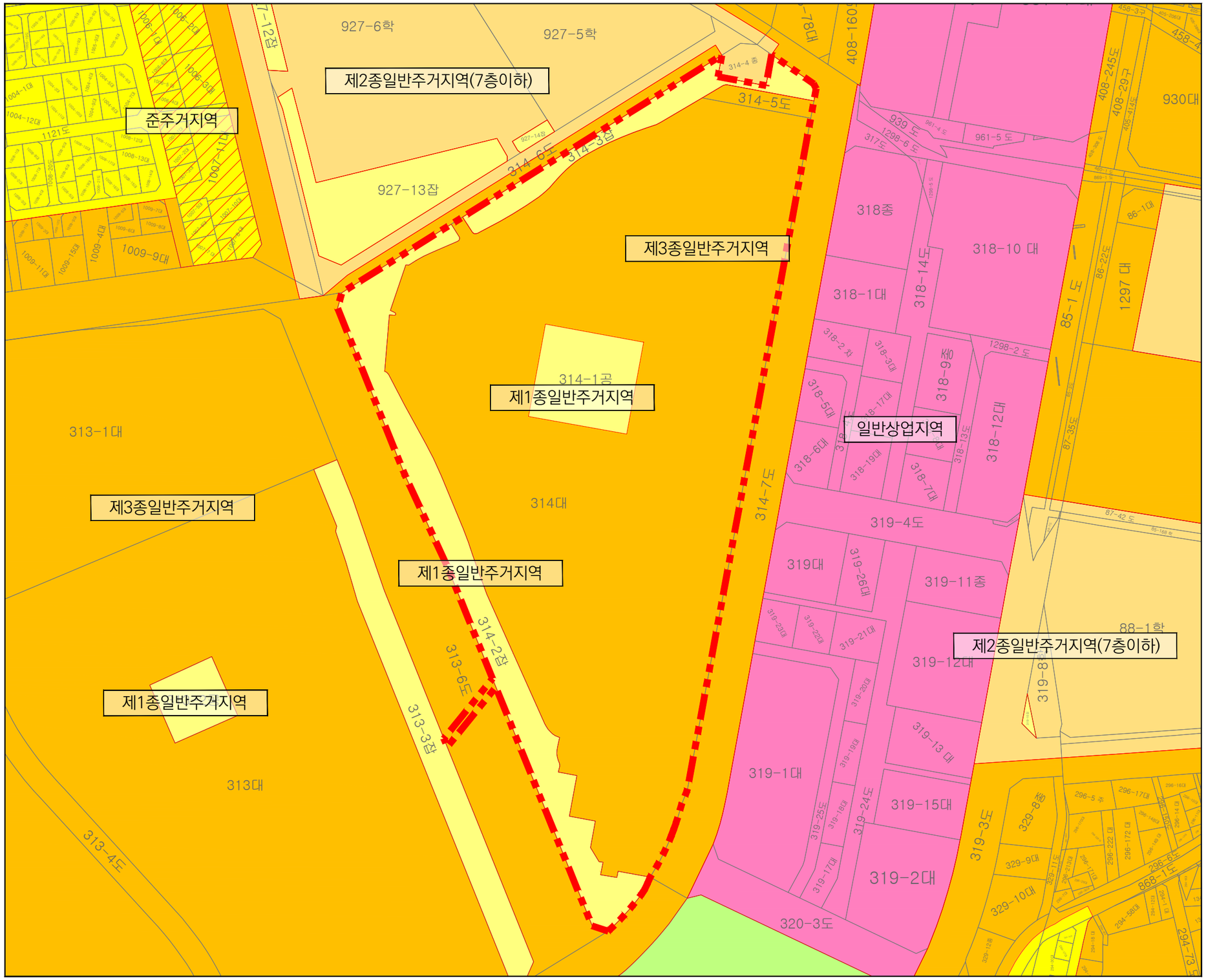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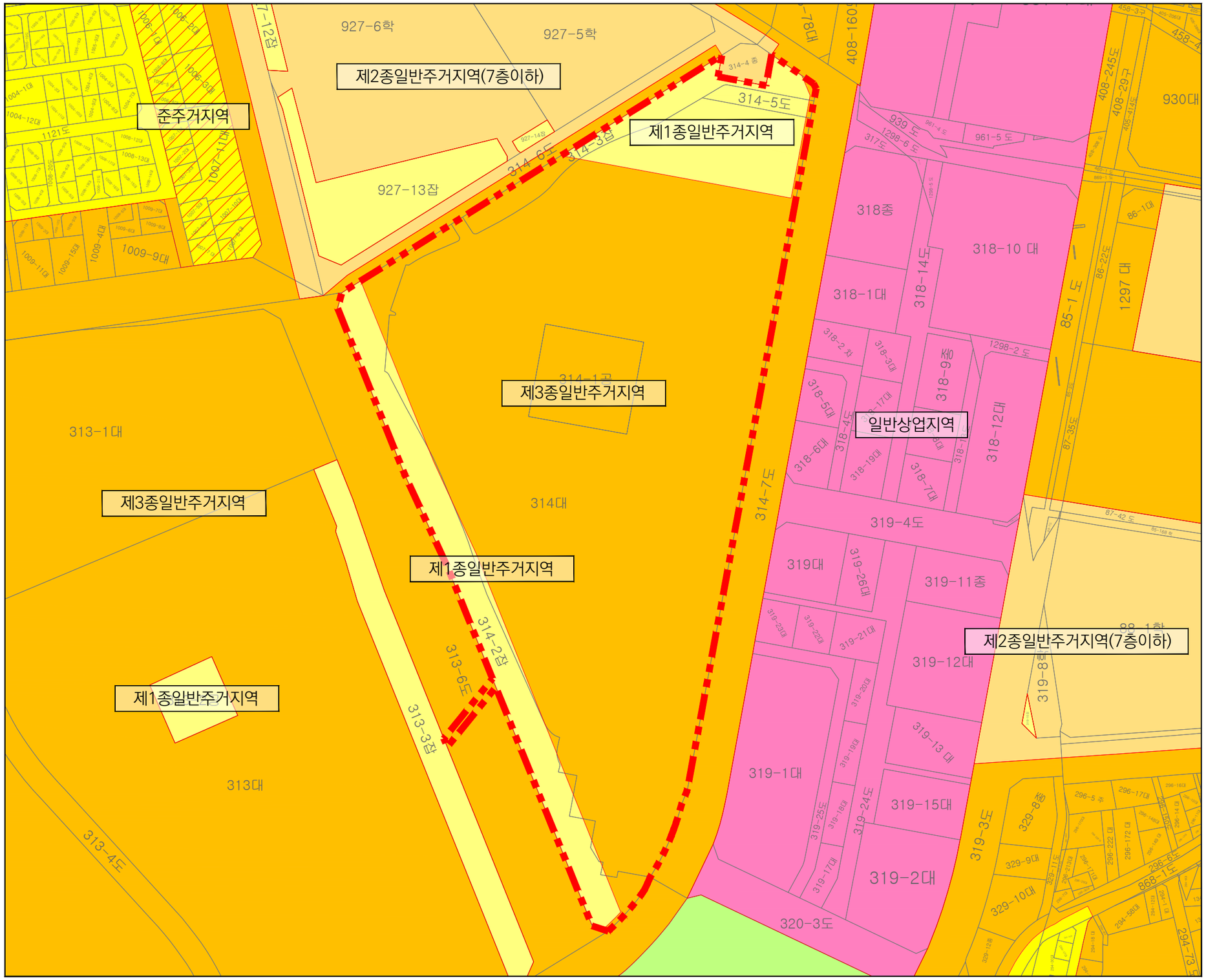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도(기정)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도로
- 공원
- 녹지
- 학교
- 주차장
- 그 외 도시계획시설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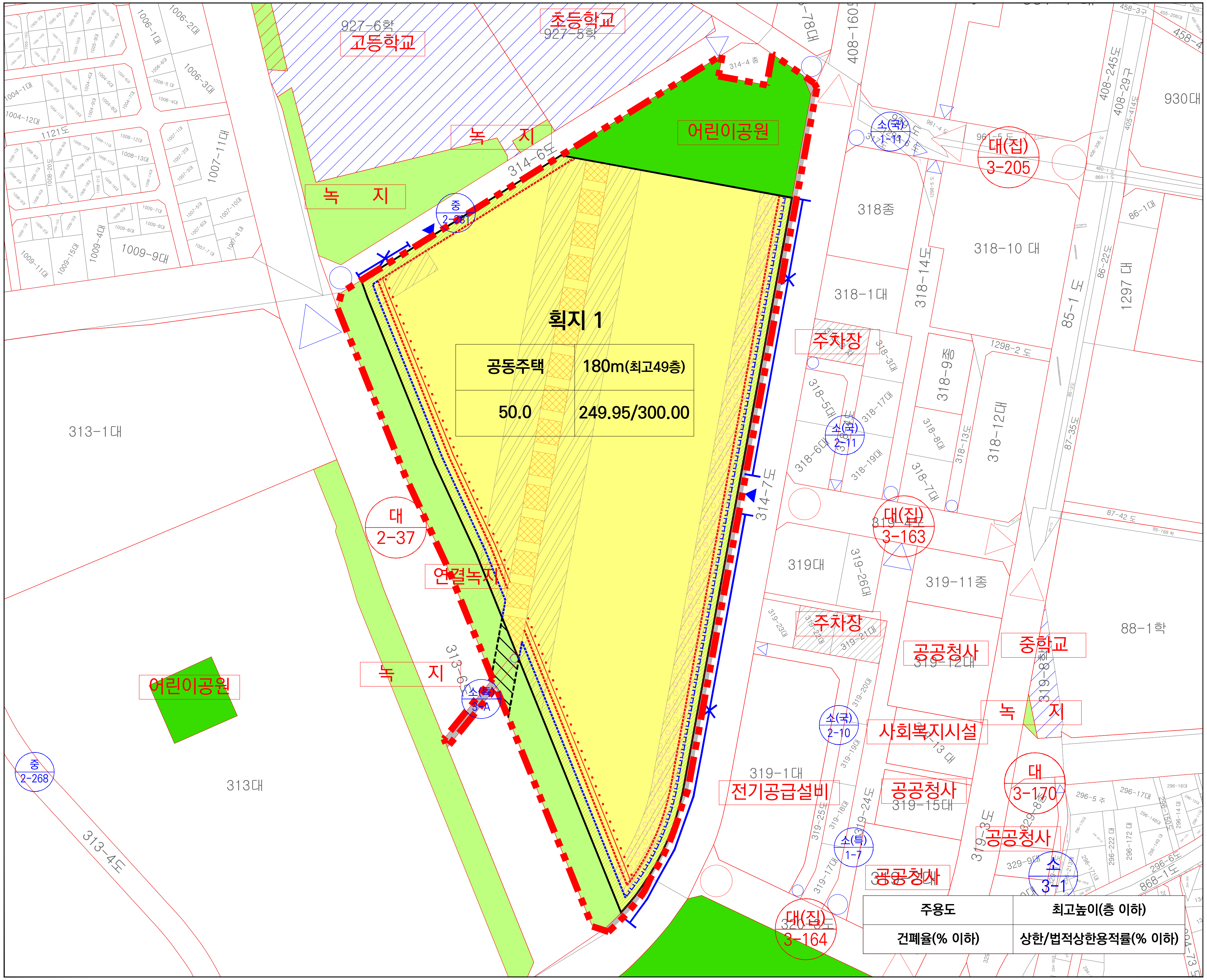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도로
- 공원
- 녹지
- 학교
- 주차장
- 그 외 도시계획시설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도

범 례

- 구역계
- 지적선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부대복리시설)
- 저층부 건축지정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저층 배치구간(7층)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공동주택)
- 공원
- 녹지
- 녹지 내 보행로 조성구간
- 구역내 도로
-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진출입구

N

Scale = 1:2,500

0 20 50 100 200(m)

Ⅶ

교통성 검토서

목동 8단지 정비계획 수립
교통성검토서

2025. 01.

목 차

제1장 서 론 ····· 3

1.1 위치도 ····· 3

1.2 사업내용 ····· 4

1.3 건축 세부계획 ····· 5

제2장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 ····· 8

2.1 교통시설 현황 ····· 8

2.2 교통소통 현황 ····· 21

2.3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 36

2.4 교통관련 및 시설계획 ····· 46

제3장 장래 교통수요 예측 ····· 70

3.1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70

3.2 사업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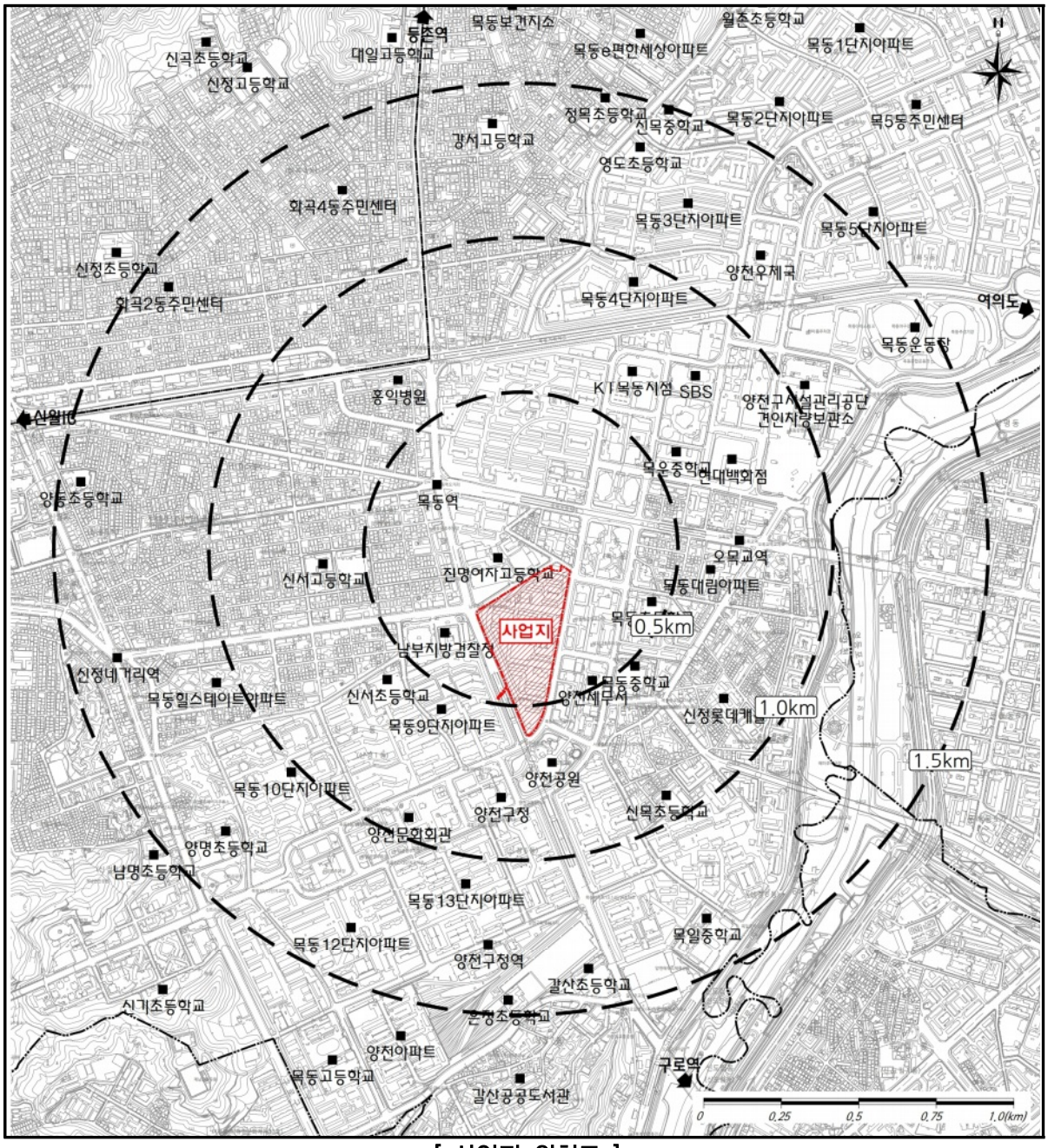
3.3 주차수요예측 ····· 102

제4장 교통처리계획 ····· 107

제1장 서 론

1.1 위치도

◦ 본 사업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가로망으로는 사업지 북측에는 오목로(4~10차로, 34~40m), 국회대로(7~10차로, 35~40m)가 동서방향을 연결하고 있으며, 동측과 남측에는 목동서로(4~5차로, 20~25m), 서측에는 목동로(6~10차로, 30~40m)가 접하고 있음.



[사업지 위치도]

1.2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 본 사업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동8단지 재건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목동 8단지 정비계획수립													
사 업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													
사 업 기 간		2023년~2030년													
지 역 · 지 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 용 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70,493.40㎡													
건 축 면 적		14,209.41㎡													
연 면 적		330,732.62㎡													
건 폐 율		20.16% (법정50%)													
용 적 율		250.10% (법정300%)													
사업규모	층 수	지하2층~지상45층													
	세 대 수	1,881세대													
주 차	법 정 주 차	2,126대													
	주 차 수 요	2,290대(2031년, 원단위법)													
구 분		2031년							2033년						
		승용차		택시		합계			승용차		택시		합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현황유지시	주변가로첨두시(대/시)	19	382	4	55	23	437	460	20	408	5	61	25	469	494
	1일발생교통량(대/일)	1,606	1,606	291	291	1,897	1,897	3,794	1,705	1,705	309	309	2,014	2,014	4,028
정비계획 완료시	주변가로첨두시(대/시)	25	541	5	78	30	619	649	26	583	5	85	31	668	699
	1일발생교통량(대/일)	2,269	2,269	408	408	2,677	2,677	5,354	2,415	2,415	432	432	2,847	2,847	5,694
순수발생량	주변가로첨두시(대/시)	6	159	1	23	7	182	189	6	175	0	24	6	199	205
	1일발생교통량(대/일)	663	663	117	117	780	780	1,560	710	710	123	123	833	833	1,666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첨두시는 08:00~09:00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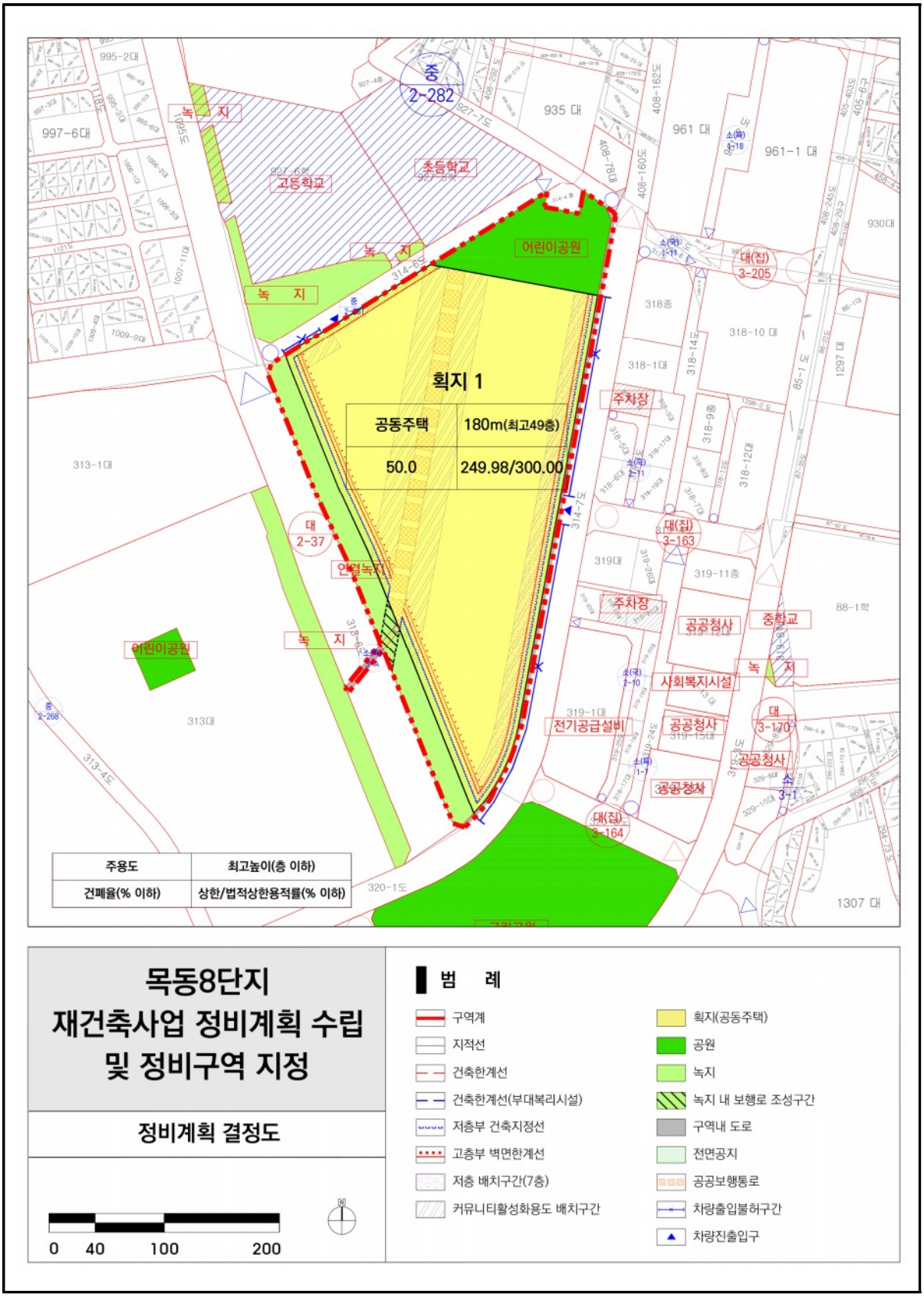
1.3 건축 세부계획

[용도별 면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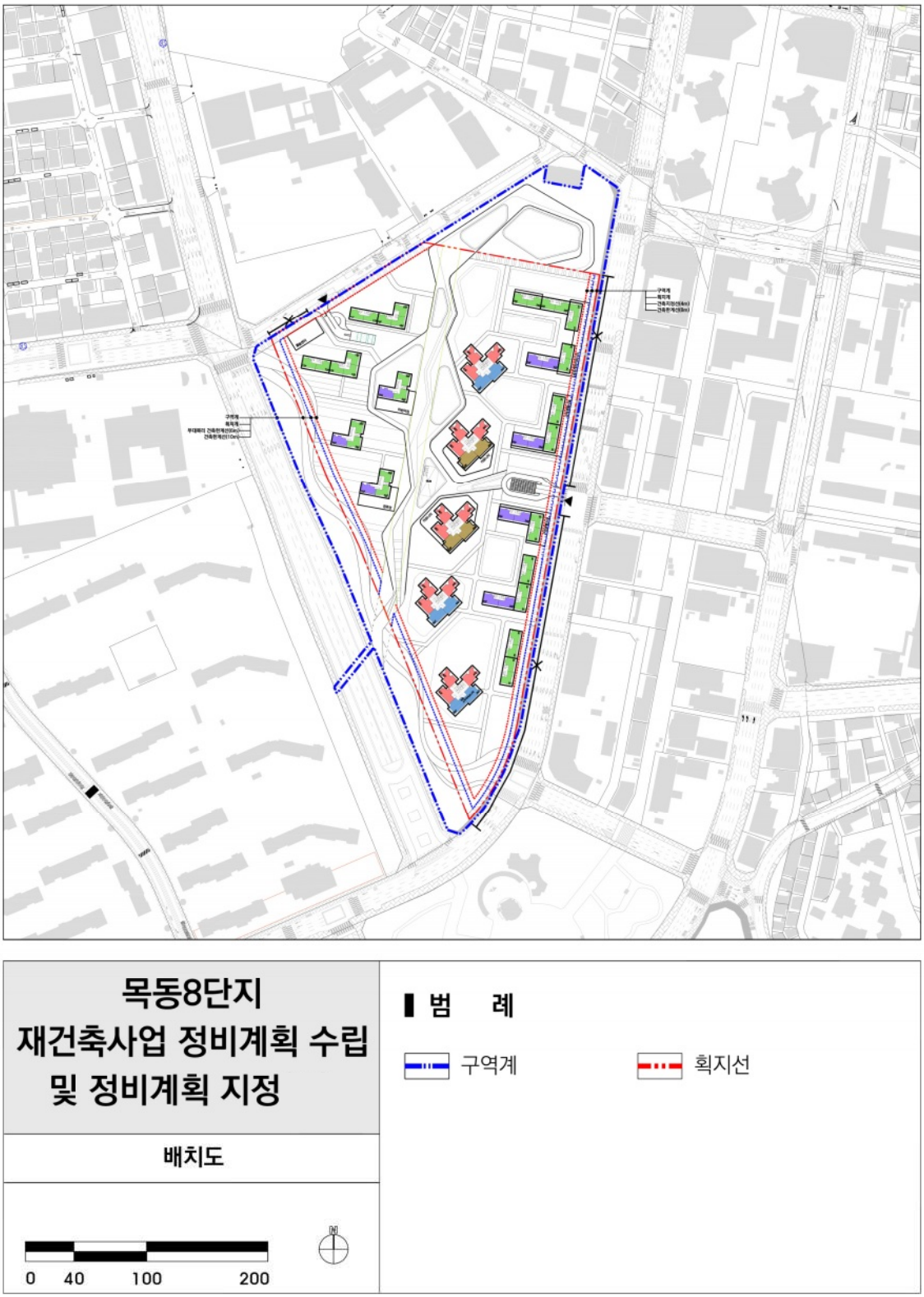
구 분	연 면 적	구 성 비
공 동 주 택	328,035.05㎡	99.2%
근 린 생 활 시 설	2,697.57㎡	0.8%
합 계	330,732.62㎡	100.0%

[공동주택 유형별 면적개요]

유 형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 타 면 적(㎡)		계약면적 (㎡)
					부대시설 +기전실	지하주차장	
임대	59형	225	59.99	21.60	3.70	44.42	129.70
	84형	64	84.99	30.60	5.24	62.93	183.75
분양	59형	307	59.99	21.60	3.70	44.42	129.70
	74형	300	74.99	27.00	4.62	55.52	162.13
	84형	573	84.99	30.60	5.24	62.93	183.75
	99형	232	99.99	36.00	6.16	74.03	216.18
	110형	180	110.99	39.96	6.84	82.18	239.96
합 계		1,881	151,726.19	54,621.43	9,347.50	112,339.92	328,035.05


획지 1
공동주택
180m(최고49층)
50.0
249.98/300.00
주용도
최고높이(층 이하)
건폐율(% 이하)
상한/법적상한용적률(% 이하)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도
0 40 100 200
범 례
구역계
지적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부대복리시설)
저층부 건축지정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저층 배치구간(7층)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획지(공동주택)
공원
녹지
녹지 내 보행로 조성구간
구역내 도로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진출입구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주차장
공공청사
중학교
사회복지시설
전기공급설비

[정비계획 결정도]



[배치도]

제2장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

2.1 교통시설 현황

2.1.1 교통현장 조사 개요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사업지 주변 교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현장조사 개요]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조사 범위	비 고
조사 일자		•2023년 06월 14일 ~ 06월 16일	공간적 범위 내	-
교통량	교차로	•조사일 : 2023년 06월 16일 •시간대별, 방향별, 차종별 교통량 (07~09, 12~14, 17~19)	사업지 주변 교차로 6개소	영상촬영
	가 로	•조사일 : 2023년 06월 16일 •시간대별, 방향별, 차종별 교통량 (07~09, 12~14, 17~19)	사업지 주변 가로구간 4개소	영상촬영
교 통 시 설 현 황	시설물 조 사	•조사일 : 2023년 06월 14일~06월 15일 •신호등, 횡단보도, 버스 및 택시정류장, 교통안전표지 등	사업지 주변 교차로 및 가로 구간	현장조사
	기 하 구 조	•조사일 : 2023년 06월 14일~06월 15일 •신호등 설치유무, 신호체계 •횡단보도 및 정지선 위치 •차로수, 기하구조 등	사업지 주변 교차로 및 가로 구간	현장조사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및 건축물 이용현황	공간적 범위 내	현장/문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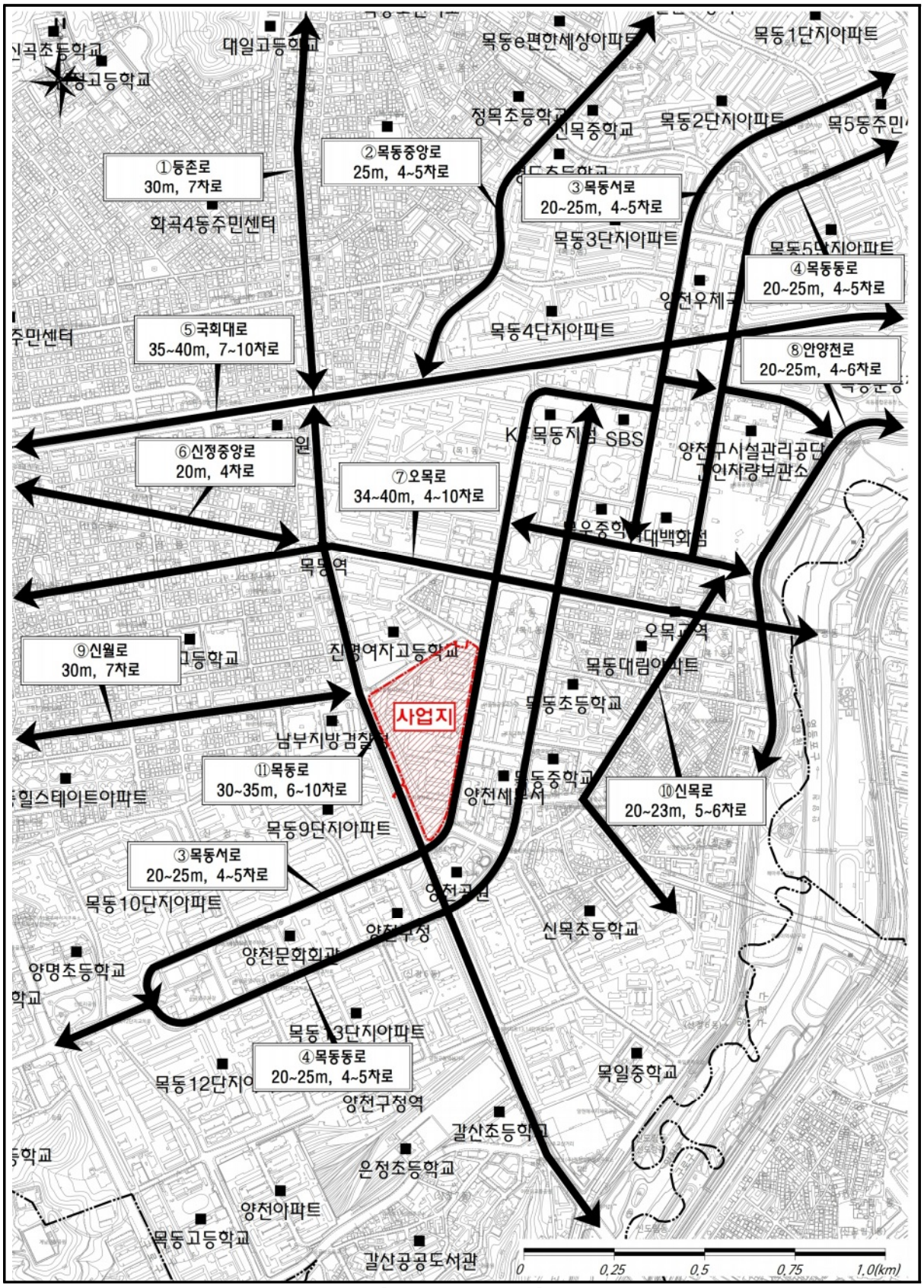
2.1.2 교통시설 현황

가. 가로망 현황

○ 사업지 주변 가로망을 살펴보면, 사업지 인근으로 국회대로(7~10차로, 35~40m), 오목로(4~10차로, 15~40m)가 동서방향을 연결하고 있으며, 목동로(6~10차로, 30~35m), 목동서로(4~5차로, 20~25m)가 남북 방향을 연결하고 있음.

[가로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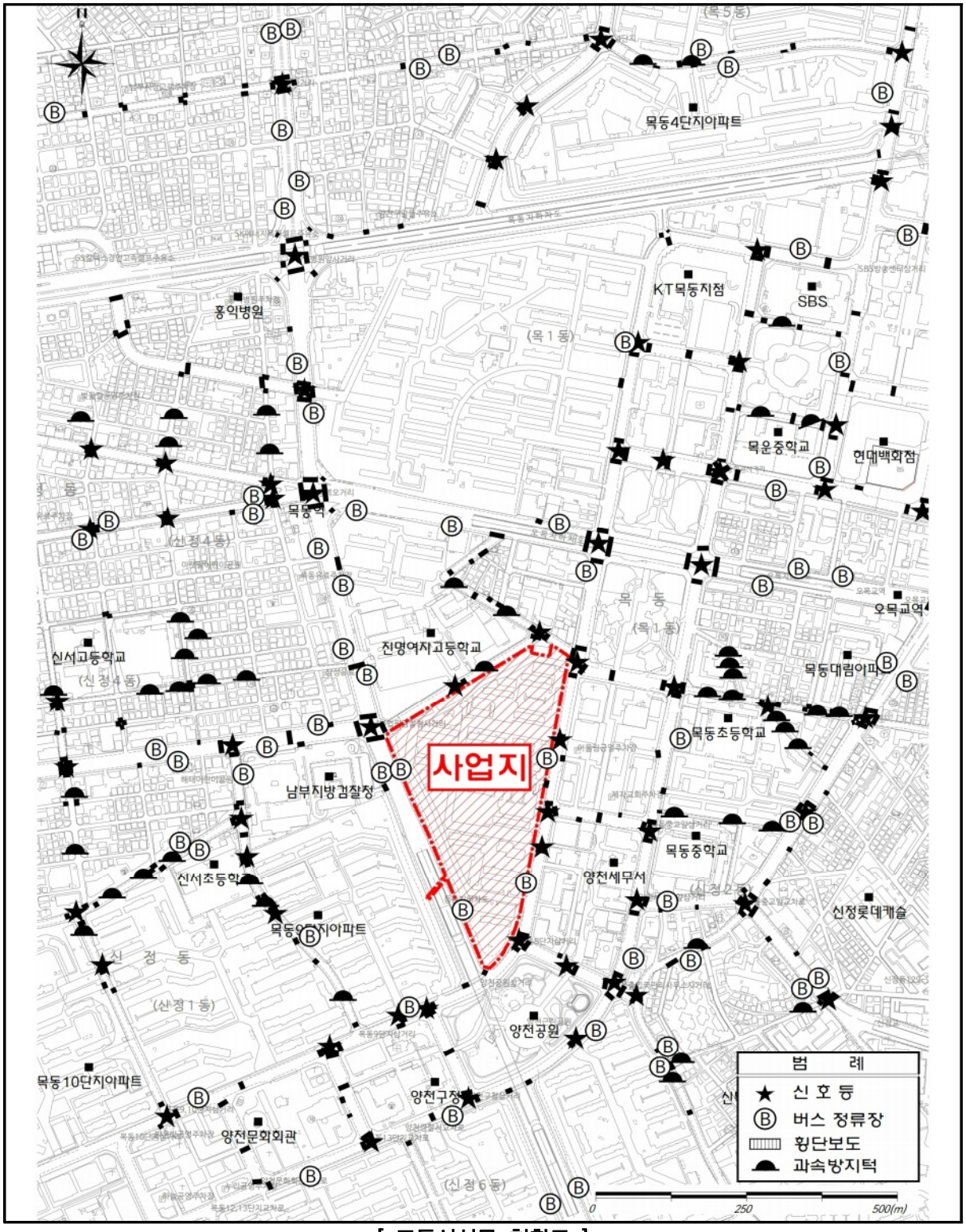
가 로 명	구 간		차로수 (왕복)	폭원 (m)
	기 점	종 점		
① 등 촌 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807-13(국회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8-10(등촌삼거리)	7	30
② 목 동 중 앙 로	목동 802-9(국회대로)	목동 900-12(안양천로)	4~5	25
③ 목 동 서 로	목동 900	신정동 324	4~5	20~25
④ 목 동 동 로	신정동 1267	목동 911-1	4~5	20~25
⑤ 국 회 대 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신월I.C)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145-3(서강로)	7~10	35~40
⑥ 신 정 중 앙 로	신정동 934-2	신정동 994-2	4	20
⑦ 오 목 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524-1(남부순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489(오목교 동측)	4~10	15~40
⑧ 안 양 천 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4~6	20~25
⑨ 신 월 로	신정동 781-15	신정동 313-1	7	30
⑩ 신 목 로	신정동 1279-1	목동 914-4	5~6	20~23
⑪ 영 등 포 로	양평동3가 489	신길동 1348	6	30
⑫ 목 동 로	신정동 151-23	목동 807-6	6~10	30~35


①동촌로
30m, 7차로
②목동중앙로
25m, 4~5차로
③목동서로
20~25m, 4~5차로
④목동동로
20~25m, 4~5차로
⑤국회대로
35~40m, 7~10차로
⑥신정중앙로
20m, 4차로
⑦오목로
34~40m, 4~10차로
⑧안양천로
20~25m, 4~6차로
⑨신월로
30m, 7차로
⑩신목로
20~23m, 5~6차로
⑪목동로
30~35m, 6~10차로
사업지
대일고등학교
목동e편한세상아파트
목동1단지아파트
정목초등학교
신목중학교
목동2단지아파트
화곡4동주민센터
목동3단지아파트
목동4단지아파트
양천우체국
목동역
오목교역
진명여자고등학교
목동대림아파트
목동초등학교
남부지방검찰청
양천세무서
목동9단지아파트
목동10단지아파트
양천문화회관
양천구청
신목초등학교
양명초등학교
목동13단지아파트
목동12단지아파트
목일중학교
양천구청역
갈산초등학교
은정초등학교
양천아파트
목동고등학교
갈산공공도서관
0
0.25
0.5
0.75
1.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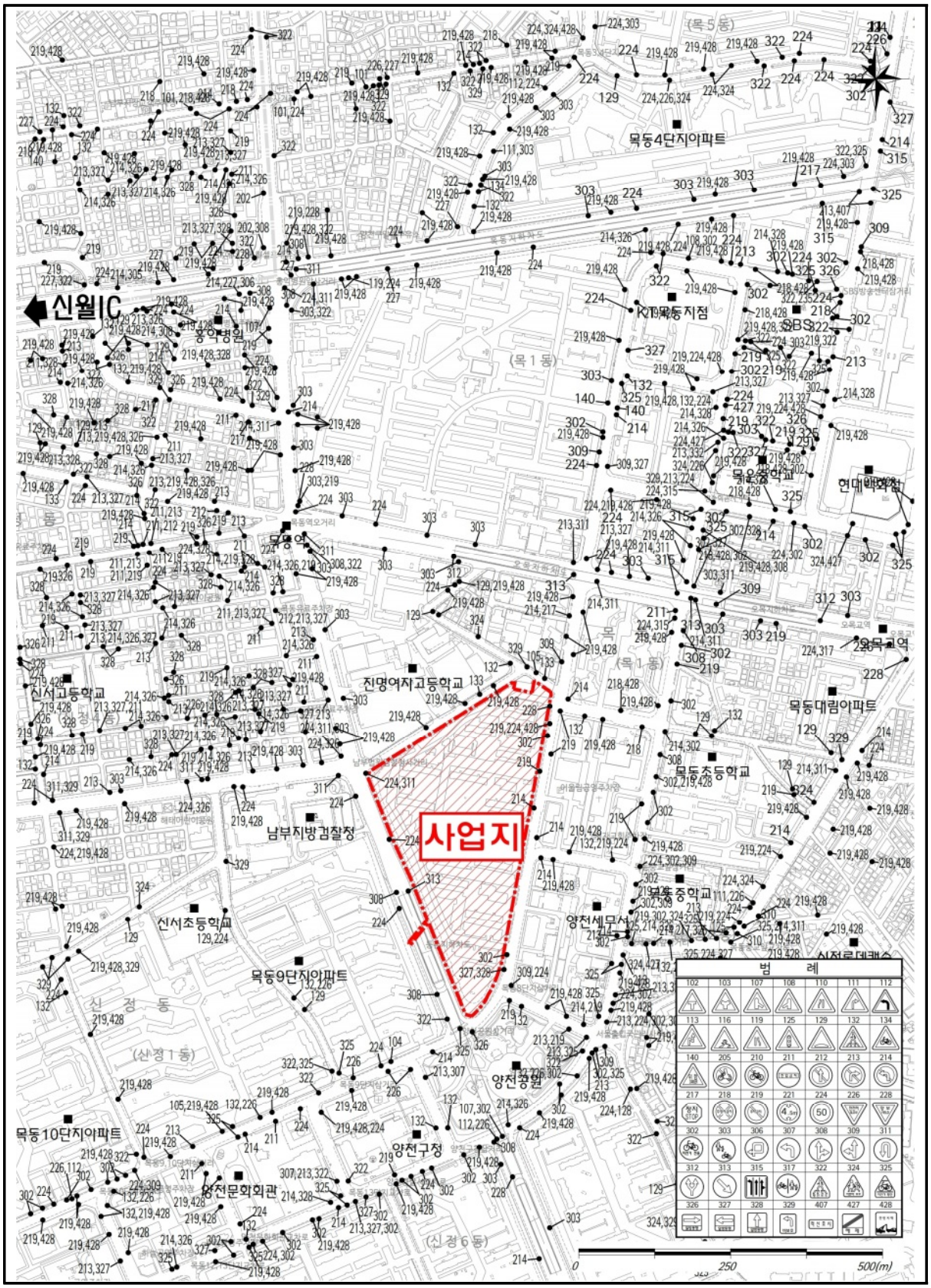
[가로망 현황도]

나. 교통시설물 현황

○ 공간적 범위 안에 있는 교통시설물들의 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교통시설물 현황도]


신월IC
사업지
목동4단지아파트
목동9단지아파트
목동10단지아파트
목동지점
목동중학교
목동초등학교
목동대림아파트
현대백화점
양천공원
양천구청
양천문화회관
양천세무서
신서고등학교
신서초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
남부지방검찰청
범 례
0
250
500(m)

[교통안전표지판 현황도]

다.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 현황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지 주변 교차로 6개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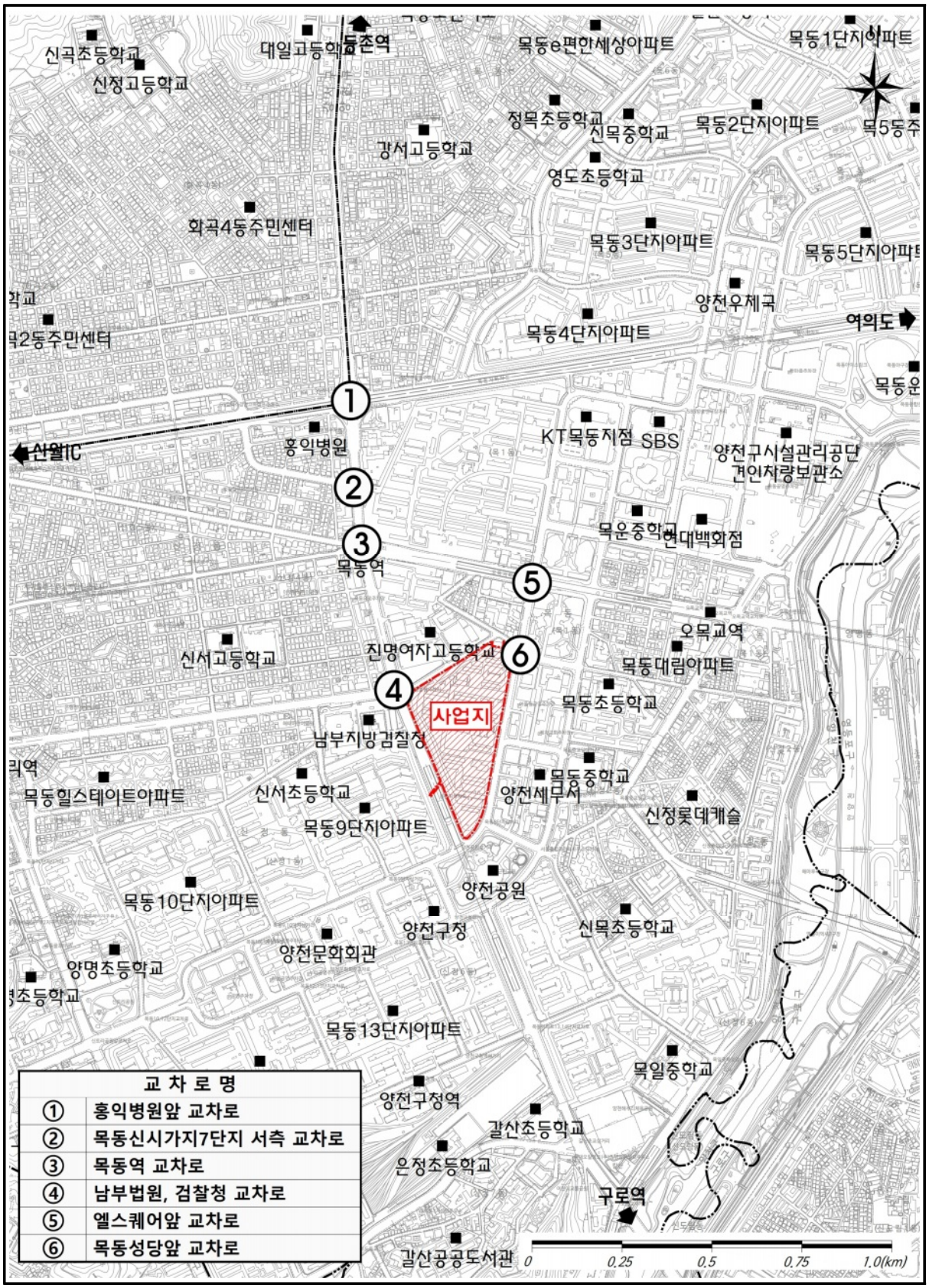
○ 교차로 기하구조는 교차로 서비스수준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교차로 분석시 변수 적용의 타당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설정하여 조사하였음.

- 신호등 설치여부 및 신호현시
- 신호운영방법
- 차로수 및 차로폭
- 가각정리 여부 및 노면표시
- 횡단보도 및 차량정지선 위치
- 주차 및 버스정류장
- 버스베이 설치 여부
- 보도폭 및 보도시설물 설치 현황
- 도류화 및 교통섬 설치여부
- 인접교차로와의 거리

○ 분석대상 교차로를 조사항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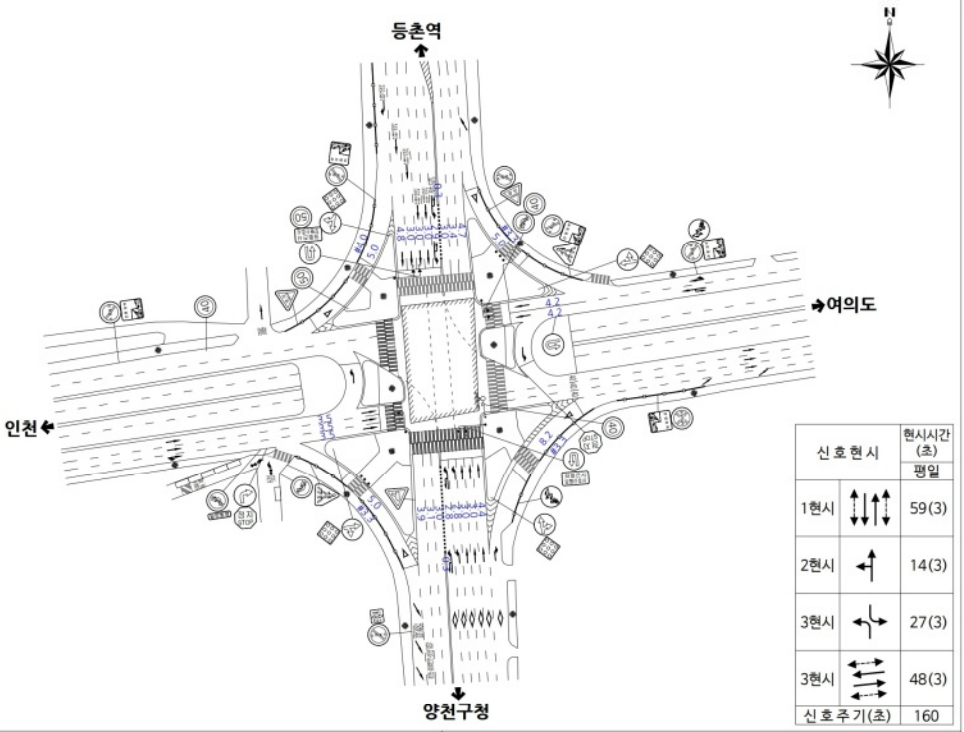
교 차 로 명	신호주기(초)	신호운영	현시	교차형태	횡단보도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160	신호	4	4지	○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130	신호	4	4지	○
③ 목동역 교차로	160	신호	5	4지	○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160	신호	4	4지	○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120	신호	4	4지	○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120	신호	3	3지	○


신곡초등학교
신정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등촌역
목동e편한세상아파트
목동1단지아파트
정목초등학교
신목중학교
목동2단지아파트
목5동주
강서고등학교
영도초등학교
화곡4동주민센터
목동3단지아파트
목동5단지아파트
양천우체국
목동4단지아파트
여의도
목동운
산월IC
홍익병원
KT목동지점
SBS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보관소
목운중학교
현대백화점
목동역
오목교역
신서고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
목동대림아파트
사업지
목동초등학교
남부지방검찰청
목동힐스테이트아파트
신서초등학교
양천세무서
목동중학교
신정롯데캐슬
목동9단지아파트
양천공원
목동10단지아파트
양천구청
신목초등학교
양천문화회관
양명초등학교
목동13단지아파트
목일중학교
양천구청역
갈산초등학교
은정초등학교
구로역
갈산공공도서관
0
0.25
0.5
0.75
1.0(km)
교 차 로 명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③ 목동역 교차로
④ 남부법원, 검찰청 교차로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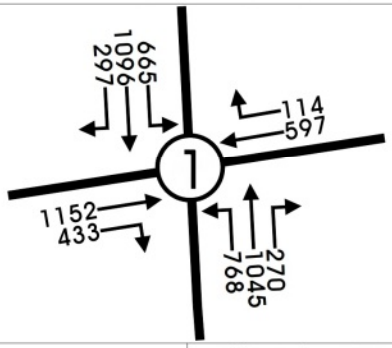
[교차로 Key-Map]

교차로 번호	1	교차로명	홍익병원앞 교차로

기하구조현황



첨두시 교통량 현황(대/시)



교차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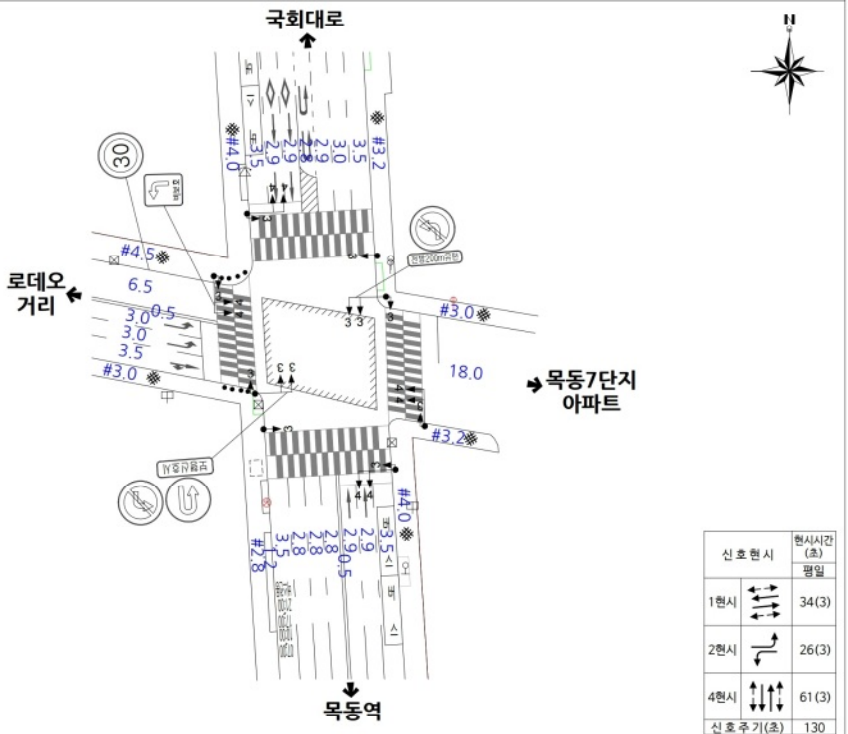


구 분	첨두시 교통량 (대/시)	차량당 제어지체 (초/대)	서비스 수준 (LOS)
08:00~09:00	6,437	91.47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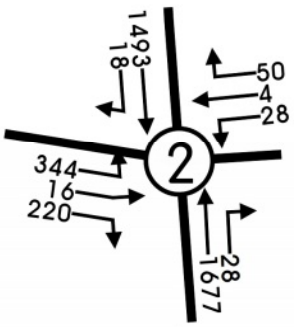
[교차로 기하구조 - 1]

교차로 번호	2	교차로명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기하구조현황



첨두시 교통량 현황(대/시)	교차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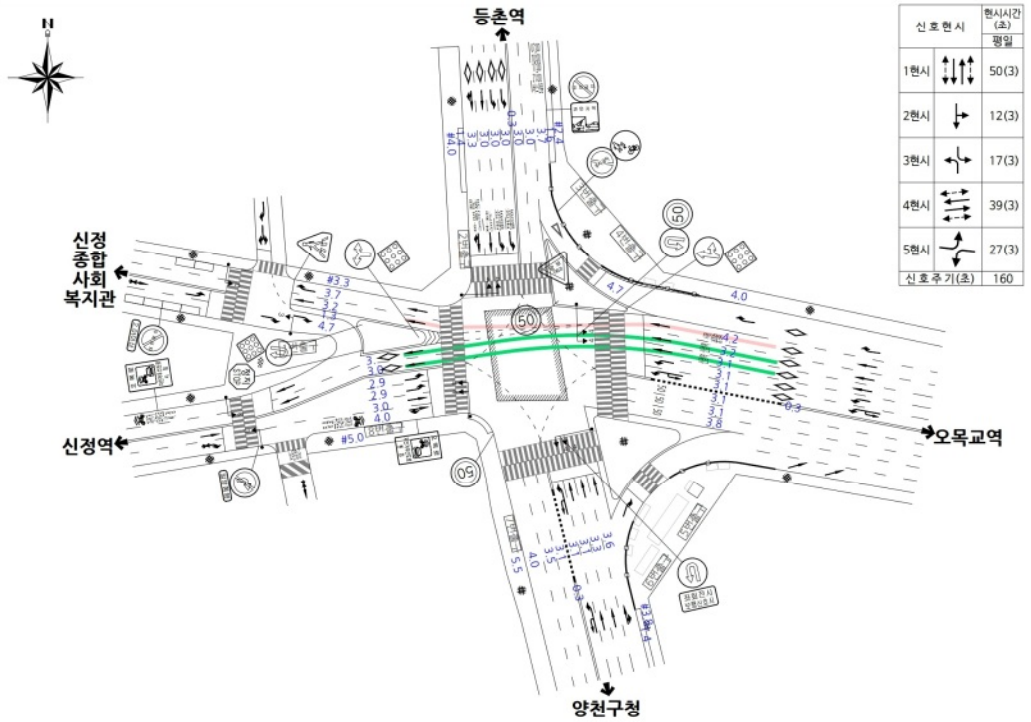


구 분	첨두시 교통량 (대/시)	차량당 제어지체 (초/대)	서비스 수준 (LOS)
08:00~09:00	3,951	36.62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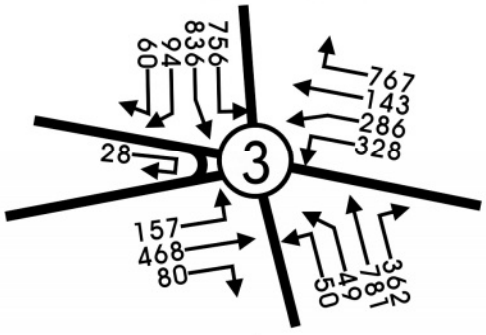
[교차로 기하구조 - 2]

교차로 번호	3	교차로명	목동역 교차로

기하구조현황



첨두시 교통량 현황(대/시)	교차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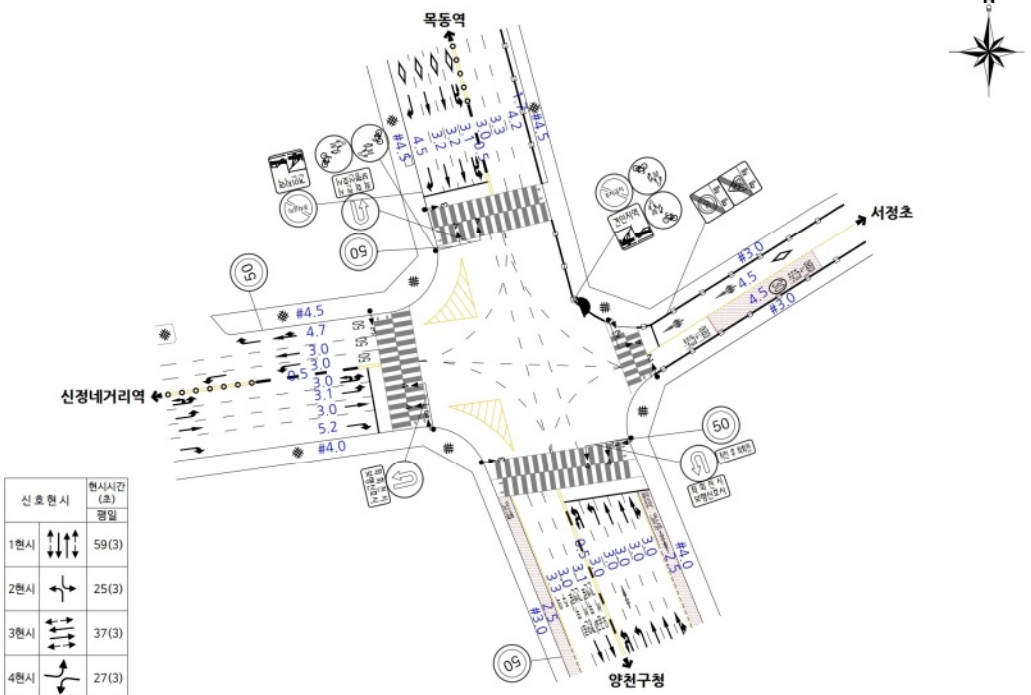


구 분	첨두시 교통량 (대/시)	차량당 제어지체 (초/대)	서비스 수준 (LOS)
08:00~09:00	5,245	85.59	E

[교차로 기하구조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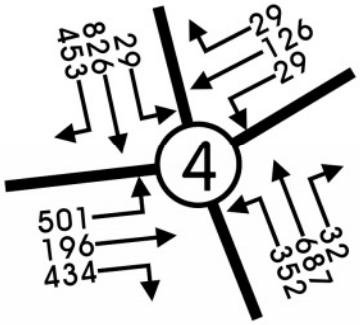
교차로 번호	4	교차로명	남부법원, 검찰청 교차로

기하구조현황



신호현시		현시시간(초)
		평일
1현시		59(3)
2현시		25(3)
3현시		37(3)
4현시		27(3)
신호주기(초)		160

첨두시 교통량 현황(대/시)



교차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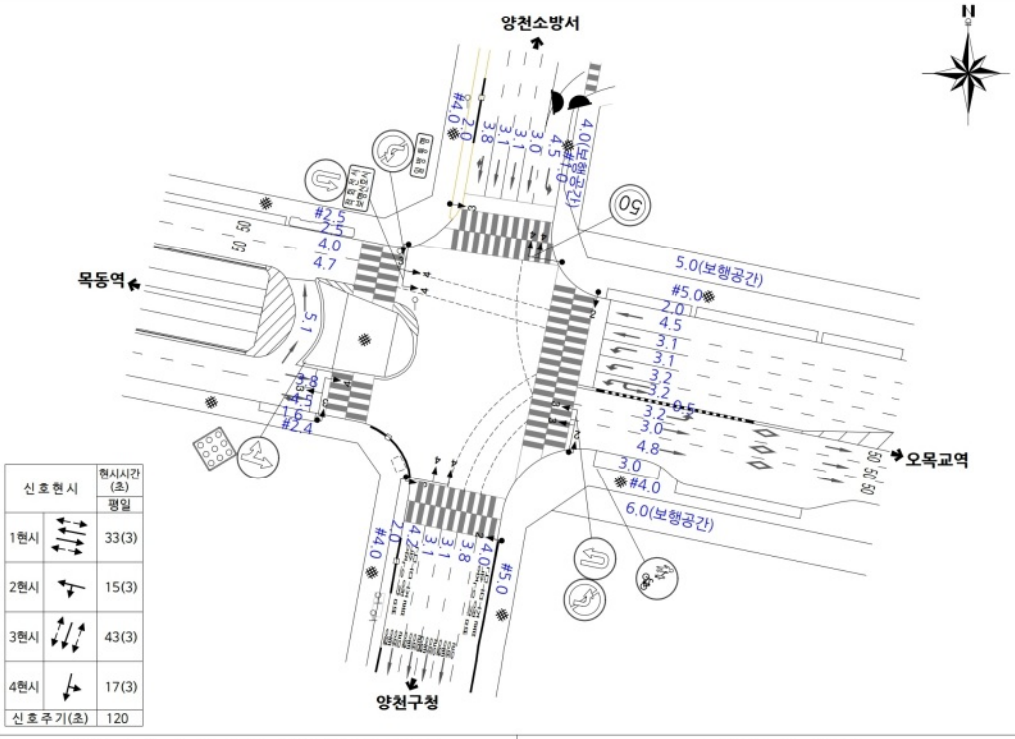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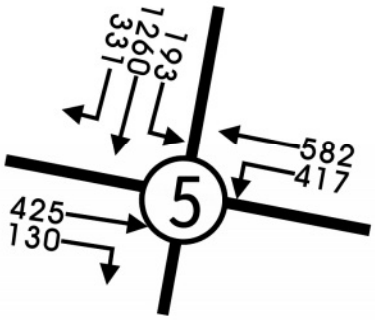
구 분	첨두시 교통량 (대/시)	차량당 제어지체 (초/대)	서비스 수준 (LOS)
08:00~09:00	3,820	64.93	D

[교차로 기하구조 - 4]

교차로 번호	5	교차로명	엘스퀘어앞 교차로

기하구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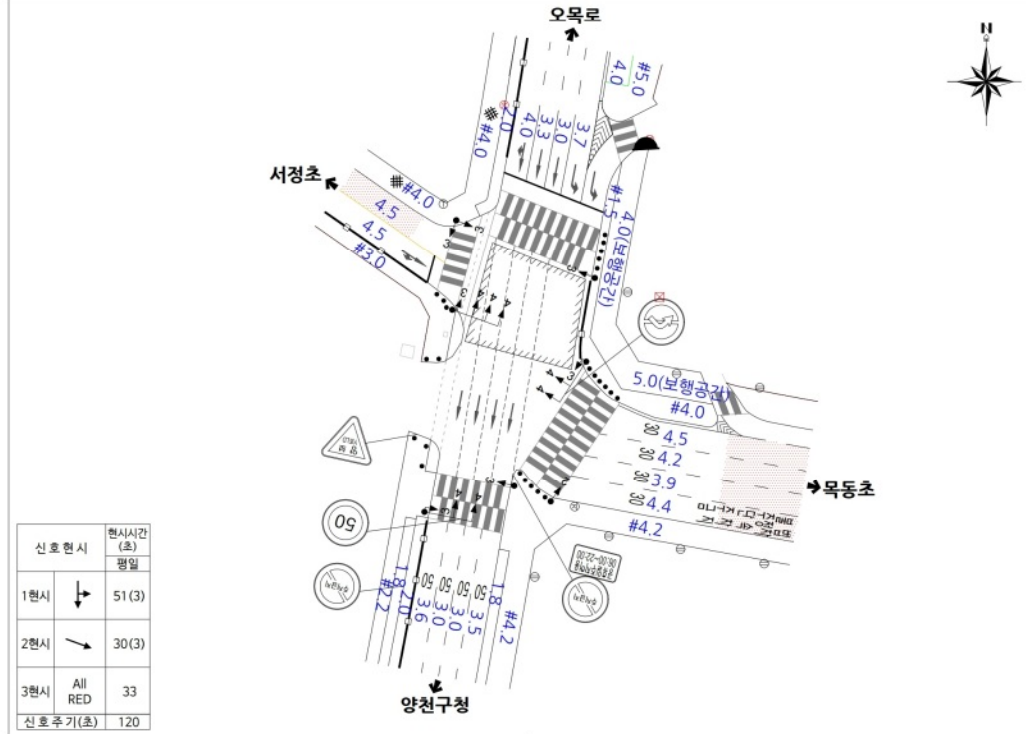
첨두시 교통량 현황(대/시)	교차로 전경
	

구 분	첨두시 교통량 (대/시)	차량당 제어지체 (초/대)	서비스 수준 (LOS)
08:00~09:00	3,396	39.47	C

[교차로 기하구조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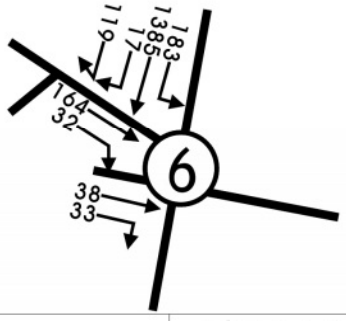
교차로 번호	6	교차로명	목동성당앞 교차로

기하구조현황



신호현시		현시시간(초) 평일
1현시		51(3)
2현시		30(3)
3현시	All RED	33
신호주기(초)		120

첨두시 교통량 현황(대/시)



교차로 전경



구 분	첨두시 교통량 (대/시)	차량당 제어지체 (초/대)	서비스 수준 (LOS)
08:00~09:00	1,971	30.02	C

[교차로 기하구조 - 6]

2.2 교통소통 현황

2.2.1 교통량 현황

① 승용차 환산계수

◦ 본 과업의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조사 시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 제정한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을 따라 첨두시에 조사된 1시간 교통량에 승용차 환산계수와 첨두시간 계수를 적용하여 보정된 교통량으로 가로구간 및 교차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2017. 2. 16., 서울특별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로 이상의 가로(개별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로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와 교차로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3개 이상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가. 승용차

나. 버스(12인승 미만, 12인승 이상)

다. 화물(2.5톤 미만, 2.5톤 이상)

◦ 본 분석에서는 6개의 차종(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으로 조사하였음.

◦ 또한, 교통량 분석을 위해서는 6개 차종별 교통량을 승용차 교통량으로 환산된 교통량이 필요하므로 본 과업에서는 「도로용량편람, 2013, 국토해양부」에서 제시된 승용차 이외의 모든 중차량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1.8을 사용하였음.

② 교통량 보정

○ 승용차 환산 교통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 승용차 환산 교통량 = (승용차 대수)+(소형버스 대수X1.8)+(대형버스 대수X1.8)
+(소형트럭 대수)+(중형트럭 대수X1.8)+(대형트럭 대수X1.8)

○ 이후, 승용차 환산 교통량에 첨두시간계수(Peak Hour Factor : PHF)를 적용하여 첨두시간 환산 교통량으로 보정하였음.

○ 첨두시간계수는『도로용량편람, 2013, 국토해양부』에서 '하루 중 교통량이 많은 1시간 동안의 교통량을 그 시간대에서 가장 차량 통행이 많은 15분 동안의 1시간 환산 교통량으로 나눈 값' 으로 정의됨. 첨두시간계수 및 첨두시간 환산 교통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PHF = \frac{V}{4 \times V_{15}} \qquad V_p = \frac{V}{PHF}$$

여기서, V_p = 첨두시간 환산 교통량(pcu/시)

PHF = 첨두시간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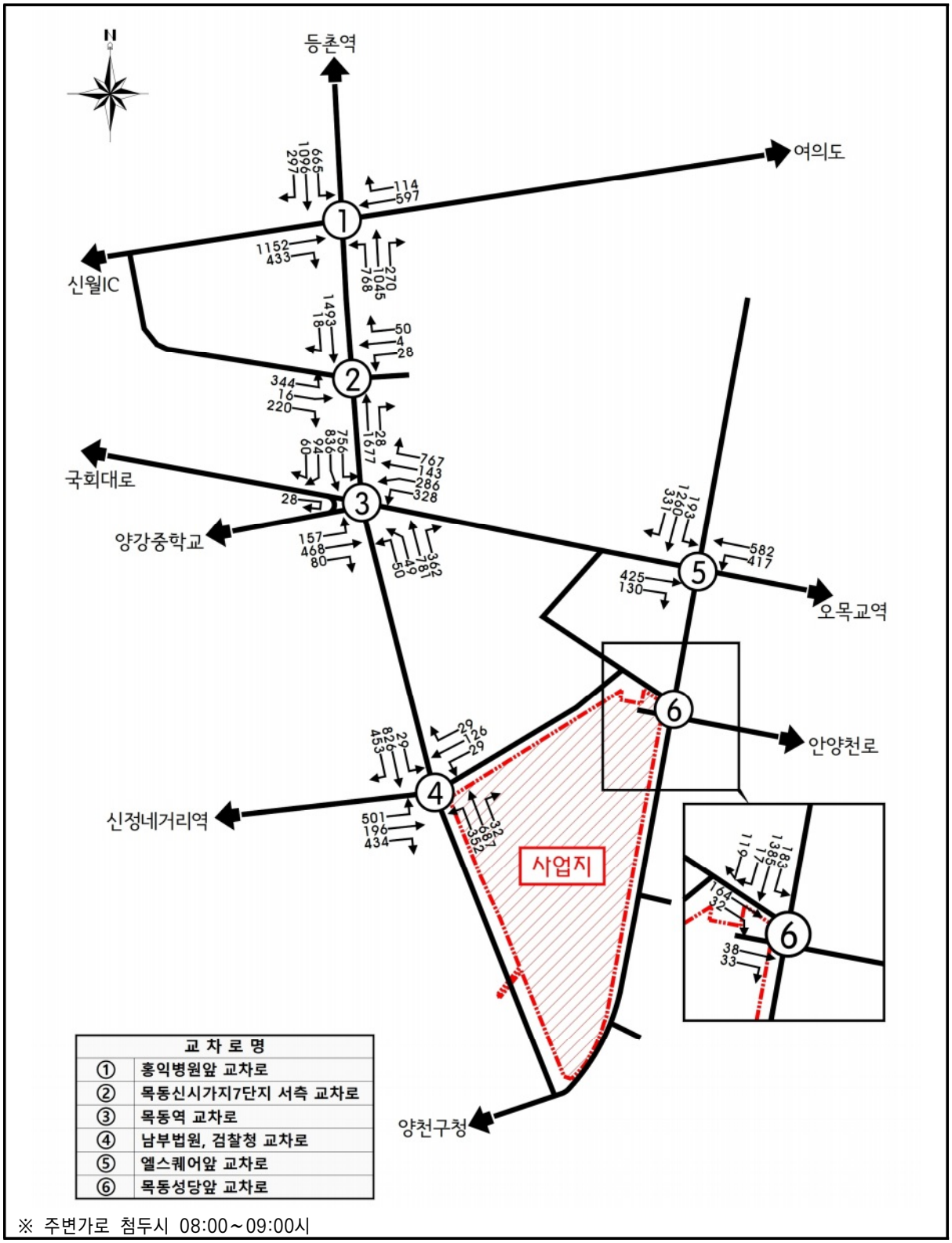
V = 시간당 교통량(pcu/시)

V_{15} = 첨두 15분간 통과한 교통량(puc/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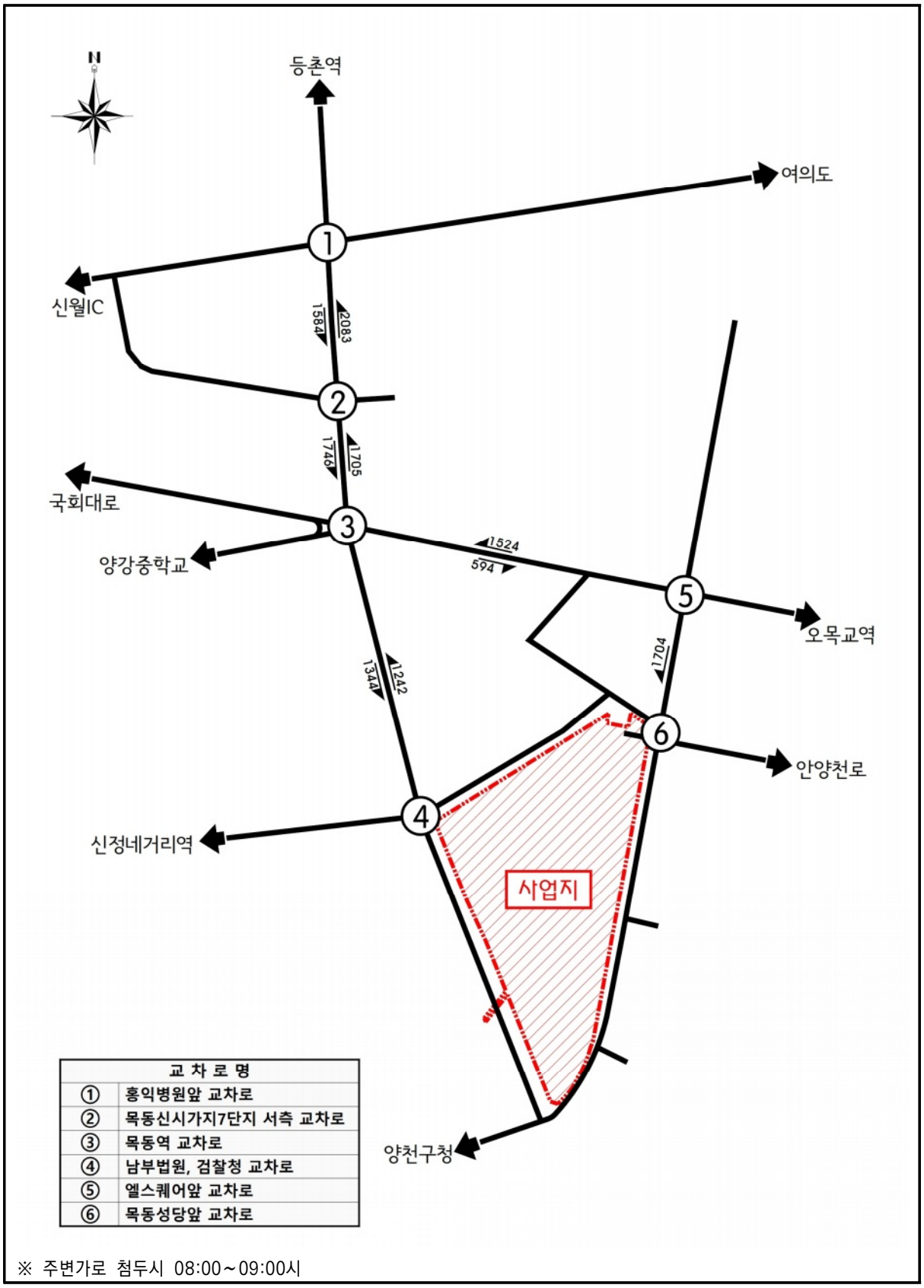
○ 다음 교통량은 가로 및 교차로 분석을 위해 승용차 환산 계수와 첨두시간 계수를 적용하여 보정된 교통량임.

③ 교통량 현황

○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산정된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은 다음과 같음.



[현황 교차로 교통량도(2023년, pcu/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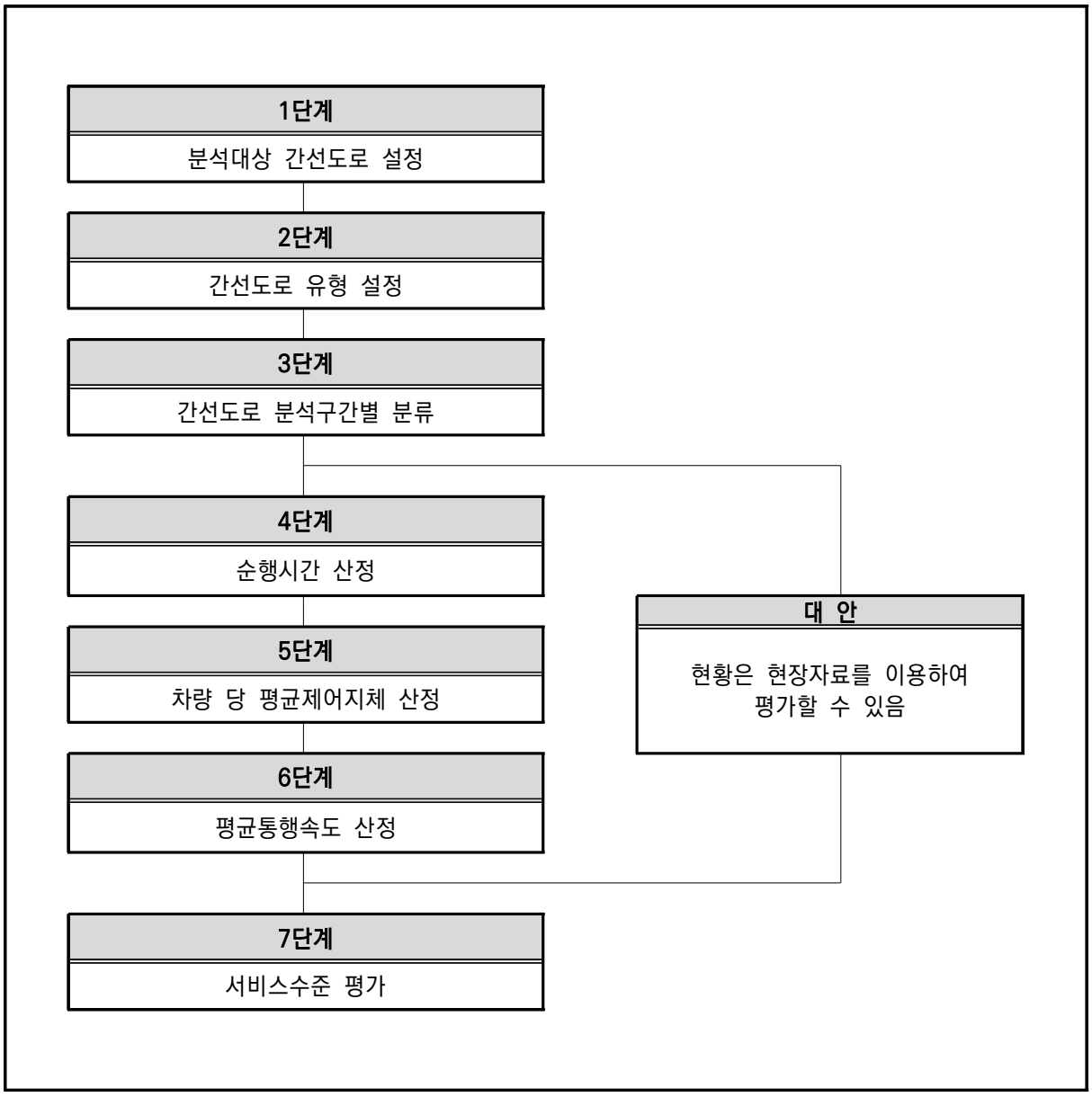
[현황 가로 교통량도(2023년, pcu/h)]

2.2.2 서비스수준 분석방법

가.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의 분석방법

○ 간선도로상의 차량운행은 간선도로 주변 환경, 차량 간의 상호작용, 교통신호 등과 같은 주요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에 의하여 용량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수준 등이 결정되게 됨.

○ 간선도로구간의 평균통행속도는 순행시간과 교차로 접근지체 및 구간거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자세한 분석 과정은『도로용량편람, 2013,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음.



[간선도로 서비스수준 분석 과정]

① 1단계: 분석대상 간선도로의 설정

▸ 분석대상 간선도로의 위치와 총 연장을 정확하게 규정함.

② 2단계: 간선도로 유형의 결정

▸ 간선도로의 기능과 설계수준, 그리고 기하구조 여건에 근거하여 유형을 규정하였음. 이 때 유형별 자유속도는 교통량이 매우 적어 다른 차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교통신호등에 의한 통제설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선도로의 기하구조에 따라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서 정의됨.

[자유속도]

도로여건 / 도로구분	양호(kph)	보통(kph)
고규격	80	80
중간규격	80	70
저규격	70	60

[간선도로 유형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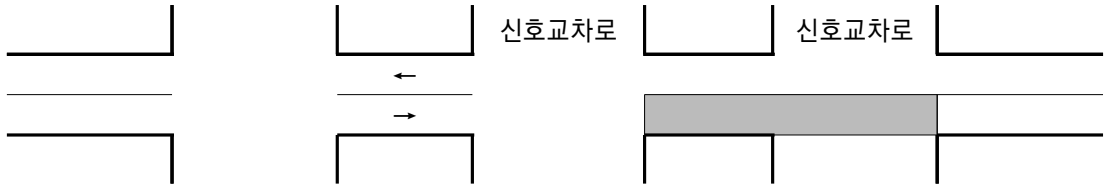
구 분		기능적 분류		
		고규격	중간규격	저규격
이 동 성		매우중요	중요	보통
접 근 관 리 수 준		고	중	저
연 결 도 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도시부 연결 국도	주요간선도로	집산도로
주 요 통 행 목 적		장거리 통과교통	도시부 접근교통	도시부 내부교통
구 분		설계수준 분류		
		고규격	중간규격	저규격
진출입로 설치 밀도		저	중	고
km당 신호교차로수		2개 이하	1~3개	2개 이상
자유속도(kph)		≤ 85	≤ 75	≤ 65
보행자밀도		저	중	고
주변개발정도		저	중	고
구 분		도로여건 범주		
		양호	보통	
차로수	고규격	링크 편도 4차로 이상	링크 편도 3차로 이하	
	저규격/중간규격	링크 편도 3차로 이상	링크 편도 2차로	

[도로구분과 도로여건에 따른 간선도로 유형]

도로여건 / 도로구분	양호	보통
고 규 격	Ⅰ	Ⅰ
중 간 규 격	Ⅰ	Ⅱ
저 규 격	Ⅱ	Ⅲ

③ 3단계: 간선도로 분석구간별 분류

▸도로의 분석 기본단위는 구간으로서 신호교차로에서 다음 신호교차로까지 한 방향의 길이를 말함.
▸아래 그림은 양방향 통행도로와 일방향 통행도로의 구간설정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며, 만약 동일한 등급의 간선도로에서 두 개 이상의 연속된 구간이 구간길이, 자유속도, 속도제한, 그리고 주변의 토지이용도가 비슷하다면 하나의 구간으로 분석할 수 있음.



[양방 통행도로의 분석구간 개념도]



[일방 통행도로의 분석구간 개념도]

④ 4단계: 순행시간(Running Time: 순행시간) 산정

▸순행속도란 임의의 구간을 통행할 때 신호등으로 인한 가·감속 지체와 정지지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순행하는 속도를 말함.
▸차량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하거나 측면 마찰을 받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게 됨. 즉, 어떤 구간을 달릴 때 교통류의 차량상호간 내부마찰과 도로변 주·정차, 버스정류장, 접근 세가로에서의 유입교통 등으로 인한 측면 마찰의 영향을 받아 속도는 떨어지게 됨. 이 때 신호등으로 인한 가·감속지체와 정지지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순행하는 속도를 순행속도로 볼 수 있으며 자유속도보다 낮은 값을 갖음.
▸분석구간의 순행시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간선도로 유형, 간선도로 구간길이(km), 간선도로 측면마찰 정도
※ 분석구간이 몇 개의 소구간으로 나누어졌을 때는 간선도로 분석구간의 평균구간길이를 구한 후 km당 순행시간표에서 찾아서 사용함. 이때 찾은 순행시간에 전체구간 수를 곱하면 분석구간의 총 순행시간을 구할 수 있음. 또는 소구간 별로 순행시간을 구함.

[노변마찰 정도 설정기준]

도로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노변마찰 / 노변마찰요인	대	소	대	소	대	소
버스정류장 수(개/km)	〉 2	≤ 2	〉 2	≤ 2	〉 2	≤ 2
진출입로 수(개/km)	〉 2	≤ 2	〉 3	≤ 3	〉 4	≤ 4

[km당 구간 순행시간]

(단위 : sec/km)

도로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노변마찰 / 구간거리(km)	대	소	대	소	대	소
≤ 0.1	108	86	143	102	178	119
≤ 0.2	80	66	100	75	119	85
≤ 0.3	71	59	85	67	99	74
≤ 0.4	66	56	77	63	88	69
≤ 0.5	63	54	73	60	83	65
≤ 0.6	61	53	70	58	79	63
≤ 0.7	60	52	68	57	75	62
≤ 0.8	59	51	66	56	74	61
≤ 0.9	58	50	65	55	72	60
〉0.9	58	50	65	54	72	58

⑤ 5단계: 지체도 계산

▸ 간선도로 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지체는 평균제어지체임.

$d = d_1 \times PF \times f_{cw} + d_2 + d_3$

여기서, d= 차량 당 평균제어지체(sec/veh)
d1= 연동 보정된 균일 제어지체(sec/veh)
d2= 임의 도착과 과포화를 나타내는 증분지체
d3= 추가지체(sec/veh)
PF= 연동계수
fcw= 신호교차로간 보행자 횡단신호 보정계수

▸ 균일지체, 증분지체, 연동계수, 추가지체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d_1 = \frac{0.5C(1-g/C)^2}{1 - \left[\min(1,X)\frac{g}{C}\right]}$$

$$d_2 = 900T\left[(x-1)+\sqrt{(x-1)^2+\frac{4X}{cT}}\right]$$

$$d_3 = \frac{1800Q_b^2}{cT(c-V)} \text{ (유형 Ⅰ)}$$

$$= \frac{3600Q_b}{c} - 1800T(1-X) \text{ (유형 Ⅱ)}$$

$$= \frac{3600Q_b}{c} \text{ (유형 Ⅲ)}$$

여기서, T= 분석기간의 길이(h)
C= 신호주기(s)
g= 유효 녹색시간(s)
X= 해당 차로군의 포화도
c= 분석기간 중 해당 차로군의 용량
x= 교통량/용량 비(v/c)
Qb= 분석 시점에 존재하는 초기차량대수(vph)
V= 분석 기간 중 해당 차로군의 도착교통량(vph)

⑥ 6단계: 평균통행속도 산정

▸간선도로의 평균통행시간 산정 시 간선도로구간의 순행시간과 교차로 중 총 접근지체를 알아야 함.

$$\text{평균통행속도} = \frac{3600 \times \text{구간길이}}{km\text{당순행시간} \times \text{구간길이} + \text{교차로접근지체}}$$

여기서, 평균통행속도= 간선도로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평균통행속도(kph)

구간길이= 간선도로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연장(km)

km당 순행시간= 간선도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km당 총 순행시간(sec/km)

교차로접근지체= 간선도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으로 분석대상 범위 내 모든 교차로에서의 총 접근지체(s)

3600= 속도를 kph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계수

⑦ 7단계: 서비스수준 평가

▸일반적인 간선도로의 서비스수준은 간선도로 전체 구간을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직진교통류를 기준으로 하며, 간선도로 전반에 있어서 모든 구간들의 유형이 동일할 때 의미가 있음. 또한, 서비스수준 결정은 유형별 자유속도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간선도로 서비스수준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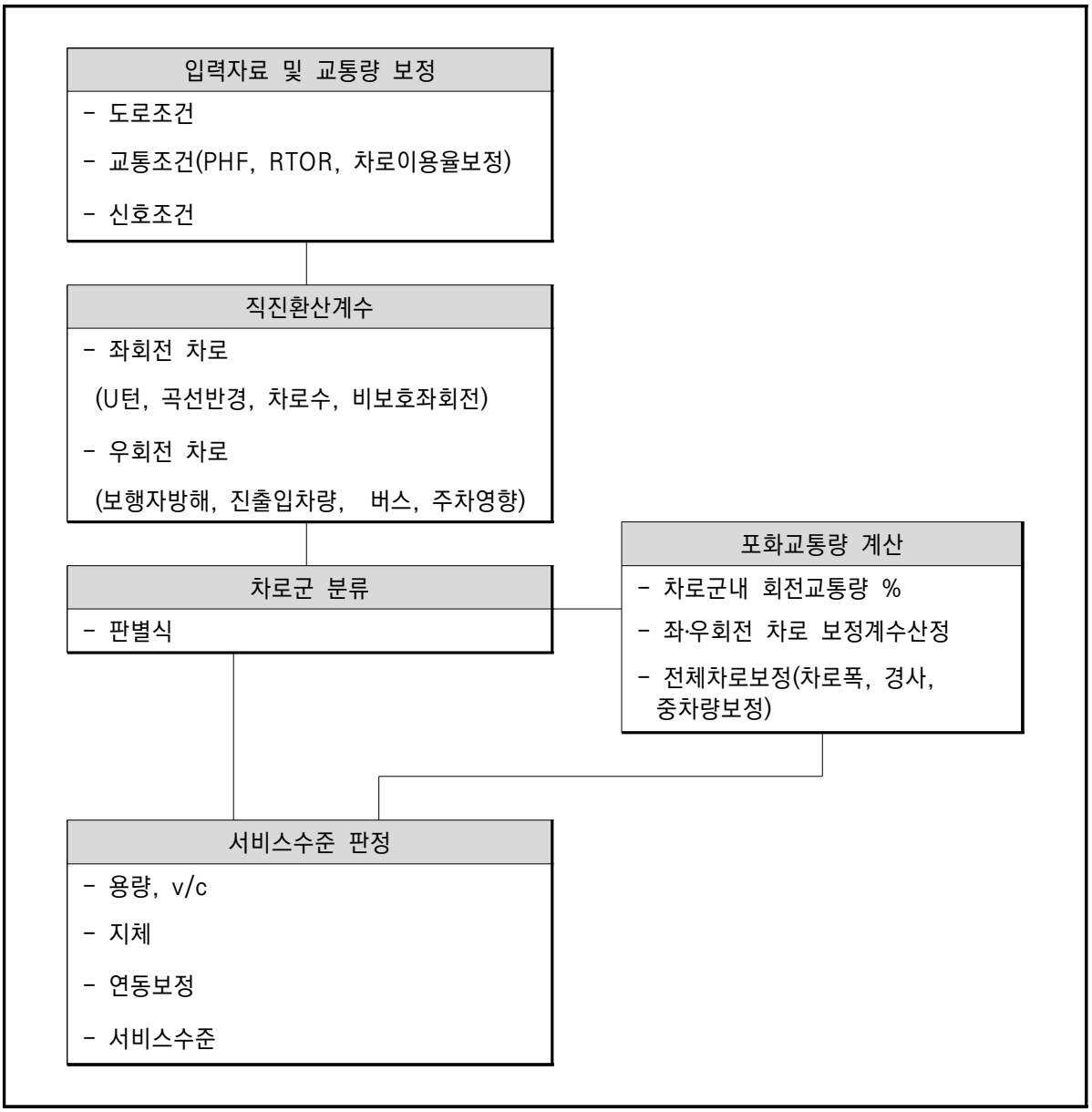
구분	간선도로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자유속도 범위(kph)	85~75	75~65	65~55
자유속도 기준(kph)	80	70	60
LOS	평균통행속도(kph)		
A	≥ 67	≥ 60	≥ 49
B	≥ 51	≥ 46	≥ 39
C	≥ 37	≥ 33	≥ 29
D	≥ 28	≥ 25	≥ 20
E	≥ 21	≥ 18	≥ 12
F	≥ 10	≥ 10	≥ 8
FF	≥ 6	≥ 6	≥ 5
FFF	〈 6	〈 6	〈 5

나.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방법

1) 신호 교차로 분석 개요

◦ 운영분석(Operational Analysis)은 교통량, 신호시간 및 교차로의 기하구조가 주어지고 지체 및 서비스 수준을 구하는 분석으로서 신호교차로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간단한 분석임.

◦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의 효과척도는 차량 당 제어지체로서 「도로용량편람, 2013,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의 기본적인 계산절차와 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음.



[신호교차로 분석과정]

① 입력자료 및 교통량 보정(1단계)

◦ 신호교차로에서 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체는 분석기간(보통15분) 동안의 차량당 평균제어지체로 나타냄.

◦ 차량당 평균제어지체란 분석기간에 도착한 차량들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부터 교차로를 벗어나서 제속도를 낼 때까지 걸린 추가적인 시간손실의 평균값을 말함. 또, 여기에는 분석기간 이전에 교차로를 다 통과하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서 분석기간 동안에 도착한 차량이 받는 추가지체도 포함됨.

◦ 도로, 교통, 신호조건에 관한 현황 자료를 정리하고, 첨두 시간교통류율을 환산, 차로이용률 보정, 우회전 교통량 보정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짐.

② 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의 직진환산계수 산정(2단계)

◦ 모든 회전 차로 및 노변차로는 교통류 내부 및 외부마찰에 의해 이동효율이 감소함. 좌회전 차로는 내부마찰이 거의 대부분이며, 우회전 차로는 내부마찰 및 외부마찰을 같이 받음.

③ 차로군 분류(3단계)

◦ 한 접근로에서 동일한 현시에 진행하는 이동류들의 차로이용률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차로별 서비스수준도 다름. 이 이용률이 같은 이동류끼리 묶어서 몇 개의 차로군으로 분류하고 분석도 이 차로군 별로 함.

◦ 차로군 분류

㉠ 전용 좌회전 차로는 별도 차로군
㉡ 접근로 차로 수(전용 좌회전 차로 제외)가 1개 이면 하나의 통합 차로군
㉢ V_{STL} 〉 V_{LF} 이고 V_{STR} 〉 V_{RF} 이면: 직진, 좌, 우회전 모두 하나의 통합차로군
㉣ V_{STL} 〈 V_{LF} 이면: 실질적 전용 좌회전 차로군
V_{STR} 〈 V_{RF} 이면: 실질적 전용 우회전 차로군
㉤ V_{STL} 〉 V_{LF} 이면: 직진과 좌회전 통합 차로군
V_{STR} 〉 V_{RF} 이면: 직진과 우회전 통합 차로군

여기서, V_{LF} : 공용 좌회전 차로에서 첫 좌회전 앞에 도착하는 직진차량 대수(vph)
V_{RF}: 공용 우회전 차로에서 첫 우회전 앞에 도착하는 직진차량 대수(vph)
V_{STL}: 공용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는 직진차량의 교통량(vph)
V_{STR}: 공용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는 직진차량의 교통량(vph)

④ 포화교통량 계산(4단계)

○ 포화교통류율은 조사지점마다 각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음. 따라서 분석에 사용할 포화교통류율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주어진 도로조건과 교통조선에서의 운영분석에서만 타당성을 갖는 것임. 장래의 도로 및 교통조건에서의 운영분석 또는 설계분석 및 계획분석 등 많은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포화교통류율 값을 사용함.

○ 포화교통류율 산정 식은 다음과 같음.

$$S_i = S_0 \times N_i \times f_{LT}(\text{또는 } f_{RT}) \times f_w \times f_g \times f_{HV}$$

여기서,
S_i : 차로군 i의 포화교통류율(vphg)
S_0 : 기본포화교통류율(2,200 pcphgpl)
N_i : i 차로군의 차로수
f_{LT}, f_{RT} : 좌.우 회전 차로 보정계수(직진의 경우는 1.0)
f_w : 차로폭 보정계수
f_g : 접근로 경사 보정계수
f_{HV} : 중차량 보정계수

⑤ 서비스수준 판정(5단계)

ⅰ) 각 차로군 별 용량 및 v/c비 계산

ⅱ) 초기 대기차량(Q_b)이 없으면

㉠ 균일지체(d_1)

$$d_1 = \frac{0.5C\left(1-\frac{g}{C}\right)^2}{1 - \left[\min(1,X)\frac{g}{C}\right]} \quad (Q_b = 0 \text{ 때})$$

$$= \frac{R^2}{2C(1-y)} + \frac{Q_b R}{2TS(1-y)} \quad (\text{유형 I 때 사용})$$

$$= \frac{R}{2} \quad (\text{유형 II, III 때 사용})$$

여기서,
Q_b : 초기 대기차량 대수(대)
d_1 : 균일지체(초/대)
C : 주기(초)
g : 해당 차로군에 할당된 유효녹색시간(초)
X : 해당 차로군의 포화도
R : 적색신호 시간(초)
y : 교통량비(flow ratio)(=v/s)
T : 분석기간 길이(시간)
S : 해당 차로군의 포화교통량(vphg)

㉡ 증분지체(d_2)

$$d_2 = 900T\left[(X-1) + \sqrt{(X-1)^2 + \frac{4X}{cT}}\right]$$

여기서, d_2 = 임의도착 및 분석기간 안에서의 과포화 영향을 나타내는 증분지체
T = 분석기간 길이(시간)
X = 해당 차로군의 포화도
c = 해당 차로군의 용량(vph)

ⅲ) 초기 대기차량(Q_b)이 있으면

㉠ Q_b와 (1-X)cT를 비교하여 CASE Ⅰ, Ⅱ, Ⅲ 중 선택

㉡ 균일지체(d_1)　　㉢ 증분지체(d_2)　　㉣ 추가지체(d_3)

$$d_3 = \frac{1800Q_b^2}{cT(c-V)}$$ (유형 Ⅰ 때)

$$= \frac{3600Q_b}{c} - 1800T(1-X)$$ (유형 Ⅱ 때)

$$= \frac{3600Q_b}{c}$$ (유형 Ⅲ 때)

여기서, d_3 = 추가지체(분석기간 이전에 잔류한 과포화 대기행렬로 인한 지체)
Q_b = 분석기간(T)이 시작될 때 존재하는 초기 대기차량대수(대)
c = 분석기간중의 해당 차로군의 용량(vph)
V = 분석기간중의 해당 차로군의 도착교통량(vph)

iv) 연동계수(PF)를 적용하여 제어지체 계산

$$d = d_1(PF) + d_2 + d_3$$

여기서, d = 차량당 평균제어지체(초/대)
d_1 = 균일 제어지체(초/대)
PF = 신호연동에 의한 연동보정계수
d_2 = 임의도착과 과포화를 나타내는 증분지체로서, 분석기간 바로 앞 주기 끝에 잔여차량이 없을 경우(초/대)

v) 차로군별 지체를 교통량에 관해서 가중평균하여 접근로의 평균지체를 계산하고 서비스수준 판정

vi) 접근로별 지체를 교통량에 관해서 가중평균하여 교차로 전체의 평균지체계산 및 서비스수준 판정

[신호교차로의 서비스수준 기준]

서비스 수준	차량당 제어지체
A	≤ 15초
B	≤ 30초
C	≤ 50초
D	≤ 70초
E	≤ 100초
F	≤ 220초
FF	≤ 340초
FFF	〉340초

자료 :「도로용량편람, 2013, 국토해양부」

2.2.3. 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사업지 주변가로 첨두시간대(08~09시)에 상기의 과정을 통해 가로구간 및 교차로 서비스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음.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23년, 현황)]

구 간		구간 길이 (㎞)	도로 유형	교통량 (pcu/h)	평균 통행 속도 (Km/h)	서비스 수준 (LOS)
목동로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24	Ⅲ	1,584	21.7	D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17	Ⅲ	1,746	12.7	E
	③목동역 교차로 →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0.42	Ⅲ	1,344	23.4	D
	구간전체	0.83	Ⅲ	-	19.5	E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2	Ⅲ	1,242	22.2	D
	③목동역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17	Ⅲ	1,705	16.6	E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0.24	Ⅲ	2,083	20.3	D
	구간전체	0.83	Ⅲ	-	20.2	D
오목로	③목동역 교차로 →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0.48	Ⅲ	594	26.1	D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8	Ⅲ	1,524	21.6	D
목동서로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⑥목동성당앞 교차로	0.55	Ⅲ	1,704	33.8	C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23년, 현황)]

교 차 로	교통량(pcu/h)	평균제어지체(초/대)	서비스수준(LOS)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6,437	91.5	E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3,951	36.6	C
③ 목동역 교차로	5,245	85.6	E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3,820	64.9	D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3,396	39.5	C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1,971	30.0	C

2.3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2.3.1 토지이용현황

(1) 양천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양천구의 지목별 토지현황을 보면 전체 토지면적은 24.58km^2 이며, 그 중 대지가 8.67km^2(49.7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로가 3.10km^2(17.79%), 공원 1.75km^2(10.04%)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양천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전	임야	대지	도로	하 천	학 교	종교용지	공 원	기타	총 면적
면적(km^2)	0.10	1.06	8.67	3.10	0.45	0.81	0.08	1.75	1.40	17.41
구성비(%)	0.59	6.12	49.78	17.79	2.57	4.63	0.47	10.04	8.02	100

자료 : 제34회 양천 통계연보, 2022년

(2) 양천구 용도지역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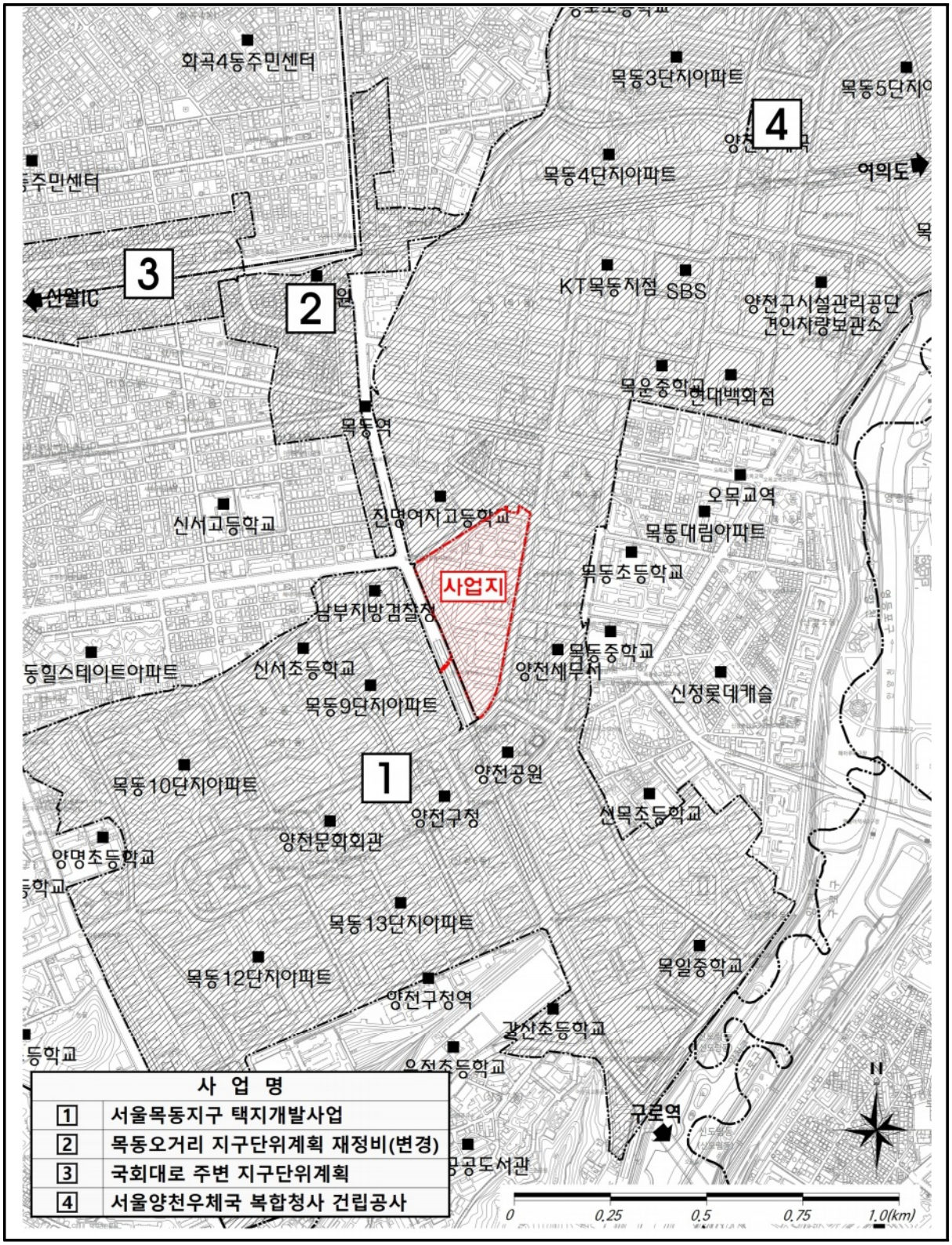
○ 본 사업지구가 속한 양천구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17.47km^2 중 주거지역이 12.54km^2(71.7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녹지지역이 4.04km^2(23.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양천구 용도지역 지정현황]

구 분	도 시 지 역					합 계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미 지 정	
면 적(km^2)	12.54	0.80	0.09	4.04	0.00	17.47
구성비(%)	71.76	4.56	0.53	23.14	0.00	100

자료 : 제34회 양천 통계연보, 2022년

2.3.2 주변지역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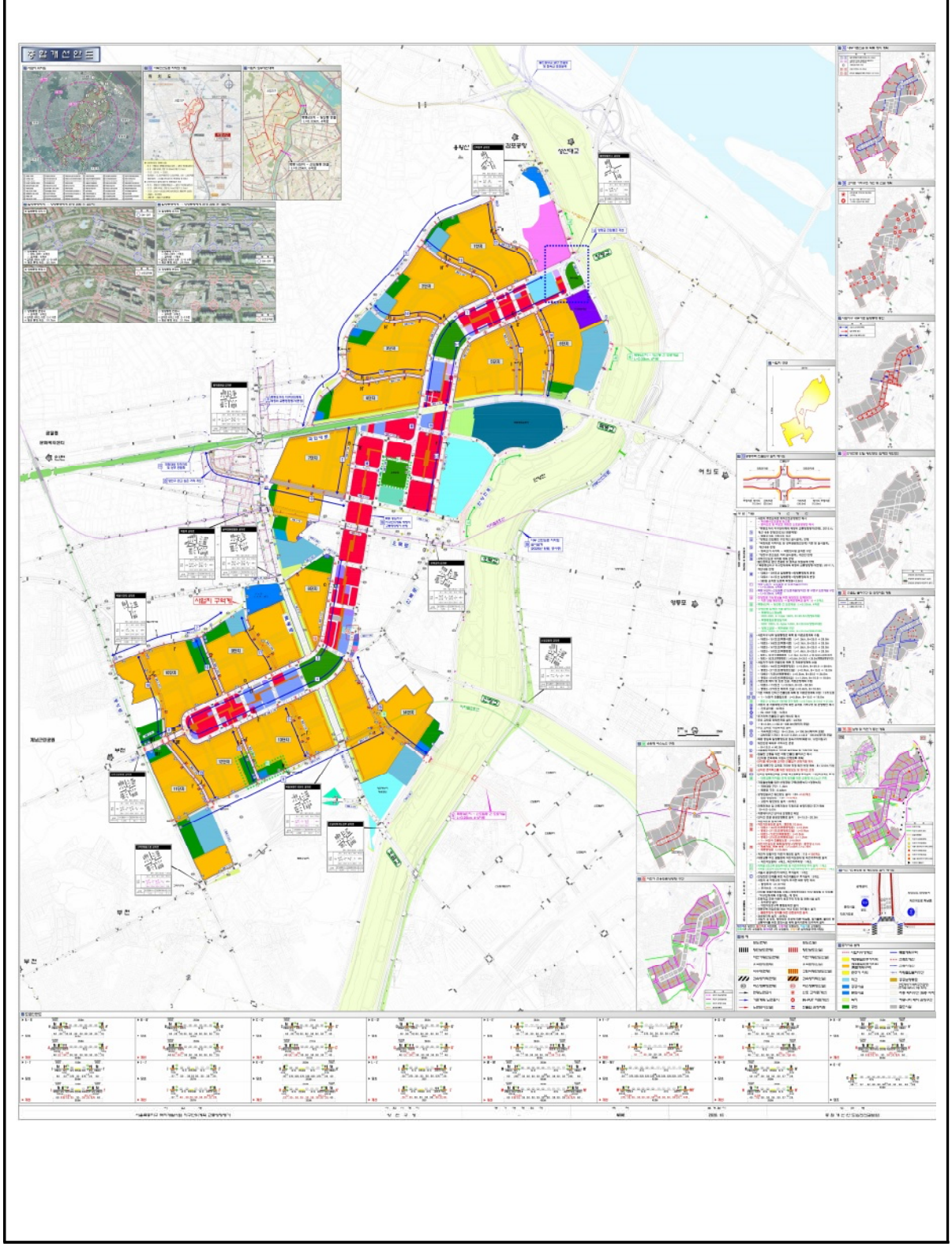
[주변지역 개발계획]

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구 분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사 업 기 간			~ 2027년						
사업시행자			양천구청						
평가대행업체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4,368,463.0	100.0		합계		2,281,684.0	100.0	
주거지역	소계	3,168,887.9	72.5		공동주택용지		1,921,950.6	84.2	
	제1종일반주거지역	172,695.8	4.0	기반시설용지	소 계		359,733.4	15.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766.1	5.4		공원		143,255.4	6.3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812.6	3.2		녹지		58,699.00	2.6	
	제3종일반주거지역	2,617,613.4	59.9		공공공지		25,992.5	1.1	
상업지역	소계	568,384.8	13.0		문화시설		4,612.90	0.2	
	일반상업지역	568,384.8	13.0		사회복지시설		17,225.7	0.8	
공업지역	소계	73,561.2	1.7		유치원		1,722.7	0.1	
	준공업지역	73,561.2	1.7		도로		100,211.1	4.4	
녹지지역	소계	557,629.1	12.8		철도		8,014.10	0.4	
	자연녹지지역	557,629.1	12.8						
주차대수			법정주차 : 61,077대 주차수요 : 71,532대						

순수 발생 교통량	구분		승용차		택시		합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2028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335	3,770	102	955	437	4,725	5,162
		1일 발생교통량 (대/일)	21,115	21,115	5,761	5,761	26,876	26,876	53,752
	2032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333	3,721	102	950	435	4,671	5,106
		1일 발생교통량 (대/일)	20,993	20,993	5,758	5,758	26,751	26,751	53,502

주 : 1) 주변가로 및 사업지 첨두시는 08:00~09:00시임
2) 2026년 이후 KTDB상 영향권 통행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2032년 발생량이 2028년 보다 감소
자료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보완서-2020.11,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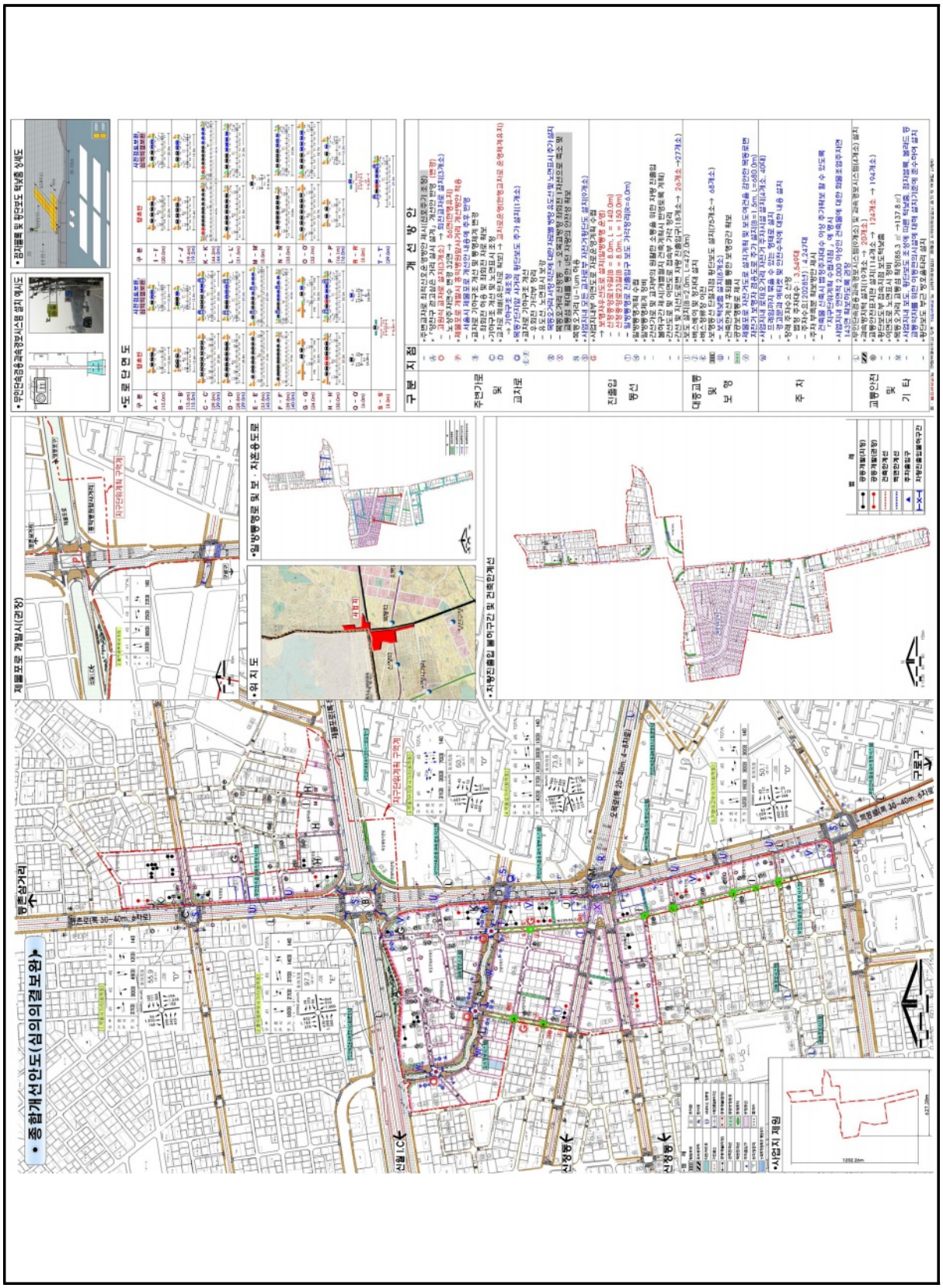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

2)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88-47번지 일대					
사업시행자		양천구청					
설계사무소		(주)대한콘설탄트					
대행기관		(주)바우컨설탄트					
지역·지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사업기간		~2023년					
주용도		주거복합시설					
계획개요	대지면적	192,743.0 ㎡					
	건폐율	제1,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특별구역내 용도지역 상향지역 : 기존건축물 정비시 60%→70%, 신축시 60%→70%					
	허용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지역 - 일반→준주거 : 8m이상 접도 360% 이하, 8m미만 접도 3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제3종일반주거 : 23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준주거 : 250% 이하 기존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 : 250% 이하 - 제2종일반주거 : 200% 이하					
	법정주차대수	3,549대					
	주차수요	4,247대(2028년)					
	평가지표	4,247대 확보 필요					
구 분		2020년			2028년		
		유입	유출	합계	유입	유출	합계
발생교통량	사업지 첨두시 (pcu/시)	305	272	577	588	246	834
	주변가로 첨두시 (pcu/시)	144	95	239	391	496	887
	1일 (pcu/일)	3,071	3,071	6,142	5,750	5,750	11,500

주 : 사업지 첨두시 - 18:00~19:00, 주변가로 첨두시 - 08:00~09:00
자료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의결보완서, 2015.04, ㈜바우컨설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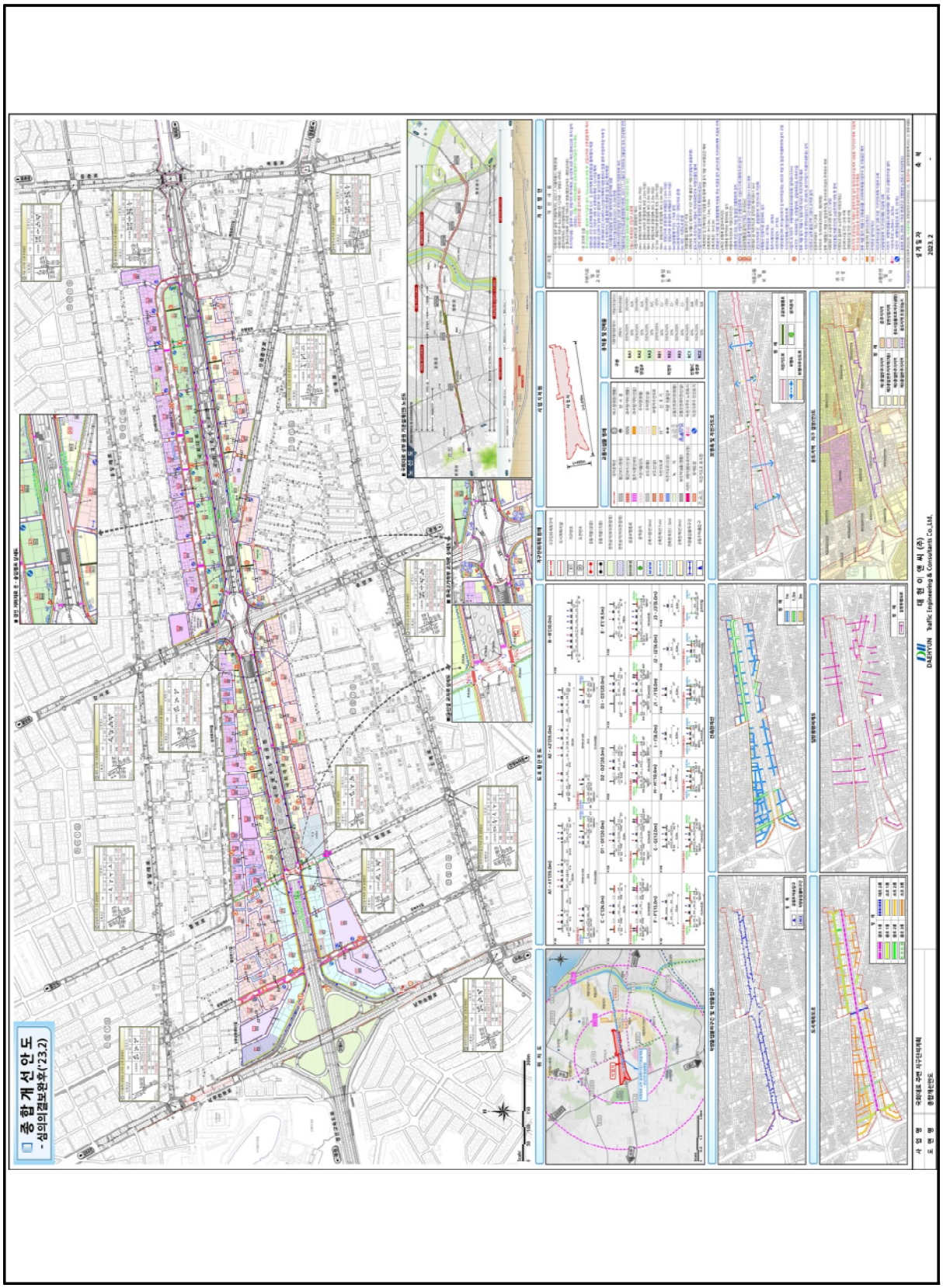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 종합개선안도]

3)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구 분			내 용								
사 업 명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사 업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신정동 일원								
사 업 기 간			2021년 ~ 2025년								
사 업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설 계 기 관			(주)신명건설기술공사								
평가대행자			대현이앤씨(주)								
지 역 · 지 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지면적			622,000㎡								
주차시설	법정주차대수		10,213대								
	주차수요		9,993대								
발생 교통량 (대/시, 대/일)	구 분		사업미시행시(①)			사업시행시(②)			순수발생량(②-①)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사업지첨두시	2026년	1,337	869	2,206	2,030	1,208	3,238	693	339	1,032
		2030년	1,303	844	2,147	1,984	1,176	3,160	681	332	1,013
	주변가로 첨두시	2026년	684	1,427	2,111	925	2,299	3,224	241	872	1,113
		2030년	669	1,339	2,068	905	2,253	3,158	236	854	1,090
	1일발생량	2026년	12,163	12,163	24,326	17,756	17,756	35,512	5,593	5,593	11,186
		2030년	11,834	11,834	23,668	17,284	17,284	34,568	5,450	5,450	10,900
인·허가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 : 사업지 첨두시 18:00~19:00 / 주변가로 첨두시 08:00~09:00시임
자료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 2023.02, 대헌이앤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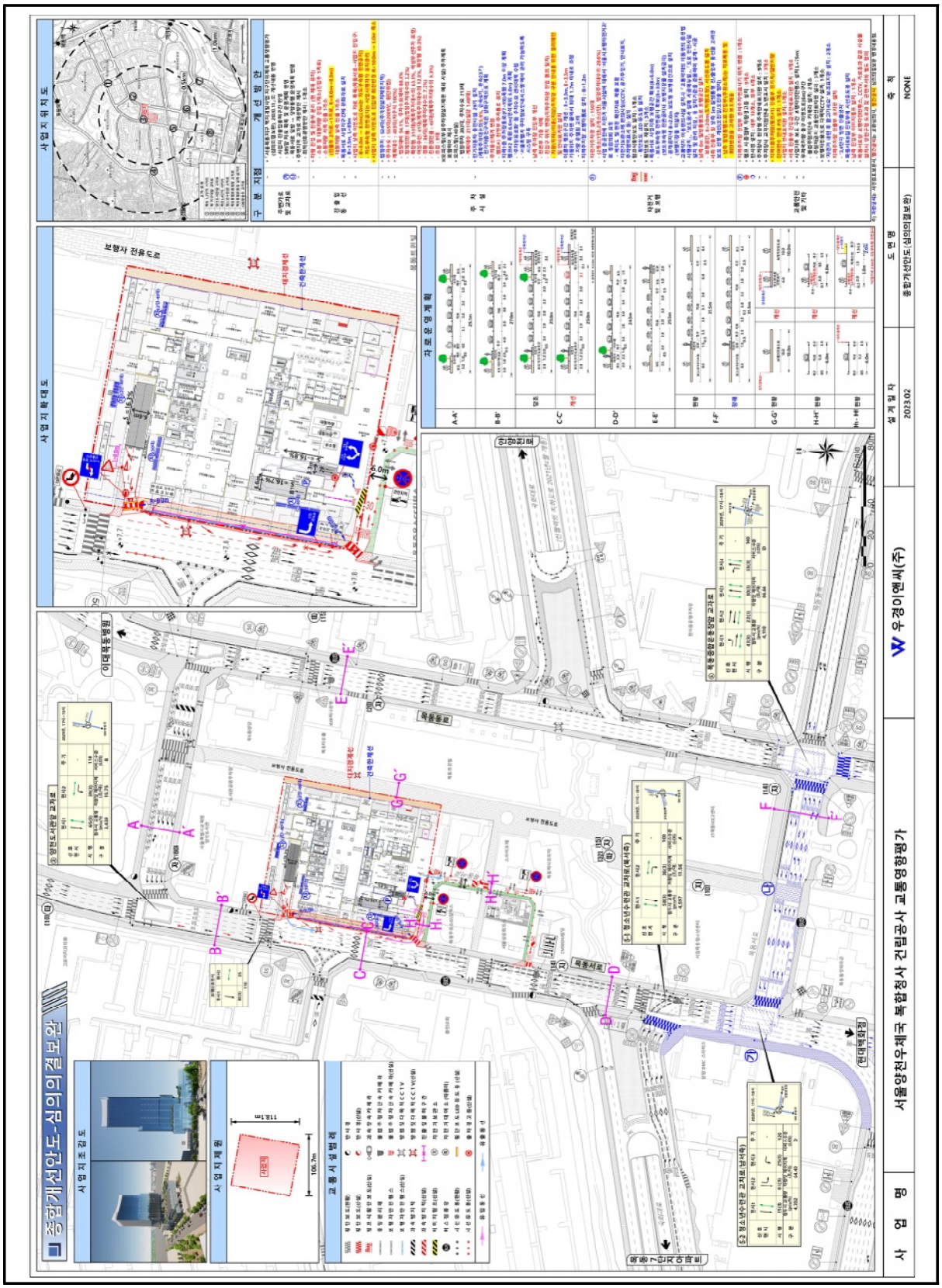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

4)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								
사 업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17 일원								
사 업 시 행 자		우정사업조달센터								
설 계 기 관		㈜디엔비건축사사무소								
평 가 기 관		우경이앤씨(주)								
평 가 기 준		서울특별시 조례대상 Swa: 71,508.08㎡(7.15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평가대상 Swa: 55,315.28㎡(5.53배)								
사 업 기 간		2022년 ~ 2026년								
지 역 / 지 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 용 도		공공업무시설(우체국),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 공공기여), 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9,314.70㎡								
건 축 면 적		5,575.47㎡								
연 면 적		94,384.97㎡(지상: 69,129.45㎡, 지하: 25,225.52㎡)								
건 폐 율		59.86% (법정 : 60%이하)								
용 적 율		742.15% (법정 : 750% 이하)								
사 업 규 모		지하4층~ 지상29층								
진 출 입 구		3개소								
자 전 거 보 관 소		150대분(4개소, 법정주차대수의 28.6%)								
주 차 계 획	법 정 대 수	524대(주차장설치제한지역)								
	주 차 수 요	555대(2029년, 원단위법)								
	계 획 주 차	493대(자주식 100%) - 법정대비 94.1%, 주차수요대비 88.8% - 장애인전용: 17대(법정주차대수의 3.2%) - 확장형: 313대(계획주차대수의 63.5%, 여성우선주차 포함) - 여성우선: 61대(계획주차대수의 12.3%, 확장형 80.3%) - 경형: 36대(계획주차대수의 7.3%) - 친환경전용: 46대(계획주차대수의 9.3%) - 조업: 9대 ※ 오피스텔(부설주차장설치제한 예외 시설)주차계획 포함하여 제시								
		•오피스텔(143실) - 법정주차 202대, 주차수요 213대 - 계획대수 211대(실당 1.48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9기 설치 (계획주차대수의 5.9%, 급속6기, 완속23기)								

구 분		승용차		택 시		업무차량		합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입	유출	유 입	유 출	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대/시)	2027년	89	110	25	29	4	1	118	140	258
	2029년	89	110	25	29	4	1	118	140	258
1일 교통량 (대/일)	2027년	1,171	1,171	293	293	48	48	1,512	1,512	3,024
	2029년	1,166	1,166	292	292	48	48	1,506	1,506	3,012

주 : 사업지첨두시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17:00~18:00시임.
자료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 2023.02, 우경이앤씨(주)』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

2.4 교통관련 및 시설계획

2.4.1 교통관련계획

1)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 12, 한국교통연구원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수도권 토지이용의 재편은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여 통행의 구성 요소인 기점, 종점, 통행 거리 및 시간 등에 대한 변화를 발생시킴.

◦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교통 측면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적이고 대안적인 교통체계를 제시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수도권의 교통수요는 5년마다 시행하는 통행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되고 있어 중간년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임.

◦ 시간적인 교통수요의 누락은 교통정책의 부재로 이어져 수도권 내 교통체계는 시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

◦ 또한,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 감소 등의 민감한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장래에 적절한 대응과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및 수도권 내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별도의 연구과제(현행화 사업)를 발굴하여 교통수요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변화하는 교통 여건과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2020년 기준의 기·종점 통행량(O/D) 제시 및 향후 수도권 교통정책의 추진 방향 제언을 목적으로 함.

◦ 현행화란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년도 사업에서 구축된 O/D를 연도별로 보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O/D를 구축하는 과정임

(2) 과업의 범위

① 시간적 범위 :

◦ 기준연도 : 2020년

② 공간적 범위 : 전국(수도권 : 직접영향권, 수도권 외부 : 간접영향권)

◦ 수도권 : 소존(행정동) 및 세부가로망

◦ 수도권 외부 : 중존(시·군) 및 간선도로망

(3) 과업의 내용

① 2020년 기준 여객 O/D 현행화

◦ 현행화 방법론 수립

◦ 기준년도 목적별·수단별, 첨두 여객 O/D

◦ 현행화 O/D 검증 및 보정

- 통행수단 : 도보, 승용차(승합차 포함), 버스(통근/통학버스, 시내/좌석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기타버스), 지하철/전철, 철도(일반철도, 고속철도), 택시, 자전거, 화물, 오토바이, 기타
- 통행목적 : 배웅, 귀가, 출근, 등교, 학원, 업무, 귀사, 쇼핑, 여가/오락/외식/친교, 기타 등

②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2020년 기준연도 현행화 및 장래 네트워크 구축

◦ Transit Line 현행화(일반/광역/좌석/마을버스)

◦ Transit Line 신규 구축(일반철도/KTX)

2) 2040년 서울도시 기본계획(2022.3)

(1) 계획의 목표

◦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

◦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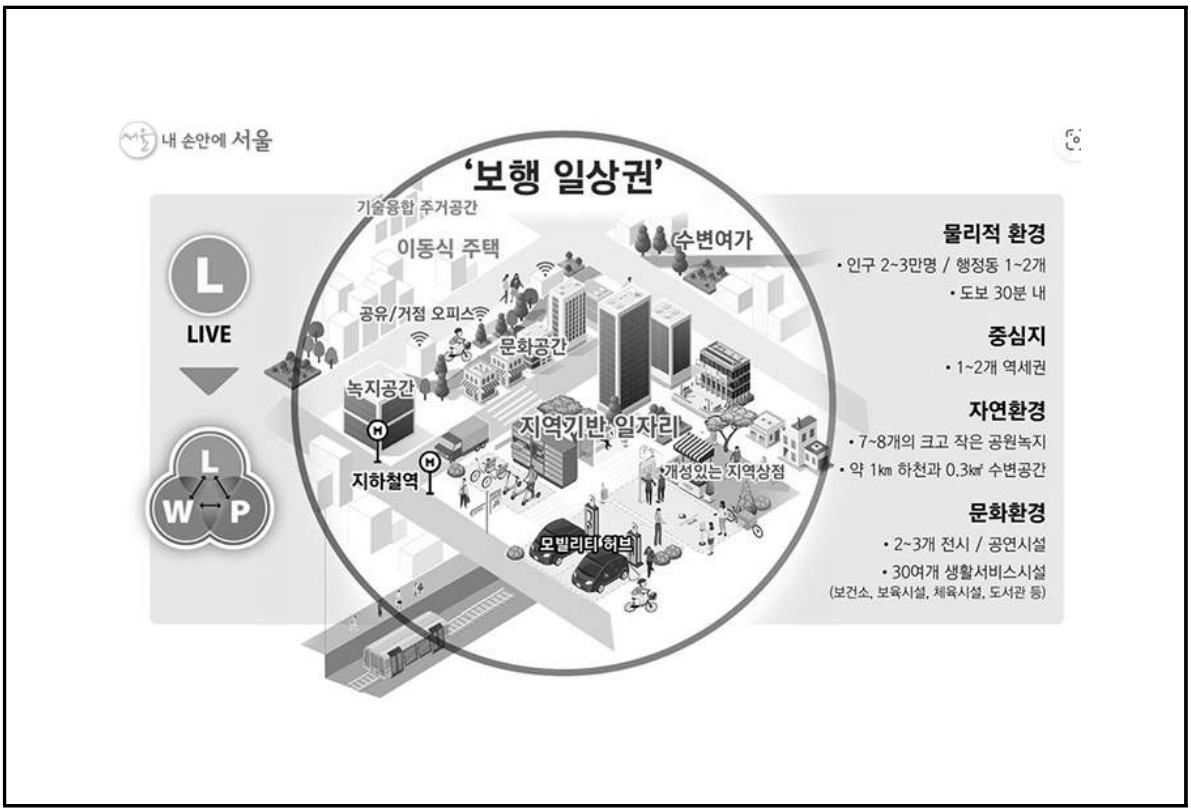
◦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

(2) 6대 공간계획

② '보행 일상권' 도입

-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개선.

- 서울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어 시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도 기대



[보행 일상권]

②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좋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나아가, 수변명소와 수변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여나간다.



[수변중심 공간]

③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 '서울도심'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지난 10년간 유연성 없는 보존 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됐다. 이에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방향을 재정립



[서울도심 4+1축 조성]

④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 산업화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준비
-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용도지역체계
-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서울비전 2030 4대 신성장 혁신축]

⑤ 지상철도 지하화

-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
-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
-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 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 장기적·단계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구조를 마련해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

⑥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노선을 운영
-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
-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시에 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 계획적 지원방안도 가동.



[서울 내 지상철도 및 차량기지 현황]

3) 서울특별시 도로건설 · 관리계획 2021~2030 (2019.12)

(1) 계획의 범위

①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17년, 목표연도: 2025년, 장기목표연도: 2030년

② 공간적 범위: 직접영향권: 서울특별시, 간접영향권,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수도권 권역



[계획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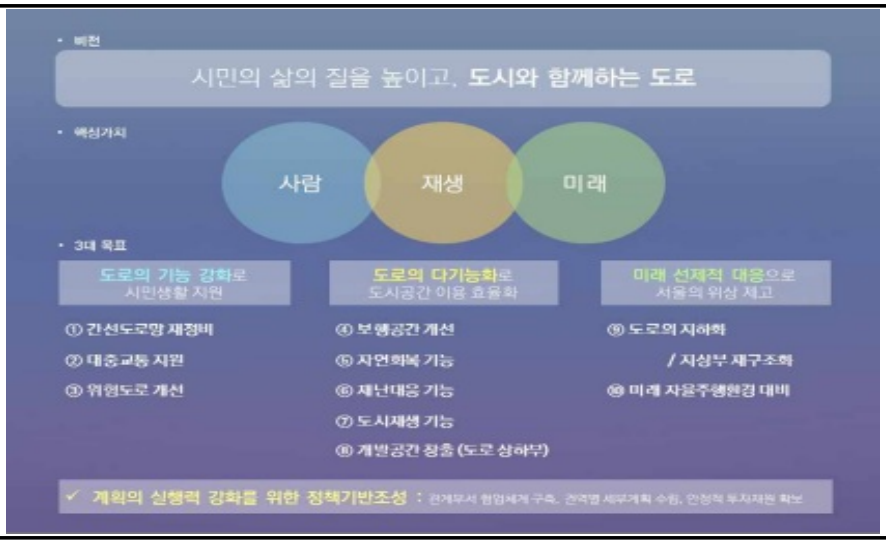
③ 내용적 범위:

-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문제점 진단
- 도로 · 교통 현황 및 전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도로건설 · 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도로건설운영
- 도로건설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 도로 관리 운영
- 도로관리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2) 도로건설계획

① 비전 및 목표

◦ 사람, 재생, 미래를 3대 핵심가치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공존하는 도로'를 도로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비전 및 목표]

① 도로건설 사업현황

◦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130건 사업 중 기 완료된 사업은 38건, 계속 진행사업은 65건, 장기사업은 27건이다. 금차년도 검토대상 사업은 도로정비기본계획 사업 총 130건 중 기 완료된 38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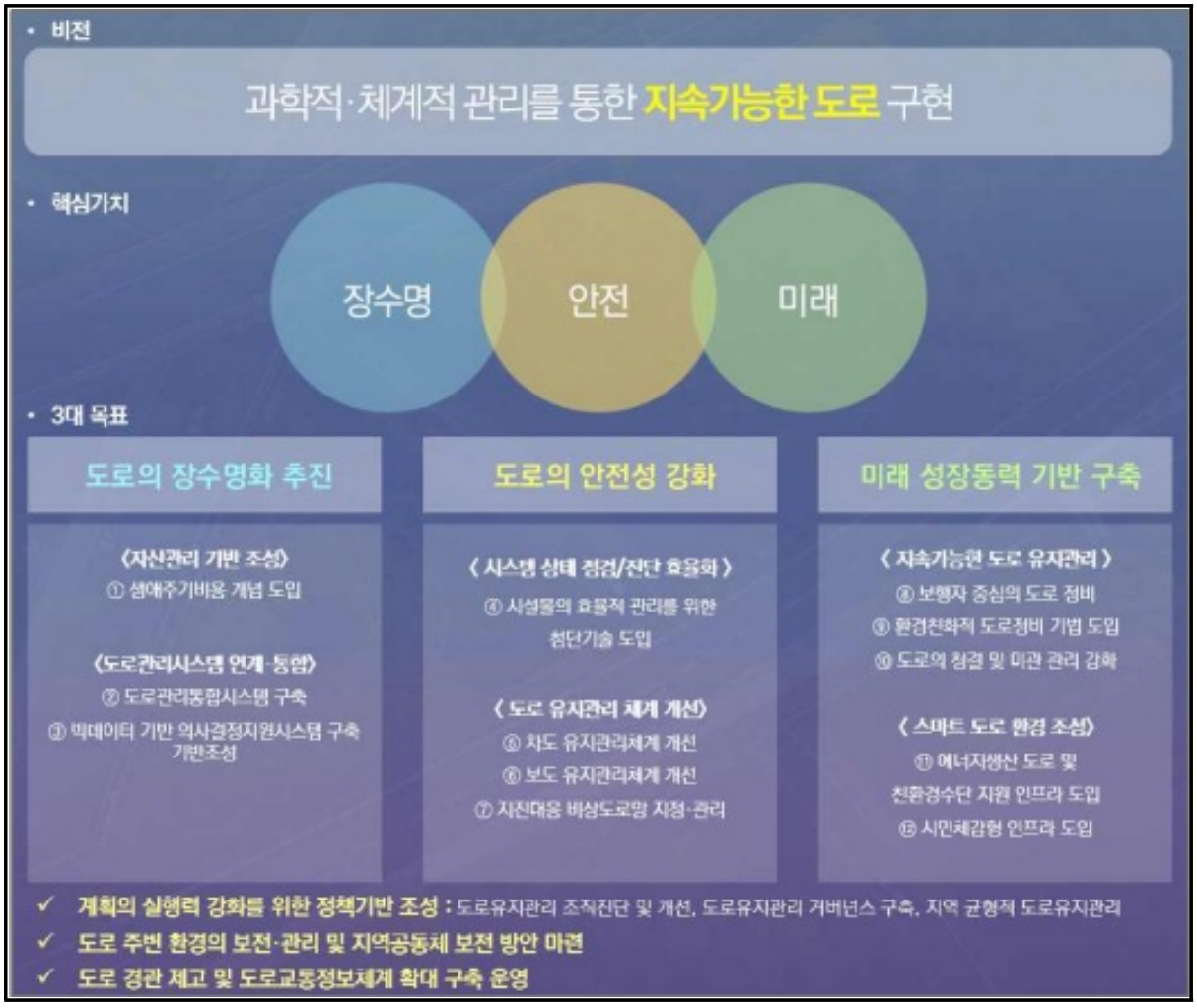
[도로위계별 사업추진현황]

구분	총 사업건수	신설	확장	구조개선
도시고속도로	49	18	3	28
주간선도로	39	15	10	14
보조간선도로	33	13	14	6
국지/집산도로	5	1	2	2
광역도로/고속도로	8	6	2	0
계	134	53	31	50

(3) 도로관리계획

① 비전 및 목표

◦ 장수명, 안전, 미래를 핵심가치로 도로의 장수명화 추진, 도로의 안전성 강화,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비전 및 목표]

4)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4.12)

(1) 계획의 목적

① 서울시 교통부문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서울 교통의 장기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② 친환경·저탄소 교통 정책 추진에따른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요구

③ 교통관련 자료 구축에 따른 종합 교통계획 수립 요구

(2) 계획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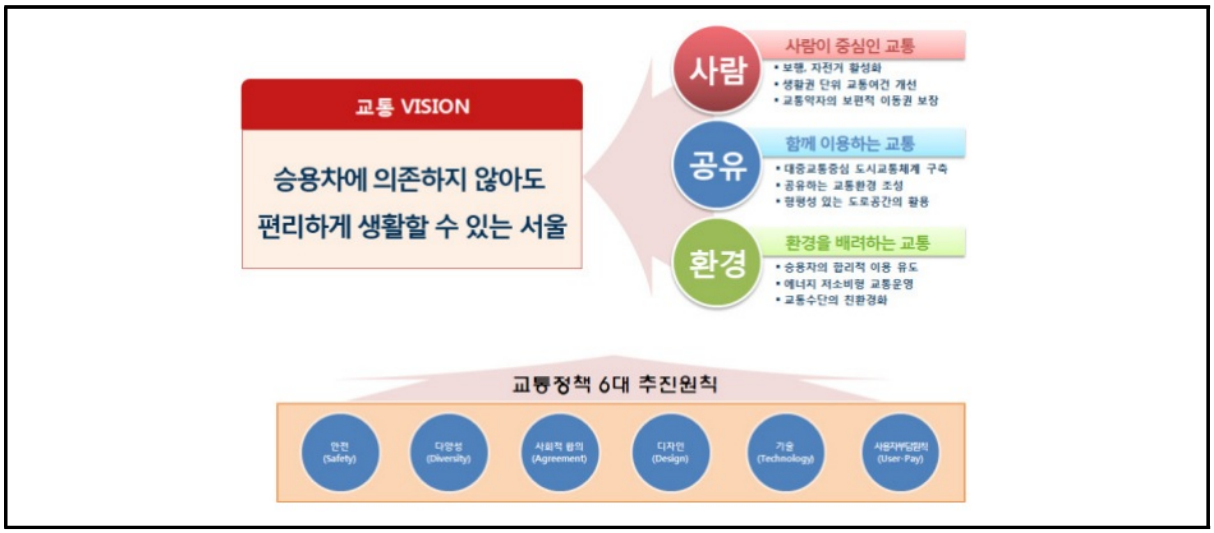
①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12년, 단기목표연도: 2016년, 중기목표년도: 2021년 장기목표연도: 2031년

② 공간적 범위: 서울시 및 인접 교통권역(성남, 의정부 등 13개 지역)

③ 내용적 범위:

- 서울 교통 현황 및 전망
- 중장기 교통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 교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소비 산출 방법론
- 부문별 추진계획(14개 부문)
-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제시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 교통정책 비전 및 정책방향



[교통정책 비전 및 정책방향]

① 철도 부문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서울 도시철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철도 인프라, 서비스, 운영 및 제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함

[도시철도 부문 추진시책 총괄]

정책방향	추진시책	
	단기	중장기
미래지향적 도시철도 인프라	○ 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중심의 인프라 확충 - 기 계획 경전철 사업 보완 추진 - 노면전차 등 신교통수단 도입 ○ 급행서비스 도입 - 광역철도 연장 및 급행서비스 제공 - 대심도 급행서비스 도입 - 광역철도 기존선 급행화 방안 검토 - 도시철도 직결 운행 검토 ○ 도시철도 안전성 및 친환경성 강화 - 내구연한 초과 노후시설물 교체 - 기존선 지상구간 지하화 검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 보조간선도로	○ 교통약자 편의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 혼잡역사 개선 ○ 정시성과 쾌적성 향상 - 신호시스템 개량을 통한 운전시격 단축 - 편성구성 증대 및 임시열차 투입 검토 ○ 버스와 도시철도의 환승여건 개선 - 광역거점 및 2호선 순환선을 중심으로 환승체계 구축	
	-	○ 도시철도 ITS 도입 - 차내 혼잡도 사전 안내 시스템 도입 검토 - 영상기반 안전사고 감시 시스템 도입 검토
도시철도의 합리적 운영 및 제도	○ 저비용 유지보수체계 마련 - 체계적인 유지보수 정비지침 마련 - 터널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등 유지보수 자동화 추진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 개선 -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요금인상 기준 마련 -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혁신	○ 사업추진 및 운영방안 정립 - 철도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 대중교통 통합 운영 검토

② 버스 부문

○ '지속가능한 수요대응형 버스체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버스 부문 추진시책 총괄]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정책방향</th><th colspan="3">추진시책</th></tr>
<tr><th>단기</th><th colspan="2">중장기</th></tr>
<tr><td rowspan="6">버스운영
인프라
구축</td><td rowspan="3">버스
네트워크
확충 및
기능정립</td><td colspan="3">중앙버스전용차로 연계 강화 및 기능 개선</td></tr>
<tr><td>-</td><td colspan="2">버스우선신호체계 구축
(버스 노선광역축 중심)</td></tr>
<tr><td colspan="2">버스 지·간선노선체계 재정립</td><td>-</td></tr>
<tr><td rowspan="2">대중교통
맞춤형
스마트
환승센터
확충</td><td colspan="2">-</td><td>광역버스 노선
통합운영</td></tr>
<tr><td colspan="2">시·경계 지역 대형 환승센터 구축</td><td>-</td></tr>
<tr><td>정류소
편의증진
제고</td><td>정류소 이용환경 개선</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버스안전
및 서비스
강화</td><td>버스 안전성
제고</td><td colspan="3">CNG 내압용기 및 타이어 관리
버스 교통사고 예방</td></tr>
<tr><td>수요대응형
버스체계</td><td colspan="2">공차회송, 맞춤형 버스, 심야전용 시내버스,
도심 순환 셔틀버스 등
버스용량의 차등화(소형/중형/대형)</td><td>-</td></tr>
<tr><td>교통복지
서비스 강화</td><td colspan="3">교통약자 맞춤형 버스교통체계 구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저상버스화 사업</td></tr>
<tr><td rowspan="5">경영
합리화
강화</td><td rowspan="3">재정부담
최소화</td><td colspan="2">비용 최소화 (전면적 버스노선 개편, M&A)</td><td>-</td></tr>
<tr><td colspan="2">수입 극대화 (공영차고지 복합적 활용)</td><td>-</td></tr>
<tr><td>버스운영체계개선
(준공영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요금체계
합리화</td><td colspan="2">버스요금체계 다양화
(차등/환승/완전거리비례 요금제)</td><td>-</td></tr>
<tr><td colspan="2">원가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td><td>-</td></tr>
<tr><td>통합
버스관리기구</td><td>-</td><td colspan="2">전문 버스관리기구 신설
(수도권 광역노선 공동운영관리)</td></tr>
</table>

③ 택시 부문

○ '타기 편하고 안전한 택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택시 부문 추진시책 총괄]

정책방향		추진시책	
		단기	중장기
수급 불균형 개선	수요대응형 택시공급	• 심야전용택시 활성화 • 업무택시 활성화	• 운행시간 규제,탄력적 요금을 이용한 수요 · 공급조절
	택시수급 안정화	• 적정택시업체 규모 산정 및 유도 • 택시총량제 지속적 시행	• 처우개선을 통한 운수종사자 확보율 제고
서비스 관리 개선	불법영업근절	• 불법행위 단속, 처벌지침 마련	•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서비스유형의 다양화	•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여성전용 콜택시 도입	• 순항택시와 콜택시 시장의 분리 • 복지택시 확대
	쾌적한 택시 서비스 제공	• 차량내 악취, 오물 등 불편요소 등 근절	• 주요 거점 택시 승차대 도입
택시업체 경영 합리화	택시업체지출 투명성 확보	• 표준회계지침 및 표준운송원가 재정비 • 경영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 임금체계 개선 유도 • 요금과 임금수준의 연계	• 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 확충
정보서비스 인프라 확충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추적관리시스템 마련	• 콜센터 자동화를 통한 콜센터 인력 충원, 규모의 경제 실현

④ 보행 부문

○ '보행자가 최우선이 되는 교통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보행 부문 추진시책 총괄]

<table>
<tr><th rowspan="2">정책방향</th><th colspan="3">추진시책</th></tr>
<tr><th>단기</th><th>중기</th><th>장기</th></tr>
<tr><td rowspan="2">안전한
보행환경</td><td colspan="3">○ 이면도로 보행자 안전관리 체계화
- 보행로 특성별 정비기준 마련 및 법제화
-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 이면도로 대상 "보행자 특별안전지구" 지정 관리
- 이면도로상의 보차분리 확대 및 보행우선구역의 이면도로 정온화
- 생활권 이면도로 불법주차 관리 강화
- Home Zone 도입</td></tr>
<tr><td colspan="3">○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 어린이, 노인 보행전용거리 운영</td></tr>
<tr><td rowspan="3">편리한
보행환경</td><td>○ 보행공간 확장정책 지속
- 도로다이어트 및 보도 확장, 보행연속성 확보 (건물 진출입시설 조정)
- 보행전용거리 활성화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 보행자 우선 공유도로 조성
- 지역별 불균형 해소
- Car Free Zone 도입
- Flexible Road Diet 기법</td><td colspan="2">○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으로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 이동상인 정비방안 마련
- 보도 포장 및 상태 개선</td></tr>
<tr><td colspan="2">○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 대중교통 보행동선체계 설계지침 마련
-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튜브형 버스정류장 등)
- 대중교통 환승거리 최소화 (환승주차장 · 환승센터 건립 추진)</td><td>○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위치 조정</td></tr>
<tr><td colspan="2">○ 횡단보도 복원 및 육교와 지하도 역할 축소
- 도심(4대문 내) 모든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전방향 횡단보도)
- 교차로 보행 저항 줄이기 사업 및 광폭 횡단보도 도입
- 연차적으로 육교와 지하도 규모 축소</td><td>○ 서울시내 모든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td></tr>
<tr><td>보행우선문화
정착</td><td>○ 보행공간에 대한 인식 제고
- 보행권 선언 및 시민 홍보
- 보행우선문화 정착 캠페인
- 운전자·시민·공무원 대상교육 강화</td><td colspan="2">○ 보행우선문화 견인사업 실시
-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
- 교통약자 보행환경 우수지역 포상
- 보행우선문화를 뒷받침 할 제도 개선</td></tr>
</table>

⑤ 자전거 부문

○ ‘자전거 타기 안전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자전거 부문 추진시책 총괄]

<table>
<tr><th rowspan="2">정책방향</th><th colspan="2">추진시책</th></tr>
<tr><th>단기</th><th>중장기</th></tr>
<tr><td rowspan="3">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td><td colspan="2">○ 맞춤형 자전거 교육 강화
- 시민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안전교육 강화
- 자전거 연수원 구축 및 운영
○ 자전거 이용 지원 정책
-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 자전거 지도 및 Navigation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 자전거 이용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그룹형 자전거 출근제 정착(자전거 버스)
- 대규모 자전거 축제로 자전거 붐 조성(자전거 캠페인, 축제)</td></tr>
<tr><td>○ 자전거 도난방지 종합대책
- 자전거등록제 시행
- 자전거 도난처벌강화
-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및 보안강화
- 자전거 도난방지 캠페인
○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지원
- 지하철 환승 할인제
- 타교통수단 자전거 탑승허용
- 지하철역 편의시설 확충
○ 자전거 관련 법제도 정비
- 방치자전거 처리체계 정비
- 법정비(새로운 유형 자전거, 교육강화, 안전장구 착용 강화)
- 자전거 통행량 검지기
- 공유도로/우선차로제
- 신설도로 자전거도로 설치 원칙
○ 자전거 지원 조직 강화
- 자전거 거버넌스 운영
- 자전거 정책 전문성 강화</td><td>-</td></tr>
<tr><td colspan="2">○ 공공자전거 확대 운영</td></tr>
<tr><td>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시설 정비</td><td colspan="2">○ 생활권 중심 자전거도로망 우선설치
○ (중기) 자전거 연계망 설치
○ (장기) 자전거 간선망 설치</td></tr>
<tr><td colspan="2">○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td></tr>
</table>

⑥ 주차 부문

○ '인간중심의 주차환경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주차 부문 추진시책 총괄]

정책방향	추진시책	
	단기	중장기
민·관 협력의 주차공간 공급	○ 주차취약지구 지속적 공급 및 개선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 유휴 자투리 공간 발굴 - 그린 파킹 사업 지속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실화	○ 차고지 증명제 단계적 도입 - 노후주거지 주차공간 블록별 관리 - 거주자우선주차공간 점진적 축소 - 민영주차장 활성화 정책 추진
도심부 주차수요관리 강화	○ 주차관리 DB 구축 및 전산화,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 주차상한제 평가 및 합리적 조정 - 지역과 건물단위 병행 적용 - 주차수요 유발시설물 규제강화 ○ 블록별 주차수요 관리 ○ 주차공간 공동이용 의식 제고 - 주차장 야간개방 인센티브 강화 ○ 이륜차, 관광버스 등의 전용주차공간 공급 및 관리 효율화 ○ 광역권 환승주차장 공급 및 재정비, 환승센터(Park & Ride) 시설확충 및 이용 활성화	
주차요금 현실화	○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현실화(주거지 주차수요가 반영된 요금) ○ 혼잡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개선	
주차질서 확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 불법주차 단속 -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우선 단속 - 도심부 불법주차 단속 강화 지역 선정 - 집중지역 주차단속 민간위탁 검토 -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실효성 제고 ○ 서울시 산하 불법주차 단속 기관 설립 검토 (예: 주차관리공사) - 블록별 불법주차 단속 민간위탁	

5)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22~2026), 서울특별시

(1) 계획의 목적

◦ 서울시 교통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5년간의 교통부문 세부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

◦ 2014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고시 이후 변화한 교통 및 사회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사업을 재조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실행해야 할 교통부문별 세부 사업을 도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9년

◦ 계획기간 : 2022년~2026년(5년)

(3) 공간적 범위

◦ 일차적 범위 : 서울특별시

◦ 이차적 범위 : 서울특별시 교통권역 13개 지역(인천광역시, 성남시 등)

(4) 내용적 범위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한 중기계획 수립 범위

◦ 유출입 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 교통시설의 개선

◦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② 금차 중기계획의 중점 내용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4)의 성과 평가

◦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지표 검토

◦ 관련교통계획 검토

◦ 교통환경 여건과 미래사회 변화 전망

◦ 교통비전 및 목표, 부문별 주요 추진사업 도출

◦ 부문별 세부과제 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재원조달방안 마련 및 기대효과 산정

(5) 교통환경여건 변화

① 사회여건 변화

◦ 코로나19 이후 통행량 변화

◦ 시민인식의 변화

◦ 모빌리티 관련 사회갈등

② 교통여건 변화

◦ 수도권 광역화 가속

◦ 생활물류 수요 급증

③ 환경여건 변화

◦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 환경 관련 정책과 그 수용 확대

④ 정책여건 변화

◦ 스마트모빌리티 정책 변화

◦ 환경관련 정책변화

◦ 물류정책 변화

⑤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

◦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

◦ 인구와 공간의 변화

◦ 환경문제의 본격화

◦ 기술의 발전

◦ 대응방향

-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한 새로운 모빌리티 정책 수립
- 교통약자, 1인 가구, 광역통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한 정책대응
- 환경 변화에 대응한 zero-emission 교통환경 조성 필요
- 첨단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및 확대 추진

6) 2030 서울생활권계획(양천구)

(1) 계획의 체계

① 공간적 측면

- 생활권계획은 공간적으로 권역별 경쟁력과 자족기반을 강화하여 권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권역생활권계획과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성하였음.

② 내용적 측면

- 생활권계획의 계획항목은 권역발전구상과 지역발전구상, 공간관리지침 3개 계획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2030 서울플랜의 내용을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고 종합화하는 권역·지역발전구상과 그 발전구상을 공간단위로 구체화하고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공간관리지침으로 구분됨.
- 공간관리지침 내용은 시민,행정기관 등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권역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음.

③ 생활권계획 발전구상

- 핵심이슈 도출
- 미래상 및 발전방향 설정
- 목표 및 전략제시

④ 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

- 중심지
- 용도지역
- 경관
- 생활서비스 시설

[공간관리지침의 주요계획내용]

구분	계획내용
공간구조구상	• 2030 서울플랜의 공간구조구상을 권역단위로 구체화하여 중심지 체계, 교통체계, 공원·녹지체계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
중심지 분야	• 지구중심지 조정 • 중심지 육성방향 구체화 • 중심지 범위설정
용도지역 분야	• 용도지역별 관리원칙 및 조정기준 제시 • 특성주거지역 도출 및 유형별 관리기준 제시
경관 분야	• 경관관리 원칙(공통지침) 제시 • 지역생활권 단위의 경관자원의 발굴 및 관리 • 경관 관리대상 유형구분 및 관리방안 제시
생활서비스 시설 분야	• 우선공급이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의 수요분석 • 우선적 공급유도 시설 제시 • 생활서비스 시설 계획수립 지침 및 운영방안 마련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교육중심도시 목동2생활권

목동2 지역생활권 개요

구분	면적 (ha)	인구 (명)	세대수 (세대)	가구당 인구수 (명/가구)
계	590	161,061	52,313	3.1
목1동	141	33,125	10,644	3.1
목5동	180	45,559	14,028	3.2
신정2동	52	22,507	7,419	3.0
신정6동	96	26,911	8,440	3.2
신정7동	121	32,959	11,782	2.8

※ 출처 : 2014서울통계

생활권 주요이슈

여건변화 가능성	경전철 목동선 신설 예정 제물포터널 건설에 따른 지역환경 개선 예정
계획관리가 필요한 공간 분포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계획적 관리 목동유수지 및 종합운동장의 계획적 관리
공간별 관리지침 관련 주요 이슈 포함	갈산 도시개발사업 추진 목동유수지 활용방안 마련

30년이상 경과된 계획시가지로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계획적 관리 요구



[양천구 목동2생활권 현황]

지역주민과 함께 만든 미래상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교육중심도시 목동2생활권"

목표1 : 목동중심지의 문화상업기능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목표2 :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계획적 관리 및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목표3 : 경전철 신설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및 녹색교통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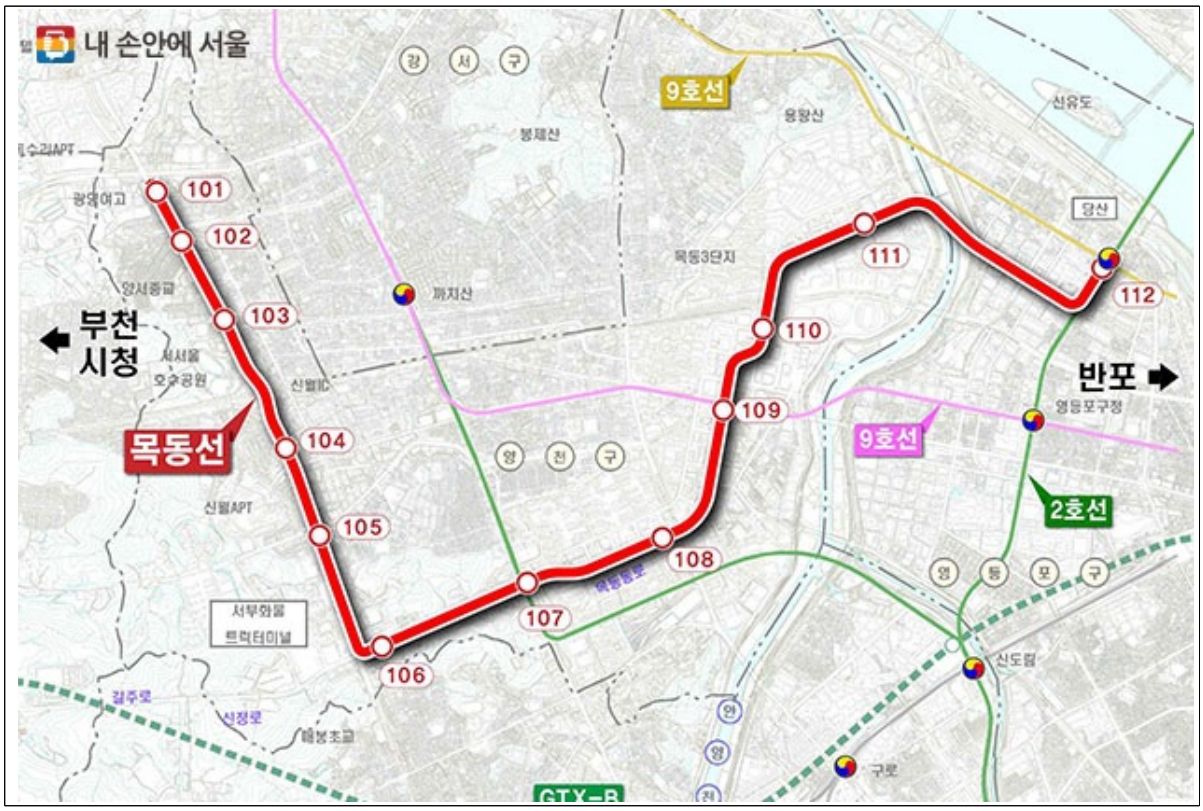
목표4 : 국회대로 및 안양천 일대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양천구 목2동생활권 미래상 및 목표]

2.3.2 교통시설계획

1)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목동선

구 분	내 용
주 요 구 간	• 화곡로입구교차로 ~ 신월사거리 ~ 신원초교 ~ 오솔길공원 ~ 강월초교입구사거리 ~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 신트리공원 ~ 양천구청 ~ 오목교역(5호선) ~ 목동SBS ~ 한가람고교 ~ 당산역(2호선, 9호선)
규 모	• 연장 10.87km (교량 4.73km, 개착 1.75km, 터널 3.89km, 정거장 0.28km, 환기구 0.22km)
정 거 장	• 12개소 (환승역 2개소)
사 업 목 적	• 양천구의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효과적 대응하는 한편, 대중교통취약지역인 신월동 일대의 교통편의를 높여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함.



[목동선 위치도]

2)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강북횡단선

구 분	내 용
주 요 구 간	•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규 모	• 연장 25.72km(터널 24.35km, 정거장 0.61km, 환기구 0.76km)
정 거 장	• 19개소(환승역 9개소)
사 업 목 적	• 내부순환로 지하를 따라 강북을 좌우로 횡단하는 경전철을 통해 지하철서비스 소외 지역이었던 서대문구, 성북구 및 종로구 북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이기 위함.



[강북횡단선 위치도]

3) 국회대로 도로 입체화 사업

구 분	내 용
위 치	• 양천구 신월 나들목(IC) ~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
규 모	• 총 연장 7.6km • 폭 40~55m • 친환경조성 약 11만 m^2
사업 기간	• 2024년 완공예정
사업 목적	• 양천구와 강서구 구간(4.1km)은 도로 지하화로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영등포 구간(3.5km)은 도로 다이어트로 부지를 확보해 주민편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광화문 광장 5배의 친환경 녹지공간(11만m^2)이 생겨나며 현재 국회대로로 단절된 양천구와 강서구 또한 연결되어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국회대로 도로 입체화 사업 위치도]

제3장 장래 교통수요 예측

3.1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3.1.1 장래 도시성장지표 예측

가. 인구 및 세대수

◦ 서울시 인구추이는 2017년 10,124,579인에서 2022년에는 9,667,669인으로 연평균 -0.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세대수는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대당 인구는 2017년 2.40인에서 2022년에는 2.17인으로 -1.9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구 및 세대수 추이]

(단위 : 인, %)

구 분	세대수(세대)	인구(인)			세대당인구
		남	여	합 계	
2017년	4,220,082	10,124,579	4,957,857	5,166,722	2.40
2018년	4,263,868	10,049,607	4,910,849	5,138,758	2.36
2019년	4,327,605	10,010,983	4,877,725	5,133,258	2.31
2020년	4,417,954	9,911,088	4,816,522	5,094,566	2.24
2021년	4,426,007	9,736,027	4,721,977	5,014,050	2.20
2022년	4,446,296	9,667,669	4,675,560	4,992,109	2.17
연평균증가율	1.05%	-0.92%	-1.17%	-0.69%	-1.95%

자료 : 서울통계서비스(https://data.seoul.go.kr/)

나. 서울시 장래인구 예측

◦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시 장래 인구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최종목표연도인 2033년에 8,930,089인으로 전망되었으며, 연평균 -0.4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서울시 장래 인구 예측]

구 분	2019년	2023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3년*	2035년	연평균 증가율	
								'23-'31	'31-'33
인 구(인)	9,535,732	9,343,214	9,248,418	9,051,693	9,010,976	8,930,089	8,849,929	-0.45%	-0.45%

자료 :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
주 : *는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보정치임.

다. 서울시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 서울시 연도별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3,116,256대에서 2022년 3,193,351대로 연평균 0.4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구 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 계
2017년	2,641,190	127,564	339,921	7,581	3,116,256
2018년	2,658,637	120,780	337,241	7,993	3,124,651
2019년	2,670,803	114,310	330,840	8,204	3,124,157
2020년	2,711,984	106,504	329,943	8,930	3,157,361
2021년	2,740,044	100,403	326,425	9,871	3,176,743
2022년	2,763,730	96,085	322,706	10,830	3,193,351
연평균증가율	0.91%	-5.51%	-1.03%	7.39%	0.49%

자료 : 서울통계서비스(https://data.seoul.go.kr/)

라. 서울시 통행량 예측

○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된 서울시의 장래 총 통행량을 살펴보면, 최종목표연도인 2033년 1인당 목적통행 횟수는 2.55회/인, 1인당 수단통행 횟수는 2.75회/인으로 예측되었음.

[서울시 장래 통행량 예측]

구 분	2019년	2023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3년*	2035년	연평균 증가율	
								'23-'31	'31-'35
인 구(인)	9,535,732	9,343,214	9,248,418	9,051,693	9,010,976	8,930,089	8,849,929	-0.45%	-0.45%
목적통행(통행/일)	24,147,836	24,055,101	24,042,041	23,315,045	23,122,990	22,745,973	22,374,330	-0.49%	-0.82%
수단통행(통행/일)	25,244,943	25,454,975	25,570,041	25,071,415	24,913,644	24,601,253	24,292,721	-0.27%	-0.63%
1인당목적통행(통행/인)	2.53	2.57	2.60	2.58	2.57	2.55	2.53	-0.04%	-0.37%
1인당수단통행(통행/인)	2.65	2.72	2.76	2.77	2.76	2.75	2.74	0.18%	-0.18%

자료 :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
주 : *는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보정치임.

3.1.2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가. 자연증가 교통량예측

◦ 장래 주변지역의 교통량은 본 사업시행과는 무관하게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개인통행량, 교통체계의 변화 등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량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및 교통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지 주변 자연증가에 의한 교통량을 예측하고,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발생교통량 예측이 필요함.

◦ 목표연도 자연증가에 의한 교통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래 수단통행량 증가율 '23~'31년 -0.27%, '31~'33년 -0.63%를 적용하여 사업미시행시 자연증가교통량을 예측하였음.

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발생교통량 예측

◦ 사업미시행시 교통량은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발생교통량이 주변의 교통여건 및 교통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각 개발사업 사업완료시의 발생교통량을 본 과업 목표연도 및 주변가로 첨두시에 맞게 보정한 후, 이를 자연증가 교통량에 적용하여 사업미시행시 교통량을 예측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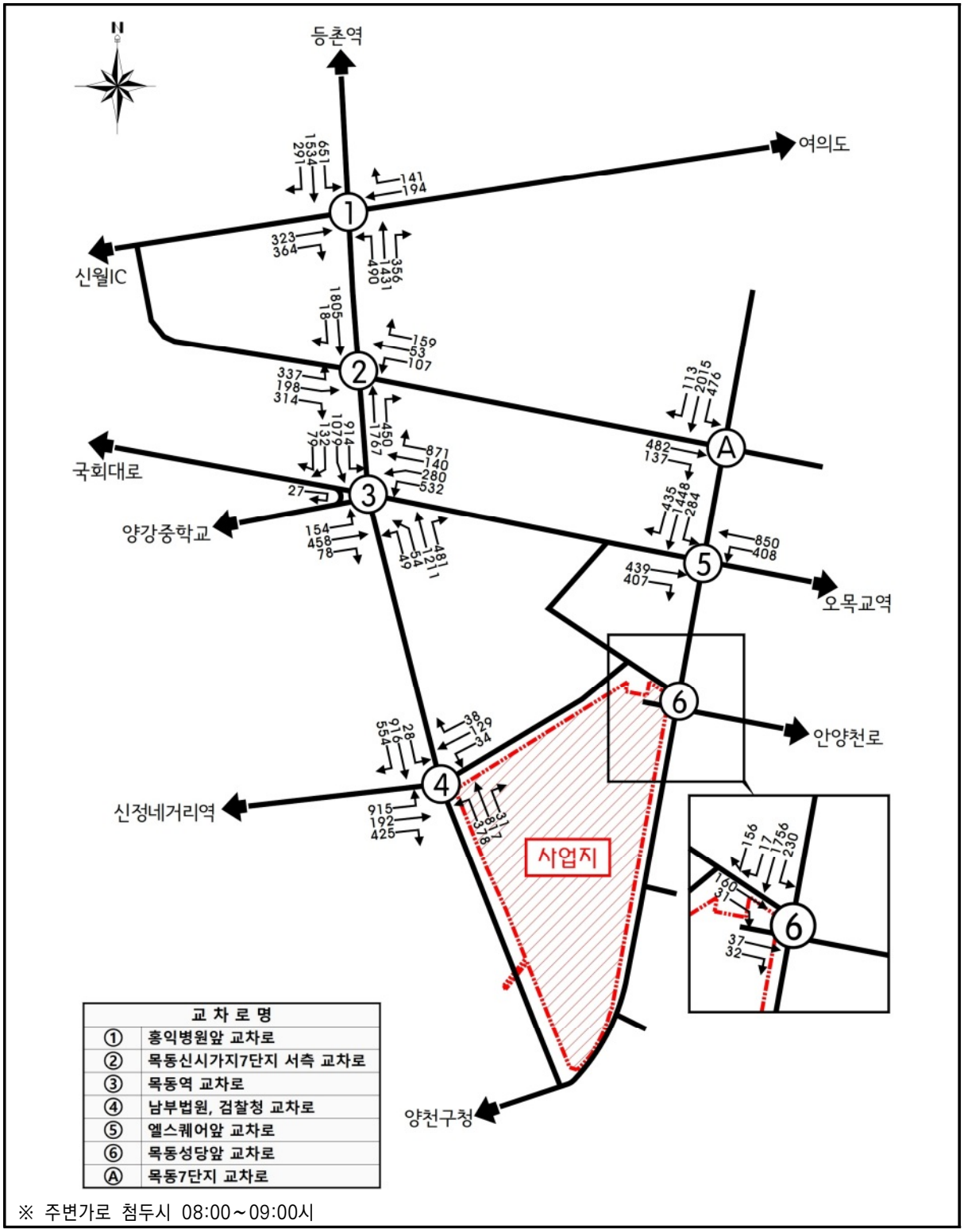
[주변지역개발계획에 따른 발생교통량]

구 분	2031년			2033년		
	유입	유출	합계	유입	유출	합계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430	5,406	5,836	426	5,358	5,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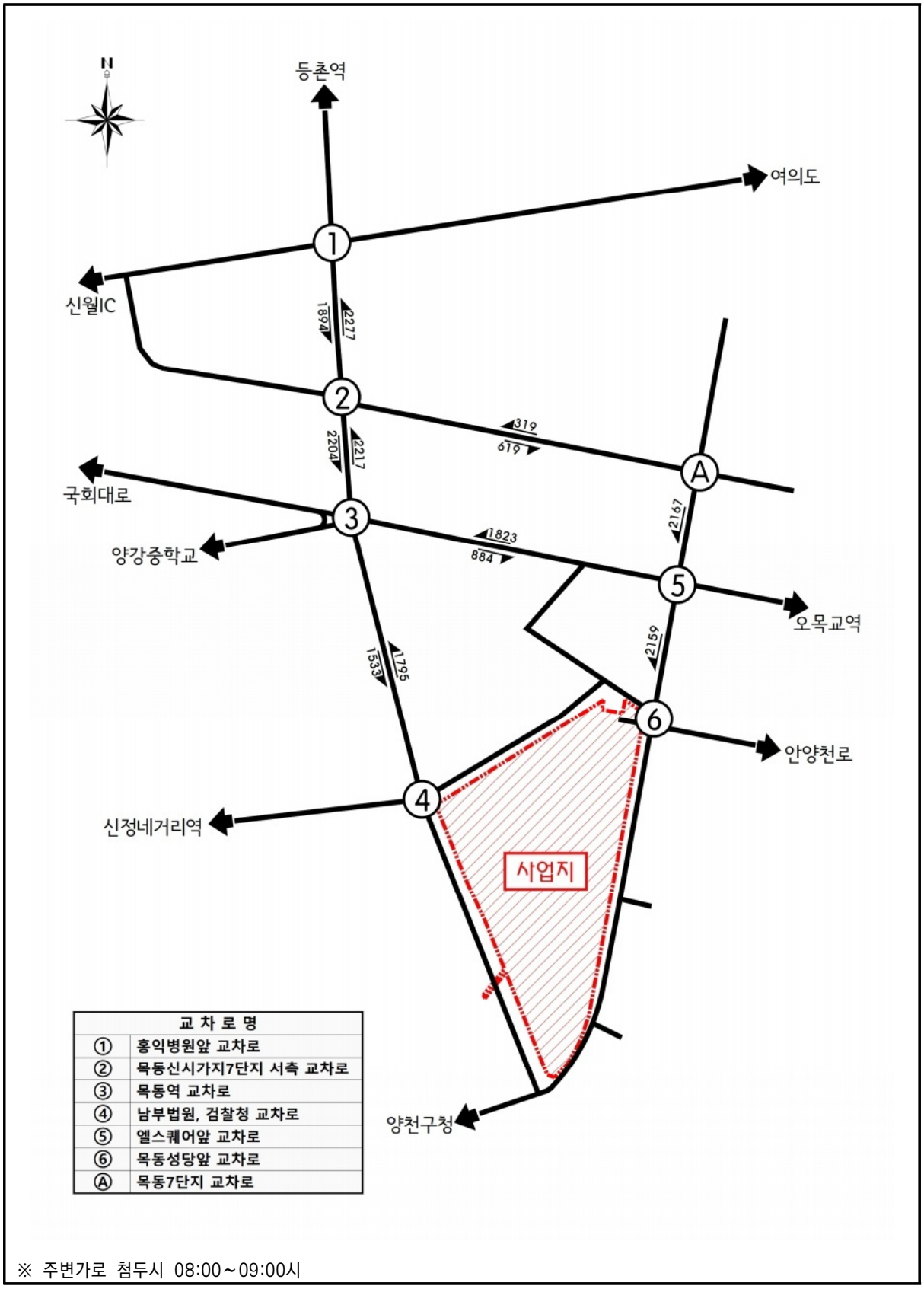
주 :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유발교통량은 본 과업의 목표연도에 맞게 보정한 수치임.
자료 : 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2020.11,㈜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다. 사업미시행시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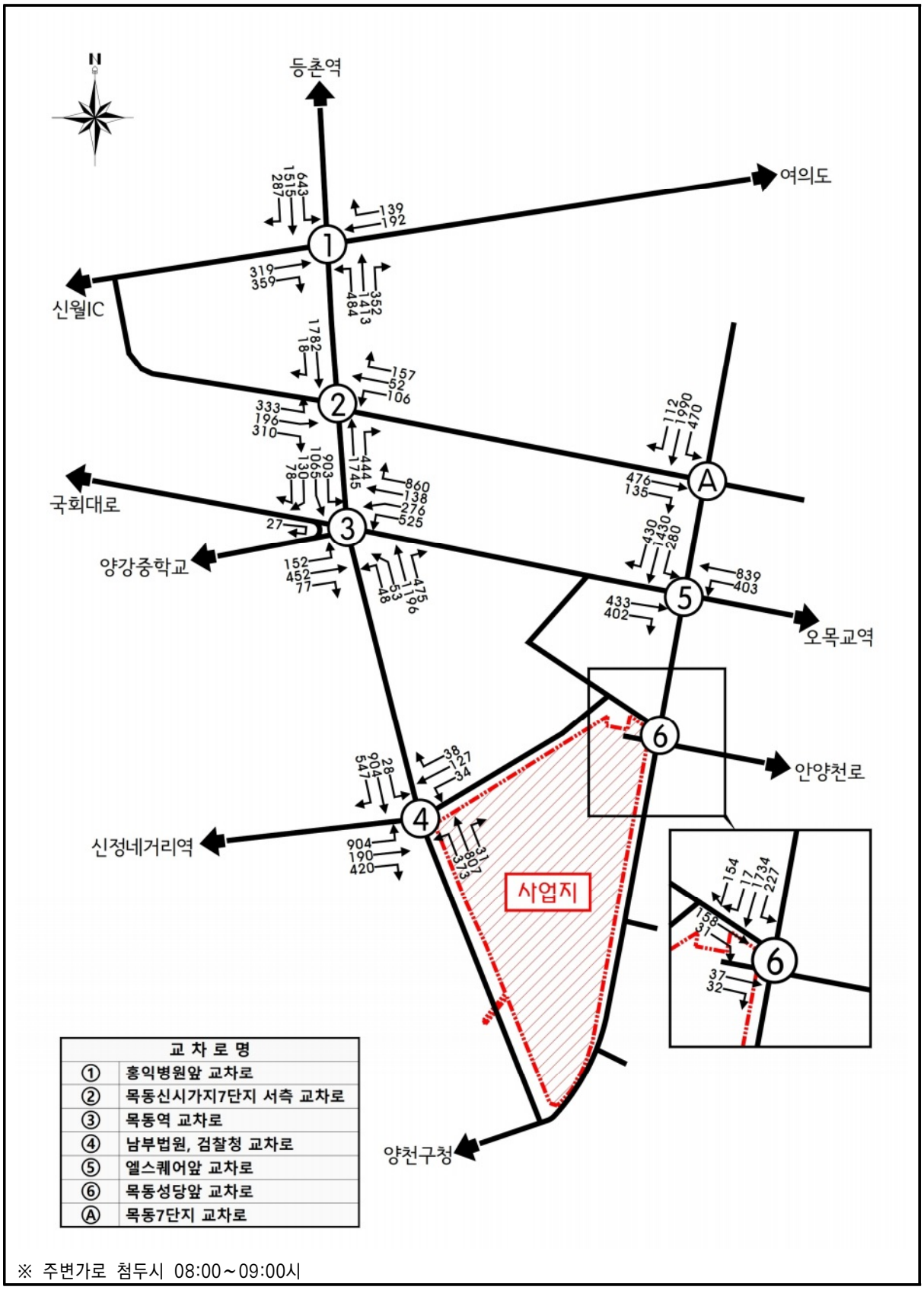
○ 사업미시행시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은 다음과 같다.



[사업미시행시 교차로 교통량도(2031년, pcu/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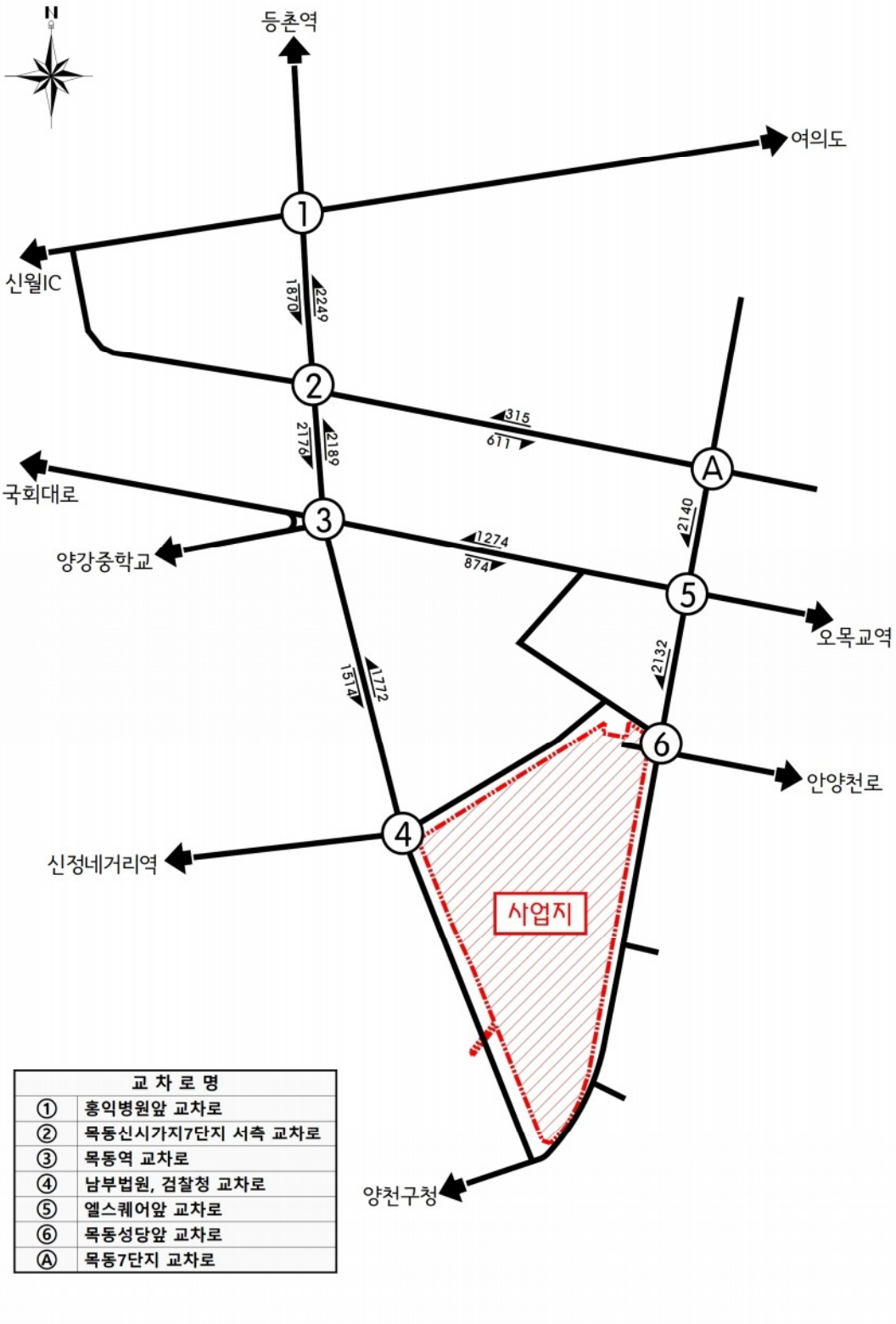


[사업미시행시 가로 교통량도(2031년, pcu/h)]



※ 주변가로 첨두시 08:00~09:00시

[사업미시행시 교차로 교통량도(2033년, pcu/h)]



교 차 로 명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③	목동역 교차로
④	남부법원, 검찰청 교차로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	목동7단지 교차로

※ 주변가로 첨두시 08:00~09:00시

[사업미시행시 가로 교통량도(2033년, pcu/h)]

라. 사업미시행시 가로구간 및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사업미시행시 주변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장래 목표연도인 2033년 평균통행속도는 11.3~32.1km/h로 서비스수준은 “C~F"로 나타났음.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미시행시, 2031년)]

구 간		구간 길이 (㎞)	도로 유형	교통량 (pcu/h)	평균 통행 속도 (Km/h)	서비스 수준 (LOS)
목동로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24	Ⅲ	1,894	17.3	E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17	Ⅲ	2,204	12.5	E
	③목동역 교차로 →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0.42	Ⅲ	1,533	13.5	E
	구간전체	0.83	Ⅲ	-	14.2	E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2	Ⅲ	1,795	19.7	E
	③목동역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17	Ⅲ	2,217	11.0	F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0.24	Ⅲ	2,277	13.9	E
	구간전체	0.83	Ⅲ	-	15.3	E
오목로	③목동역 교차로 →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0.48	Ⅲ	884	23.2	D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8	Ⅲ	1,823	20.8	D
목동서로	Ⓐ목동7단지 교차로 →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0.34	Ⅲ	2,167	29.8	C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⑥목동성당앞 교차로	0.55	Ⅲ	2,159	31.9	C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미시행시, 2033년)]

구 간		구간 길이 (㎞)	도로 유형	교통량 (pcu/h)	평균 통행 속도 (Km/h)	서비스 수준 (LOS)
목동로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24	Ⅲ	1,870	17.4	E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17	Ⅲ	2,176	12.6	E
	③목동역 교차로 →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0.42	Ⅲ	1,514	14.2	E
	구간전체	0.83	Ⅲ	-	14.6	E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2	Ⅲ	1,772	19.8	E
	③목동역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17	Ⅲ	2,189	11.3	F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0.24	Ⅲ	2,249	14.0	E
	구간전체	0.83	Ⅲ	-	15.5	E
오목로	③목동역 교차로 →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0.48	Ⅲ	874	23.4	D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8	Ⅲ	1,274	20.8	D
목동서로	Ⓐ목동7단지 교차로 →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0.34	Ⅲ	2,140	29.8	C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⑥목동성당앞 교차로	0.55	Ⅲ	2,132	32.1	C

○ 사업미시행시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장래 목표연도인 2033년 평균제어지체는 25.65~87.01초/대로 서비스수준 “B~E"로 분석되었음.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미시행시, 2031년)]

교 차 로	교통량(pcu/h)	평균제어지체(초/대)	서비스수준(LOS)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5,775	75.4	E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5,279	56.4	D
③ 목동역 교차로	6,539	89.7	E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4,580	88.1	E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4,328	58.1	D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2,419	33.9	C
Ⓐ 목동7단지 교차로	3,223	25.9	B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미시행시, 2033년)]

교 차 로	교통량(pcu/h)	평균제어지체(초/대)	서비스수준(LOS)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5,703	73.5	E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5,213	56.2	D
③ 목동역 교차로	6,455	83.3	E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4,525	87.0	E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4,275	56.5	D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2,390	33.5	C
Ⓐ 목동7단지 교차로	3,183	25.7	B

3.2 사업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3.2.1 접근방법

○ 사업시행시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황조사 자료와 상위계획 및 유사시설 원단위 자료를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교통량을 예측하여 사업지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임.

○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단일 건축물의 건설 등으로 인해 새롭게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 교통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예측하여 발생 될 수 있는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소통과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합리적으로 예측되어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교통량의 예측은 4단계 교통수요 예측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과정에 대한 약술은 다음과 같음.

- 통행발생(Trip Generation): 현재 운영중에 있는 유사시설의 활동인구(상주, 상근 및 이용인구)를 분석하여 원단위를 도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장래 1일 유·출입 통행량을 예측하는 단계
-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통행발생에서 구해진 유·출입 통행량을 다른 존에 분포시키며 각 접근별 방향별 통행분포비를 산정하는 단계
- 수단선택(Modal Split): 각 활동인구의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및 수단분담률, 평균재차인원을 분석·적용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발생량의 시간대별 교통수단별 통행량 예측
- 통행배분(Trip Assignment): 장래 본 사업지의 개발과는 무관하게 증가 될 사업미시행시의 예측 교통량에 본 사업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을 가로 및 교차로에 배분

3.2.2 통행발생

가. 활동인구 원단위

◦ 통행발생은 일반적으로 4단계 교통수요 예측기법 중 첫 번째 단계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장래 활동인구를 예측하여 이를 통행량으로 환산하는 단계이며 장래 시행으로 인한 통행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활동인구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함.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활동인구를 산정하기 위해 본 사업지와 동일용도, 유사규모 시설에 대한 문헌자료의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중 평균치를 적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였음.

[유사시설의 활동인구 원단위]

구 분		유 사 시 설	세대수(세대), 연면적(m^2)	활동인구 원단위 (인/세대,인/1,000m^2)	
				상주(상근)인구	방문(이용)인구
공동주택	주거2	신길우성2차아파트 1)	120	3.14	1.06
		래미안목동아델리체 2)	284	3.20	1.01
		용산 더프라임 3)	74	3.63	1.09
		적 용 치	-	**3.25**	**1.03**
	주거3	신길우성2차아파트 1)	605	3.44	1.08
		래미안목동아델리체 2)	848	3.41	1.06
		용산 더프라임 3)	176	3.94	1.11
		적 용 치	-	**3.48**	**1.07**
	주거4	보라매경남아너스빌아파트 1)	88	3.97	1.13
		목동힐스테이트 2)	154	3.92	1.10
		용산 더프라임 3)	88	4.20	1.29
		적 용 치	-	**4.01**	**1.16**
근린생활시설		신길우성2차아파트 1)	1,972.96	28.89	277.99
		래미안목동아델리체 2)	3,294.26	26.80	276.12
		목동1차우성아파트 4)	275.28	19.50	203.94
		적 용 치	-	**27.18**	**273.2**

주 : 문헌자료 원단위는 본 과업의 분석기준연도(2023년)에 맞추어 보정한 수치이며, 적용치는 유사시설 자료의 가중평균치임.

자료 : 1)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2022.11,㈜도시발전연구원
2)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2022.07,㈜우리종합기술
3) 신용산역 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2021.11, ㈜에이디엘이앤씨
4)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교통영향평가,2023.05,㈜우리종합기술

나. 장래 활동인구 예측

○ 장래 이용인구에 대해서는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서울시 목적통행증가율 '23~'31년 -0.49%, '31~33년 -0.82%를 적용하였음.

[장래 사업지 1일 활동인구 예측 - 현황 유지시]

구 분		세대수(세대), 연면적(m^2)	활 동 인 구(인/일)				
			상주(상근)인구	방문(이용)인구		합 계	
				2031년	2033년	2031년	2033년
공동주택	주거2	834	2,711	826	809	3,537	3,520
	주거3	278	967	286	281	1,253	1,248
	주거4	240	962	269	264	1,231	1,226
	소계	1,352	4,640	1,381	1,354	6,021	5,994
근린생활시설		2,097.82	57	551	542	608	599
합계		-	4,697	1,932	1,896	6,629	6,593

[장래 사업지 1일 활동인구 예측 - 정비계획 완료시]

구 분		세대수(세대), 연면적(m^2)	활 동 인 구(인/일)				
			상주(상근)인구	방문(이용)인구		합 계	
				2031년	2033년	2031년	2033년
공동주택	주거2	532	1,729	527	516	2,256	2,245
	주거3	937	3,261	965	946	4,226	4,207
	주거4	412	1,652	461	453	2,113	2,105
	소계	1,881	6,642	1,953	1,915	8,595	8,557
근린생활시설		1,900.00	52	499	491	551	543
합계		-	6,694	2,452	2,406	9,146	9,100

다. 목표연도 1일 총 통행량 예측

◦ 본 과업에서는 목표연도 통행량 예측을 위해 공동주택의 상주인구는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된 1인당 목적통행횟수(2031년:2.57, 2033년:2.76)를 적용하여 장래 통행량을 예측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방문인구 및 근린생활시설의 상근 및 이용인구에 대해서는 2.0통행/일을 적용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인구에 대해서는 중복통행을 고려하여 70%를 적용하였음.

◦ 장래 목표연도 2033년 1일 활동인구 총 통행량을 살펴보면, 상주(상근)인구 18,468통행/일. 방문(이용)인구 4,518통행/일으로 총 22,986통행/일로 예측되었음.

[장래 사업지 1일 총 통행량 예측 - 현황 유지시]

(단위: 통행/일)

구 분		세대수(세대), 연면적(m^2)	2031년			2033년		
			상주(상근)	방문(이용)	계	상주(상근)	방문(이용)	계
공동주택	주거2	834	6,958	1,652	8,610	7,496	1,618	9,114
	주거3	278	2,482	572	3,054	2,674	562	3,236
	주거4	240	2,470	538	3,008	2,660	528	3,188
	소계	1,352	11,910	2,762	14,672	12,830	2,708	15,538
근린생활시설		2,097.82	114	772	886	114	760	874
합 계		-	12,024	3,534	15,558	12,944	3,468	16,412

[장래 사업지 1일 총 통행량 예측 - 정비계획 완료시]

(단위: 통행/일)

구 분		세대수(세대), 연면적(m^2)	2031년			2033년		
			상주(상근)	방문(이용)	계	상주(상근)	방문(이용)	계
공동주택	주거2	532	4,438	1,054	5,492	4,780	1,032	5,812
	주거3	937	8,368	1,930	10,298	9,016	1,892	10,908
	주거4	412	4,240	922	5,162	4,568	906	5,474
	소계	1,881	17,046	3,906	20,952	18,364	3,830	22,194
근린생활시설		1,900.00	104	700	804	104	688	792
합 계		-	17,150	4,606	21,756	18,468	4,518	22,986

라. 활동인구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예측

○ 통행목적별 시설별 활동인구 통행발생량에 시간대별 분포 비율을 적용하여 시간대별 통행분포를 예측하였으며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비는 유사시설의 문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하였음.

[활동인구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비]

(단위: %)

구 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주인구						방문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통근		통학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07:00 이전	0.0	14.0	0.0	9.1	0.0	0.0	0.0	0.0	5.3	0.0	0.1	0.1
07:00~08:00	0.0	35.4	0.0	42.9	1.1	2.3	0.0	0.0	23.0	0.0	0.8	0.6
08:00~09:00	0.0	40.3	0.0	37.7	2.3	6.9	1.4	1.4	41.3	0.0	2.3	1.7
09:00~10:00	0.0	7.3	0.0	5.2	1.1	4.6	4.1	1.4	18.5	0.0	4.0	3.2
10:00~11:00	0.0	2.4	0.0	3.9	2.3	8.0	5.4	4.1	6.3	0.0	6.1	5.7
11:00~12:00	0.0	0.6	0.0	1.2	6.9	10.3	6.8	6.8	0.9	0.0	8.1	7.3
12:00~13:00	0.0	0.0	1.3	0.0	4.6	6.9	5.4	5.4	0.6	0.0	9.8	9.2
13:00~14:00	0.6	0.0	1.3	0.0	9.3	8.1	9.5	8.1	1.7	0.0	9.2	8.6
14:00~15:00	0.6	0.0	2.6	0.0	10.4	9.3	12.2	9.5	1.1	0.0	8.6	8.5
15:00~16:00	1.8	0.0	3.9	0.0	11.5	8.1	12.2	10.8	0.6	0.3	9.1	9.1
16:00~17:00	3.7	0.0	7.8	0.0	13.8	10.3	10.8	12.2	0.0	1.8	9.5	9.4
17:00~18:00	6.7	0.0	18.2	0.0	13.8	11.5	9.5	9.5	0.0	5.5	9.4	9.2
18:00~19:00	23.2	0.0	19.5	0.0	10.3	6.9	8.1	6.8	0.0	17.4	9.6	9.9
19:00~20:00	25.0	0.0	18.2	0.0	6.9	3.4	8.1	8.1	0.0	24.3	7.5	8.5
20:00~21:00	22.0	0.0	14.3	0.0	3.4	2.3	5.4	10.8	0.6	36.9	4.3	5.8
21:00 이후	16.4	0.0	12.9	0.0	2.3	1.1	1.1	5.1	0.0	13.8	1.5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문헌조사자료

○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비를 토대로 장래 목표연도 시간대별 유출입 통행량을 예측한 결과 다음과 같음.

[장래 시간대별 유출입 통행량(2031년) - 현황 유지시]

(단위: 통행/시, 통행/일)

구 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주인구						방문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통근		통학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07:00 이전	0	467	0	50	0	0	0	0	3	0	1	1
07:00~08:00	0	1,182	0	234	23	48	0	0	13	0	3	2
08:00~09:00	0	1,345	0	205	48	143	19	19	23	0	9	7
09:00~10:00	0	244	0	28	23	95	57	19	11	0	15	12
10:00~11:00	0	80	0	21	48	166	75	57	4	0	24	22
11:00~12:00	0	20	0	7	143	213	94	94	1	0	31	28
12:00~13:00	0	0	7	0	95	143	75	75	0	0	37	36
13:00~14:00	20	0	7	0	193	168	131	112	1	0	36	33
14:00~15:00	20	0	14	0	215	193	168	131	1	0	33	33
15:00~16:00	60	0	21	0	238	168	168	149	0	0	35	35
16:00~17:00	124	0	43	0	286	213	149	169	0	1	37	36
17:00~18:00	224	0	99	0	286	238	131	131	0	3	36	36
18:00~19:00	774	0	107	0	213	143	112	94	0	10	37	38
19:00~20:00	835	0	99	0	143	70	112	112	0	14	29	33
20:00~21:00	734	0	78	0	70	48	75	149	0	21	17	22
21:00 이후	547	0	70	0	48	23	15	70	0	8	6	12
합계	3,338	3,338	545	545	2,072	2,072	1,381	1,381	57	57	386	386

[장래 시간대별 유출입 통행량(2031년) - 정비계획 완료시]

(단위: 통행/시, 통행/일)

구 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주인구						방문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통근		통학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07:00 이전	0	669	0	71	0	0	0	0	3	0	0	0
07:00~08:00	0	1,691	0	334	33	68	0	0	12	0	3	2
08:00~09:00	0	1,924	0	294	68	205	27	27	22	0	8	6
09:00~10:00	0	349	0	41	33	136	80	27	10	0	14	11
10:00~11:00	0	115	0	30	68	237	105	80	3	0	21	20
11:00~12:00	0	29	0	9	205	306	133	133	0	0	28	26
12:00~13:00	0	0	10	0	136	205	105	105	0	0	36	32
13:00~14:00	29	0	10	0	276	240	186	158	1	0	32	30
14:00~15:00	29	0	20	0	309	276	240	186	1	0	30	30
15:00~16:00	86	0	30	0	341	240	238	211	0	0	32	32
16:00~17:00	177	0	61	0	409	306	211	238	0	1	33	33
17:00~18:00	320	0	142	0	409	341	186	186	0	3	33	32
18:00~19:00	1,108	0	153	0	306	205	158	133	0	9	34	35
19:00~20:00	1,194	0	142	0	205	101	158	158	0	13	26	30
20:00~21:00	1,051	0	111	0	101	68	105	211	0	19	15	20
21:00 이후	783	0	100	0	68	33	21	100	0	7	5	11
합계	4,777	4,777	779	779	2,967	2,967	1,953	1,953	52	52	350	350

[장래 시간대별 유출입 통행량(2033년) - 현황 유지시]

(단위: 통행/시, 통행/일)

구 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주인구						방문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통근		통학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07:00 이전	0	502	0	53	0	0	0	0	3	0	1	1
07:00~08:00	0	1,270	0	246	25	52	0	0	13	0	3	2
08:00~09:00	0	1,446	0	218	52	155	19	19	23	0	9	6
09:00~10:00	0	262	0	30	25	104	56	19	11	0	15	12
10:00~11:00	0	86	0	23	52	180	73	56	4	0	23	22
11:00~12:00	0	22	0	7	155	232	92	92	1	0	31	28
12:00~13:00	0	0	8	0	104	155	73	73	0	0	37	35
13:00~14:00	22	0	8	0	209	182	129	110	1	0	35	33
14:00~15:00	22	0	15	0	234	209	164	129	1	0	33	32
15:00~16:00	65	0	23	0	259	182	165	146	0	0	34	35
16:00~17:00	133	0	45	0	308	232	146	164	0	1	36	36
17:00~18:00	240	0	105	0	311	258	129	129	0	3	36	35
18:00~19:00	832	0	111	0	232	155	110	92	0	10	36	37
19:00~20:00	897	0	105	0	155	77	110	110	0	14	29	32
20:00~21:00	789	0	83	0	77	52	73	146	0	21	16	22
21:00 이후	588	0	74	0	52	25	15	69	0	8	6	12
합계	3,588	3,588	577	577	2,250	2,250	1,354	1,354	57	57	380	380

[장래 시간대별 유출입 통행량(2033년) - 정비계획 완료시]

(단위: 통행/시, 통행/일)

구 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주인구						방문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통근		통학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07:00 이전	0	719	0	75	0	0	0	0	3	0	0	0
07:00~08:00	0	1,818	0	355	35	74	0	0	12	0	3	2
08:00~09:00	0	2,070	0	311	74	222	27	27	22	0	8	6
09:00~10:00	0	375	0	43	35	148	79	27	10	0	14	11
10:00~11:00	0	123	0	32	74	258	103	79	3	0	21	20
11:00~12:00	0	31	0	10	222	332	130	130	0	0	28	25
12:00~13:00	0	0	11	0	148	222	103	103	0	0	33	32
13:00~14:00	31	0	11	0	299	261	182	155	1	0	32	30
14:00~15:00	31	0	21	0	335	299	234	182	1	0	30	29
15:00~16:00	92	0	32	0	370	261	234	207	0	0	31	31
16:00~17:00	190	0	64	0	447	332	207	233	0	1	33	32
17:00~18:00	344	0	150	0	444	371	182	182	0	3	32	32
18:00~19:00	1,192	0	162	0	332	222	155	130	0	9	33	35
19:00~20:00	1,284	0	150	0	222	109	155	155	0	13	26	29
20:00~21:00	1,130	0	118	0	109	74	103	207	0	19	15	20
21:00 이후	842	0	107	0	74	35	21	98	0	7	5	10
합계	5,136	5,136	826	826	3,220	3,220	1,915	1,915	52	52	344	344

3.2.3 수단분담

가. 교통수단 분담률 예측

○ 사업지 목표연도의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설 문헌조사 자료를 토대로 교통수단 분담률을 도출하였으며, 목표연도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예측하기 위해 『2021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장래 교통수단별 분담률 증가율을 적용하여 예측하였음.

[교통수단별 수단분담증가율]

(단위: %)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지하철	도보 및 기타
수단분담 증가율	2023~2031년	-0.30	-0.37	-0.29	0.24	-0.68
	2031~2033년	-0.45	-0.56	-0.66	-0.76	-0.68

자료 :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

[장래 교통수단 분담률 예측]

(단위: %)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지하철	도보 및 기타	합 계
공동주택	통 근	2023년	34.9	4.9	21.3	31.2	7.7	100.0
		2031년	34.5	4.8	21.1	32.2	7.4	100.0
		2033년	34.7	4.8	21.1	32.1	7.3	100.0
	통 학	2023년	9.0	2.7	26.3	30.6	31.4	100.0
		2031년	9.0	2.7	26.2	31.8	30.4	100.0
		2033년	9.0	2.6	26.2	31.7	30.5	100.0
	기 타	2023년	28.8	7.2	21.9	30.4	11.8	100.0
		2031년	28.5	7.1	21.7	31.4	11.3	100.0
		2033년	28.6	7.1	21.7	31.4	11.2	100.0
	방문인구	2023년	31.1	6.7	17.2	25.2	19.8	100.0
		2031년	30.9	6.6	17.2	26.2	19.1	100.0
		2033년	31.0	6.6	17.2	26.1	19.1	100.0
근린생활시설	상근인구	2023년	21.2	5.7	22.5	31.2	19.6	100.0
		2031년	21.0	5.6	22.3	32.3	18.8	100.0
		2033년	21.1	5.6	22.3	32.3	18.7	100.0
	방문인구	2023년	8.7	2.6	9.3	12.1	67.5	100.0
		2031년	8.7	2.6	9.5	12.8	66.4	100.0
		2033년	8.7	2.6	9.5	12.8	66.4	100.0

나. 시간대별·수단별 통행량 예측

○ 장래 목표연도 수단분담률과 시간대별 활동인구를 토대로 장래 목표연도별 수단별 유출입 통행량을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시간대별 수단별 통행량 예측(2031년) - 현황 유지시]

(단위: 통행/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지하철		도보및기타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총 계
07:00이전	1	166	0	24	1	112	1	166	1	50	4	518	522
07:00~08:00	10	443	3	66	8	321	12	470	6	166	39	1,466	1,505
08:00~09:00	26	531	5	81	20	372	29	549	19	186	99	1,719	1,818
09:00~10:00	28	121	7	20	17	83	28	124	26	50	106	398	504
10:00~11:00	40	97	9	21	26	70	39	103	37	55	151	346	497
11:00~12:00	73	99	17	23	49	71	75	105	55	64	269	362	631
12:00~13:00	54	67	13	16	38	47	57	70	52	54	214	254	468
13:00~14:00	106	86	25	20	74	58	109	87	74	62	388	313	701
14:00~15:00	124	98	29	24	87	68	126	99	85	68	451	357	808
15:00~16:00	145	97	33	23	102	65	149	96	93	71	522	352	874
16:00~17:00	177	116	38	27	129	78	188	116	107	82	639	419	1,058
17:00~18:00	211	112	44	27	161	79	233	115	127	75	776	408	1,184
18:00~19:00	376	75	63	18	260	53	384	78	160	61	1,243	285	1,528
19:00~20:00	376	61	61	14	255	40	378	60	148	54	1,218	229	1,447
20:00~21:00	305	66	47	15	205	43	305	64	112	52	974	240	1,214
21:00이후	215	32	32	7	148	20	219	30	72	24	686	113	799
합 계	2,267	2,267	426	426	1,580	1,580	2,332	2,332	1,174	1,174	7,779	7,779	15,558

[시간대별 수단별 통행량 예측(2031년) - 정비계획 완료시]

(단위: 통행/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지하철		도보및기타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총 계
07:00이전	0	238	0	34	1	159	1	238	1	71	3	740	743
07:00~08:00	13	634	3	94	11	459	14	673	7	235	48	2,095	2,143
08:00~09:00	33	758	8	116	26	533	36	786	22	263	125	2,456	2,581
09:00~10:00	38	172	8	29	24	120	36	176	31	67	137	564	701
10:00~11:00	55	137	13	28	36	100	52	145	41	72	197	482	679
11:00~12:00	101	142	25	33	70	100	103	146	67	82	366	503	869
12:00~13:00	75	93	19	23	53	65	78	96	62	65	287	342	629
13:00~14:00	150	120	34	28	104	81	152	120	94	79	534	428	962
14:00~15:00	177	139	41	33	122	94	180	140	109	86	629	492	1,121
15:00~16:00	206	136	46	32	144	91	210	134	121	90	727	483	1,210
16:00~17:00	251	163	54	39	181	110	265	162	140	104	891	578	1,469
17:00~18:00	300	158	61	37	228	110	330	161	171	96	1,090	562	1,652
18:00~19:00	536	104	90	26	370	72	547	106	216	74	1,759	382	2,141
19:00~20:00	535	84	86	19	362	55	538	81	204	63	1,725	302	2,027
20:00~21:00	435	90	67	21	291	57	435	85	155	65	1,383	318	1,701
21:00이후	305	42	46	9	210	27	311	39	105	34	977	151	1,128
합 계	3,210	3,210	601	601	2,233	2,233	3,288	3,288	1,546	1,546	10,878	10,878	21,756

[시간대별 수단별 통행량 예측(2033년) - 현황 유지시]

(단위: 통행/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지하철		도보및기타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총 계
07:00이전	1	179	0	25	1	120	1	178	1	54	4	556	560
07:00~08:00	10	478	3	71	8	344	12	502	8	175	41	1,570	1,611
08:00~09:00	27	573	6	87	21	400	29	588	20	196	103	1,844	1,947
09:00~10:00	27	130	7	22	18	90	29	133	26	52	107	427	534
10:00~11:00	41	102	10	23	27	75	39	109	35	58	152	367	519
11:00~12:00	76	106	18	25	53	76	78	110	54	64	279	381	660
12:00~13:00	56	70	14	17	42	50	59	72	51	54	222	263	485
13:00~14:00	111	89	27	21	76	61	114	90	76	64	404	325	729
14:00~15:00	130	103	30	25	90	70	132	104	87	68	469	370	839
15:00~16:00	153	100	34	24	107	67	156	99	96	73	546	363	909
16:00~17:00	186	120	40	28	135	81	197	121	110	83	668	433	1,101
17:00~18:00	224	118	46	28	171	82	247	120	133	77	821	425	1,246
18:00~19:00	402	78	67	19	277	56	409	81	166	60	1,321	294	1,615
19:00~20:00	402	62	65	14	272	42	403	62	154	53	1,296	233	1,529
20:00~21:00	327	66	50	16	220	43	325	64	116	52	1,038	241	1,279
21:00이후	232	31	35	7	159	20	234	31	75	25	735	114	849
합 계	2,405	2,405	452	452	1,677	1,677	2,464	2,464	1,208	1,208	8,206	8,206	16,412

[시간대별 수단별 통행량 예측(2033년) - 정비계획 완료시]

(단위: 통행/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지하철		도보및기타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총 계
07:00이전	0	256	0	36	1	171	1	255	1	76	3	794	797
07:00~08:00	14	684	3	102	11	493	15	719	7	251	50	2,249	2,299
08:00~09:00	35	818	9	125	27	572	38	841	22	280	131	2,636	2,767
09:00~10:00	38	185	8	32	25	129	37	188	30	70	138	604	742
10:00~11:00	55	145	13	30	38	106	54	155	41	76	201	512	713
11:00~12:00	105	149	26	35	73	105	108	154	68	85	380	528	908
12:00~13:00	77	98	19	23	56	69	81	101	62	66	295	357	652
13:00~14:00	156	126	36	30	108	86	160	126	96	78	556	446	1,002
14:00~15:00	184	145	42	34	128	98	187	146	111	87	652	510	1,162
15:00~16:00	217	142	48	34	151	96	221	139	122	88	759	499	1,258
16:00~17:00	266	170	58	40	193	115	280	169	144	104	941	598	1,539
17:00~18:00	319	166	65	39	242	116	349	169	177	98	1,152	588	1,740
18:00~19:00	574	108	96	27	396	75	582	111	226	75	1,874	396	2,270
19:00~20:00	573	85	92	20	387	57	572	82	213	62	1,837	306	2,143
20:00~21:00	467	91	72	21	312	58	463	86	161	64	1,475	320	1,795
21:00이후	330	42	49	8	226	28	333	40	111	32	1,049	150	1,199
합 계	3,410	3,410	636	636	2,374	2,374	3,481	3,481	1,592	1,592	11,493	11,493	22,986

다. 사업지 발생교통량 예측

○ 위에서 도출된 각 수단별 통행량은 Trip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발생교통량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교통수단별로 추정된 통행량을 각 수단별 평균재차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며, 도보 및 기타 통행량은 실제 가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이미 그 노선과 배차간격이 고정되어 가로교통량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음.

○ 따라서, 사업지 발생교통량 추정은 실제 유발효과를 가져오는 승용차와 택시에 한해 발생교통량을 추정하였음.

[교통수단별 평균재차인원]

(단위: 인/대)

구 분		승용차	택시
공동주택	상주인구	1.41	1.48
	방문인구	1.45	1.55
근린생활시설	상근인구	1.39	1.31
	이용인구	1.44	1.52

주 : 문헌조사 자료

○ 차종별 평균 재차인원을 적용한 장래 목표연도별 발생교통량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장래 사업지 발생교통량 예측결과]

(단위: 대/시)

구 분			승용차		택시		합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합계
2031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현황유지시(Ⓐ)	19	382	4	55	23	437	460
		정비계획완료시(Ⓑ)	25	541	5	78	30	619	649
		순수발생량(Ⓑ-Ⓐ)	6	159	1	23	7	182	189
	1일 발생량	현황유지시(Ⓐ)	1,606	1,606	291	291	1,897	1,897	3,794
		정비계획완료시(Ⓑ)	2,269	2,269	408	408	2,677	2,677	5,354
		순수발생량(Ⓑ-Ⓐ)	663	663	117	117	780	780	1,560
2033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현황유지시(Ⓐ)	20	408	5	61	25	469	494
		정비계획완료시(Ⓑ)	26	583	5	85	31	668	699
		순수발생량(Ⓑ-Ⓐ)	6	175	0	24	6	199	205
	1일 발생량	현황유지시(Ⓐ)	1,705	1,705	309	309	2,014	2,014	4,028
		정비계획완료시(Ⓑ)	2,415	2,415	432	432	2,847	2,847	5,694
		순수발생량(Ⓑ-Ⓐ)	710	710	123	123	833	833	1,666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0~09:00시임.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2031년) - 현황 유지시]

(단위: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계
07시 이전	1	118	0	16	1	134	135
07:00-08:00시	7	315	2	45	9	360	369
08:00-09:00시	19	382	4	55	23	437	460
09:00-10:00시	19	86	5	14	24	100	124
10:00-11:00시	28	68	7	15	35	83	118
11:00-12:00시	51	69	12	16	63	85	148
12:00-13:00시	38	48	9	11	47	59	106
13:00-14:00시	75	60	17	14	92	74	166
14:00-15:00시	87	69	20	16	107	85	192
15:00-16:00시	102	68	22	15	124	83	207
16:00-17:00시	125	81	25	18	150	99	249
17:00-18:00시	150	79	30	19	180	98	278
18:00-19:00시	267	52	43	13	310	65	375
19:00-20:00시	267	42	42	10	309	52	361
20:00-21:00시	217	47	31	10	248	57	305
21시 이후	153	22	22	4	175	26	201
합 계	1,606	1,606	291	291	1,897	1,897	3,794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0~09:00시임.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2031년) - 정비계획 완료시]

(단위: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계
07시 이전	0	169	0	23	0	192	192
07:00-08:00시	9	451	2	64	11	515	526
08:00-09:00시	25	541	5	78	30	619	649
09:00-10:00시	25	123	5	19	30	142	172
10:00-11:00시	39	96	9	19	48	115	163
11:00-12:00시	70	99	17	23	87	122	209
12:00-13:00시	52	65	13	16	65	81	146
13:00-14:00시	105	84	23	19	128	103	231
14:00-15:00시	124	97	27	23	151	120	271
15:00-16:00시	146	95	31	22	177	117	294
16:00-17:00시	177	115	36	26	213	141	354
17:00-18:00시	212	111	42	25	254	136	390
18:00-19:00시	380	72	62	18	442	90	532
19:00-20:00시	379	59	58	13	437	72	509
20:00-21:00시	309	63	46	14	355	77	432
21시 이후	217	29	32	6	249	35	284
합 계	2,269	2,269	408	408	2,677	2,677	5,354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0~09:00시임.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2033년) - 현황 유지시]

(단위: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계
07시 이전	1	127	0	17	1	144	145
07:00-08:00시	7	340	2	48	9	388	397
08:00-09:00시	20	408	5	61	25	469	494
09:00-10:00시	19	93	5	15	24	108	132
10:00-11:00시	29	72	8	16	37	88	125
11:00-12:00시	53	74	12	17	65	91	156
12:00-13:00시	39	50	9	11	48	61	109
13:00-14:00시	78	63	18	15	96	78	174
14:00-15:00시	92	73	20	17	112	90	202
15:00-16:00시	107	70	23	16	130	86	216
16:00-17:00시	131	84	27	19	158	103	261
17:00-18:00시	159	84	31	19	190	103	293
18:00-19:00시	286	54	46	13	332	67	399
19:00-20:00시	286	44	45	10	331	54	385
20:00-21:00시	233	47	34	11	267	58	325
21시 이후	165	22	24	4	189	26	215
합 계	1,705	1,705	309	309	2,014	2,014	4,028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0~09:00시임.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2033년) - 정비계획 완료시]

(단위: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계
07시 이전	0	182	0	24	0	206	206
07:00-08:00시	10	487	2	69	12	556	568
08:00-09:00시	26	583	5	85	31	668	699
09:00-10:00시	26	132	5	21	31	153	184
10:00-11:00시	38	103	9	20	47	123	170
11:00-12:00시	74	105	18	24	92	129	221
12:00-13:00시	54	69	13	16	67	85	152
13:00-14:00시	110	88	25	20	135	108	243
14:00-15:00시	130	102	29	23	159	125	284
15:00-16:00시	153	99	33	23	186	122	308
16:00-17:00시	188	120	39	29	227	149	376
17:00-18:00시	226	117	44	27	270	144	414
18:00-19:00시	407	76	65	19	472	95	567
19:00-20:00시	406	59	62	13	468	72	540
20:00-21:00시	332	63	49	14	381	77	458
21시 이후	235	30	34	5	269	35	304
합 계	2,415	2,415	432	432	2,847	2,847	5,694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0~09:00시임.

[시간대별 순수 발생교통량 예측(2031년)]

(단위: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계
07시 이전	-1	51	0	7	-1	58	57
07:00-08:00시	2	136	0	19	2	155	157
08:00-09:00시	6	159	1	23	7	182	189
09:00-10:00시	6	37	0	5	6	42	48
10:00-11:00시	11	28	2	4	13	32	45
11:00-12:00시	19	30	5	7	24	37	61
12:00-13:00시	14	17	4	5	18	22	40
13:00-14:00시	30	24	6	5	36	29	65
14:00-15:00시	37	28	7	7	44	35	79
15:00-16:00시	44	27	9	7	53	34	87
16:00-17:00시	52	34	11	8	63	42	105
17:00-18:00시	62	32	12	6	74	38	112
18:00-19:00시	113	20	19	5	132	25	157
19:00-20:00시	112	17	16	3	128	20	148
20:00-21:00시	92	16	15	4	107	20	127
21시 이후	64	7	10	2	74	9	83
합 계	663	663	117	117	780	780	1,560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0~09:00시임.

[시간대별 순수 발생교통량 예측(2033년)]

(단위: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계
07시 이전	-1	55	0	7	-1	62	61
07:00-08:00시	3	147	0	21	3	168	171
08:00-09:00시	6	175	0	24	6	199	205
09:00-10:00시	7	39	0	6	7	45	52
10:00-11:00시	9	31	1	4	10	35	45
11:00-12:00시	21	31	6	7	27	38	65
12:00-13:00시	15	19	4	5	19	24	43
13:00-14:00시	32	25	7	5	39	30	69
14:00-15:00시	38	29	9	6	47	35	82
15:00-16:00시	46	29	10	7	56	36	92
16:00-17:00시	57	36	12	10	69	46	115
17:00-18:00시	67	33	13	8	80	41	121
18:00-19:00시	121	22	19	6	140	28	168
19:00-20:00시	120	15	17	3	137	18	155
20:00-21:00시	99	16	15	3	114	19	133
21시 이후	70	8	10	1	80	9	89
합 계	710	710	123	123	833	833	1,666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0~09:00시임.

3.2.4 통행배분(Trip Assignment)

가. 통행배분의 개요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교통량이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측된 피크시 1시간의 발생교통량을 주변가로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함.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비교적 소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첫째, 대상지구 주변의 유출입 교통량 중 75%가량의 높은 비율이 유출입 할 것으로 보이는 지리적인 지역(Geographical Area)을 잡아 추정된 발생교통량을 최소시간경로(Minimum Time Path)에 의해 배정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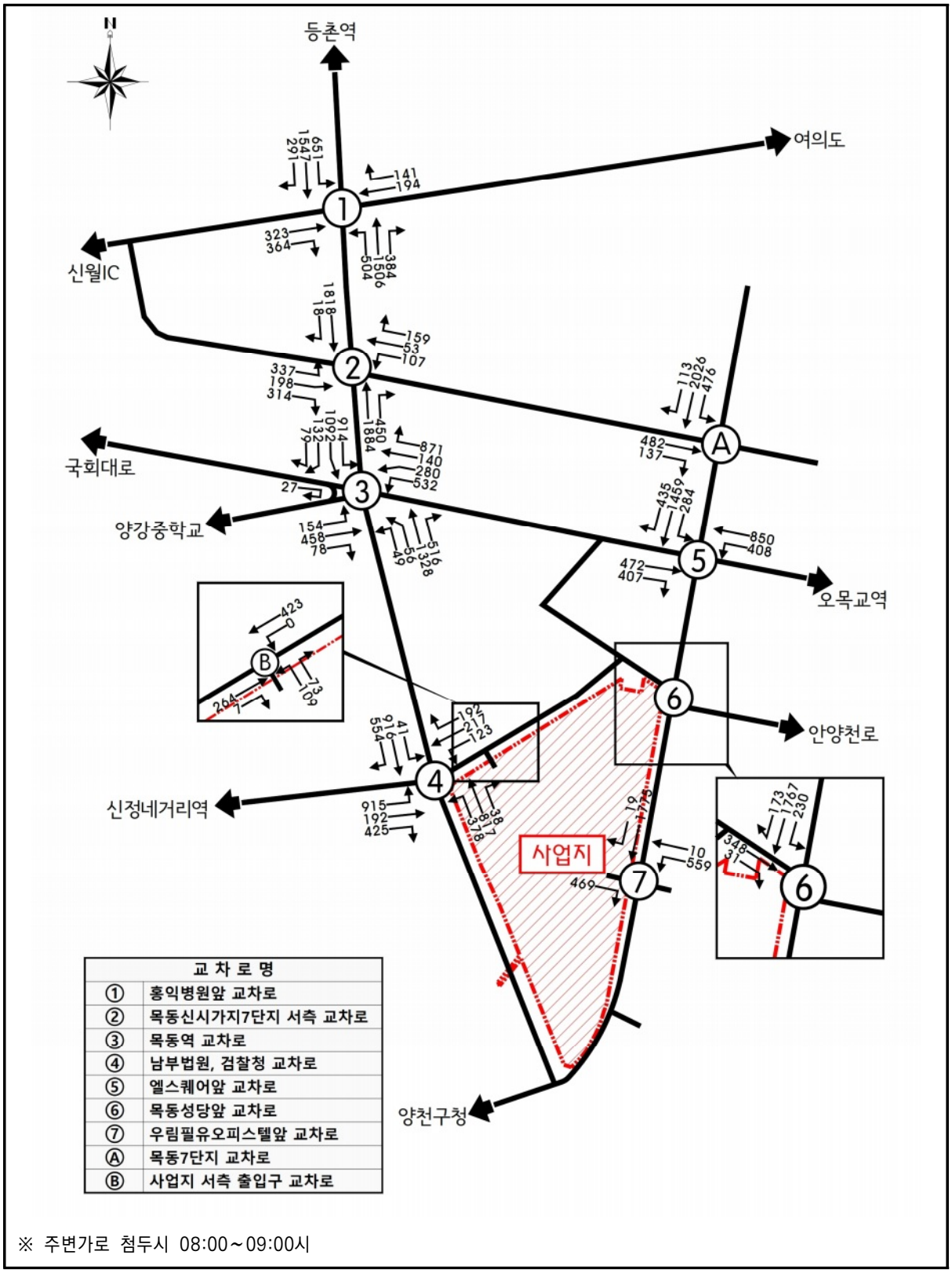
○ 둘째, 대상지역주변의 기존의 존치건물을 선정하여 이 건물의 유출입차량의 방향별 이용율을 추출하여 대상지역의 추정된 발생교통량을 조사된 방향별 차량접근방향에 따라 배정해 주는 방법

○ 셋째, 대상지역별 주변지역에 유사한 용도의 기존 시설물이 없거나, 최소시간경로에 따른 전량 혹은 비배정방법(All or Nothing Network Assignment Method) 등이 대상지역의 가로이용 특성과 잘 부합되지 않을 경우, 대상지역내 가로의 차량이용률을 그대로 적용할 때 보다 현실적인 발생교통량의 배정방법이 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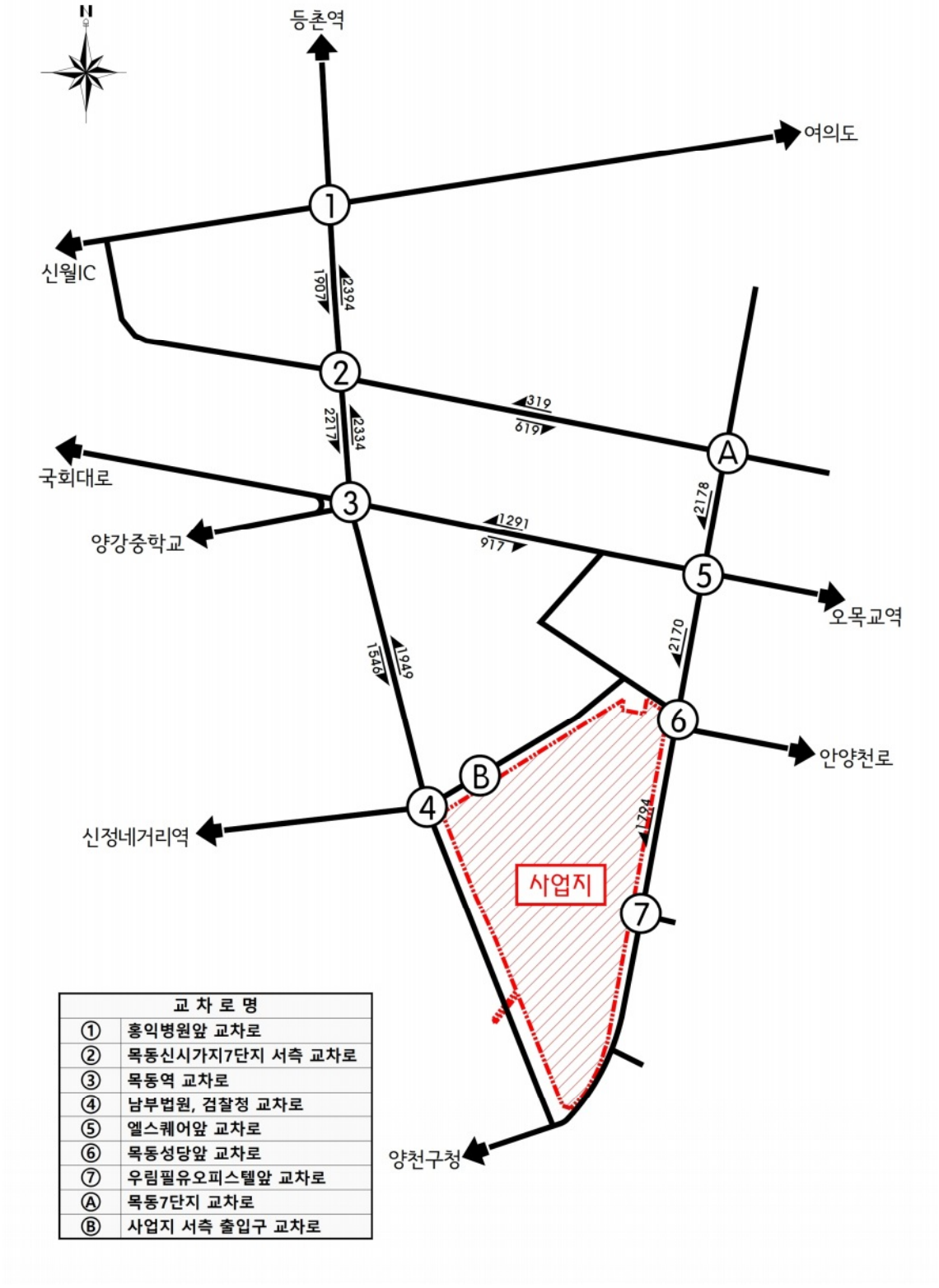
○ 위에서 의거한 교통량 배정방법의 선택의 타당성은 현실적인 지역내의 가로이용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음.

○ 따라서, 본 교통성검토의 각 가로별 유출입 교통량 접근규모는 가로별 유출입 접근강도를 고려해 설정하여 발생교통량을 비율에 따라 각 가로에 목표연도(2031년,2033년)로 나누어 배정하였으며, 장래 사업시행시 교통량 예측결과는 다음과 같음.

나. 사업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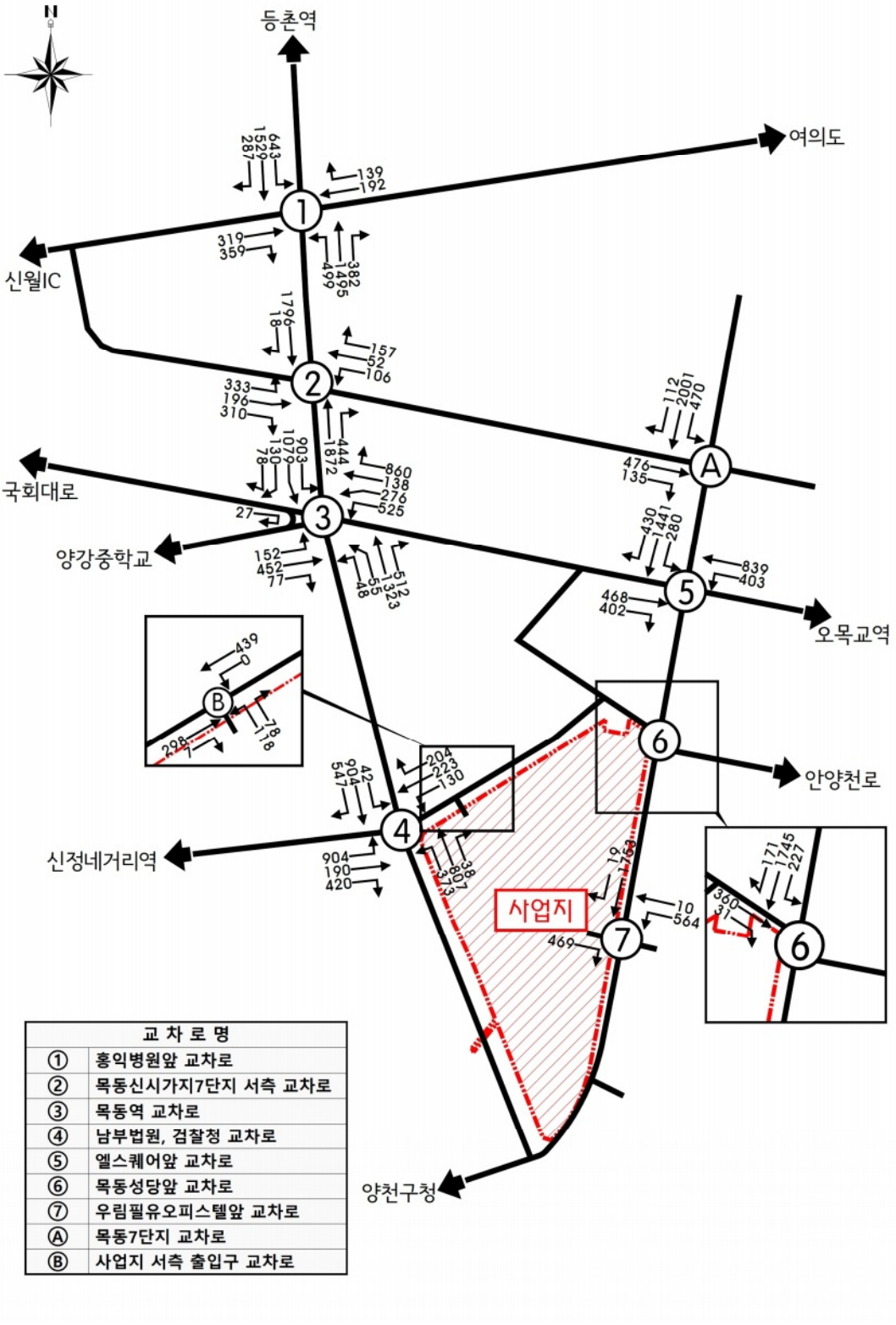


[사업시행시 교차로 교통량도(2031년, pcu/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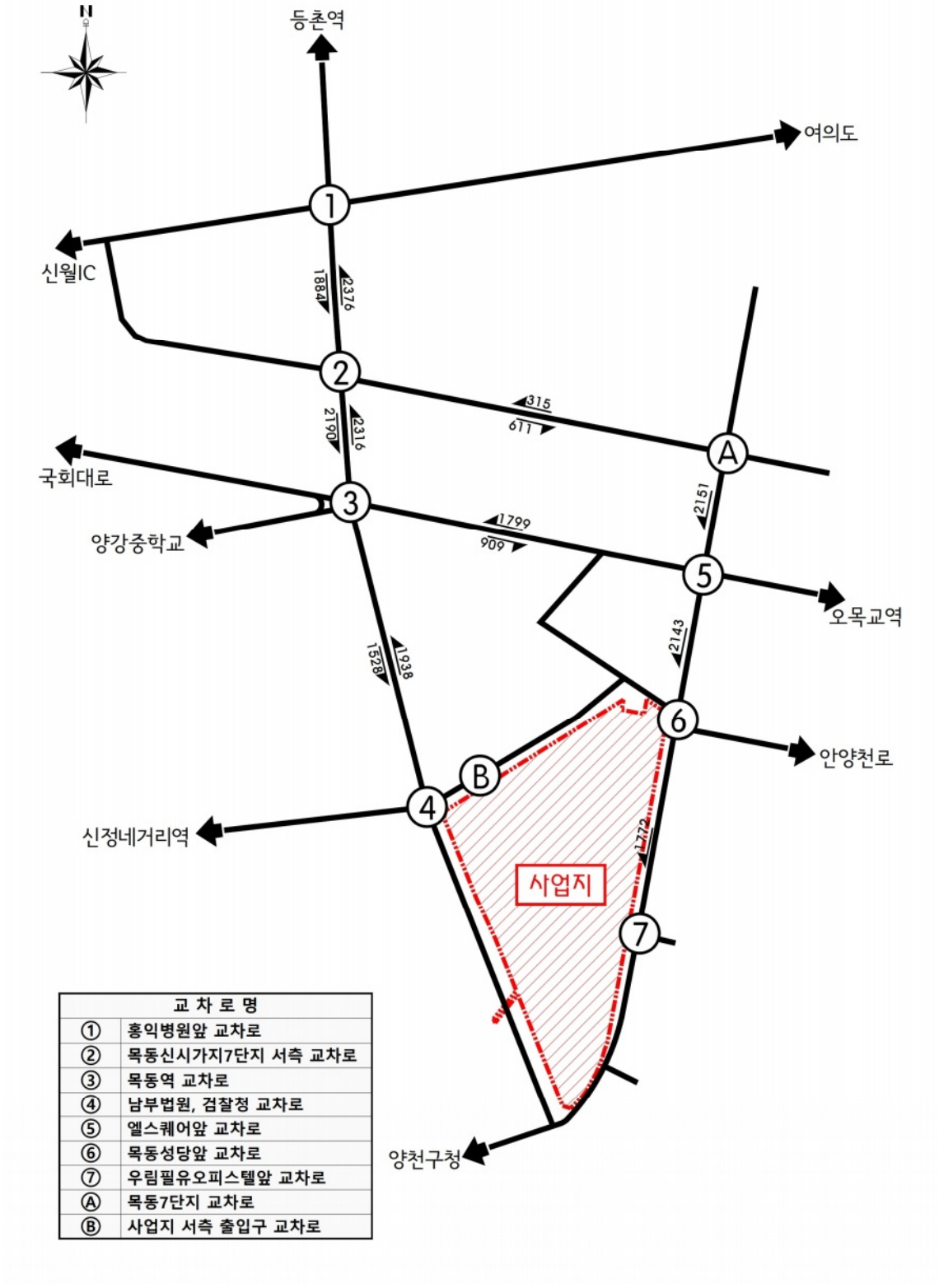
※ 주변가로 첨두시 08:00~09:00시

[사업시행시 가로 교통량도(2031년, pcu/h)]



※ 주변가로 첨두시 08:00~09:00시

[사업시행시 교차로 교통량도(2033년, pcu/h)]



※ 주변가로 첨두시 08:00~09:00시

[사업시행시 가로 교통량도(2033년, pcu/h)]

다. 사업시행시 가로구간 및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사업시행시 주변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장래 목표연도인 2033년 평균통행속도는 9.1~32.1km/h로 서비스수준 "C~F"로 나타났음.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시행시, 2031년)]

구 간		구간 길이 (㎞)	도로 유형	교통량 (pcu/h)	평균 통행 속도 (Km/h)	서비스 수준 (LOS)
목동로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24	Ⅲ	1,907	17.2	E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17	Ⅲ	2,217	12.4	E
	③목동역 교차로 →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0.42	Ⅲ	1,546	13.5	E
	구간전체	0.83	Ⅲ	-	14.2	E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2	Ⅲ	1,949	18.9	E
	③목동역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17	Ⅲ	2,334	8.3	F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0.24	Ⅲ	2,394	13.5	E
	구간전체	0.83	Ⅲ	-	13.7	E
오목로	③목동역 교차로 →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0.48	Ⅲ	917	22.0	D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8	Ⅲ	1,291	20.7	D
목동서로	Ⓐ목동7단지 교차로 →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0.34	Ⅲ	2,178	29.7	C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⑥목동성당앞 교차로	0.55	Ⅲ	2,170	31.7	C
	⑥목동성당앞 교차로 → ⑦우림필유오피스텔앞 교차로	0.27	Ⅲ	1,794	25.0	D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시행시, 2033년)]

구 간		구간 길이 (㎞)	도로 유형	교통량 (pcu/h)	평균 통행 속도 (Km/h)	서비스 수준 (LOS)
목동로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24	Ⅲ	1,884	17.3	E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17	Ⅲ	2,190	12.5	E
	③목동역 교차로 →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0.42	Ⅲ	1,528	14.2	E
	구간전체	0.83	Ⅲ	-	14.5	E
	④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2	Ⅲ	1,938	18.9	E
	③목동역 교차로 →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0.17	Ⅲ	2,316	9.1	F
	②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 ①홍익병원앞 교차로	0.24	Ⅲ	2,376	13.6	E
	구간전체	0.83	Ⅲ	-	14.1	E
오목로	③목동역 교차로 →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0.48	Ⅲ	909	22.4	D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③목동역 교차로	0.48	Ⅲ	1,799	20.7	D
목동서로	Ⓐ목동7단지 교차로 →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0.34	Ⅲ	2,151	29.8	C
	⑤엘스퀘어앞 교차로 → ⑥목동성당앞 교차로	0.55	Ⅲ	2,143	32.1	C
	⑥목동성당앞 교차로 → ⑦우림필유오피스텔앞 교차로	0.27	Ⅲ	1,772	24.8	D

○ 사업시행시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장래 목표연도인 2033년 평균제어지체는 18.3~92.5초/대로 서비스수준 “B~E"로 분석되었음.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시행시, 2031년)]

교 차 로	교통량(pcu/h)	평균제어지체(초/대)	서비스수준(LOS)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5,905	80.7	E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5,409	58.1	D
③ 목동역 교차로	6,706	98.2	E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4,931	92.3	E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4,372	58.1	D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2,549	37.3	C
⑦ 우림필유오피스텔앞 교차로	2,832	18.4	B
Ⓐ 목동7단지 교차로	3,234	26.0	B
Ⓑ 사업지 서측 출입구 교차로	876	11.0	B

주 : Ⓑ사업지 서측 출입구 교차로는 비신호교차로이며, 효과척도는 평균운영지체임.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시행시, 2033년)]

교 차 로	교통량(pcu/h)	평균제어지체(초/대)	서비스수준(LOS)
① 홍익병원앞 교차로	5,844	79.6	E
② 목동신시가지7단지 서측 교차로	5,354	57.9	D
③ 목동역 교차로	6,635	92.5	E
④ 남부법원,검찰청 교차로	4,904	90.8	E
⑤ 엘스퀘어앞 교차로	4,321	57.8	D
⑥ 목동성당앞 교차로	2,534	37.8	C
⑦ 우림필유오피스텔앞 교차로	2,815	18.3	B
Ⓐ 목동7단지 교차로	3,194	25.7	B
Ⓑ 사업지 서측 출입구 교차로	940	11.5	B

주 : Ⓑ사업지 서측 출입구 교차로는 비신호교차로이며, 효과척도는 평균운영지체임.

3.3 주차수요예측

○ 『교통영향평가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수요 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P요소법은 자료의 수집, 계수 도입 등의 문제로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주차수요예측에서 제외토록 하겠음.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주차발생 원단위법을 이용하여 본 사업지의 본 분석 목표연도별 주차수요를 산정한 후 이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적정주차수요를 제시하고자 함.

3.3.1 법정주차대수 산정

가. 법정주차대수 산정 기준

○ 주차시설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의 법정 주차대수 산출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2. 12. 08, 대통령령 제33023호』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3. 07. 18』에 따라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하였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대/㎡)				설치기준(대/세대)	
	가. 특별시	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전용면적 (㎡)	설치기준
85 이하	1/75	1/85	1/95	1/110	60 이하	0.7대/세대
85 초과	1/65	1/70	1/75	1/85	60 이상	1.0대/세대

자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 2022. 12. 08, 대통령령 제33023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별표2)]

시 설 물	설 치 기 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3. 07. 18, 제20조1항 관련, [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나. 법정주차대수 산정결과

○ 법정주차대수 산정결과, 총 2,126대로 산정되었음.

[법정주차 산정결과]

구 분			세대수(세대), 연면적(㎡)	전용면적(㎡)	법정주차 산정면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정주차대수 산정대수(대)			법정주차 대수(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시 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시 조례	
						대/㎡	대/세대		면적 기준	세대 기준		
공동주택	임대	59형	225	59.99	13,497.75	75	0.7	0.8	180.0	157.5	180.0	180.0
		84형	64	84.99	5,439.36	75	1.0	1.0	72.5	64.0	64.0	72.5
	분양	59형	307	59.99	18,416.93	75	0.7	0.8	245.6	214.9	245.6	245.6
		74형	300	74.99	22,497.00	75	1.0	1.0	300.0	300.0	300.0	300.0
		84형	573	84.99	48,699.27	75	1.0	1.0	649.3	573.0	573.0	649.3
		99형	232	99.99	23,197.68	65	1.0	1.0	356.9	232.0	232.0	356.9
		110형	180	110.99	19,978.20	65	1.0	1.0	307.4	180.0	180.0	307.4
	소계		1,881	-	-	-	-	-	-	-	-	2,112
근린생활시설			1,900.00	-	1,900.00	-	-	134	-	-	14.2	14.2 ≒14
합 계			-	-	-	-	-	-	-	-	-	2,126

3.3.2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

가. 주차발생원단위법 수요예측 방법

○ 주차발생원단위법은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별 건물연면적당 원단위에 대한 조사 결과치를 토대로 주차수요를 추정하며, 조사당시 첨두1시간 동안의 주차발생대수와 주차시설의 이용효율이 장래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장래의 주차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모형은 다음과 같음.

[주차발생 원단위법 산정 방법]

공 식	변수설명
$Pd = \frac{U \times F}{1{,}000 \times e}$	-Pd: 주차수요(면) -U: 첨두시 건물연면적 1,000㎡당 주차발생량 -F: 계획건물 연면적(㎡) -e: 주차이용 효율 여기서, e= 주차이용대수 × 주차점유시간 / 주차용량 × 주차장운영시간

나. 용도별 주차발생원단위

[유사시설 주차발생원단위]

구 분	유 사 시 설	세대수(세대),연면적(m^2)	주차발생 원단위 (대/세대,대/1,000m^2)
주거2	신길우성2차아파트 1)	120	1.08
	래미안목동아델리체 2)	284	1.12
	용산 더프라임 3)	74	1.11
	적 용 치	**-**	**1.11**
주거3	신길우성2차아파트 1)	605	1.22
	래미안목동아델리체 2)	848	1.17
	용산 더프라임 3)	176	1.29
	적 용 치	**-**	**1.21**
주거4	보라매경남아너스빌아파트 1)	88	1.38
	목동힐스테이트 2)	154	1.36
	용산 더프라임 3)	88	1.63
	적 용 치	**-**	**1.44**
근린생활시설	신길우성2차아파트 1)	1,972.96	5.6
	래미안목동아델리체 2)	3,294.26	7.22
	목동1차우성아파트 4)	275.28	6.52
	적 용 치	**-**	**6.61**

주 : 문헌자료 원단위는 본 과업의 분석기준연도(2023년)에 맞추어 보정한 수치이며, 적용치는 유사시설 자료의 가중평균치임.

자료 : 1)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2022.11,㈜도시발전연구원
2)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2022.07,㈜우리종합기술
3) 신용산역 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2021.11, ㈜에이디엘이앤씨
4)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교통영향평가,2023.05,㈜우리종합기술

다.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 결과

○ 주차발생원단위를 적용하고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2021.12,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시된 장래 수단통행 증가율('23년~'31년 : -0.30%, '31년~'33년 : -0.45%)을 적용하여 장래 본 사업지의 목표연도 주차발생원단위를 예측하였음.

○ 한편 주차이용효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1.0을 적용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은 장래 상태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0.8~0.9정도의 값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중간치인 0.85를 적용하였음.

○ 장래목표연도인 2031년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결과 2,290대로 산정되었음.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결과]

구 분		세대수(세대), 연면적(m^2)	주차발생 원단위 (대/세대,대/1,000m^2)		이용효율 (e)	주차수요(대)	
			2031년	2033년		2031년	2033년
공동주택	주거2	532	1.09	1.09	1.00	580	580
	주거3	937	1.19	1.18	1.00	1,115	1,106
	주거4	412	1.41	1.40	1.00	581	577
	소계	1,881	-	-	-	2,276	2,263
근린생활시설		1,900.00	6.46	6.41	0.85	14	14
합 계		-	-	-	-	2,290	2,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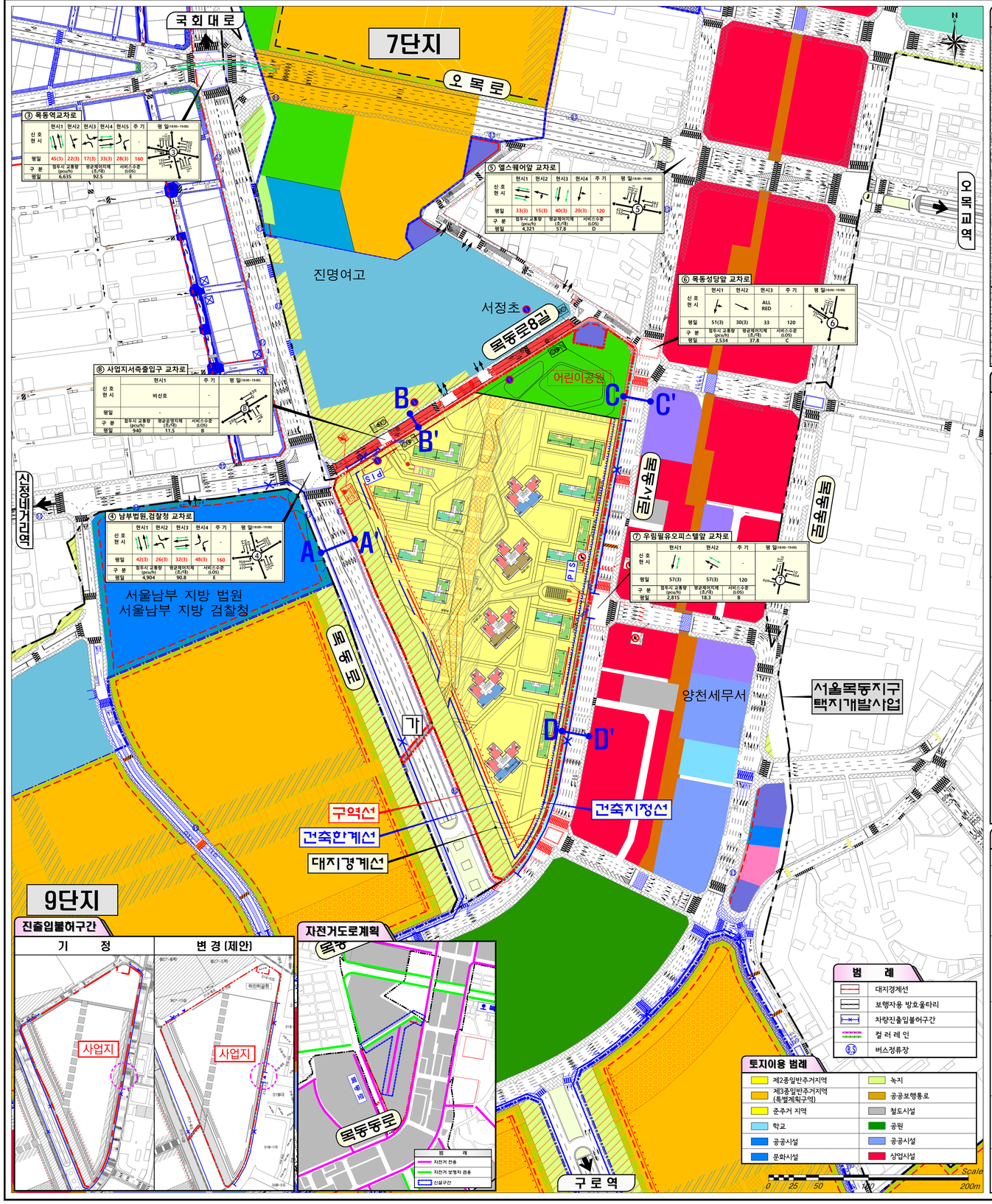
제4장 교통처리계획

[교통처리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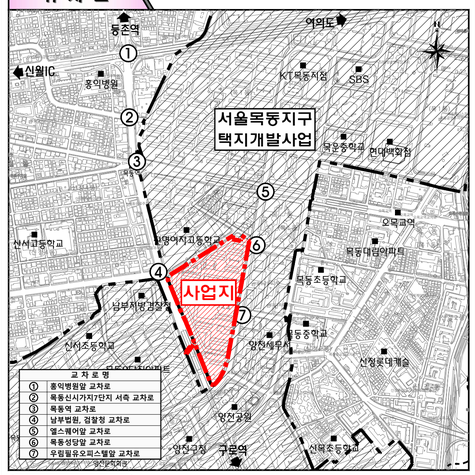
항 목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11」 교통개선대책 반영 - 주변가로 확장 계획 및 차로운영방안 반영
	-	• 주변교차로 신호운영방안 제시:①,②,③,④,⑤,⑦교차로(6개소)
진출입 동 선	Ⓑ,⑦	• 목동로8길, 목동서로상에 진출입구 2개소 계획
	-	• 목동서로 사업지구간 1차로 확장(B=3.0m, 4차로→5차로)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상 본사업지 주변가로 진출입불허구간 변경(제안)
	-	• 진출입구 가각부 적정 회전반경 확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	• 단지내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계획
	㉮	• 목동로상 입체보행시설(육교) 설치 - 9단지 공공보행통로와 연결
	-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 20% 이상 설치 - 자전거보관소에 편의시설(공기주입기, 안내표지, 주차공간표시 등) 설치
주 차 계 획	-	• 향후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이상의 주차계획 수립 - 법정주차대수 : 2,126대, 주차수요(2031년) : 2,290대
	-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한 주차유형별 계획 수립 - 친환경자동차전용주차, 장애인전용주차, 조업주차, 확장형, 경형 등
교통안전 및 기타	-	• 차로운영계획에 부합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추가 설치
	-	• 주차장 진출입구 PIS 설치

주: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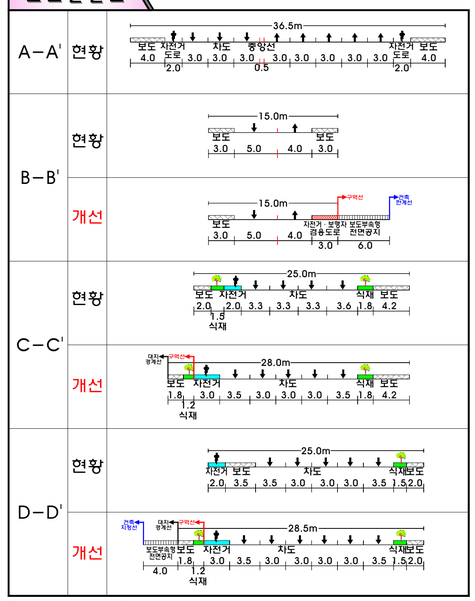
교통처리계획도 (2024. 11)



위 치 도



도로단면도



교통처리계획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 11」 교통개선대책 반영 - 주변가로 확장 계획 및 차로운영방안 반영
	-	· 주변교차로 신호운영방안 제시: ①,②,③,④,⑤,⑦ 교차로(6개소)
진 출 입 등 선	⑥⑦	· 목동로8길, 목동서로상에 진출입구 2개소 계획
	-	· 목동서로 사업지구간 1차로 확장(B=3.0m, 4차로→ 5차로)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상 본사업지 주변가로 진출입불허구간 변경(제안)
	-	· 진출입부 가각부 적정 회전반경 확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	· 단지내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계획
	가	· 목동로상 입체보행시설(육교) 계획 - 9단지 공공보행통로와 연결
	-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 20% 이상 설치 - 자전거 보관소에 편의시설(공기주입기, 안내표지, 주차공간표시 등) 설치
주 차 계 획	-	· 향후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이상의 주차계획 수립 - 법정주차대수 : 2,126대, 주차수요(2031년) : 2,290대
	-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한 주차유형별 계획 수립 - 친환경차동차전용주차, 장애인전용주차, 조업주차, 확장형, 경형 등
교통안전 및 기 타	-	· 차로운영계획에 부합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추가 설치
	-	· 주차장 진출입구 PIS 설치

Ⅷ

경관성 검토서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경관성 검토서

〈 목 차 〉

1 검토 개요

1. 계획의 배경
2. 계획의 목적
3. 검토 대상의 범위

2 경관 관련 계획 검토

1. 서울 기본경관계획

3 경관 현황 및 특성

1. 일반현황
2. 대상지 경관 현황

4 경관성 평가분석

1. 기본 방향
2. 조망 분석
3. 스카이라인 분석

1 검토 개요

1. 계획의 배경

가. 계획의 배경

○ 대상지는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지역의 서측, 양천공원 북측, 진명여자고등학교 및 서정초등학교의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가로의 쾌적성,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나. 계획의 목적

○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기본방향 및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내용을 점검하여 재건축사업에 따른 물리적 환경 변화에의해 발생 되는 대상지 주변의 경관변화 여건을 예측하고자 함

○ 경관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신축되는 건물의 입지에 따른 도시지역의 Amenity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검토 대상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 내용적 범위 : 경관분석(3D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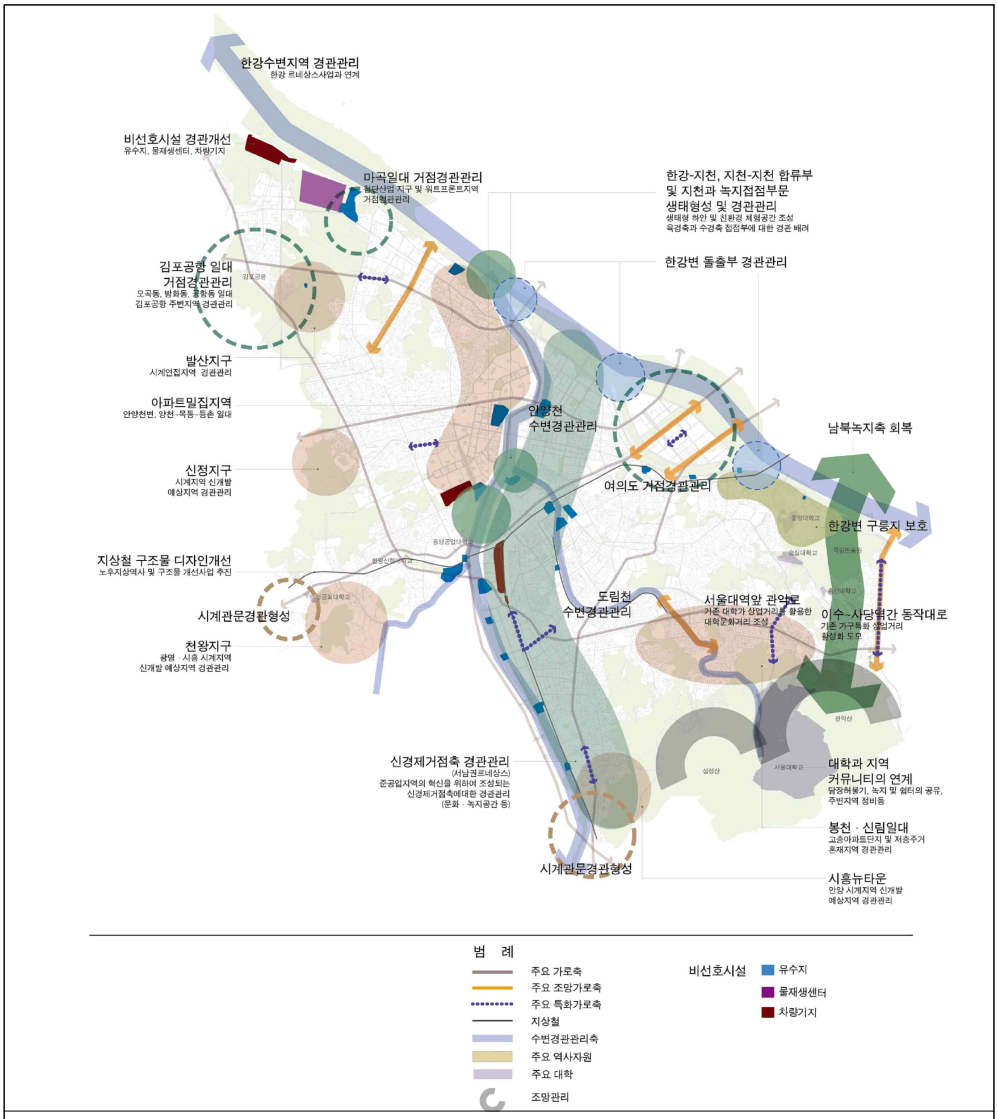
2 경관 관련 계획 검토

1. 서울 기본경관계획 (2016)

가. 계획의 성격

- ○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 기 수립된 다양한 경관계획의 ‘종합계획’
- ○ 2020 도시기본계획의 경관계획 및 기타 경관계획의 ‘실천계획’

나. 서남권역 주요 경관관리방안



- 시각회랑, 조망축 등의 조성으로 안양천과 조화되는 경관 형성
-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을 강화
- 아파트 재건축 등과 연계한 조망축 실현 기반 마련
- 문화 및 특화거리, 조망가로 조성계획을 수립 및 추진

3 경관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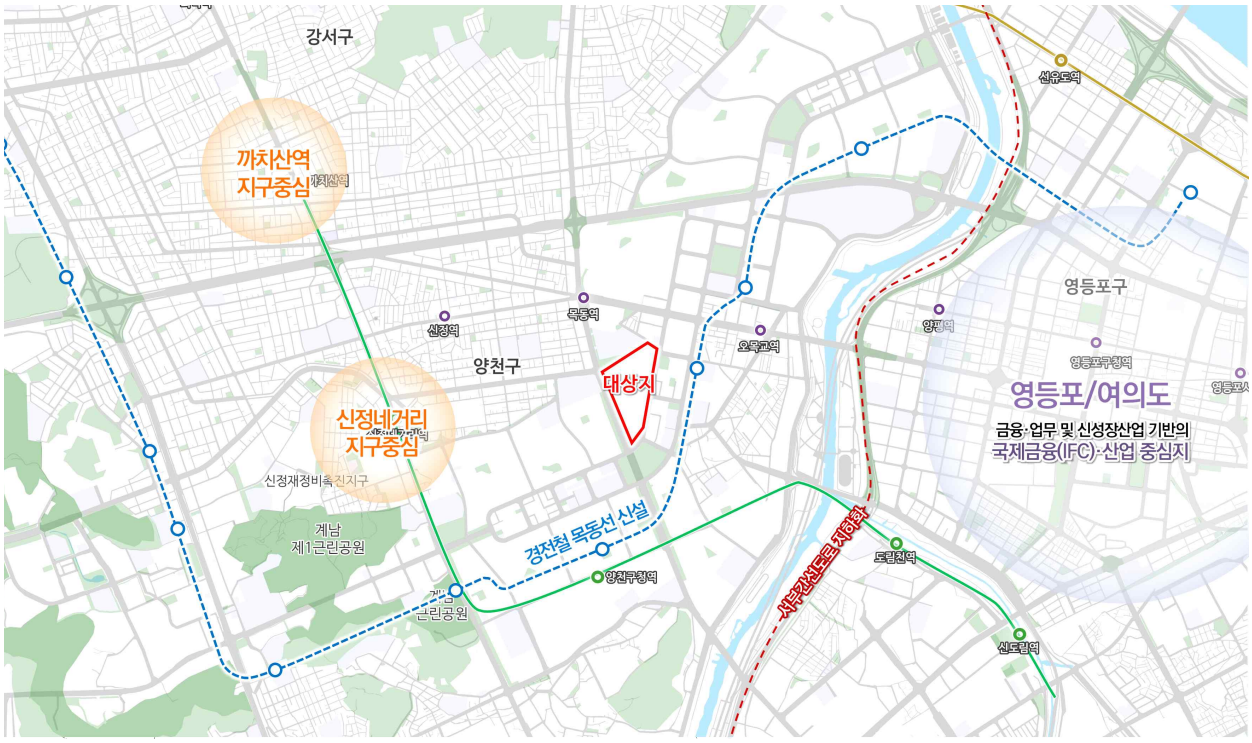
1. 일반 현황

1) 광역적 현황

- 동측에 상업지역, 남측에 양천공원, 북측에 학교, 서측에 법원과 검찰청이 위치
- 대상지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임

2) 대상지 주변 현황

- 대상지는 목동로(보조간선도로)와 목동서로(보조간선도로)에 동시에 접하고 있어 간선도로변에 알맞은 경관계획 수립 필요
- 경전철 목동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역세권으로 변화할 대상지의 위상에 걸맞는 경관계획 필요
- 대상지 주변의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될 예정으로 지역 일대의 여건 변화가 예상되므로 향후 개발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대상지는 제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 지역에 3종일반주거지역인 아파트단지, 법원, 학교, 일반상업지역, 양천공원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계획 필요



2. 대상지 경관 현황

1) 지구 경관 현황

- ○ 대상지 일대는 노후 아파트들과 학교, 법원 및 검찰청, 양천공원이 있으며 목동서로변 상가 및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음
- ○ 대상지는 보조간선도로인 목동로와 목동서로에 접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인 목동로8길에서 출입이 가능한 대지로 목동서로와 목동로에서의 가로경관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됨
- ○ 대상지 남측으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양천공원은 목동 내 주요한 외부공간이므로 양천공원에서의 경관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2) 가로경관 현황

■ 목동로(보조간선도로)

- ○ 목동로는 대상지 서측에 위치한 보조간선도로로 도로 양측으로 완충녹지가 위치하고 있음
- ○ 대상지는 남부지법, 남부지검 및 목동9단지를 마주하고 있으며 추후 목동 9단지 재건축을 고려한 경관계획 필요
- ○ 도로 축을 따라 양천공원과 목동 중심지구로의 열린 경관축 형성 필요

■ 목동서로(보조간선도로)

- ○ 목동 서로는 대상지의 동측에 위치한 보조간선도로로 현재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입지
- ○ 도로 축을 따라 양천공원으로의 열린 경관축 형성 필요

〈 대상지 일대 경관 현황〉





① 목동로



② 목동서로

4 경관성 평가분석

1. 기본방향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 대상지 건축물과 일부 중첩되어 조망되는 인근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등과의 조화로운 경관 계획 수립

■ 주변 자연 경관과의 조화

○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양천공원과 목동로에 연접한 완충녹지와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 구역 내 가로경관의 질적 개선

○ 저층부 가로활성화 시설과 연계되는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조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경관 계획

■ 다양하고 조화로운 입체적 도시경관 창출

○ 일대 개발 및 지역의 변화를 고려하여 위상에 걸맞는 경관계획 필요

2. 조망 분석

가. 조망분석의 전제

1) 조망형 경관

■ 개념

○ 관찰자가 존재하고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때 시거리 지표를 활용하며, 관찰자 앞에 배열되어 있는 대상의 시각적 크기에 의하여 그 공간의 규모를 파악

구분	개념
근경	• 근경은 인접한 지역으로 대상물 크기의 60배의 거리 이내(수목의 경우 약 300~500m)를 나타내며, 경관계획에서 약1km이내 지역까지의 범위를 지칭 • 100~150m 거리에서는 일정지역의 건물군의 구체적인 윤곽과 도로 등을 인지 • 1km 거리대에서는 특정 건물군의 세부 형태보다는 주조망대상과 주변건물과의 관계성 인지
중경	• 대상물의 1,100배 거리인 약 3~5km 이내(수목기준)의 범위로, 산을 배경으로 하는 건축물군을 포착할 수 있는 범위 • 지형 등 3차원적 경관인식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중경이 경관의 주경이 되며 경관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각범위
원경	• 5~10km 이내의 거리로, 산의 경우 지형의 윤곽과 스카이라인이 두드러진 시각대상이 되는 범위이며, 경관에서 배경역할을 하고 랜드마크로 인식됨 • 원경을 인식하는 수평각은 10° 이내로 편안하게 산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거리

■ 구성요소

○ 관찰자의 조망위치 및 조망대상에 따라 조망, 축상, 거점경관으로 구분되며, 조망경관은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지배 하는 경관 유형으로서, 경관적 시야가 좋은 장소를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조망대상에 대해 계획적으로 연출

○ 조망점(view point)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된 장소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보는 이동 동선상의 한 장소를 기준으로 함

○ 장소로서의 조망점(주요시설지 조망점) :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장소인 역전, 상점가, 공원, 광장 등에서 조망이 양호한 지점

○ 이동 동선상의 조망점(가로 조망점) :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통근 및 통학로 등 이동상에 보이는 조망이 중시되는 곳으로 설정

2) 조망형 경관 계획 기준

■ 조망권역에 따른 평가 내용

조망권역	평가내용	평가기준
근경	가로경관의 쾌적성 확보	• 가로경관의 연속성과 쾌적성, 편의성 여부 ·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성
	인접 건축물과의 영향을 고려한 공간적 질 향상	• 주변 인공구조물과의 통일성과 조화성 여부 • 대상지 건축물의 디테일에 대한 심미성, 통일성, 조화성 여부
중경	지역주민의 조망권 확보	• 전망, 통경, 차경 등의 다양한 조망형태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 대상지의 용도별 개발유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 적절성 여부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경관변화에의 대응	•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과업대상지의 장소성
원경	지역경관의 수준 향상	• 지역경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 • 지역경관 내에서 대상지의 인지성
	도시스카이라인 보존	• 도시스카이라인의 저해성 여부

나. 조망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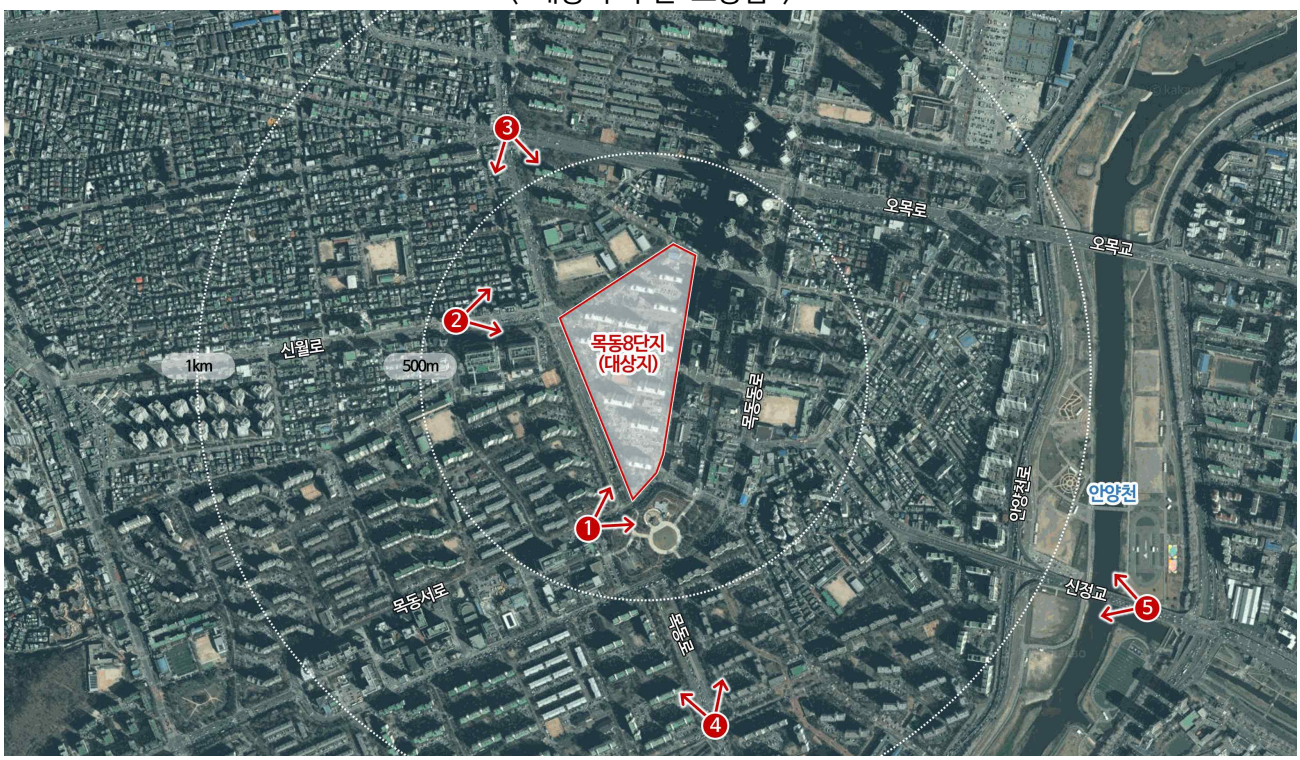
1) 선정 기준

- 대상지가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건축물이 보이는 범위를 검토하여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조망점 선정
- 근경 조망거리는 부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500m 이하로 설정
- 중경 조망거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의 기준과 대상지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500m 초과 1km 이하로 설정
- 원경 조망거리는 대상지의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1km 초과로 설정

2) 조망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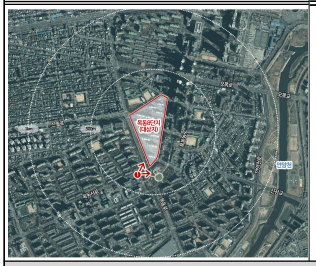
구분	조망점	위치	촬영고도	선정사유
근경	1	양천구의회 앞	지표	주요시설지 조망점
	2	서울남부지법 앞	지표	주요시설지 조망점
중경	3	목동역교차로	지표	주요시설지 조망점
	4	목동13단지교차로	지표	가로 조망점
원경	5	신정교	지표	가로 조망점

〈 대상지 주변 조망점 〉



다.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

1) 근경 : 조망점1

Sequence1 가로조망점	양천구의회 앞에서 조망 (조망거리 : 약 150m)
	• 개발 이후 간선도로인 두 도로(목동서로, 목동로)의 교차 지점에 고층 타워형 주동이 드러나는 대상지 위상에 걸맞는 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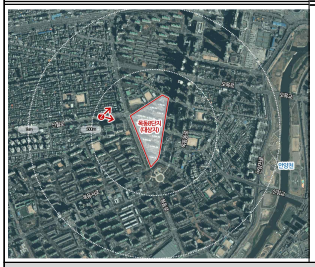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2) 근경 : 조망점2

Sequence2 가로조망점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조망 (조망거리 : 약 250m)
	• 도로 전면으로 중저층 판상형 주동과 후면의 고층 타워형 주동이 중첩경관 형성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3) 중경 : 조망점3

Sequence3 가로조망점	목동역교차로에서 조망 (조망거리 : 약 500m)
	• 가로변으로 전면의 중고층 타워과 후면의 고층 타워가 조화롭게 중첩경관을 형성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4) 중경 : 조망점4

Sequence4 가로조망점	목동13단지교차로에서 조망 (조망거리 : 약 600m)
	• 대상지 남측에서 접근하는 간선도로인 목동로와 역세권 위상에 걸맞은 고층 타워형 주동들로 인해 랜드마크 경관 형성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5) 원경 : 조망점5

Sequence5 주요시설지 조망점	신정교에서 조망 (조망거리 : 약 1.25km)
	• 목동택지개발지구로 진입하는 주요 통행교인 신정교에서 조망 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높이 및 스카이라인을 형성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3. 스카이라인 분석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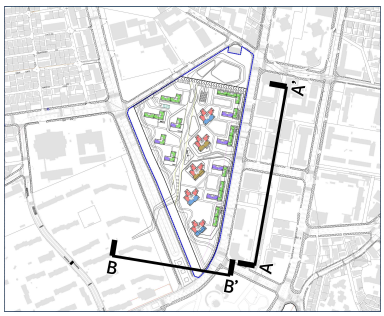
○ 대상지 건축물과 일부 중첩되어 조망되는 인근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등과의 조화로운 경관 계획

○ 대상지 남측에 있는 양천공원과 목동로에 연접한 완충녹지와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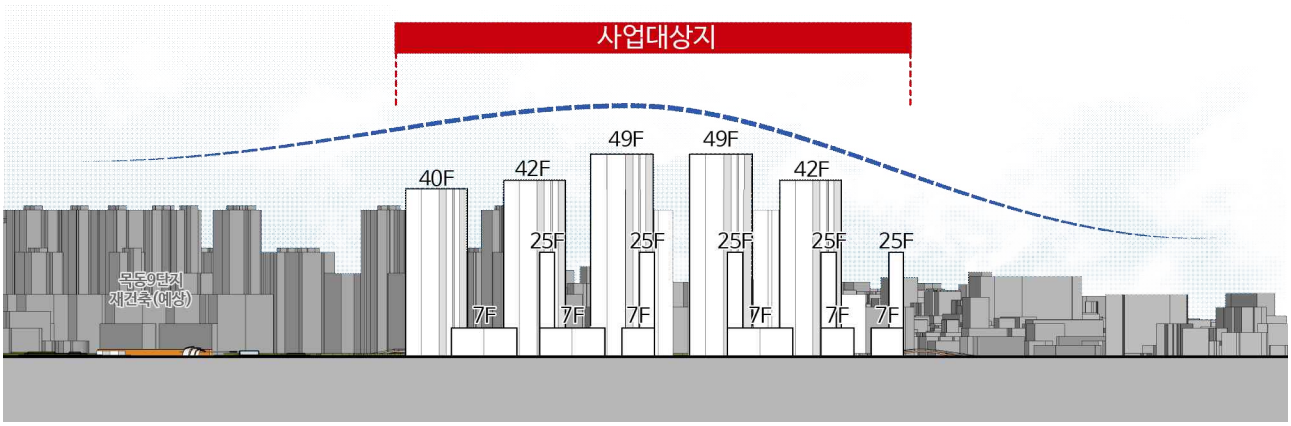
○ 저층부 가로활성화 시설과 연계되는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조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경관 계획

○ 일대 개발 및 지역의 변화를 고려하여 위상에 걸맞은 경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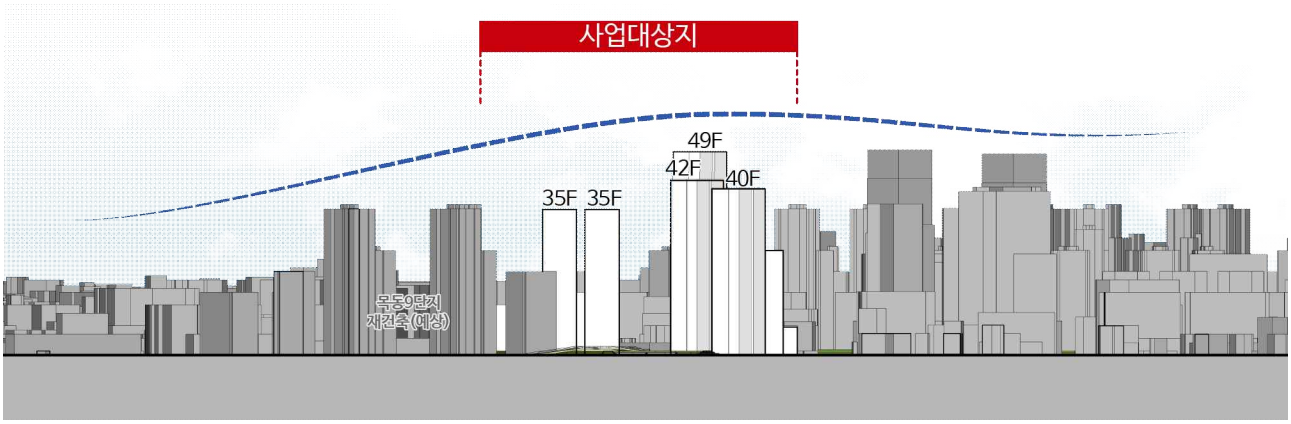
나. 시뮬레이션



1) A-A'



2) B-B'



Ⅸ

환경성 검토서

환경성검토 스코핑 보고서

1 사업개요

가. 계획범위 :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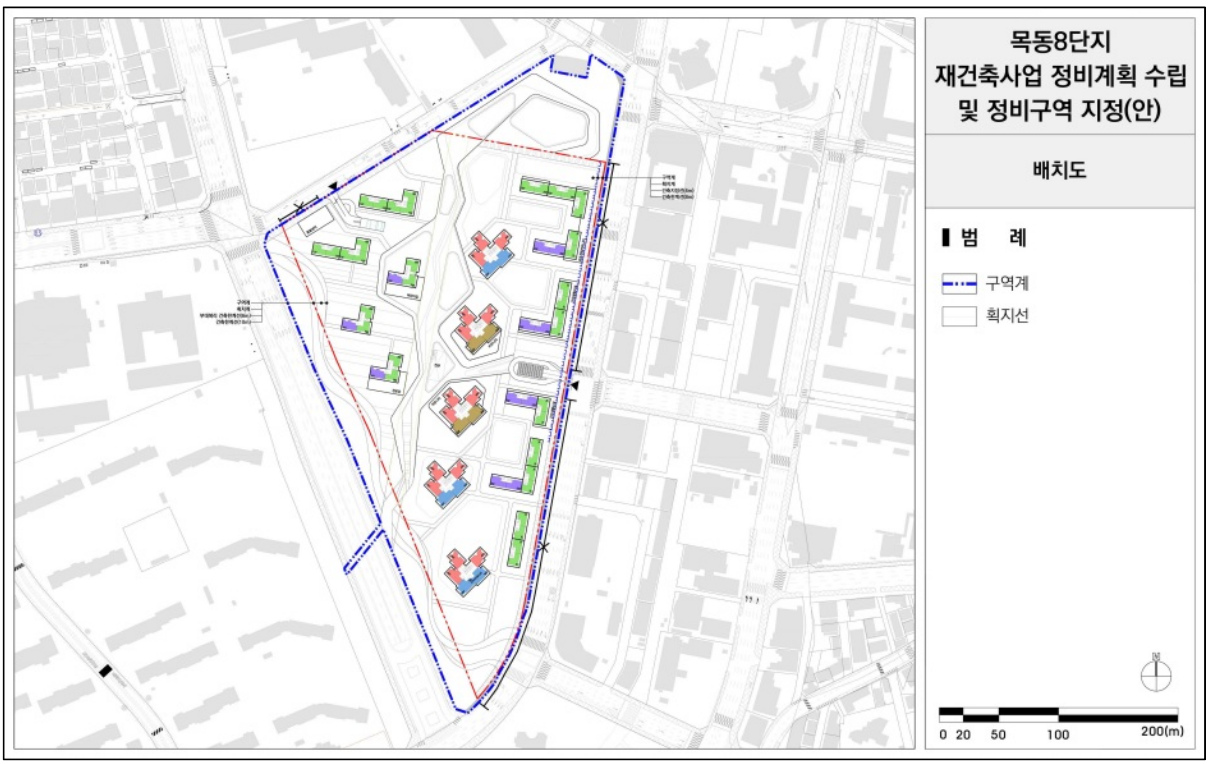
나. 사업면적 : 88,842.30㎡

다. 사업의 내용

1) 건축개요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구역면적		88,842.30㎡	획지 70,493.40㎡, 정비기반시설 18,348.90㎡
건축면적		14,209.41㎡	
건폐율		20.16%	법정 : 50%
용적률		299.88%	법정 : 300%
연면적	전체	330,732.62㎡	
	지상	212,392.62㎡	
	지하	118,340.00㎡	
규모		지상 49층, 지하 2층	
세대수		1,881세대	
주차대수		2,956대	법정 : 2,112대

[건축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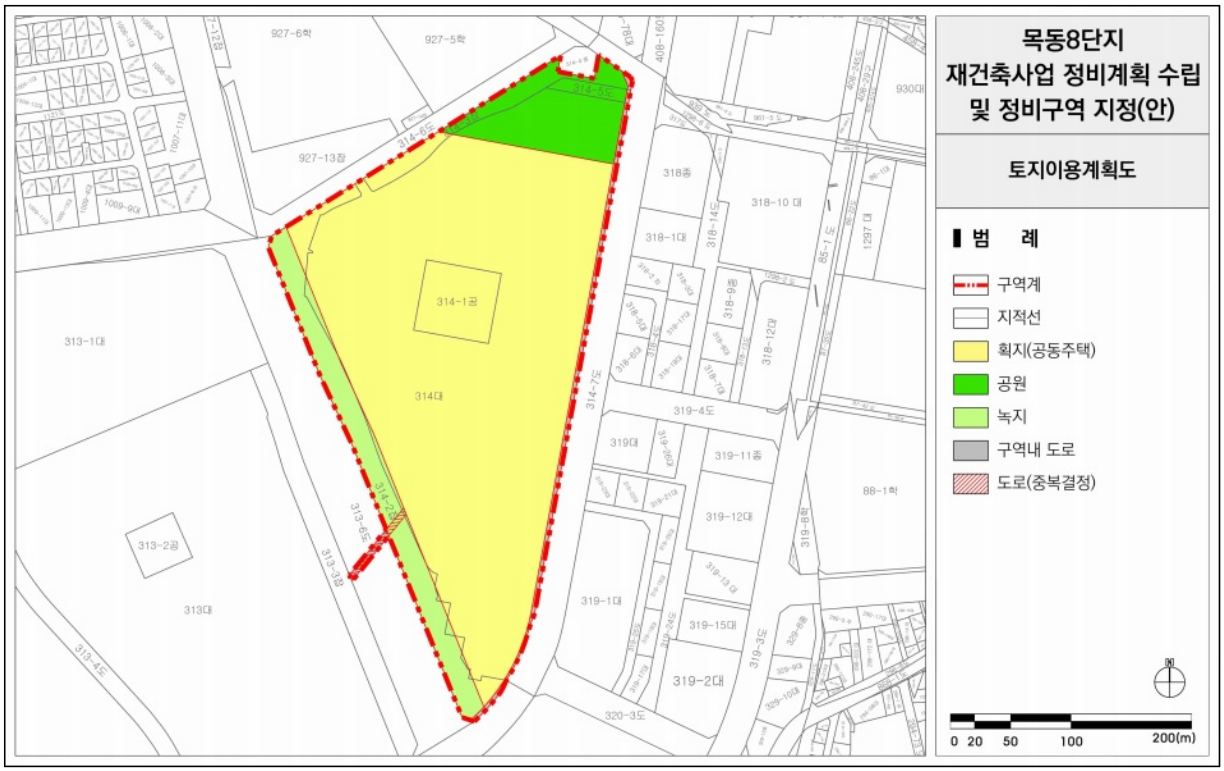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8,842.3	100.0	-
정비 기반시설	소계	18,348.9	20.7	-
	녹지	8,606.5	9.7	-
	공원	7,884.5	8.9	-
	도로	1,857.9	2.1	-
획지	소계	70,493.4	79.3	-
	획지1	70,493.4	79.3	공동주택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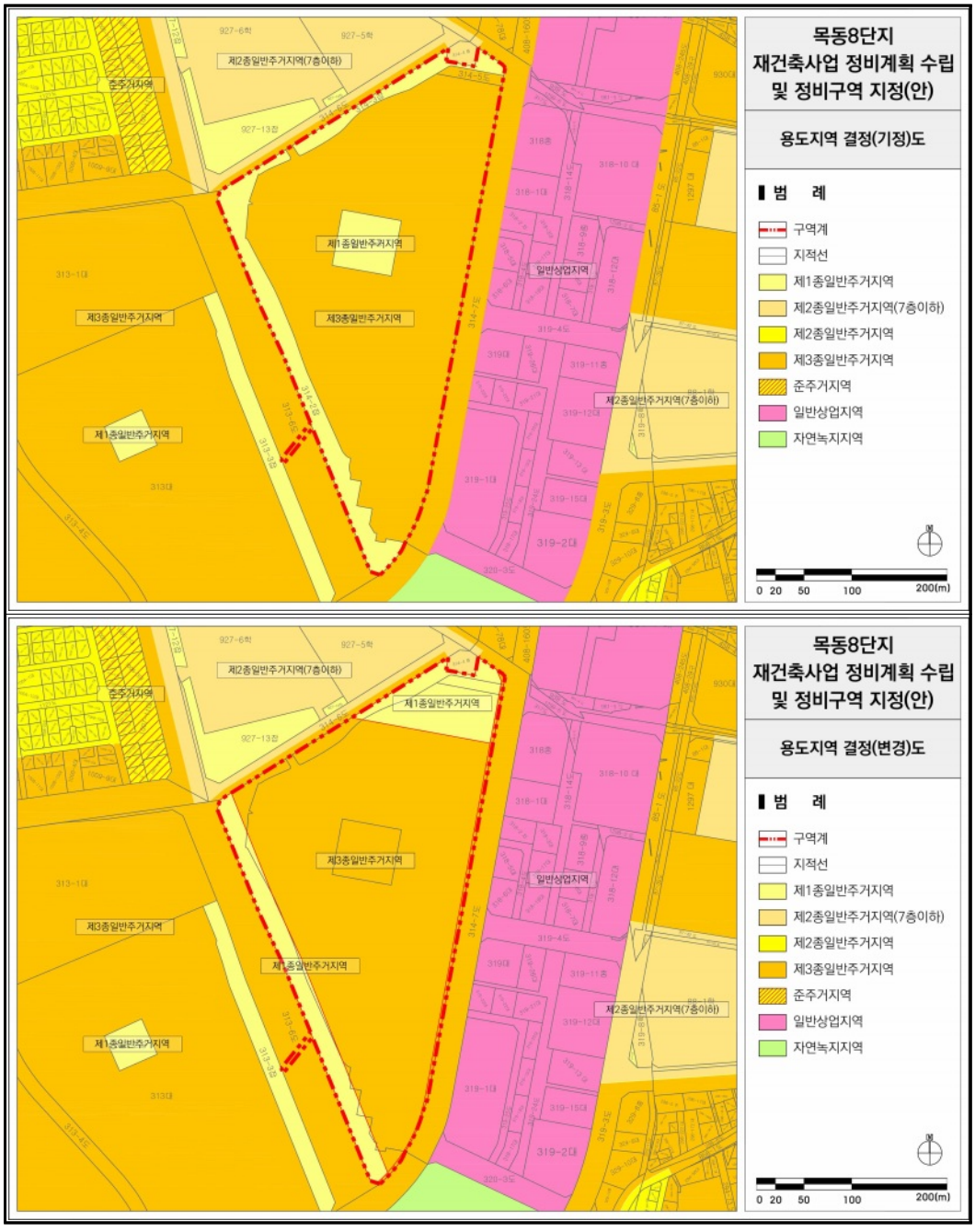


3) 용도지역·지구 결정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8,842.3	-	88,842.3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91.0	-	16,491.0	18.6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351.3	-	72,351.3	81.4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2 부지특성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한강I' 총량단위유역에 해당, 생태자연도 3등급

3 검토항목 및 범위설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범위
바람	기상현황(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풍향 및 강우일수), 대상지 주변 바람장 분석, 기후환경 현황조사	최근 10년간의 기상연보 및 관측자료를 통한 통계분석, UPIS 기후환경공간유형도 분석	대상지, 주변 지역
대기질	대기오염도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자동측정망 및 대기환경연보 인용	대상지, 주변 지역
온실가스	대상지 온실가스 현황, 운영시 연료 및 전력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문헌조사 및 2006년 IPCC 가이드라인 참고	대상지, 주변 지역
수질, 수리·수문	하천 및 수질 현황, 상·하수도 현황, 공사시 영향, 운영시 생활용수량 및 오수발생량	문헌조사, 환경부자료, 계획인구에 의한 용수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정	대상지, 주변 지역
토지이용	지목별·용도별 토지이용현황, 환경관련 지구·지정현황, 토지이용계획	문헌조사, 계획설명서 및 관련도면 참고	대상지, 주변 지역
토양, 지형·지질	측정망 조사,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지형·지질 현황,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문헌조사, 계획설명서 및 관련도면 참고	대상지, 주변 지역
비오톱, 생태네트워크	생태자연도, 비오톱 현황, 사업시행에 변화 예측, 주변과의 생태적 연계 가능성 검토	문헌자료 및 사업계획서 참고	대상지, 주변 지역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운영시 생활폐기물·분뇨 발생량 예측	문헌조사(통계연보), 환경부 자료, 산정식에 의한 예측	대상지
소음·진동	주변 지역 소음·진동 문헌조사, 공사시 장비 가동 및 발파에 의한 영향 예측	문헌조사(환경소음 측정망자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의 이격거리별 예측소음도 인용	대상지, 주변 지역
경 관	경관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녹시율 분석, 스카이라인 변화 예측	문헌조사 및 사업계획서(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등) 참고	대상지, 주변 지역
일 조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일조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 분석	문헌조사(최근 10년간 기상연보), 일조분석	대상지, 주변 지역
인구, 주거	인구 및 주택 현황, 인구증감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변화 예측	통계자료 분석·정리	관내

2 환경성검토서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양천구 목동 8단지 일대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계획으로 선형 도시축 중심의 신시가지로서 자족적인 주거단지로 계획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나 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
-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서고시제2023-408호)을 통해 서남권 대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통합적 공간구조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2 계획의 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
- 사 업 면 적 : 88,842.3㎡
- 기 준 년 도 : 2023년
- 목 표 년 도 : 2030년(착공 2027년, 입주 2030년)

[위치도]



2 환경성검토 대상범위의 설정

2.1 환경성검토 항목의 선정(스코핑)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2021.11,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 [붙임1, 2]에 제시된 항목을 근거로 본 계획의 특성 및 환경영향요소 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선정함.

[환경성검토 항목의 선정(스코핑)]

평가항목			선정 여부	선정 및 제외사유	비 고
자연생태 환경분야		비오톱	○	◦비오톱 유형 및 변화 검토	-
		생태네트워크	○	◦녹지공간의 증감 여부와 연결 변화 검토	-
		동·식물상	×	◦대상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항목에서 제외	제외항목
		자연환경자산	×	◦대상지 주변 주요 자연환경자산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검토항목에서 제외	제외항목
생활 환경 분야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상	-
		토양	○	◦토양오염 증감여부와 변화 검토	-
		지형·지질	○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검토	-
	물 환경	물순환, 수리·수문	○	◦생태면적률 계획 검토	-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우수유출량 발생 검토 ◦급수, 우·오수처리계획	-
	대기 환경	바람	○	◦기후환경 공간유형도 확인	-
		악취	×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악취유발물질 배출이 없으므로 검토항목에서 제외	제외항목
		대기질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
		온실가스	○	◦운영시 영향 예측	-
	기타	폐기물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검토	-
		에너지	×	◦검토항목 제외	제외항목
		소음·진동	○	◦공사시 영향 예측	-
		경관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
		휴가·여가·보행	○	◦휴식 및 여가공간 계획 검토	-
		일조	○	◦사업시행시 일조영향 검토	-
		전파장해	×	◦대상지 인근에 고압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이 분포하지 않아 검토항목에서 제외	제외항목
사회경제 환경분야		인구 및 주거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검토	-
		산업	×	◦본 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검토항목에서 제외	제외항목

2.2 항목별 대상범위의 설정

○ 금회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입지적 범위를 고려한 후 주요 환경 항목별로 환경성검토 범위를 설정하였음.

항 목		대상범위	검토사항
자연환경 분야	비오톱	• 대상지 내	• 비오톱 현황 확인
	생태네트워크	• 대상지 내	• 녹지면적 Ⅲ, 녹지모양Ⅲ,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Ⅱ
생활환경 분야	토지이용	• 대상지 내	•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토양	• 대상지 내	• 토양오염변화
	지형·지질	• 대상지 내	• 지형변동의 유무 • 균형적인 절·성토량
	물순환, 수리·수문	• 대상지 내	• 생태면적률 • 토양의 포장면적 최소화
	수질	• 대상지 내	• 우수 및 토사유출량 • 급수, 우·오수처리 계획
	바람	• 대상지 및 주변	• 대상지 기후환경 공간유형도 검토
	대기질	• 대상지 및 주변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온실가스	• 대상지 내	•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친환경적 자원순환	• 대상지 내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발생량 산정
	소음·진동	• 대상지 및 주변	• 공사시 영향예측
	경관	• 대상지 및 주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휴가·여가·보행	• 대상지 및 주변	•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보행동선 계획
	일조	• 대상지 및 주변	• 운영시 일조에 의한 영향 검토
사회경제 분야	인구 및 주거	• 대상지 및 주변	• 인구변화 검토

3 환경성검토 총괄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2등급지 포함),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3등급지포함) 으로 조사됨	◦경관녹지,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Ⅲ, 녹지모양Ⅲ,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Ⅱ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공사시 토양오염 최소화계획 수립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적용 생태면적률 42.45%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 생태면적률을 높이도록 설계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토사유출량 변화예상 ◦생활 오수 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바람	바람길 확보	○	◦건축물 배치시 기상(바람)요소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찬바람 유입을 위한 건물 배치 조정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운영시 난방 및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가스,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경관	가로녹시율 35%	○	◦대상지 내 녹시율은 32.6%	◦대상지 내 공원 조성	
	조망권 확보	○	◦경관변화 발생	◦경관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Skyline 보전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원, 획지 등을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계획수립	-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간조성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내 자전거 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대상지 내 배치예정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미고려	-	

4 환경성검토 내용

4.1 자연생태환경분야

4.1.1 비오톱

가. 현황

1)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는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은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2등급은 완충지역 및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3등급은 이용가능 지역 및 별도관리 지역으로 구분되고 대상지는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조사됨.

[생태자연도]



2) 비오톱

가) 현황

○ 금회 사업대상지는 노후된 공동주택 지역이며, 꿈동산어린이공원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비오톱 현황

○ 비오톱은 본래 생물군집의 서식공간을 의미하나 서울시의 비오톱은 서울시 전역에 대한 생태현황(토지이용현황, 토양피복현황, 현존식생현황)을 조사하여 지도화한 도시생태현황도 상의 비오톱 유형 및 보전 등급을 말함.

○ 비오톱 유형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urban.seoul.go.kr)를 조사한 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주거지 비오톱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산림지, 조경녹지,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으로 조사됨.

○ 비오톱유형 평가 및 개별비오톱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여 비오톱유형 및 개별비오톱 유형을 평가·검토하였음.

-개별비오톱 평가는 비오톱유형을 크게 자연형, 근자연형, 비자연형, 기타의 4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자연형과 근자연형의 비오톱(29개)만을 대상으로 비오톱의 가치를 3등급으로 구분한 것임.

-도시생태현황도에서 도시화한 비오톱유형의 평가등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5등급이며 일부 1, 2, 4등급이 편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별비오톱은 대부분 평가제외지역으로 일부 2등급지가 편입된 것으로 조사됨.

[서울시 비오톱 유형 평가등급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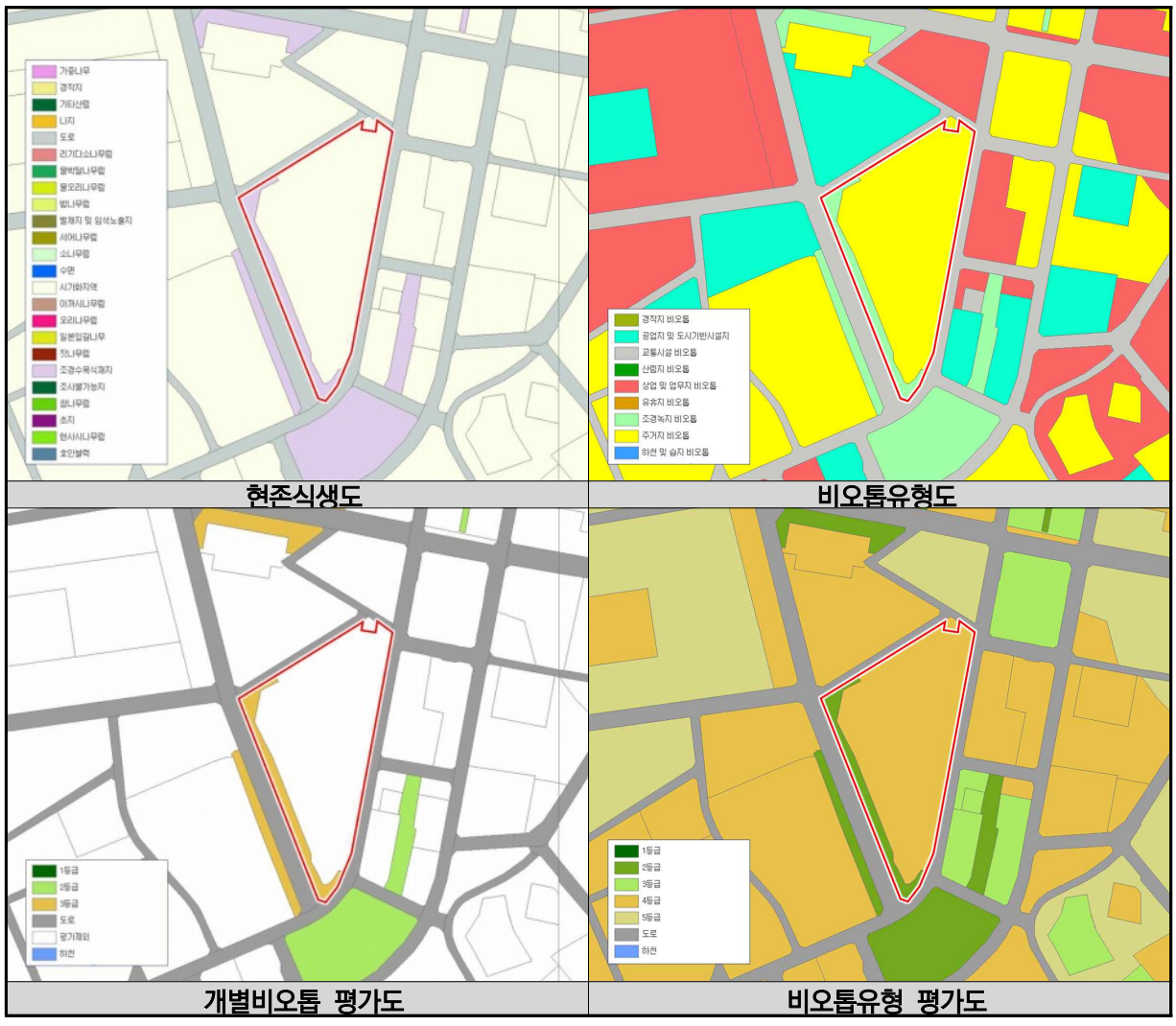
평가등급	비 오 톱 유 형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이 등급에 해당하는 비오톱유형은 자연성이 높아 도시의 건강한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보호가치가 비교적 높음 ◦해당 비오톱유형 전체에 대해서 도시생태계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등급	◦도시생물종다양성 및 서식지 다양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비오톱 유형 ◦이 등급에 해당하는 비오톱유형은 인위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면적이 비교적 적고 생물서식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들 비오톱유형에 대해서는 도시생태계 보전차원에서 현재의 토지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전대책 수립이 필요함
3등급	◦인위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생물서식공간을 포함하는 비오톱 유형 ◦해당 비오톱유형 내 녹지조성 등 도시생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필요 ◦토지이용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비오톱 유형등급보다 하향 조정되는 고밀화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4등급	◦인위적인 이용강도가 큰 비오톱유형 ◦개발밀도가 높은 시가화 지역 중 일부 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비오톱 유형으로 기존 녹지의 훼손을 금지하고 인공지반녹화, 입면녹화 등 지속적으로 대상지역내 녹지공간 확충을 필요로 함
5등급	◦인위적인 이용강도가 크고 생물서식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낮은 비오톱 유형 ◦개발밀도가 높은 시가화 지역 중 지역내에서 녹지공간을 보기가 어려운 비오톱 유형으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서울시 개별비오톱 유형 평가등급의 구분]

평가등급	비 오 톱 유 형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 ◦자연성이 비교적 높은 비오톱유형 중 개별평가 1등급인 비오톱으로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전이 필요함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 ◦자연성이 비교적 높은 비오톱유형 중 개별평가 2등급인 비오톱으로 각각의 공간적 속성을 반영한 비오톱보호 및 복원에 초점을 두어야함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 ◦비오톱유형은 자연성이 높은 편이나 해당 비오톱은 대부분 식피율이 높지 않으며, 출현빈도가 높은 비오톱임 ◦도시 전체적인 비오톱 네트워크 속에서의 생태적인 기능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2021.11,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

[사업대상지 도시생태현황도]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녹지계획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주거지 비오톱으로 일부 조경녹지 비오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조경녹지 및 전면공지 등의 조성 및 어린이공원 형성으로 인한 녹지의 비율변화가 예상됨.

2) 비오톱의 변화

○ 대상지의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조경녹지는 단순한 인공적 식재보다는 자연성을 갖추어 밀도있게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함.

○ 대상지 내 녹지는 동·식물 서식공간으로 활용에 유리하도록 자생수종, 식이식물 등을 이용한 다층구조 식재를 반영토록 계획하겠음.

○ 녹지공간 내 주변 조류와 곤충류 등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식이식물, 다공성공간 등을 조성하여 생태적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을 비롯해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3) 녹지구상

○ 다양한 녹지의 확보 및 열섬화 방지 등을 도모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 대상지 공동주택 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임.

○ 대상지 내 어린이공원(7,884.5㎡) 조성계획

○ 주변 현황을 분석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식재수종을 선택

○ 전통 수종을 식재로 선택하여 이용자 및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친근감 유도

○ 체계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성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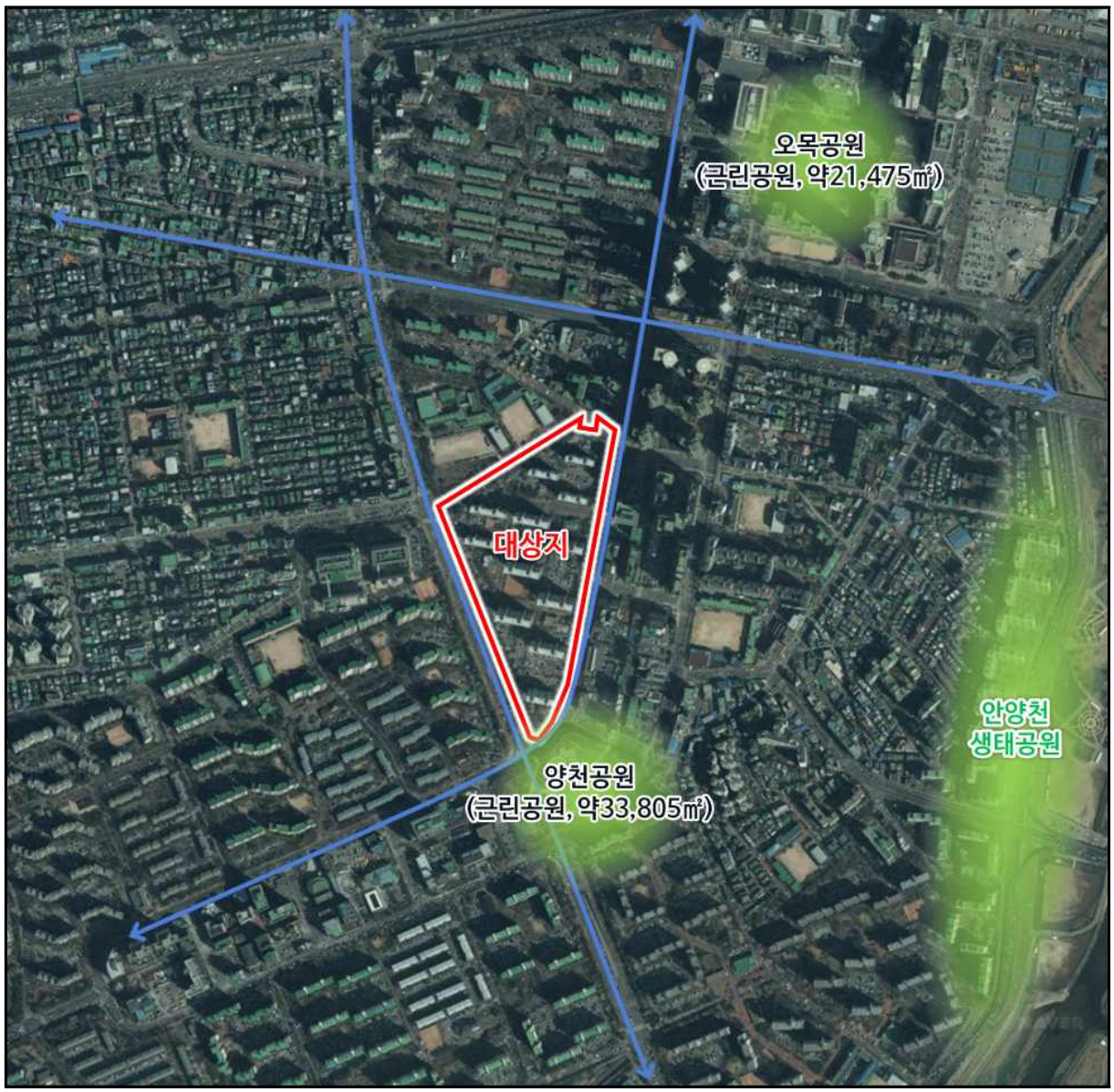
4.1.2 생태네트워크

가. 현황

1) 일반현황

- 대상지 주변에는 노후 아파트들과 학교, 법원 및 검찰청, 양천공원이 있으며 목동서로변 상가 및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음.
- 대상지 남측으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양천공원은 목동 내 주요한 외부공간이므로 양천공원과의 연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녹지네트워크 현황]



2) 녹지네트워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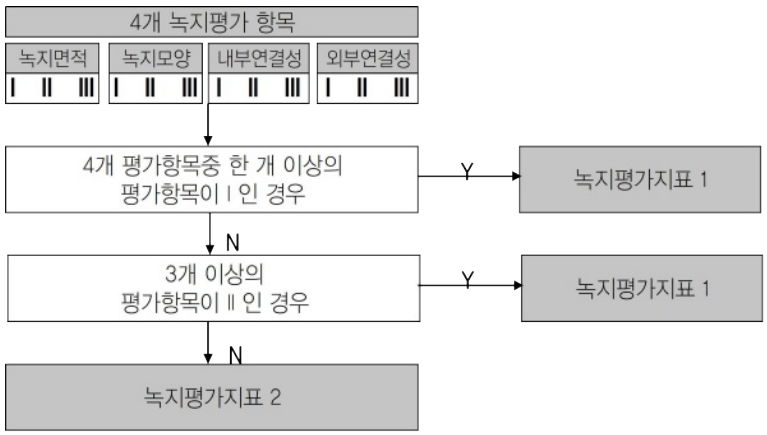
◦ 본 대상지 내 획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공동주택단지 및 학교시설 등이 인접하여 위치하나 조경 식재량이 풍부하지 않아 대부분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이용객 및 인근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임.

◦ 대상지 내 녹지계획에 따른 녹지평가지표를 산정한 결과, 녹지면적에 대한 가치기준 Ⅲ등급, 녹지모양에 대한 가치기준 Ⅲ등급, 녹지의 연결성에 대한 가치기준 내부 Ⅰ급, 외부 Ⅱ등급으로 종합적인 녹지평가지표 Ⅰ등급으로 산정됨.

[녹지계획도]



항목	세분	산정식	가치	평가기준	검토	비고
녹지면적		· 녹지 총면적에서 최대녹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단, 1.5m 이내에 인접한 녹지는 연결된 하나의 녹지로 보아 단일 녹지면적으로 산정함.	Ⅰ	· 50%이상		
			Ⅱ	·44%이상-50%미만		
			Ⅲ	· 44%미만	○	12.1
녹지모양		· 녹지모양의 불규칙한 정도를 SI로 측정함. · 조각모양지수(Shape Index) = $L/2(\pi S)^{1/2}$ (L:조각의 둘레, S:조각면적)	Ⅰ	· 1.67미만		
			Ⅱ	· 1.67이상		
			Ⅲ	· 1.72이상	○	2.68
녹지의 연결성	내부	· 대상지 내 녹지들 간의 연결개수로 산정함. · 일정거리 이내에 녹지클러스터를 이루는 경우, 내부 녹지간에 통로를 조성한 경우에 해당함	Ⅰ	· 2개 이상	○	
			Ⅱ	· 1개		
			Ⅲ	· 없음		
	외부	· 대상지 내부녹지와 외부 인접녹지 사이의 연결개수로 산정함. · 녹지 간에 통로를 조성한 경우	Ⅰ	· 2개 이상		
			Ⅱ	· 1개	○	
			Ⅲ	· 없음		
녹지평가지표 결정			녹지평가지표 Ⅰ			



* 녹지평가지표1
◦ 환경성 검토에서 녹지평가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함

* 녹지평가지표2
◦ 환경성 검토에서 녹지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달성하지 못한 사유를 첨부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녹지축과 완충녹지 공간변화

◦ 대상지는 공동주택 및 도로 등이 위치한 시가화 지역으로 부지 내 꿈동산어린이공원이 위치하여 녹지의 연결은 양호한 상태이나 인간활동에 의한 교란요소가 산재해 있고 인위적인 환경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변화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시행 후 부지 내 조경계획 및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라 현재보다 개선된 녹지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지 내 체계적인 비오톱 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수목배치, 적합한 생물 서식환경이 계획됨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증진효과 등을 도모함.

◦ 일반적 저감대책

-공사 시행시 여유를 갖고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가능한 식이식물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

◦ 공원·녹지공간의 분산배치와 연계 녹지보행축 구상으로 연속적인 녹지네트워크 구축

2) 동·식물상 변화

◦ 대상지 내 공원 및 조경녹지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일부 동·식물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시설지 및 도로 등이 분포하여 인위적 교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공사 완료 후 대상지 내 조경식재 계획 및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 및 출현하는 곤충류 및 소형 조류의 번식을 일부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완료 후 대상지 내 녹지의 증가로 인해 동물상의 종수 및 출현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경녹지 및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인한 안정적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4.2 생활환경분야(토지환경)

4.2.1 토지이용

가. 토지이용현황

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양천구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총면적 17.41㎢ 중 대지가 8.66㎢(49.76%), 도로 3.10㎢(17.79%), 공원 1.74㎢(9.99%)등으로 조사됨.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공원	기타
양천구	면 적(㎢)	17.4	0.1	0.0	1.1	8.7	3.1	0.4	0.2	1.7	2.1
	구성비(%)	100.0	0.6	0.1	6.2	49.8	17.8	2.6	1.1	10.0	11.8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 양천구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총면적 17.47㎢ 중 주거지역 12.54㎢(71.76%), 녹지지역 4.04㎢(23.14%), 상업지역 0.80㎢(4.56%)로 조사됨.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양천구	면 적(㎢)	17.5	12.5	0.8	0.1	4.0	-
	구성비(%)	100.0	71.8	4.6	0.5	23.1	-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3) 용도지역·지구 결정

○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고, 획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 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8,842.3	-	88,842.3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91.0	-	16,491.0	18.6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351.3	-	72,351.3	81.4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범 례
구역계
지적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0 20 50 100 200(m)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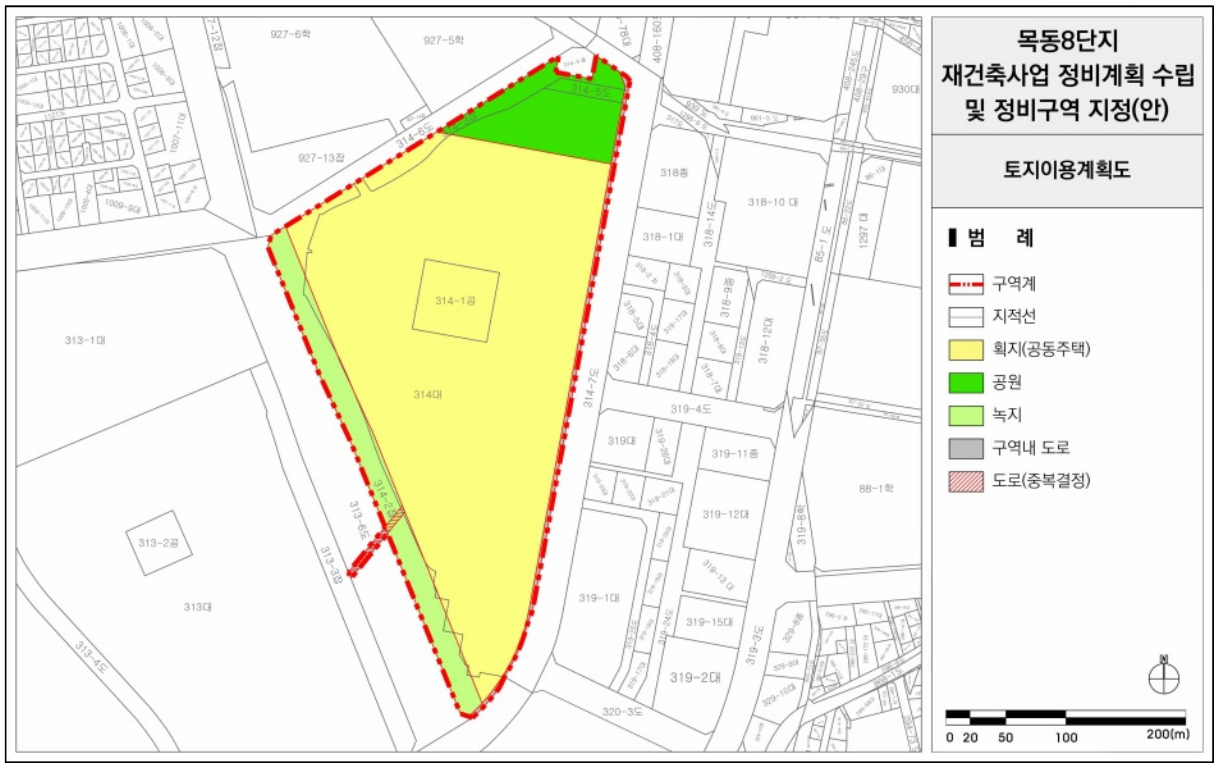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범 례
구역계
지적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0 20 50 100 200(m)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8,842.3	100.0	-
정비 기반시설	소계	18,348.9	20.7	-
	녹지	8,606.5	9.7	-
	공원	7,884.5	8.9	-
	도로	1,857.9	2.1	-
획지	소계	70,493.4	79.3	-
	획지1	70,493.4	79.3	공동주택

[토지이용계획도]



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1)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

가) 도로현황

○ 양천구의 도로현황은 총연장은 404,774m, 고속도로 500m, 특별시도 404,274m이며, 포장률은 100.0%로 조사되었음.

[도로현황] (단위 : m, %)

구 분		합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비 고
양천구	계	404,774	500	-	404,274	-
	포 장	404,774	500	-	404,274	-
	포장률(%)	100.0	100.0	-	100.0	-
	미 포 장	-	-	-	-	-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현황

○ 양천구 관내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 26개소, 수질 78개소 총 104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현황]

구 분	총계	대 기						수 질						소음 진동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양천구	104	26	2	1	-	6	17	78	-	1	1	6	70	-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2) 보호대상시설물 현황

가) 취수장 현황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를 급수구역으로 하는 취수장은 풍납취수장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700,000㎥/일인 것으로 조사됨.

[취수장 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일)	일평균 취수량 (㎥/일)	취수원	공급정수장
풍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19	700,000	455,466	한강표류수	영등포

자료 : 2020 상수도통계, 2021, 환경부

나) 정수장 현황

○ 양천구를 급수구역으로 하는 정수장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용량은 600,000㎥/일인 것으로 조사됨.

[정수장 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일)	정수처리 적용방식	급수구역	관련취수장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11	600,000	급속여과+막여과(MF) +활성탄여과	양천구 외 3개구	풍납

자료 : 2020 상수도통계, 2021, 환경부

3) 환경기초시설 현황

가) 매립시설 현황

○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매립시설현황]

명 칭	소 재 지	총매립면적 (천㎡)	총매립용량 (천㎥)	사용기간 (년)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15,329	289,329	1992-매립종료시

자료 :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1, 환경부

나) 분뇨처리시설 현황

○ 양천구에는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분뇨는 전처리 후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병합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분뇨처리시설현황]

명 칭	위 치	처리공법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방류수역
서 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물리적	4,000.0	4,079.1	한강

자료 : 2020 하수도통계, 2021, 환경부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양천구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하수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기타, 표준활성슬러지법, MLE공법, 4stage-BNR공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공하수처리장 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일)	처리방법	방류수역
서 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900,000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4stage-BNR, 기타	한강

자료 : 2020 하수도통계, 2021, 환경부

4) 교육시설 현황

가) 학교 개황

○ 양천구의 학교 개황을 조사한 결과 총 학교수는 103개교로 조사됨.

[학교 개황]

구 분	학교수	학급(과)수	학생수(명)	교원수(명)	교원1인당 학생수(명)	비 고
양천구	103	2,347	56,265	4,181	13.46	-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5) 공공시설 현황

가) 공원

○ 양천구 공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123개소, 3,049.6천㎡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중 도시공원은 총 105개소로, 이는 어린이공원 74개소, 소공원 11개소, 근린공원 19개소 등 지정되었으며, 그 외 기타공원 18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조사됨.

[공원 지정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 계		자연공원(국립)		기타공원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양천구	123(1)	3,049.6	-	-	18	422.6

도시공원											
소 계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문화공원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 소	면 적
105(1)	2,627.1	74	129.1	11	25.3	19	1,418.7	(1)	837.3	1	216.7

주 : 1. 조성기준이며, 공원수의()내는 타구지역에 포함된 숫자임.
2. 기타공원은 유원지, 한강시민공원, 마을마당 포함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나) 의료기관

○ 양천구의 위치한 의료기관은 총 638개소로 조사됨.

[의료기관]

구 분	합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양천구	638	3	5	286	-	4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186	3	151	-	-	1	2

주 : 1. 2018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허가된 자료이며, 서울 소재 의료기관 기준임.
2. 합계는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되지 않는 보건소(보건분소, 보건지소) 제외
3. 병원은 군인병원 제외, 특수병원은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노인전문병원 포함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다) 청소년 수련시설

○ 양천구에 위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2개소로 조사됨.

[청소년 수련시설]

구 분	합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양천구	2	1	1	-	-	-	-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6) 교통체계 현황

가) 교통현황

○ 대상지는 목동로(보조간선도로)와 목동서로(보조간선도로)에 동시에 접하고 있어 간선도로변에 알맞은 교통계획 수립 필요.

○ 전철 목동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역세권으로 변화할 대상지의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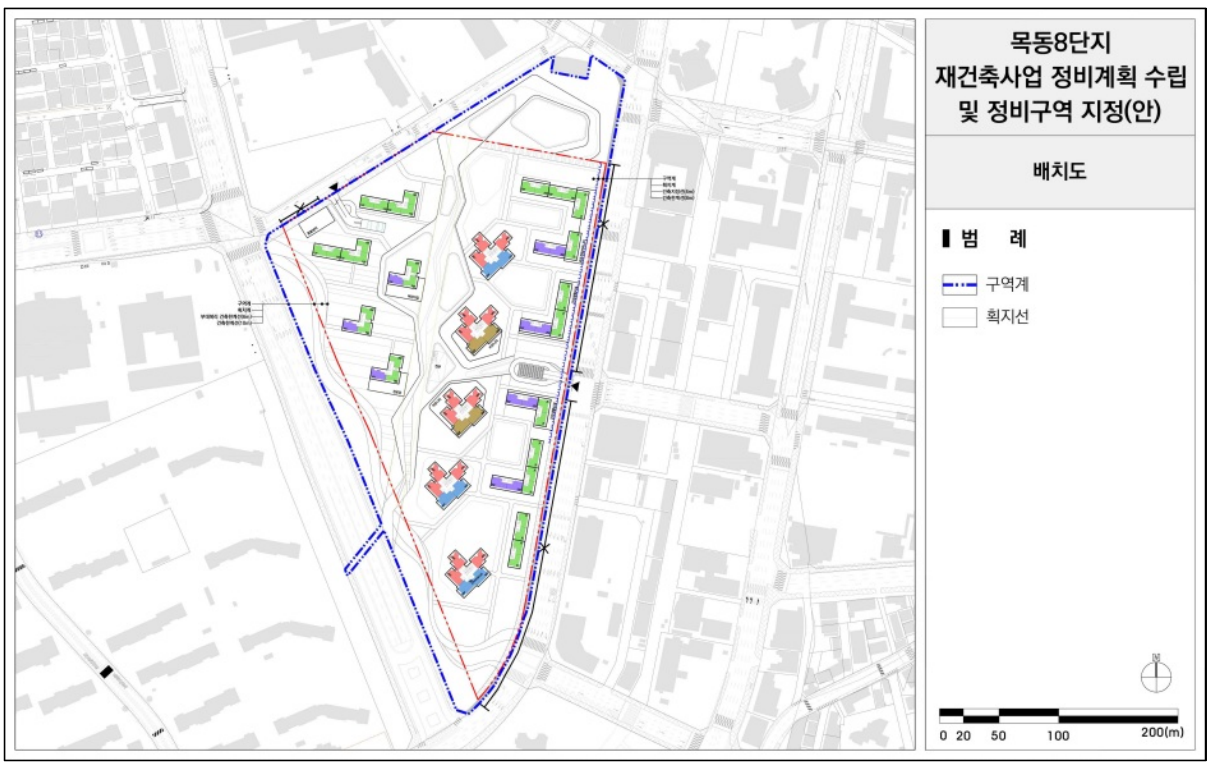
[교통 및 보행체계]



다. 건축개요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구역면적		88,842.30㎡	획지 70,493.40㎡, 정비기반시설 18,348.90㎡
건축면적		14,209.41㎡	
건폐율		20.16%	법정 : 50%
용적률		299.88%	법정 : 300%
연면적	전체	330,732.62㎡	
	지상	212,392.62㎡	
	지하	118,340.00㎡	
규모		지상 49층, 지하 2층	
세대수		1,881세대	
주차대수		2,956대	법정 : 2,127대

[건축배치도]



4.2.2 토양

가. 현황

1)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분포현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오염토양 현황(2022년), 양천구청 녹색환경과」 조사 결과, 양천구 내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주유소 25개소, 비상전력시설 3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업체들은 주기적인 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 3관련)]

연번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1	주유소	현대주유소	양천구 신월3동 167-1
2	주유소	SK에너지(주) 신평주유소	양천구 신정7동 209-6
3	주유소	(주)서부티엔디	양천구 신정3동 1315
4	주유소	에이치지에너지(가로공원주유소)	양천구 신월5동 87-15
5	주유소	(주)지에스이앤알 서울주유소	양천구 신정3동 1294-6
6	주유소	현대오일뱅크㈜남부순환셀프주유소	양천구 신월4동 525-1
7	주유소	삼미상사㈜신월IC셀프주유소	양천구 신월2동 474-4
8	주유소	목동주유소	양천구 목2동 199-58
9	주유소	(주)블루에너지	양천구 신정1동 1052-12
10	주유소	현대오일뱅크㈜직영 신목동셀프주유소	양천구 신정2동 296-30 외 9필지
11	주유소	(주)진우에너지 신월점	양천구 신월4동 534-24
12	주유소	신양주유소	양천구 신월7동 951-4
13	주유소	(주)삼표에너지 목동주유소	양천구 목5동 905-30
14	주유소	현대오일뱅크(주) 직영 양천셀프주유소	양천구 신정7동 151-20
15	주유소	양천구주유소	양천구 목4동 804-35
16	주유소	SK에너지(주) 경인주유소	양천구 신정4동 872-5
17	주유소	현대오일뱅크(주) 직영 목동셀프주유소	양천구 목2동 516-1
18	주유소	(주)부흥에너지 평화주유소	양천구 신정7동 161-5
19	주유소	형산석유(주) 원 주유소	양천구 신월3동 199-5
20	주유소	지에스칼텍스(주)건지주유소	양천구 목2동 121-4
21	주유소	현대오일뱅크(주)직영 양천현대셀프주유소	양천구 목2동 122-2
22	주유소	지에스칼텍스(주)서호주유소	양천구 신월5동 52-1
23	비상전력	KT정보전산센터	양천구 목1동 924
24	주유소	동일석유(주) 개나리주유소	양천구 신월3동 206-1
25	주유소	신정동주유소	양천구 신정7동 162-40
26	주유소	양정주유소	양천구 신정4동 872-1
27	비상전력	KTICC목동센터	양천구 목1동 924-4
28	비상전력	(주)KT 목동지사 데이터센터	양천구 목1동 918-1

자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및 오염토양 현황, 2022, 양천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 3관련)]

종 류	대 상 범 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용량을 합산한다.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개정 2018.11.27.>

2) 토양측정망

○ 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는 토양측정망 1개소가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고유명칭	주 소	지목	면적(㎡)	비 고
SA-②-124	양천목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2	대지(1지역 외)	108,854	2지역

자료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 양천구의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전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토양측정망] (단위 : ㎎/㎏)

지점명칭	Cd	Cu	As	Hg	Pb	Cr^{+6}	Zn	Ni	F	CN	pH
양천목동	0.2	60.9	4.75	0.08	39.2	0.0	160.5	39.2	185.0	0.0	5.7
우려기준 (2지역)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2	-

자료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3) 토양오염도 현황

○ 본 대상지에 대한 토양 현황조사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의 측정결과를 인용함.

[측정개요]

시료번호	측정지점	측정년도	비 고
234-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0번지	2022	공원

자료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

○ 토양오염도 분석결과, 전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하회하거나 불검출 또는 검출한계 미만으로 조사됨.

[측정결과] **(단위 : ㎎/㎏)**

지점명칭	Cd	Cu	As	Hg	Pb	Cr^{+6}	Zn	Ni	F	CN
양천 근린공원	3.12	42.10	3.53	0.00	22.90	0.00	118.20	37.10	-	-
우려기준 (1지역)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2

자료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구 분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 드 뮴 (Cd)	4	10	60	12	30	180
구 리 (Cu)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 소 (As)	25	50	200	75	150	600
수 은 (Hg)	4	10	20	12	30	60
납 (Pb)	200	400	700	600	1,200	2,100
6 가 크 롬 (Cr^{+6})	5	15	40	15	45	120
아 연 (Zn)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 켈 (Ni)	100	200	500	300	600	1,500
불 소 (F)	400	400	8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	4	12	3	12	36
시 안 (CN)	2	2	120	5	5	300
페 놀 (Phenol)	4	4	20	10	10	50
벤 젠	1	1	3	3	3	9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1,2-디클로로에탄	5	7	70	15	20	210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500	1,000	3,000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광천지 · 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 · 학교용지 · 구거(溝渠) · 양어장 · 공원 · 사적지 · 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 염전 ·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 · 창고용지 · 하천 · 유지 · 수도용지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 · 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5 관련 [별표 3](개정 2022.01.21), [별표 7](개정 2022.01.21)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시

- 현장사무소 및 현장근로자에 의해 소량의 분뇨 및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발생이 예상

2) 운영시

- 각종 생활폐기물 및 오수의 발생이 예상되며, 폐기물은 적정수거와 운반 및 처리가 되지 않을 우 토양으로 유해성분 침투가 우려됨.

다. 저감방안

1) 공사시

- 현장근로자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는 공사현장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분뇨를 전량 수거하여 분뇨처리업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토록 할 계획임.
- 공사장비로부터 배출되는 폐유 및 유분이 함유된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는 가동 전에 장비점검을 철저히 한 후 사용하고, 공사장비의 정비, 오일교환, 세척 등은 지정된 정비업소를 이용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 내 일정한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임시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전량 수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 처리하여 폐유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2) 운영시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활성화되어 실시운영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부응,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함.

가) 수거 · 운반계획

-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불연성, 재활용으로 분류하여 대상지 내 분산 배치하도록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수거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며 재활용품은 일정장소에 임시보관함을 설치 후, 수거토록 함.

나) 최종처리계획

- 기타 소각 및 매립대상 폐기물(가연성, 불연성)은 서울시 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 반출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임시 보관중인 재활용품은 일정 주기로 자원재생공사 및 기타전문재활용 업체에 매각 처리하여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함.

4.2.3 지형·지질

가. 현황

1) 지형

-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8단지 일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경사도가 미미한 평지를 형성하고 있음.
- 대상지 내 표고 최고점은 11.7m, 최저점은 7m으로 구역 내 표고차는 약 3.7m이며, 경사도는 평균 3.1°이며, 대상지 99% 정도가 5° 미만으로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음.
- 동측에 안양천이 위치하고, 대상지 주변으로 근린공원이 다수 분포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임.
- 서측으로 목동로, 동측으로 목동서로가 위치하고, 목동동로를 따라 목동선 경전철 노선 신설이 예정되어 대상지 주변으로 교통편의성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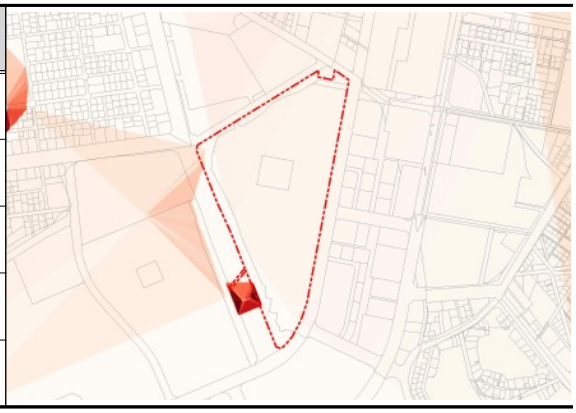
[표고 현황]

구 분	면 적(㎡)	비율(%)
합 계	88,842.3	100.0
8m 미만	6,253.7	7.0
8m 이상 9m 미만	17,068.4	19.2
9m 이상 10m 미만	31,800.3	35.8
10m 이상	33,720.2	38.0



[경사도 현황]

구 분	면 적(㎡)	비율(%)
합 계	88,842.3	100.0
5도 미만	88,573.5	99.7
5도 이상 10도 미만	56.0	0.1
10도 이상 15도 미만	63.0	0.1
15도 이상	149.8	0.2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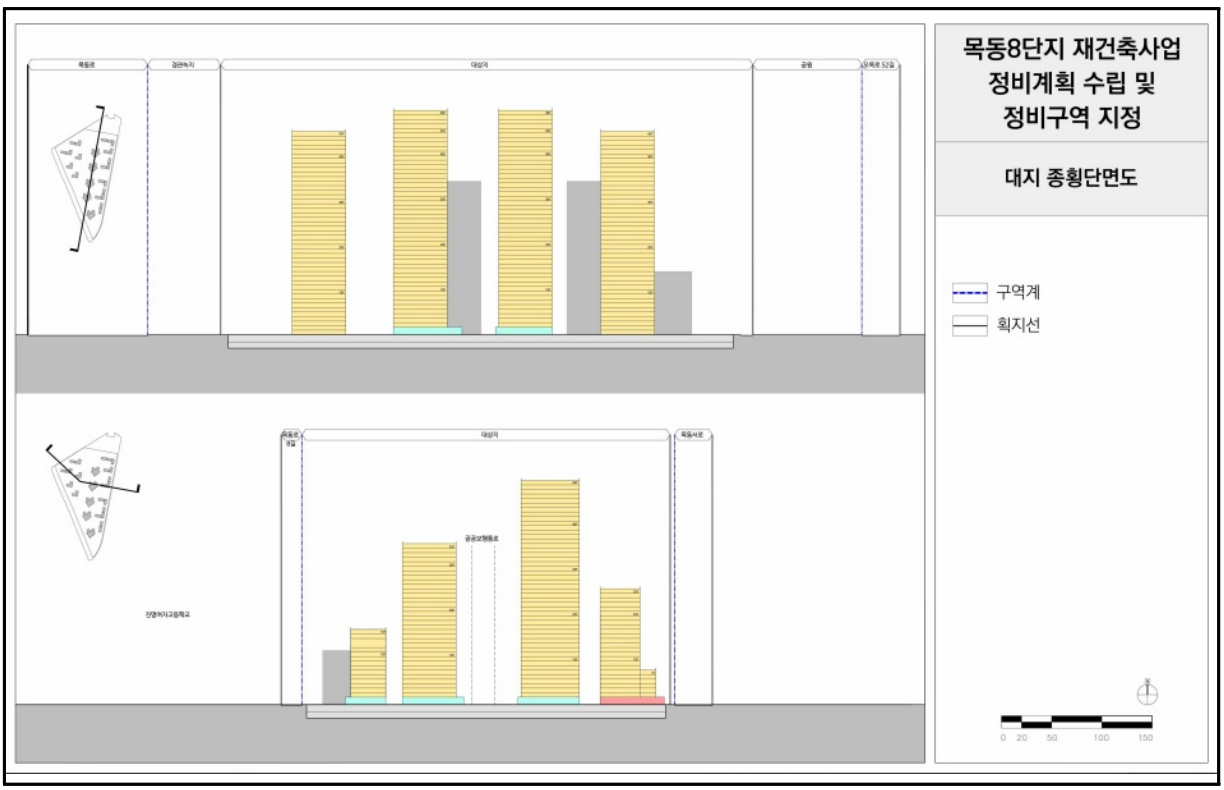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지형변화 및 절·성토 균형

- 본 사업대상지의 부지정지 공사시 발생하는 부족토는 서울시 및 수도권역에 사용되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 www.tocycle.com」과 연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함.
- 본 사업대상지 건축에 따른 부지정지 공사시 절·성토 작업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나,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지형에 맞게 건축물을 배치하여 지형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종·횡단면도]



2) 사면안정화 대책

○ 본 사업대상지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면발생은 일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설치 등에 의한 부지정지 및 터파기시 사면이 발생할 경우는 적절한 사면구배와 사면처리를 통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3) 토사유출방지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임.

- 집중호우(6~9월)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
- 강우시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사면발생 지역에는 비닐이나 덮개 등을 포설할 계획임.

○ 법면 발생지역은 법면상단에 측구를 설치하여 도수로에 연결, 자연배수를 유도하며, 강우가 예상될 경우 사면에는 비닐이나 거적 등을 포설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계획함.

4) 토양 및 지반

○ 공사시 투입장비로부터 발생되는 폐유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오일교환은 원칙적으로 정비업소에서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발생폐유를 일정용기에 전량 수집하여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 폐유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계획임.

○ 사업대상지 지하굴착시 지하수 유출 저감 및 지반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공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최적화된 흙막이 공법 및 차수공법 등을 선정 시공할 계획임.

4.3 생활환경분야(물환경)

4.3.1 물순환, 수리·수문

가. 현황

○ 자연의 물순환 기능은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기능, 우수 침투 미저장의 유출량 저감을 통한 도시미기후 조절과 오염물질 배출저감 기능, 건전한 생태환경 제공 기능, 유해물질의 여과·완충·변환 등을 통한 물질 순환 기능을 통칭함

○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토양으로 침투하는 빗물이 감소하고, 강우시 빗물이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어 홍수피해를 증가시키고,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1)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 지표는 도시의 생태적 기반이 되는 토양 및 물순환 체계의 건전성 유도를 목표로 하며, 자연지반 녹지율, 투수면적율 및 녹피율 등과 같은 환경계획지표의 기능을 종합한 특징을 가짐.

○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토양기능, 미기후 조절 및 대기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동·식물 서식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생태면적률은 피복유형별 환산면적과 식재유형별 환산면적의 합(공간유형)을 전체면적(사업부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함.

[생태면적률 산정]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기능 면적}}{\text{전체면적}} \times 100 = \frac{\Sigma(\text{피복유형별 환산면적}) + \Sigma(\text{식재유형별 환산면적})}{\text{전체면적}} \times 100$$

주 : 피복유형 환산면적 = Σ(피복유형별 면적 x 가중치), 식재유형 환산면적 = Σ(식재개체수 x 환산면적 x 가중치)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2021.11, 서울시 도시계획국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피 복 유 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 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바닥에 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공간의 경우 가중치 0.5		
3		인공지반녹지≥90㎝	0.7	-토심이 90㎝이상인 인공지반 상부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토심이 90㎝미만인 경우 가중치 0.5(단, 최소토심 40㎝ 이상)		
4		옥상녹화 ≥40㎝	0.6	-토심이 40㎝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토심이 40㎝미만인 경우 가중치 0.4(단, 최소토심 20㎝ 이상)		

〈표 계속〉

식재유형			개체당 환산 면적	가중치	설 명	대표수종
5		투수포장		0.4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필수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 포장
					-포장재의 투수율은 0.01㎝/sec를 확보 -미식재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가중치 0.2 불투수포장은 가중치 0.0	
6		벽면녹화		0.3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단, 최소토심 20㎝ 이상)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7		침투시설 연계면		0.1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8		0.3m≤ 수고〈 1.5m	0.1㎡/ 주수	0.1	-수고 0.3m이상 1.5m미만인 관목, 지피초화의 경우 산정제외	-철쭉류, 개나리, 영산홍
		1.5m≤ 수고〈 4m	0.3㎡/ 주수		-수고 1.5m이상 4m미만인 대관목 및 소교목	-관목 : 산수유, 애기동백 -교목 : 무궁화, 라일락
					-관목일 경우 환산면적 0.15㎡ 적용	
		4m≤ 수고	3㎡/주 수		-수고 4m이상인 대교목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 주목, 느티나무, 청단풍,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낙엽교목으로 B〉12cm or R〉15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2m 인 경우 2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B〉18cm or R〉2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3m 인 경우 4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B〉25cm or R〉3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5m 인 경우 8주 인정	

주 : 1. H : 수고, B : 흉고직경, R : 근원직경, W :수관폭
2. 인공지반에 설치되는 수공간, 투수포장의 경우는 인공지반 가중치(0.7 또는 0.5)를 해당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곱하여 산정함.
3. 해당 수고의 대나무를 식재할 경우 환산면적의 10%만 인정, 식재유형 생태면적률은 피복유형 생태면적률의 20%만 인정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산정]

건 축 유 형	생태면적률 기준	비 고
일반주택(개발 연면적 660㎡ 미만)	20%이상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이 개발면적과 상이할 경우 개발면적 기준 우선적용
공동주택(개발 연면적 660㎡ 이상)	30%이상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	20%이상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시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20%이상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이상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	50%이상	

○ 사업시행 후 생태기반 지표를 검토한 결과,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하여 생태면적률이 42.45%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생태면적률(피복유형) 산정]

공 간 유 형			가중치	공동주택		비 고
				산출면적(㎡)	적용면적(㎡)	
피복유형	자연지반녹지		1.0	5,008.03	5,008.03	-
	인공지반녹지(토심 90㎝ 이상)		0.7	31,329.98	21,930.99	-
	투수포장	자연지반	0.2	4,024.09	804.82	-
		인공지반	0.2x0.7	15,594.73	2,183.26	-
합 계					29,927.10	
생태면적률(%)			29,927.10㎡ / 70,493.40㎡ × 100 = 42.45%			

주) 사업대상지 내 획지를 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산정함.

[생태구적도]



4.3.2 수질

가. 현황

1) 수계 현황

○ 대상지 주변의 수계분포를 보면 대상지 동측에 안양천이 있으며 북측에는 한강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대상지는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2018, 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강서울' 중권역으로 목표기준 Ib등급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천 현황]

하천명	유수의 계통(수계)				하 천 등 급	기 점	종 점	비 고
	본 류	1지류	2지류	3지류				
한강	한강	-	-	-	국가	강원 정선 여량	경기 김포 월곶	-
안양천	한강	안양천	-	-	국가	경기 안양 안양	서울 영등포 양평	-

자료 : 2020 한국하천일람, 2020.12.31., 환경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 표 기 준		생물이해등급	
				수생태계 특성	어류생물지수
한 강	한강서울	좋 음	Ib	매우좋음~좋음	A, B

주 : 1. 연간 275일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에 의함

※어류생물지수(FAI)평가등급

평가지표	고려요소	평가등급				
		매우좋음(A)	좋음(B)	보통(C)	나쁨(D)	매우나쁨(E)
어류생물지수 (FAI)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민감종수, 내성종수, 잡식종수, 비정상종수 등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0이상 20미만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

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과 같이 2025년 까지로 함.

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 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자료: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2) 수질오염총량 대상 검토

○ 대상지는 서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단위유역 중 “한강I” 유역에 포함되므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지역에 해당함.

3) 수자원 이용현황

가) 취수장 현황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를 급수구역으로 하는 취수장은 풍납취수장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700,000㎥/일인 것으로 조사됨.

[취수장 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일)	일평균 취수량 (㎥/일)	취수원	공급정수장
풍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19	700,000	455,466	한강표류수	영등포

자료 : 2020 상수도통계, 2021, 환경부

나) 정수장 현황

○ 양천구를 급수구역으로 하는 정수장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용량은 600,000㎥/일인 것으로 조사됨.

[정수장 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일)	정수처리 적용방식	급수구역	관련취수장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11	600,000	급속여과+막여과(MF) +활성탄여과	양천구 외 3개구	풍납

자료 : 2020 상수도통계, 2021, 환경부

다)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현황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양천구는 전역이 “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지역명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양천구	-	-	전 역

자료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4) 수질현황

가) 조사항목

○ 본 대상지 인근의 하천수질 현황 파악은「물환경정보시스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안양천에 대한 하천수질 현황을 조사하였음.

나) 조사지점

[하천수질 조사지점]

측정소명	중권역명	수계명	기관명	주소	운영 시작년도
안양천9	한강서울	한 강	한강물환경연구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89
안양천10	한강서울	한 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989

다) 조사결과

○ 수질측정망은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보존, 현장측정, 시험방법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2021년도 안양천의 수질은 DO 8.0~8.2㎎/L(Ia등급), BOD 2.8~3.2㎎/L(Ⅱ~Ⅲ등급), SS 10.1~11.8㎎/L(Ia등급)로 조사되었음.

[수질분석현황]

구 분		수온 (℃)	DO (㎎/L)	BOD (㎎/L)	COD (㎎/L)	SS (㎎/L)	T-N (㎎/L)	T-P (㎎/L)
안양천9	2017년	16.8	9.2	3.5	8.8	11.8	10.924	0.153
	2018년	17.3	8.7	4.2	9.0	11.3	10.435	0.147
	2019년	17.0	8.0	4.8	9.9	13.9	10.678	0.171
	2020년	16.8	8.2	4.2	9.0	10.6	8.840	0.152
	2021년	17.4	8.2	3.2	8.6	10.1	8.899	0.137
안양천10	2017년	16.0	8.5	2.7	6.6	10.2	8.100	0.068
	2018년	16.6	7.9	4.3	7.0	8.8	7.928	0.130
	2019년	16.7	7.4	3.5	7.3	10.7	7.768	0.116
	2020년	15.8	7.8	1.7	6.4	8.8	6.524	0.083
	2021년	16.4	8.0	2.8	7.1	11.8	6.960	0.104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시

○ 공사시 강우로 인한 절·성토 지역의 토사유출로 인근 주거지, 하천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함. 예측을 위하여 대상지 내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 및 우수유출량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출수 중 SS농도를 산출함.

○ 공사시 현장근로자에 의한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가) 배수구역 설정

○ 대상지 부지정지 시 강우에 의한 우수의 하류 유하로 수용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전체면적을 배수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배수구역의 설정은 부지정지 및 터파기 시 이루어지는 사업대상지의 지형 및 수리분석자료를 토대로 구분함.

나) 우수유출량 산정

○ 대상지 내의 배수구역 우수유출량 산정은 소규모 유역의 유출량 산정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합리식을 적용하였으며, 적용인자 중 유출계수(C)의 경우 공지의 최대치(0.3)를 적용함.

○ 강우강도는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20,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확률강우량 중 사업지구와 가장 인접한 서울관측소의 재현기간 10년, 강우지속시간 10분의 강우강도 140.3㎜/hr를 적용함.

[합리식]

$$Q = \frac{1}{360} \times C \times I \times A$$

Q : 우수유출량(㎥/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배수구역 면적(ha)

[강우강도 산정(서울)]

구 분		Average Recurrences Interval(years)												
		2	3	5	10	20	30	50	70	80	100	200	300	500
강우 지속 시간 (min)	5	133.3	148.8	166.7	188.1	209.6	221.5	237.1	247.8	251.4	257.4	278.8	290.7	305.1
	10	96.2	108.7	122.8	**140.3**	157.1	166.9	179.2	187.2	190.3	195.3	211.5	221.3	233.0
	15	80.7	92.0	104.8	120.9	136.1	145.1	156.2	163.4	166.2	170.9	185.7	194.5	205.3
	20	71.4	82.1	94.2	109.4	123.8	132.2	142.7	149.5	152.1	156.6	170.6	178.9	189.1
	30	60.2	70.1	81.2	95.2	108.5	116.2	125.9	132.1	134.6	138.7	151.7	159.2	168.6
	40	53.2	62.5	72.9	85.9	98.4	105.6	114.7	120.5	122.9	126.7	138.9	145.9	154.8
	50	48.2	57.0	66.8	79.1	90.9	97.7	106.2	111.7	113.9	117.5	129.0	135.6	144.0
	60	44.4	52.7	62.0	73.6	84.8	91.2	99.2	104.5	106.6	110.0	120.9	127.1	135.0
	90	36.7	43.9	51.8	61.9	71.5	77.0	84.0	88.5	90.3	93.3	102.6	108.0	114.8
	120	31.7	38.0	45.1	53.9	62.3	67.2	73.3	77.3	78.9	81.5	89.7	94.5	100.5

자료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20, 국토교통부

[유출계수 표준치]

토 지 종 별	유 출 계 수	토 지 종 별	유 출 계 수
지 붕	0.85~0.95	잔디, 수목이 많은 공원	0.05~0.25
도 로	0.80~0.90	**공지**	**0.10~0.30**
기 타 불 수 면	0.75~0.85	구배가 완만한 산지	0.20~0.40
수 면	1.00	구배가 급한 산지	0.40~0.60

자료 : 하수도 시설기준, 2011, 한국수도협회

[우수유출량 추정]

구 분	면 적(ha)	우수유출량(㎥/sec)	비 고
배수구역	8.8599	1.036	-

다) 토사유출량 산정

○ 토사유출량의 산정은 단위면적 당 배출원단위(일본 사방시설 설계기준)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유출원단위는 개발지역(나지·황폐지)의 유출원단위 평균치인 300㎥/ha·년을 적용함.

[토사유출량 원단위]

지 표 의 상 태	두께(mm)	ha당 유출 토사량(㎥/년)	비 고
나 지 · 황 폐 지 등	20~40	**200~400**	공사에 의해 파헤쳐지는 면적 및 절·성토부에 대해서는 나지에 준함. 완전한 배수시설을 갖춘 잔디 등은 임지에 준함.
갯 벌, 초 지 등	1.5	15	
택 벌 지	0.2	2	
보 통 의 임 야	0.1	1	

자료 : 골프사업년감, P.52, 정강현, 일본사방시설 설계기준

[토사유출량 추정식]

토사유출량(ton/일) = 면적(ha)×토사유출량 원단위(㎥/ha·년)×단위중량(1.6ton/㎥)/365(일/년)

[토사유출량 추정]

구 분	면 적(ha)	토사유출량(ton/일)	비 고
배수구역	8.8599	11.651	-

라) SS 가중농도 산정

○ 앞서 추정한 배수구역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을 이용하여 수용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SS 가중농도를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 130.163㎎/L의 SS농도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SS 가중농도 산정]

구 분	우수유출량(㎥/sec)	토사유출량(ton/일)	SS 가중농도(㎎/L)	비 고
배수구역	1.036	11.651	130.163	-

2) 운영시

가)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 대상지 운영시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은 계획인구에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급수량 원단위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15, 서울시」의 2030년 일최대 급수량 원단위인 347L/인·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1,631.9㎥/일로 산정되었음.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 (인)	급수량 원단위 (L/인·일)	생활용수 수요량 (㎥/일)	비 고
대 상 지	4,703	347	1,631.9	2030년

주 : 계획인구(4,703인)=계획 세대수(1,881세대) × 세대당 인구(2.5인/세대)
자료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15, 서울시

나) 오수발생량 산정

○ 환경부 고시 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의 일최대 오수량 200L/인·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940.6㎥/일로 산정되었음.

[오수발생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 (인)	원단위 (L/인·일)	오수발생량 (㎥/일)	비 고
대 상 지	4,703	200	940.6	-

주 : 1. 계획인구(4,703인)=계획 세대수(1,881세대) × 세대당 인구(2.5인/세대)
2. 공동주택 인구만 산정함
자료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제2021-59호, 환경부

다. 저감방안

1) 공사시

- 대상지의 공사로 인한 강우시 발생되는 토사의 유출로 인해 인근 주거지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사노출부에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임.
- 강우시 공사를 억제
- 대상지 주변으로 측구를 조기 설치하여 지구외 우수가 지구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기존 하수 관로를 이용하여 연계처리 할 계획

2) 운영시

가) 상수도 계획

- 용수공급의 국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이며 위생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개발계획을 고려한 용수공급계획을 수립
- 용수공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지원강화와 용수사용의 절약을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용수이용을 추구할 계획이며, 대상지 내 상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의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시 상수관로로부터 공급받을 계획

나) 우수배제 및 저감계획

-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할 계획
- 우수배수방식은 자연유하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지 내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계획지구 주변의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기존 시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

다) 오수배제 및 저감계획

- 하수관거는 자연유하식으로 계획하며,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여 처리하는 완전분류식을 원칙으로 함
- 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할 계획

라)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 장마 전 맨홀 및 우수관거설비 점검 및 청소 등
- 우수맨홀 내에 쓰레기 및 토사침전물로 인해 대상지 내 배수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침전물의 수거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4.4 생활환경분야(대기환경)

4.4.1 바람

가. 기상현황

1) 풍속

○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의 바람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기상연보 2012~2021년)를 조사한 결과 평균풍속은 2.4m/sec, 평균속도 최대는 4월의 2.7m/sec, 최저는 9월의 2.1m/sec인 것으로 조사됨.

[평균 풍속] **(단위 : m/sec)**

구 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평 균
	3	4	5	6	7	8	9	10	11	12	1	2	
서 울	2.7	2.7	2.5	2.3	2.4	2.3	2.1	2.2	2.3	2.3	2.3	2.5	2.4
기상청	2.6			2.3			2.2			2.4			

자료 : 기상연보, 2012~2021, 기상청

2) 풍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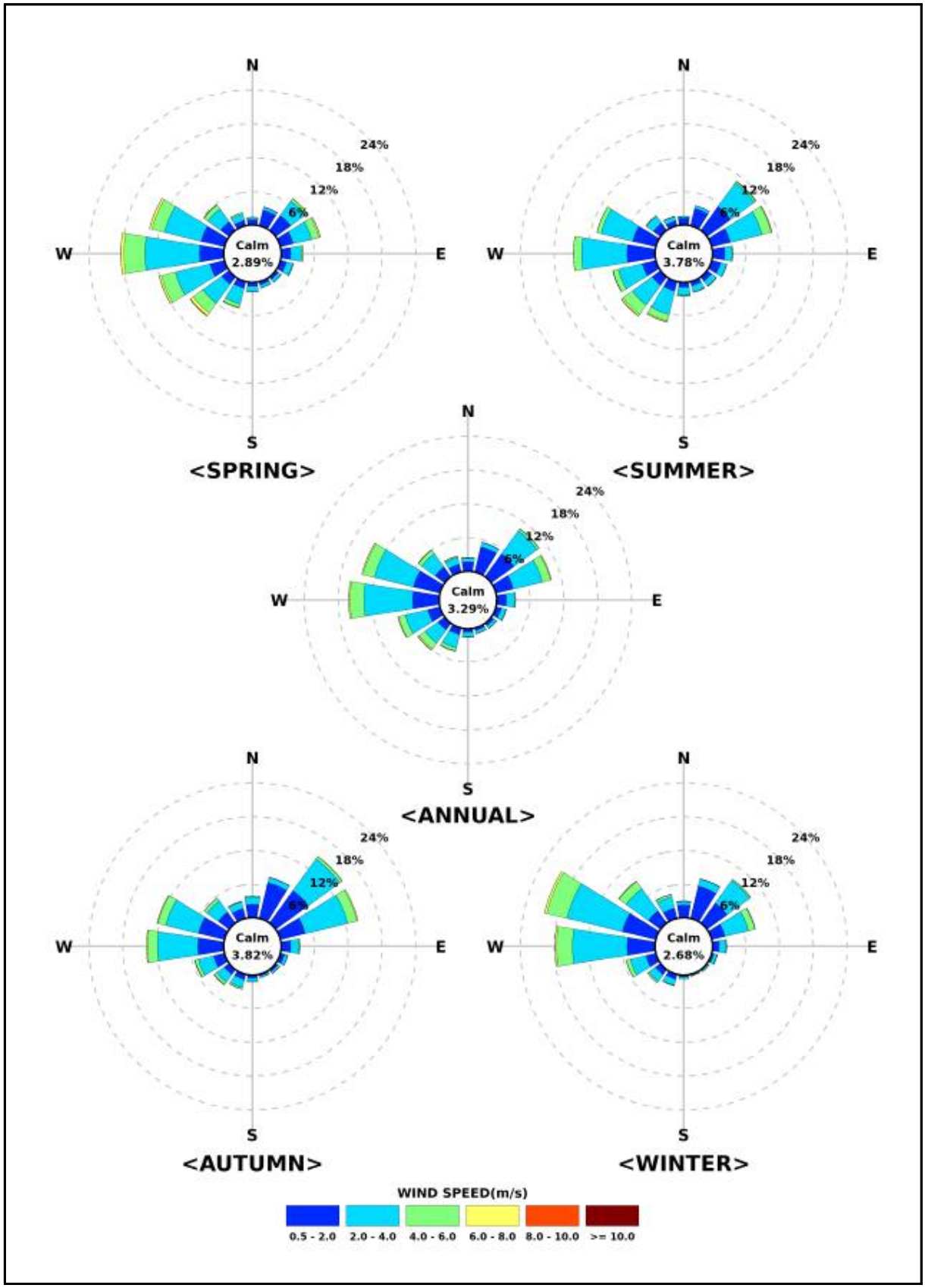
○ 서울기상대에서 관측한 최대풍속 및 풍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최다풍향은 서풍(W)계열인 것으로 나타남.

[풍향별 풍속에 의한 풍향별 백분율] **(단위 : %)**

구분	0.5-2	2-4	4-6	6-8	8-10	〉10	TOTAL
N	1.83	0.64	0.08	0.00	0.00	0.00	2.56
NNE	4.71	0.82	0.03	0.00	0.00	0.00	5.57
NE	5.14	5.04	0.41	0.03	0.01	0.00	10.62
ENE	3.31	5.27	1.47	0.17	0.01	0.00	10.24
E	1.85	1.47	0.16	0.01	0.00	0.00	3.49
ESE	1.15	0.85	0.06	0.00	0.00	0.00	2.07
SE	0.72	0.60	0.03	0.01	0.00	0.00	1.36
SSE	0.65	0.55	0.03	0.00	0.00	0.00	1.22
S	0.78	0.81	0.08	0.01	0.00	0.00	1.68
SSW	1.36	2.42	0.56	0.09	0.01	0.00	4.44
SW	1.59	2.89	1.25	0.25	0.04	0.01	6.04
WSW	2.37	4.08	1.21	0.14	0.01	0.00	7.80
W	4.83	8.63	2.44	0.25	0.01	0.00	16.16
WNW	4.95	7.12	2.05	0.24	0.01	0.00	14.37
NW	2.27	2.91	0.77	0.06	0.00	0.00	6.02
NNW	1.53	1.30	0.22	0.02	0.00	0.00	3.07
TOTAL	39.06	45.40	10.84	1.28	0.11	0.01	96.71
CALM -〉	3.29%						

자료 : 기상연보, 2012~2021, 기상청

[바람장미도]


N
S
W
E
24%
18%
12%
6%
Calm
2.89%
<SPRING>
Calm
3.78%
<SUMMER>
Calm
3.29%
<ANNUAL>
Calm
3.82%
<AUTUMN>
Calm
2.68%
<WINTER>
WIND SPEED(m/s)
0.5 - 2.0
2.0 - 4.0
4.0 - 6.0
6.0 - 8.0
8.0 - 10.0
>= 10.0

나. 기후환경

1) 기후환경 공간유형 현황

○ 현재 대상지의 기후환경(열환경, 바람기능, 물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법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2차년도), 2021, 서울특별시」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을 참고함.

가) 바람기능

○ 바람기능성 지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공간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녹지가 분포되어 있고, 시 내부에는 불투수 포장 비율이 높은 시가지와 단독주택지와 불투수 포장 비율이 낮은 시가지가 혼재된 것으로 조사됨.

○ 대상지의 바람기능은 일부 녹지를 포함하나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로 조사되어 생활권 높이에서의 바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나) 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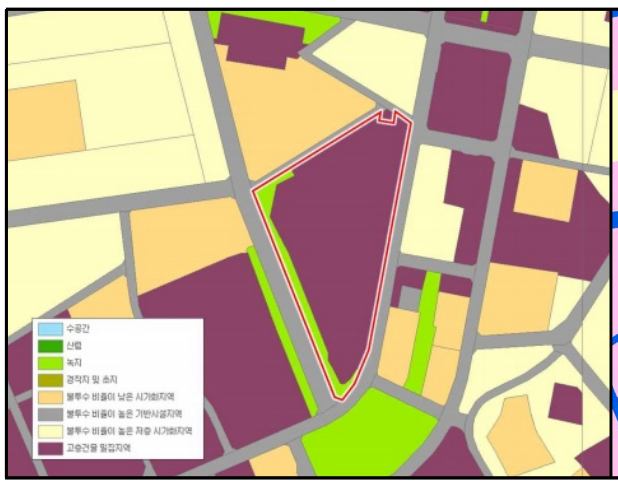
○ 열환경은 식생에 따른 온도 변화가 유의미하고, 토지피복에 따른 반사도와 식생의 양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섬효과를 저감하는 냉각효과를 보임. 이에 따른 열환경 유형 분류시 식생을 포함하는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구분하였고 조경수목식재지로 식생량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유형을 분류함.

○ 대상지의 열환경은 일부 공원 등 조경수목식재지 및 산림을 포함하나,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로 조사되었으며 불투수율이 높은 아스팔트의 낮은 알베도로 태양열 흡수율이 높아 도시열섬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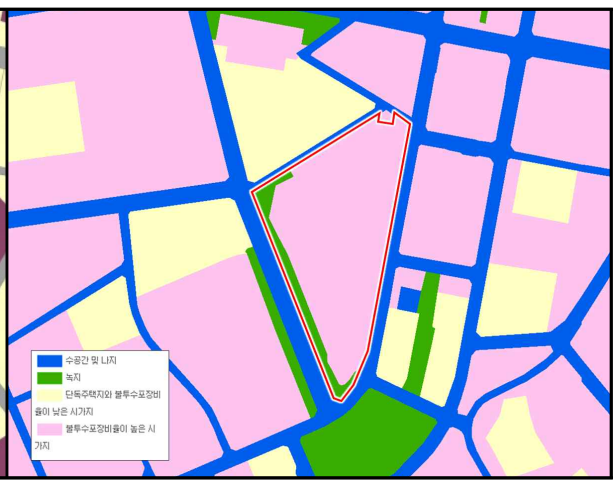
다) 물환경

○ 물환경 공간유형은 6개로 구분되며, 대상지는 일부 산림 및 초지를 포함하나 대부분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로 조사됨.

[기후환경 공간유형도]



[바람기능]



[열환경]



[물순환]



[바람기능 공간유형별 특성]

구분	공간유형명	공간 특성	바람기능 특성
1	수공간 및 나지	바닥면에 식생이나 인공물 등 바람에 영향을 주는 것이 거의 없는 평탄한 공간으로 수면이나 하상노출지 등을 의미하며 넓게 포장이 되어 있는 공항이나 큰 주차장도 여기에 속함	-고도에 따른 바람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10m 이상 고도에서의 바람이 생활권 높이까지 잘 연결되는 공간 -도시 내 바람 흐름에 주요 통로 역할을 수행
2	녹지	초목 식생이 분포하는 공간으로 부분적으로 건물 등의 시설이 있는 공간도 포함	-표면마찰로 인해 생활권 높이에서 풍속 저감이 다소 나타나지만 식생이나 인공물이 바람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 수준의 공간 -주로 서울 외곽과 산 주변으로 나타나는 공간 특성 상 산곡풍의 주요 통로로 기능하며 도시에 찬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 수행
3	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	단독주택과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공동주택지 및 일부 혼합지	-10m 높이까지 배치된 건축물 등으로 인해 바람 흐름이크게 저해 받는 공간 -생활권 높이에서의 바람이 건물 위쪽에서 기상에 따른 바람과 분리되기 시작하며 생활권 높이에서의 바람은 주변의 국지적인 경계 특성에 영향을 더 받음
4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지와 상업 업무지	-높은 건물로 인한 경계층 효과가 강하여 생활권 높이와 고도 10m까지도 경계층 모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 -높은 지표면 거칠기로 인해 생활권 높이에서의 바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건물 주변의 3차원 난류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돌풍 발생

자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2차년도), 2021.01, 서울특별시

[열환경 공간유형별 특성]

구분	공간유형명	평균온도(℃)*	공간 특성	열환경 특성	
1	수공간	22.9	-한강 및 주요지천	-하천은 수표면적에 따라 0.33~4.05도까지 평균 0.7도 온도저감효과 -비교적 넓은 지역에 최대 약 2도 정도의 기온감소효과	
2	산림	25.3	-서울 외곽지역	-식생량이 가장 많고 규모가 크므로 주변 미기후를 개선 -상대적으로 열섬효과를 저감하는 냉각효과	
3	경작지 및 초지	27.7	-서울 외곽의 산림 인접 -한강변	-산림 대비 녹지 비율이 낮지만 도심지 열환경과는 차이가 나타나며, 초지의 경우 알베도가 도심지 대비 높음	
4	공원 등 조경수목식재지	28.8	-도심 내 고루 분포	-도심지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식생에 의해 알베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냉섬효과를 보임	
5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주거지	30.0	-도심 내 고루 분포 -평균 불투수율 43.4%	-불투수, 층고, 지표면온도와의 상관분석에 따르면,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지역에 서는 층고가 지표면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층고 구분 제외	
6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30.1	-주로 양천, 노원 -평균 불투수율 78.8%	-공동주택 단지(예, 아파트)의 경우 저층주거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식생 비율이 높으므로 지표면온도에 영향	-(불투수율) 불투수율이 높을수록 함수 기능이 없고 물순환을 차단하여 상단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현열 증가로 도시열섬 효과를 일으키는 요인 -(층고)고층지역은 그림자 영역에 대한 지표면온도 감소효과 존재
7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기반시설지	31.2	-도로 및 철도 -평균 불투수율 83.7%	-불투수율이 높은 아스팔트의 낮은 알베도로 태양열 흡수율이 높아 도시열섬을 형성	
8	고층건물이 밀집한 상업업무지	31.4	-종로, 영등포, 강남 -평균 불투수율 90.0%	-지표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계획적 대책과 관리 필요 지역	
9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31.8	-가장 넓은 면적 -도심 내 고루 분포 -단독주택, 빌라촌 등 -평균 불투수율 86.6%	-층고가 높은 주택지, 상업지 대비 상대적으로 식생이 없어 낮은 알베도로 지표면온도가 가장 높음 -그림자영역에 대한 지표면온도 감소효과 미미	

주*) 2017년 08월 26일 오전 11시 해당 공간유형의 평균온도(℃)

자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2차년도), 2021.01, 서울특별시

[물환경 공간유형별 특성]

구분	공간유형명	공간 특성	물환경 특성
1	수공간	-한강, 주요지천 및 주변 습지	-과거 침수지역은 안양천, 중랑천, 반포천, 탄천 등 주요 하천 주변 저지대지역에 해당 -최근 집중호우와 선행강우조건에 따라 하천월류 등에 의한 복합적인 피해 발생
2	산림 및 초지	-식생이 분포하는 공간으로 유출특성이 도심지에 비해 좋게 나타남 -주로 서울 외곽지역 및 하천 주변에 분포	-산지지역에서는 도심지에 위치한 유형에 비해 유출이 좋은 편이나 기상에 따른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대체로 높음 -산지대에서 단시간에 급격한 유출이 발생하면 주변 저지대 일대 유출 집중되므로 산사태 및 사면관리 필요
3	경작지 및 공공시설지	-도심 내 고루 분포 -경작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과 하천 주변에 분포	-비교적 녹지율이 높은 공공시설지로 도시화된 지역에 비해 낮은 유출률을 가짐

〈표 계속〉

구분	공간유형명	공간 특성	물환경 특성
4	불투수비율이 낮은 주거지 및 나지	-도심 내 고루 분포 -나지유형의 경우 산림 및 하천 주변에 대체로 분포	-불투수율이 높은 유형에 비해 비교적 낮은 유출률을 갖지만 도심지는 건물, 주거지 등이 밀집되어 있어 관리 필요 -하천 주변은 일정공간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여 침수 피해 저감
5	공업 및 교통시설지	-도심 내 도로 및 철도 포함 -공항지역 포함 -교통시설지를 제외한 공업지는 안양천, 중랑천 주변에 주로 분포	-교통시설지에서 침수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불투수율이 높은 도로는 집중호우 시 우수받이 용량 부족으로 유로의 역할을 하여 위험성이 높아짐.
6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	-도심 내 고루 분포 -건물들이 밀집되어 배치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 (주로 단독주택, 반지하주택, 저지대 도로 등) 하고, 불투수율 면적증가로 침수피해 가중 -주거상업혼합지, 상업업무 시설지,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지의 침수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홍수 대책과 기준 강화 필요

주*) 2017년 08월 26일 오전 11시 해당 공간유형의 평균온도(℃)
자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2차년도), 2021.01, 서울특별시

다.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본 사업은 대상지 내 신규건축물은 지상 4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어, 본 건축물의 입지에 따른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기상(바람) 요소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 건물의 입지로 풍하 방향의 풍속 증가, 신축건물에 부딪힌 기류가 좌우로 갈라져 인접도로 및 건물 사이를 따라 진행, 고층 건물에 의한 건물 뒤편으로 풍속이 크게 약화된 와류 생성 등의 영향이 예상됨.

○ 수목식재 후의 경우에는 식재 전에 비해 두드러진 개선효과는 볼 수 없었으나, 대상지 내의 풍속(수치적 해석)이 경미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대상지 내 녹지를 확보하여 풍속의 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 대상지 내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 지역의 건축물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건축물의 방향은 바람의 진행 방향(서풍)을 고려하여 계획함으로 바람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계획시행 후 대상지 내부와 주변 지역으로의 바람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바람길 차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함.

4.4.2 대기질·미세먼지

가. 현황

1) 조사항목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서울시 양천구 일원의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천구 중앙로에 위치한 자동측정망 자료를 인용·분석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설정 항목(PM-10, SO_2, NO_2, CO, O_3)에 대하여 조사함.

2) 조사방법 및 범위

○ 대기질 현황조사는 양천구 중앙로에 설치·가동 중인 대기질 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2020년도 월별 농도측정자료를 조사하였음.

[대기질 자동측정망 위치]

측정소명	설 치 장 소	경위도 좌표	
		경도	위도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2길 56 신정4동 문화센터	126.857	37.526

3) 조사결과

○ 자동측정망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21년 월별 대기질 평균농도분포는 PM-10 21㎍/㎥, PM-10 41㎍/㎥, SO_2 0.003ppm, NO_2 0.026ppm, CO 0.5ppm, O_3 0.027ppm으로 조사되었으며, 월별 농도분포 중 SO_2는 1·2월(0.004ppm), NO_2는 1,3월 (0.038ppm)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대기오염도 현황] (단위 : ㎍/㎥, ppm)

구 분		PM-2.5	PM-10	SO_2	NO_2	CO	O_3
2021년	1월	23	41	0.004	0.035	0.6	0.013
	2월	32	53	0.004	0.033	0.6	0.020
	3월	35	73	0.003	0.035	0.6	0.024
	4월	18	44	0.003	0.024	0.4	0.036
	5월	19	61	0.003	0.020	0.4	0.035
	6월	20	34	0.003	0.019	0.4	0.039
	7월	16	26	0.003	0.016	0.4	0.040
	8월	13	23	0.003	0.016	0.4	0.034
	9월	8	16	0.004	0.016	0.4	0.032
	10월	16	30	0.004	0.026	0.5	0.022
	11월	29	47	0.003	0.034	0.6	0.017
	12월	26	41	0.003	0.033	0.6	0.012
평 균		21	41	0.003	0.026	0.5	0.027

자료 : 대기환경연보(2021),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대기질 환경기준]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 (SO_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_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존 (O_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 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개정 2020.05.12.>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현황]

구 분	대 기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양천구	26	2	1	-	6	17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시

○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는 각종 작업의 수행·이동에 의해 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대상지 내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장비의 이동에 의한 발생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노체에서 날리는 부분도 있음.

○ 대상지 주변은 주거지역 및 학교시설 등이 위치하며, 공사시 장비투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나 발생량이 적어,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2) 운영시

○ 대상지 운영시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연료사용 및 이용차량에 의한 배기가스 발생이 예상되며, 대상지 토지이용변화(토양포장 등)에 따른 대상 지역의 태양복사율의 변화, 도시열섬현상에의 영향이 예상됨.

다. 저감방안

1) 공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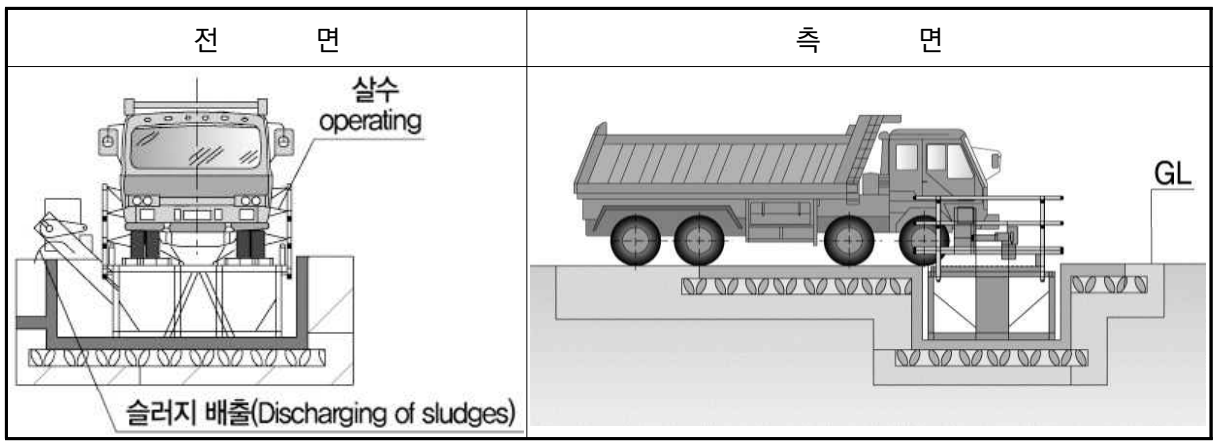
가) 세륜·측면살수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4항에 관련한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준한 세륜·측면살수시설, 살수, 방진망, 진입도로 포장, 차속제한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

○ 세륜·측면살수시설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계획
- 출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세륜·측면살수시설 예시도]



[세륜·측면살수시설]

세륜 시설	•수조의 넓이	수송차량의 1.2배이상
	•수조의 깊이	20cm이상
	•수조의 길이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수조의 관리	수조수순환(재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수조의 탁도가 10도 이하로 유지관리) 주기적인 침전슬러지(모래, 진흙 등) 청소
측면 살수 시설	•살 수 높 이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살 수 길 이	운반차량 전장의 1.5배이상
	•살 수 방 법	양측에서 동시에 살수가능한 자동 또는 반자동
	•수 압	3㎏f/㎠이상

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

나) 차속의 규제 및 적재 제한

○ 차속의 제한 : 차량의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량은 차량의 속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차량의 속도에 따른 저감효과는 비포장도로에서 차량속도가 32㎞/hr일 때 비산먼지 발생량의 65%를 저감할 수 있으며, 16㎞/hr일 때 80%까지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규제함.

○ 공사차량의 속도제한(20㎞/hr이하) 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상 과속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토사를 이용한 임시 속도방지턱 설치

○ 현장 교육 및 감독관에 의한 관리 감독 철저

○ 적재제한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

[비포장도로에서의 비산먼지 저감효과]

저 감 방 안	저 감 효 과(%)	비 고
◦ 도로포장	80	속도 40mile/hr(64㎞/hr)에 기준한 저감효과임
◦ 도로표면에 화학물처리	50	
◦ 토양에 안정 화학물질 투여	59	
◦ 속도조절		
- 30mile/hr(48㎞/hr)	25	
- 20mile/hr(32㎞/hr)	65	
- 10mile/hr(16㎞/hr)	80	

자료 : Compil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 Factors, US EPA

다) 공사장 내 살수계획

○ 사업시행 시 대상지 내를 출입하는 차량의 공사장 내 비포장구간 운행시 발생되는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진입로 및 대상지내 차량이동로에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고 차량운행 속도를 저속으로 제한하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은 즉시 제거토록 함.

- 살수지역 : 차량진입로 및 이동로
- 살수회수 : 1일 2회 이상(청명한 하계기준 : 1회/시간)

라) 건설장비의 배출가스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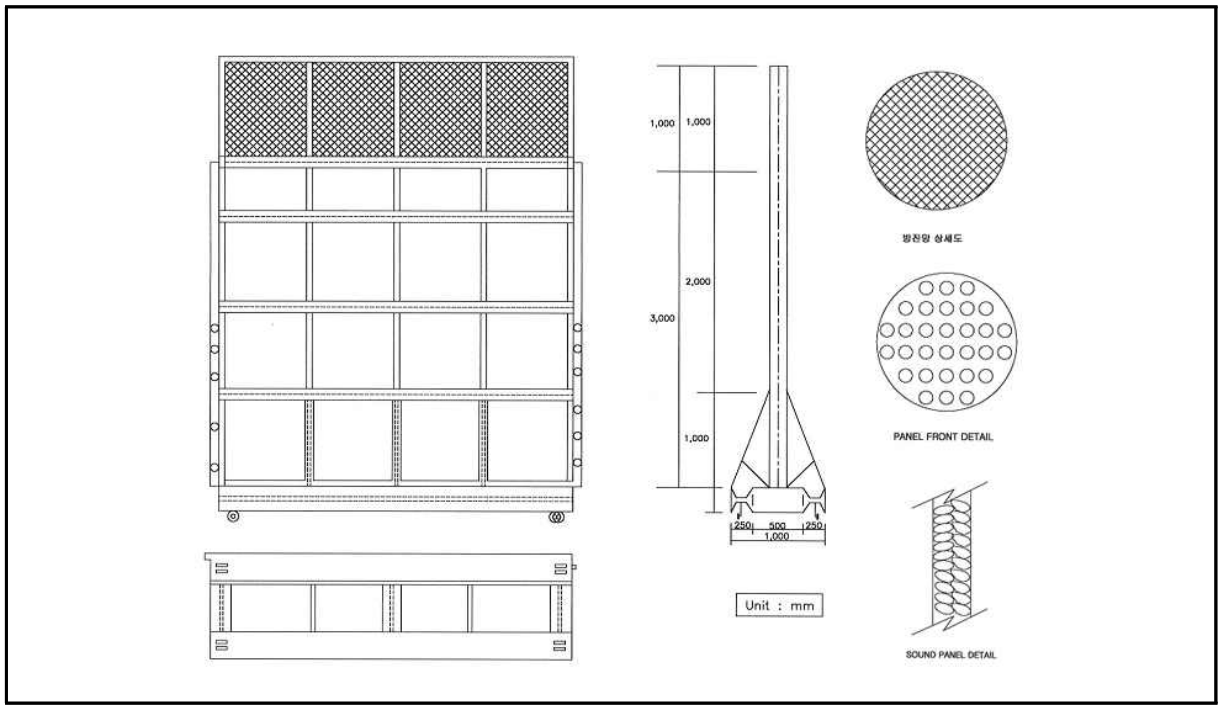
○ 배출가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장 내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임.

- 건설장비는 동일 작업장 내 집중 투입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작업공정 수립
- 발생 배출가스의 원활한 대기확산을 위하여 이른 아침이나 야간작업을 지양
- 건설장비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금지
- 건설장비에 의한 작업 진행은 배기가스가 인근 주거지 방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주거지 전면부로 정차 및 작업진행
- 건설장비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차량 배기가스 방지를 위하여 투입장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진행

마) 방진망 설치

○ 대상지 부지정지를 위한 토공사 시행시 바람에 의해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망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방진망 설치 모식도]



[공사 단계별 비산먼지 저감대책]

공 종	발생원	저 감 대 책
사전준비	-	• 기존 건축물 철거전 대상지 경계 가설방음판넬+방진망 설치
철거공사	구조물 파쇄	• 구조물 파쇄면에 고압살수 실시
토공사	터파기공	• 이동식 살수설비를 사용하여 살수 실시 •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시 작업중지
	굴착공	• 이동식 살수설비를 사용하여 살수 실시 • 외부 진출시 세륜·측면살수시설 및 덮개이용 • 단지내 공사도로 가포장 실시 / 현장내 저속운행 • 구내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비포장시) 및 물세척 실시(포장시)
건축공사	거푸집공	• 정리 및 청결유지 • 운반정리의 단순화로 먼지발생 억제
	콘크리트 타설공	• 정리 및 청결유지 / 타설시 가림판을 설치
	레미콘 및 자재운반	• 현장내 저속운행 / 장비 청결 유지 • 외부진출시 세륜·세차후 현장 출발 • 구내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비포장시) 및 물세척 실시(포장시)
배수공사	레미콘,자재운반	• 정리 및 청결 유지 / 공사장비 저속운행
되메우기 공사	-	• 이동식 살수설비를 사용하여 살수 실시 / 현장 내 저속운행 • 외부 진출시 세륜·측면살수시설 및 덮개이용 •구내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비포장시) 및 물세척 실시(포장시)
포장 공사	레미콘 및 자재운반	• 정밀시공으로 먼지발생 요소 억제 • 골재 하차시 필요하면 방진막 사용 / 필요시 살수 설비사용

2) 운영시

○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시 청정연료를 이용할 계획이며,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등의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녹지확보

- 대상지 내 녹지대를 설치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계획
- 대상지 내 녹지나 가로수의 수목으로는 황산화물이나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흡착능력과 견디는 힘이 강한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대기오염의 정화를 도모

○ 청정연료(LNG)를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에 의거하여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층 및 층간바닥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의 도입 및 에너지절약 건축자재 사용, 자연채광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열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효율 및 부분부하 효율이 좋은 기기 선정

4.4.3 온실가스

가. 현황

1)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대상지 및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선오염원과 주변 지역의 주거시설 등에서의 난방 및 취사시 연료사용에 의한 면오염원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 현황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온실가스 저감 관련 법령 조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8.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반영한 국가정책에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지역 사회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경영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과 홍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는 저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표 계속〉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기여한다.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오염없는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도로 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발광다이오드(LED)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4.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오염도 저감 정책 추진
6.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수요 관리
7.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8. 자동차 저공해 사업지원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
9.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10.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시행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4.〉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8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자료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046호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고정배출원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가) 난방연료

○ 대상지의 난방 및 급탕에 따른 연료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2015,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2호」에서 제시된 원단위를 적용하여, 난방면적을 추정한 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Ⅴ), 2022.6,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제시된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단위 연결열부하 기준표] (kcal/㎡·hr)

용 도 구 분	단 위 부 하		추정단위 연결열부하	비 고
	난방연결	급탕연결		
근 린 생 활 시 설	86	5	91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근 린 공 공 시 설	89	7	96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종 교 시 설	115	2	117	
노 약 자 시 설	86	7	93	유치원, 노인정
의 료 시 설	105	25	130	병원급 이하
교 육 연 구 시 설	89	5	94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업 무 시 설(업무·공공)	86	7	93	
숙 박 시 설	89	45	134	
판 매 시 설	98	5	103	
위락시설(특수목욕탕)	110	80	190	수영장, 목욕장 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 기준 적용
관 람 집 회 시 설	115	2	117	운동시설
전 시 시 설	115	2	117	
기 타	사업자와 협의			종합병원급 이상, 특수시설 등

주 : 1. 난방 연결열부하는 A-라디에이터, 콘벡터류 및 휀코일유니트(FCU)가 주 난방인 경우로 적용
2. 기타 시설의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열사용 시설기준에 적용
3.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복합건축물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주 용도에 따라 적용

자료 :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2호

[단위 난방부하 기준(공동주택)]

구 분	난방면적(㎡)	단위난방부하(kcal/㎡·hr)		
		난 방	급 탕	합 계
아 파 트	85 초과	35.2	15	50.2
	60~85 이하	36.2	15	51.2
	60 이하	37.6	15	52.6
연립주택	85 초과	37.1	15	52.1
	85 이하	39.5	15	54.5

주 :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C(속초, 화성, 강릉, 천안, 대구, **서울**, 시흥, 안양 등) 지역에 기준을 적용함.
자료 :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2호

[시설물 설치계획 및 난방 연료 소요량 산정]

구 분		전용면적 (㎡)	난방면적 (㎡)	적용난방부하 (kcal/㎡·hr)	최대열부하 (Mcal/hr)	동시열부하 (Mcal/hr)	연간열부하 (Mcal/년)	LNG사용량 (천N㎥/년)
공동주택	59.9㎡	43,403.96	34723.17	52.6	1826.44	1552.47	4079899.08	400.4
	74.9㎡	30,595.92	24476.74	51.2	1253.21	1065.23	2799418.00	274.7
	84.9㎡	73,628.54	58902.83	51.2	3015.82	2563.45	6736749.59	661.1
	99.9㎡	31,548.84	25239.08	50.2	1267.00	1076.95	2830228.19	277.7
	100.9㎡	27,170.35	21736.28	50.2	1091.16	927.49	2437436.19	239.2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2075.00	2075.00	93	192.98	164.03	431067.56	42.3
주민공동시설주)		1,200.00	840.00	91	76.44	64.97	170751.67	16.8
근린생활시설		1,900.00	1330.00	91	121.03	102.88	270356.81	26.5
관리사무소, 경비실		370.00	259.00	91	23.57	20.03	52648.43	5.2
계(1,881세대)		211,892.61	169,582.1	-	8,867.65	7,537.5	19,808,555.5	1,943.9

비고) 1.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2호」에 의해 공동주택의 난방면적비 80%, 상업시설(근린·일반·중심상업) 난방면적비 70%, 노유자시설 난방면적비 100% 적용
2. LNG발열량(10,190kcal/㎥),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1]
3. 공동주택 난방 연료량만 산정함
자료 :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2호

○ 취사연료

- 계획건축물 내 공동주택 취사에 따른 연료(LNG) 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2015,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적용함.
- 산정결과, 공동주택의 취사로 인한 연료사용량은 358.8천N㎥/년으로 산정됨.

[취사용 연료사용량 산정]

구 분	규 모 (세대)	적 용 원 단 위 (Mcal/세대·년)	취사용 열수요량 (Mcal/년)	LNG사용량 (천N㎥/년)
공 동 주 택	1,881	1,943.9	3,656,515.5	358.8

주 : 1. 공동주택에서 취사하는 것만 산정함.
2. LNG 발열량의 경우 "에너지법 시행규칙[별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6호"에 제시된 총 발열량 값 적용.
자료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2015, 한국에너지공단

○ 총 연료(LNG) 사용량

- 대상지 내 총 연료(LNG) 사용량을 예측한 결과, 2,302.7천N㎥/년으로 산정됨.

[연료 사용량 산정]

구 분	난방 사용량 (천N㎥/년)	취사용 (천N㎥/년)	합 계 (천N㎥/년)
대 상 지	1,943.9	358.8	2,302.7

○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대상지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상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함.
- 그 결과, PM-10 0.0014g/sec, NO_2 0.1314g/sec, SO_2 0.0005g/sec로 산정됨.

[연료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구 분	단위	PM-10	NO_2	SO_2
배출계수	kg/천N㎥	0.03	2.775	0.01
배출량	g/sec	0.0016	0.1489	0.0005

주 : NO_2의 경우 $NO_X \rightarrow NO_2$ 전환율을 75% 적용(US EPA, 2001, Guideline on air quality models)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개정, 2019.12.20.)

나)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은 운영시 사용되는 도시가스(LNG)량, 전기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CO_2, CH_4, N_2O 배출량을 토대로 온실가스를 산출하였음.

○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른 온실가스별 배출계수와 에너지원별 순발열량 자료를 이용하여 CO_2, CH_4, N_2O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고 온실효과 가스의 지구온난화 계수를 이용하여 온실가스량(CO_2eq)으로 환산함.

① 연료사용량을 순발열량으로 환산 순발열량(TJ) = 연료사용량(L, kg, ㎥) × 해당연료 순발열량(MJ/L, kg. ㎥) / 10^6 ②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곱함 온실가스(CO_2, CH_4, N_2O) = 순발열량(TJ) × 배출계수(kg/TJ)

자료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제6조 제2항)

주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계수]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계수	배출원의 예
이산화탄소(CO_2)	1	건설기계가동, 자동차 운행, 환기소 가동 등
메탄(CH_4)	21	연료사용, 자동차 주행 등
아산화질소(N_2O)	310	연료사용, 자동차 주행 등

자료 :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 2009.07, 환경부

- CO_2 3,258.29ton/년, CH_4 0.290ton/년, N_2O 0.006ton/년으로 나타나 가스를 온실가스(CO_2eq)로 환산하면 3,266.24tonCO_2eq/년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구 분	LNG 순발열량 (MJ/㎥)	온실가스 배출계수 (kg/TJ)	온실가스배출량 (ton/년)	온난화 계수	총 배출량 (ton CO_2e)
CO_2	38.9	56,100	3,700.07	1	3,700.07
CH_4	38.9	5	0.330	21	6.93
N_2O	38.9	0.1	0.007	310	2.17
CO_2e	-	-	-	-	3,709.17

- 운영시 LNG 사용량 : 1,692.50천N㎥/년
- LNG 순발열량 : 38.9MJ/N㎥
- LNG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 CO_2 : 56,100 kg/TJ - CH_4 : 5 kg/TJ - N_2O : 0.1 kg/TJ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 CO_2(kg/일) = 1,692.50천N㎥/년 × 38.9MJ/N㎥ / 10^6 × 56,100 kg/TJ = 3,700.07ton/년
  - CH_4(kg/일) = 1,692.50천N㎥/년 × 38.9MJ/N㎥ / 10^6 × 5 kg/TJ = 0.330ton/년
  - N_2O(kg/일) = 1,692.50천N㎥/년 × 38.9MJ/N㎥ / 10^6 × 0.1 kg/TJ = 0.007ton/년
  - CO_2e(kg/일) = 3,700.07CO_2(ton/년) × 1 + 0.330CH_4(ton/년) × 21 + 0.007N_2O(ton/년)×310
    = 3,709.17CO_2eq(ton/년)

다)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전력사용량

- 운영시 전력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2015,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기준으로 전력사용량을 예측하였으며, 총 13,029.29㎿h/년으로 산정됨.

[전력사용량 예측]

구 분	연면적 (㎡)	단위전력부하 (VA/㎡)	전력 부하량 (kVA)	수용율 (%)	수요부하 (kVA)
공동주택	164,887.55	30	4,946.63	35	1,731.32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실외)	1,500.00	15	22.50	40	9.00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1,525.00	95	144.88	86	124.59
주민공동시설	1,200.00	95	114.00	86	98.04
근린생활시설	1,900.00	95	180.50	86	155.23
관리사무소, 경비실	370.00	95	35.15	86	30.23
소 계	171,382.55	-	5,443.66	-	2,148.41
전력사용량(MWh/년)	2,148.41(kVA) / 부등율(1.3) X 역율(0.9) X 8,760hr/년 = 13,029.29				

주 : 1. 공동주택 연면적은 주거전용면적만 산정.
2. 부대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실외)만 사회체육시설 원단위를 적용하였으며, 다른 부대복리시설들은 근린생활시설 원단위를 적용.
3. 주민공동시설 :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시설

자료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2015, 에너지공단

라)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 운영시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071.65tonCO_2eq/년이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전력사용량 : 13,029.29MWh/년
- 전력 CO_2 배출원단위 : 0.466 tCO_2/MWh(온실가스항목 평가지침, 2015.12)
- 전력사용에 따른 CO_2 배출량 산정
  = 13,029.29MWh/년 × 0.466 tCO2/MWh = 6,071.65tCO_2eq/년

마) 온실가스 총 배출량 산정결과

○ 운영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9,780.82tonCO_2eq/년이 배출될 것으로 예측됨.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구 분	연료(LNG)	전 력	합 계
온실가스 배출량 (tCO_2eq/년)	3,709.17	6,071.65	9,780.82

다. 저감방안

1) 공사시

가) 일반적인 대책

- 공사시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내 공사장비의 공회전을 금지토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임.
- 구조물의 외부생산 후 현장 단순조립 등 공정 단축 저탄소공법을 확대하고, 저탄소 자재 및 건설장비, 건설자재·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임.

나)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 폐재류를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계획임.

다)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및 「환경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인증제품의 사용을 우선 고려함.

라) 저탄소자재의 사용

- 공사 자재는 생산, 수송, 시공,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에너지량을 고려하여 환경부하가 적은 재료를 선택할 계획임
- 천연재료, 재활용재료, 반복 사용이 가능한 재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저감
- 시멘트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및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경, 비구조물 등에 필요한 콘크리트 제품은 에코 콘크리트, 무시멘트 벽돌 등 시멘트 저감 또는 무시멘트 콘크리트 사용

2) 운영시

가) 녹지 조성계획

- 대상지 내 녹지대를 설치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계획
- 대상지 내 녹지나 가로수의 수목으로는 황산화물이나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흡착능력과 견디는 힘이 강한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대기오염의 정화를 도모

4.5 생활환경분야(기타)

4.5.1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현황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 17.41㎢, 인구 457,781명, 동(읍·면)수 18개 중 면적대비 100.0%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생활폐기물 관리구역현황]

구 분	전체행정구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현황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지정율	
	면 적 (㎢)	인 구 (명)	동(읍·면) 수	면 적 (㎢)	인 구 (명)	동(읍·면)수	면적비 (%)	인구비 (%)
양천구	17.41	457,781	18	17.41	457,781	18	100.0	100.0

자료 :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1, 환경부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생활폐기물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의 생활(가정)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생활폐기물 134,415.5ton/년, 청소구역 내 인구 457,781명으로 1인당 1일 배출량은 0.80㎏/인·일이며, 재활용 95,474.6톤/년, 소각 32,206.9톤/년, 매립 6,734.0톤/년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청소구역내 인구(명)	배출량 (ton/년)	1인당 배출량 (㎏/인·일)	처리율 (%)	처리방법(ton/년)					
					구 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타	계
양천구	457,781	134,415.5	0.80	100.0	가연성	-	32,206.9	13,354.4	-	45,561.3
					불연성	6,734.0	-	-	-	6,734.0
					기타	-	-	-	-	-
					재활용품	-	-	50,307.2	-	50,307.2
					음식물	-	-	31,813.0	-	31,813.0
					계	6,734.0	32,206.9	95,474.6	-	134,415.5

자료 :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1, 환경부

나) 건설폐기물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의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이 총 발생량 291,869.4톤/년 중 재활용 288,995.8톤/년, 매립 2,745.6톤/년, 소각 128.0톤/년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년)**

구 분		발 생 량	처 리 방 법				
			불연성		가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	그외			
발 생 량		291,869.4	270,362.2	248.8	1,460.8	19,797.6	-
양천구	매 립	2,745.6	270,277.1	248.8	1,332.8	17,137.1	-
	소 각	128.0	-	-	128.0	-	-
	재활용	288,995.8	85.1	-	-	2,660.5	-

자료 :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1, 환경부

3) 분뇨

가)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 양천구의 분뇨 발생량은 439㎥/일이며, 처리율은 100%이고, 1인당 1일 발생량은 0.95L/인·일인 것으로 조사됨.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일)**

지 역	수거구역내인구(인)	발생량(㎥/day)			1인1일 발생량 (L/인·일)	처리량(㎥/day)			처리율 (%)
		계	수거 분뇨	정화조 오니		계	수거 분뇨	정화조 오니	
양천구	462,285	439	0	439	0.95	439	0	439	100.0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나) 분뇨처리시설 현황

○ 양천구에는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분뇨는 전처리 후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병합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분뇨처리시설현황]

명 칭	위 치	처리공법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방류수역
서 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물리적	4,000.0	4,079.1	한강

자료 : 2020 하수도통계, 2021, 환경부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시

○ 건설현장 사무실 및 현장근로자에 의해 소량의 분뇨 및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발생이 예상됨.

○ 대상지 내 건축물 신설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2) 운영시

가) 생활폐기물 발생원별 조성비 및 발생원단위

○ 대상지 운영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천구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및 발생원별 조성비를 적용하였음.

[생활폐기물 발생원별 조성비 및 원단위] (단위 : 톤/일)

구 분	원단위 (㎏/인・일)	총 계	종량제 봉투 배출		기타 (불명)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음식물류배출 (분리배출지역)
			가연성	불연성			
양천구	0.80	368.26 (100.0%)	124.83 (33.90%)	18.45 (5.01%)	-	137.83 (37.43%)	87.16 (23.67%)

자료 :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1, 환경부

나) 조성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 조성별 발생량은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1, 환경부」에서 제시된 양천구 생활폐기물 발생원별 조성비 및 원단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4,440.0㎏/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생활폐기물 발생량]

구 분	계획인구 (인)	총 계 (㎏/일)	종량제 봉투 배출		기타 (불명)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음식물류배출 (분리배출지역)
			가연성	불연성			
양천구	4,703	3,762.4	1,275.30	188.49	-	1,408.14	890.47

주 : 계획인구(4,703인)=계획 세대수(1,881세대) × 세대당 인구(2.5인/세대)

자료 :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1, 환경부

다) 분뇨발생량 예측

○ 대상지 운영시 발생 분뇨량은 양천구 1인당 분뇨 배출량(0.95L/일)을 적용하여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4,467.85L/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분뇨 발생량]

구 분	계획인구(인)	배출원단위(L/인・일)	배출량(L/일)
양천구	4,703	0.95	4,467.85

주 : 1. 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공동주택 계획인구를 대상으로 예측함

2. 계획인구(4,703인)=계획 세대수(1,881세대) × 세대당 인구(2.5인/세대)

다. 저감방안

1) 공사시

- 공사시 현장근로자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공사현장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며, 수거된 폐기물은 성상별로 수거하여 재활용, 가연성, 불연성물질로 분리수거 후 처리할 계획임.
- 현장근로자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는 기존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연계처리 할 계획이며,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 공사장비로부터 배출되는 폐유 및 유분이 함유된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는 가동 전에 장비점검을 철저히 한 후 사용하고, 공사장비의 정비, 오일교환, 세척 등은 지정된 정비업소를 이용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 내 일정한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임시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전량 수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 처리하여 폐유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분리수거함(예시)]



2) 운영시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활성화되어 실시운영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부응,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함.

가) 수거·운반계획

-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불연성, 재활용으로 분류하여 대상지 내 분산 배치하도록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수거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며 재활용품은 일정장소에 임시보관함을 설치 후, 수거토록 함.

나) 최종처리계획

- 기타 소각 및 매립대상 폐기물(가연성, 불연성)은 서울시 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 반출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임시 보관중인 재활용품은 일정 주기로 자원재생공사 및 기타전문재활용 업체에 매각처리하여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함.

4.5.2 소음·진동

가. 현황

1) 조사항목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 목동 일원의 소음·진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 자료를 조사하였음.

나) 조사방법 및 범위

○ 대상지 주변 환경소음 현황은 환경부 측정망자료에서 대상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양천구 목동 일대의 최근 2022년 1분기~2020년 4분기의 측정자료를 인용·분석하였으며, 측정지점은 일반 및 도로변 지역 3개 지점에서의 환경소음 측정치를 조사함.

[환경소음 측정망 위치]

적 용 대 상		측정지역	측 정 지 점	비고
법적구분	용도구분			
나	일반주거지역	목동2단지아파트 206동 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일반
나	일반주거지역	하나은행 건너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도로변
나	일반주거지역	목동1단지아파트 109동, 111동 옆 도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도로변

다) 조사결과

○ 최근 2022년 1분기~4분기의 환경부 측정망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일반주거지역 주간평균은 44~75dB(A), 야간평균은 38~75dB(A)로 조사되어, 일반 “나” 지역의 환경기준(주간 55dB(A), 야간 45dB(A))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환경소음 측정치(단위 : dB(A))]

구 분			목동2단지아파트 206동 뒤	하나은행 건너편	109동, 111동 옆 도로
2020년	1분기	09시	47.8	69.2	59.3
		12시	48.4	68.1	60.6
		16시	46.3	69.2	60.6
		20시	48.7	68.6	63.2
		주간평균	48.0	69.0	61.0
		23시	45.3	68.4	54.8
		01시	40.6	66.8	49.3
		야간평균	43.0	68.0	52.0
	2분기	09시	46.3	68.6	59.2
		12시	49.5	67.9	60.1
		16시	47.7	66.4	60.1
		20시	51.8	67.8	61.6
		주간평균	49.0	68.0	60.0
		23시	45.6	69.6	54.6
		01시	43.6	63.9	53.9
		야간평균	45.0	67.0	54.0
	3분기	09시	53.8	69.4	60.0
		12시	48.9	68.5	62.7
		16시	48.4	68.5	59.4
		20시	49.7	67.3	60.2
		주간평균	50.0	68.0	61.0
		23시	55.5	67.2	54.7
		01시	41.6	68.8	58.3
		야간평균	49.0	68	57.0
	4분기	09시	48.3	68.9	58.6
		12시	45.2	68.4	61.0
		16시	51.7	67.5	60.5
		20시	48.8	67.7	62.0
		주간평균	49.0	68.0	61.0
		23시	43.7	69.0	57.0
		01시	40.1	66.3	59.2
		야간평균	42.0	68.0	58.0

자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시

가) 건설소음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의 예측은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15m에서의 소음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공종별로 투입되는 장비의 합성소음도를 산출한 후, 점음원 거리감쇠공식을 이용하였으며,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및 발생소음도와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합성소음도가 가장 높은 토공시 약 100m이내 지역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적절한 저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비의 합성소음도 및 이격거리별 소음도]

구분 / 공종	장 비 명	동력 (HP)	투입 대수	장비당 소음레벨	이격거리별 예측소음레벨					
					10m	20m	30m	50m	70m	100m
토 공 및 기초공	덤 프 트 럭	-	1	74.9	78.4	72.4	68.9	64.4	61.5	58.4
	불 도 저	140이상	1	75.8	79.3	73.3	69.8	65.3	62.4	59.3
	백 호 우	140~280	1	73.4	76.9	70.9	67.4	62.9	60.0	56.9
포장공	Asp피니셔	-	1	76.5	80.0	74.0	70.5	66.0	63.1	60.0
	텐덤로울러	75이상	1	70.6	74.1	68.1	64.6	60.1	57.2	54.1
구조물공	크레인	-	1	70.1	73.6	67.6	64.1	59.6	56.7	53.6
	콘크리트펌프카	305~340	1	73.5	77.0	71.0	67.5	63.0	60.1	57.0

주 : 장비당 소음레벨은 15m 이격지점에서 조사된 산술평균치
자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

[생활소음 규제기준(공사장)] (단위 : dB(A))

대상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낮 (07: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자료) 소음·관리진동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 관련)[별표8],<개정 2019.12.31.>

나) 건설진동

○ 본 사업실시로 인한 건설진동은 다음과 같이 5m 이격된 지점에서 65~66dB(V), 10m 이격된 지점에서 57~62dB(V)로 예측되어 약 10m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건설장비 운용에 의한 진동레벨이 공사장의 건설진동 규제기준(주간 65dB(V))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대상지 공사시 장비 진동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저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비의 합성진동도 및 이격거리별 진동도]

구분 / 공종	장 비 명	동력 (HP)	투입 대수	장비당 진동레벨	이격거리별 예측진동레벨					
					10m	20m	30m	50m	70m	100m
토 공 및 기초공	덤 프 트 럭	-	1	33.3	31.3	26.4	23.5	20.0	17.6	15.1
	불도저	140	1	55.4	53.4	48.5	45.6	42.1	44.6	42.1
	백 호 우	140~280	1	39.9	37.9	33.3	30.1	26.6	24.2	21.7
포장공	Asp피니셔	-	1	32.6	30.6	25.7	22.8	19.3	16.9	14.4
	텐덤로울러	75이상	1	34.6	32.6	27.7	24.8	21.3	18.9	16.4
구조물공	크레인	-	1	31.4	29.4	24.5	21.6	18.1	15.7	13.2
	콘트리트펌프카	305~340	1	33.3	31.3	26.4	23.5	20.0	17.6	15.1

주 : 1. 덤프트럭의 진동도는 콘크리트펌프카의 진동레벨 적용

[생활진동의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별 /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자료) 소음·관리진동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 관련)[별표8],<개정 2019.12.31.>

2) 운영시

○ 본 사업대상지는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으로, 사업 전·후 소음영향의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다. 저감방안

1) 소음원 및 진동 저감 대책

- 작업시간을 가능한 주간에 실시하고 야간작업을 지양
- 공사장비는 가능한 감속(운행속도를 20km/hr로 제한)하여 운행(10km/hr 감속시 3~4dB(A) 저감)하고, 불필요한 경적사용을 최대한 억제
- 저소음장비를 사용하는 한편, 덤프트럭 등 투입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을 금지하고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 환경부)을 준수하여 소음·진동의 발생을 최소화
- 건설장비의 실태를 잘 파악하여 진동발생이 적은 기계, 공법을 사용
- 공사전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후 공사를 시행
- 소음·진동규제법을 준수

2) 전파경로 차단대책

가) 회절감쇠치 산정방법

- 공사시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또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발생시 공사장비 주변으로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고려하는 등의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임.
- 공사시 주요 소음영향예상지점에 대해서는 필요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
- 가설방음판넬 설치위치 및 설치개요

- 설치위치 : 공사장에서 주거지역의 가시지역 및 최단 이격거리에 의한 소음규제치 상회지역
- 설치규격 : 가설방음판넬의 높이는 장비고를 고려하여 계획
- 설치방법 :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별로 이동시키며 사용

[가설방음판넬 설치 거리별 소음저감량] **(단위 : dB(A))**

구 분		이 격 거 리 (m)					비 고
		5	10	15	25	30	
방음판넬 높 이 (m)	2.0	7.36	7.21	7.16	7.11	7.10	"회절감쇠치" 적용
	3.0	10.46	10.01	9.82	9.65	9.61	
	4.0	12.05	11.67	11.50	11.35	11.31	
	5.0	12.84	12.54	12.40	12.26	12.22	
	6.0	13.31	13.07	12.94	12.82	12.78	

주 : 지점간 표고차는 무시

[가설방음판넬 설치에 따른 효과]

▣ 삽입손실치(⊿L) = -10·log(10-(⊿Ld/10) + 10-(⊿Lt/10))

⊿Ld : 소음전파경로차에 의한 회절감쇠치, ⊿Lt : 가설방음판넬의 투과손실치(15dB 적용)

▣ 소음의 전파 경로차 $\delta = A + B - D$

▣ Fresnel Zone Number(N) = $2\delta/\lambda = \delta \times f / 170$

여기서, δ: 소음의 전파경로차(A+B-C), λ : 음의 파장(C(음속) / f),

C : 음속(340m/s), f : 대표주파수(500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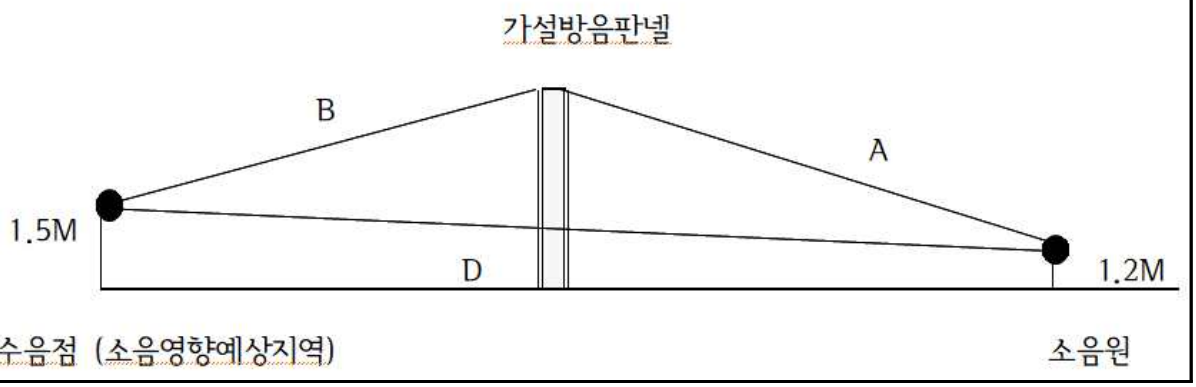
▣회절감쇠치 : Ld = 7.5 + 0.6·log(N) (0 〈 N ≦ 0.1)

= 10 + 3·log(N) (0.1 〈 N ≦ 0.8)

= 11 + 7·log(N) (0.8 〈 N ≦ 30)

= 12 + 6·log(N) (30 〈 N ≦ 60)

= 22 (60 〈 N)



3) 기타 저감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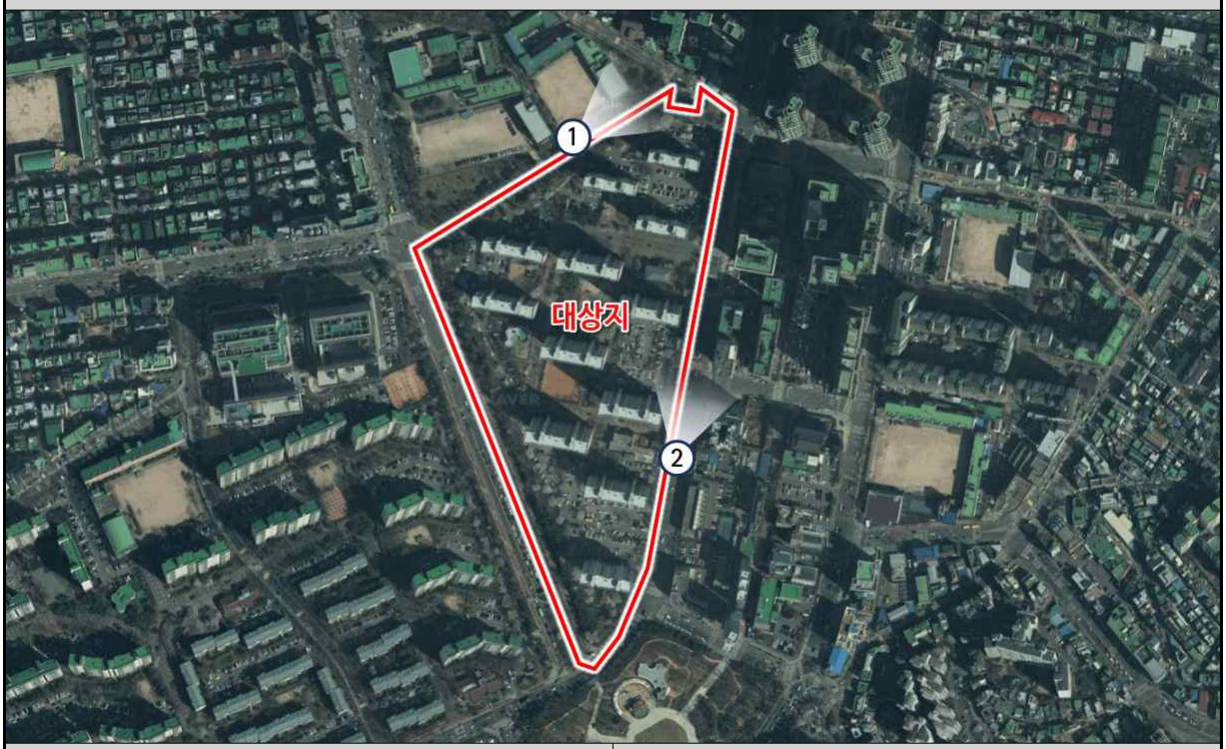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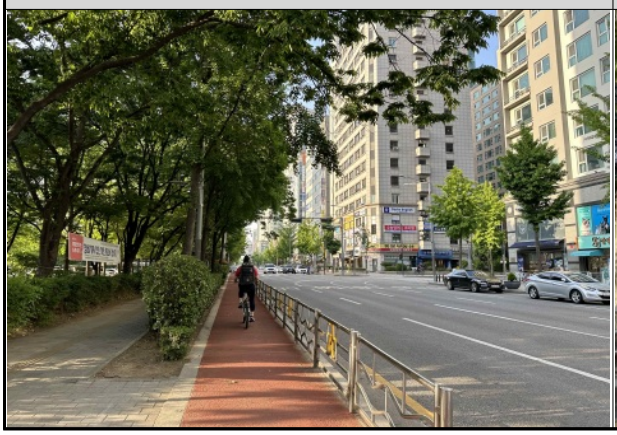
○ 공사시 공사차량의 진·출입구 및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며, 추후 시설물 설치 및 작업시 공사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할 계획임.

4.5.3 경관

가. 현황

- 대상지 일대는 노후 아파트들과 학교, 법원 및 검찰청, 양천공원이 있으며 목동서로변 상가 및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음.
- 대상지는 보조간선도로인 목동로와 목동서로에 접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인 목동로8길에서 출입이 가능한 대지로 목동서로와 목동로에서의 가로경관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됨.

[대상지 현황]

<table>
<tr><th colspan="2">전 경 사 진</th></tr>
<tr><td colspan="2"> 
</td></tr>
<tr><th>① 목동서로</th><th>② 목동로8길</th></tr>
<tr><td>  </td><td>  </td></tr>
</table>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가로녹시율 변화

◦ 가로녹시율 산출을 위한 사진 촬영시 높이 1.5m, 사진이 소실점이 중앙을 오도록 촬영하였으며, 녹시율은 “일정지점에서 서있는 사람의 시계 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음.

◦ 사업시행시 조경계획 및 어린이공원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로 전반적인 녹시율 향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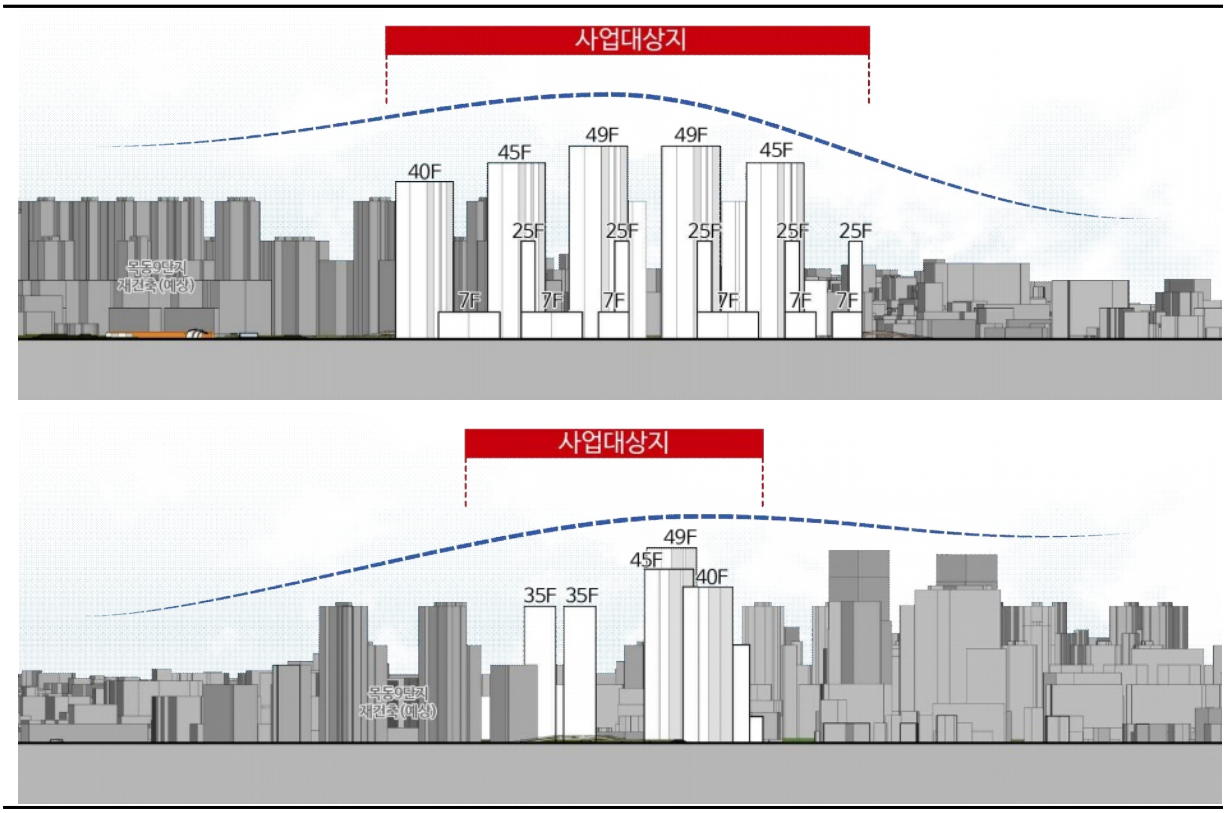
[녹시율]

조망점			32.6%

2) 스카이라인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고 바람직한 도시 스카이라인에 기여할 수 있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스카이라인 검토]



3) 경관시뮬레이션

가) 조망점 선정

○ 대상지 주변의 건축물로 인한 조망 차폐를 감안하여 개발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조망점을 선정함.

○ 총 5개소의 조망점(근경 2개소, 중경 2개소, 원경 1개소)을 선정하고, 도시경관 등을 주요 조망대상으로 하여 경관시뮬레이션 시행함.

[조망점 선정]

구 분		거리	조망점 위치	선정사유
근경	조망점1	150m	양천구의회 앞	주요시설지 조망점
	조망점2	250m	서울남부지법 앞	주요시설지 조망점
중경	조망점3	500m	목동역교차로	주요시설지 조망점
	조망점4	600m	목동13단지교차로	가로 조망점
원경	조망점5	1.25km	신정교	가로 조망점

[현황종합분석도]



나) 경관시뮬레이션 검토

○ 대상지의 최고높이 계획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검토 결과, 주변 기개발지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할 수 있는 높이로 검토됨.

① 양천구의회 앞 (근경 150m)



② 서울남부지법 앞 (근경 250m)



③ 목동역교차로 (중경 500m)



④ 목동13단지교차로 (중경 600m)



⑤ 신정교 (원경 1.25km)



4.5.4 일조

가. 현황

○ 일조장해란 태양광선이 가지는 자외선의 건강효과, 일조의 효과 등 여러 효과 중 각종 시설물 및 지형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태양의 그림자로 주변 거주자들이 일조의 방해를 받는 현상을 말함.

가. 현황

1) 주변지역 토지이용

○ 양천구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총면적 17.41㎢ 중 대지가 8.66㎢(49.76%), 도로 3.10㎢(17.79%), 공원 1.74㎢(9.99%)등으로 조사됨.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공원	기타
양천구	면 적(㎢)	17.4	0.1	0.0	1.1	8.7	3.1	0.4	0.2	1.7	2.1
	구성비(%)	100.0	0.6	0.1	6.2	49.8	17.8	2.6	1.1	10.0	11.8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 양천구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총면적 17.47㎢ 중 주거지역 12.54㎢(71.76%), 녹지지역 4.04㎢(23.14%), 상업지역 0.80㎢(4.56%)로 조사되었음.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양천구	면 적(㎢)	17.5	12.5	0.8	0.1	4.0	-
	구성비(%)	100.0	71.8	4.6	0.5	23.1	-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2) 일조시간

○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의 일조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기상연보 2012~2021년)를 조사한 결과 연간 총 일조시간은 2,457.1hr이며, 계절별 일조율은 봄 719.5hr, 여름 567.1hr, 가을 602.4hr, 겨울 568.1hr로 조사되었으며, 일조시간이 최고인 달은 5월(259.3hr), 최저인 달은 11월(173.9hr)로 조사됨.

[계절별 일조시간] **(단위 : hr)**

구 분	총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3	4	5	6	7	8	9	10	11	12	1	2
서 울 기상청	2,457.1	233.1	227.1	259.3	227.7	158.0	181.4	202.8	225.7	173.9	184.7	191.3	192.0
		719.5			567.1			602.4			568.1		

자료 : 기상연보, 2012~2021, 기상청

3) 법규검토

◦ 본 계획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09:00부터 15:00까지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확보

◦ 서울고법판례 - 09:00부터 15:00까지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확보하고, 08:00부터 16:00까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 교사 : 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의 경우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09:00부터 15:00까지 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
- 체육장 : 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의 경우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09:00부터 15:00까지 연속 1시간 일조를 확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조기준]

구분	교사		체육장		비고
기준일	동짓날 기준				
일조기준	08:00~16:00 중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또는 아래의 기준		08:00~16:00 중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또는 아래의 기준		
유치원/초등학교	09:00~13:00 중	연속 2시간 일조확보	09:00~13:00 중	연속 1시간 일조확보	
중학교	09:00~14:00 중		09:00~14:00 중		
고등학교	09:00~15:00 중		09:00~15:00 중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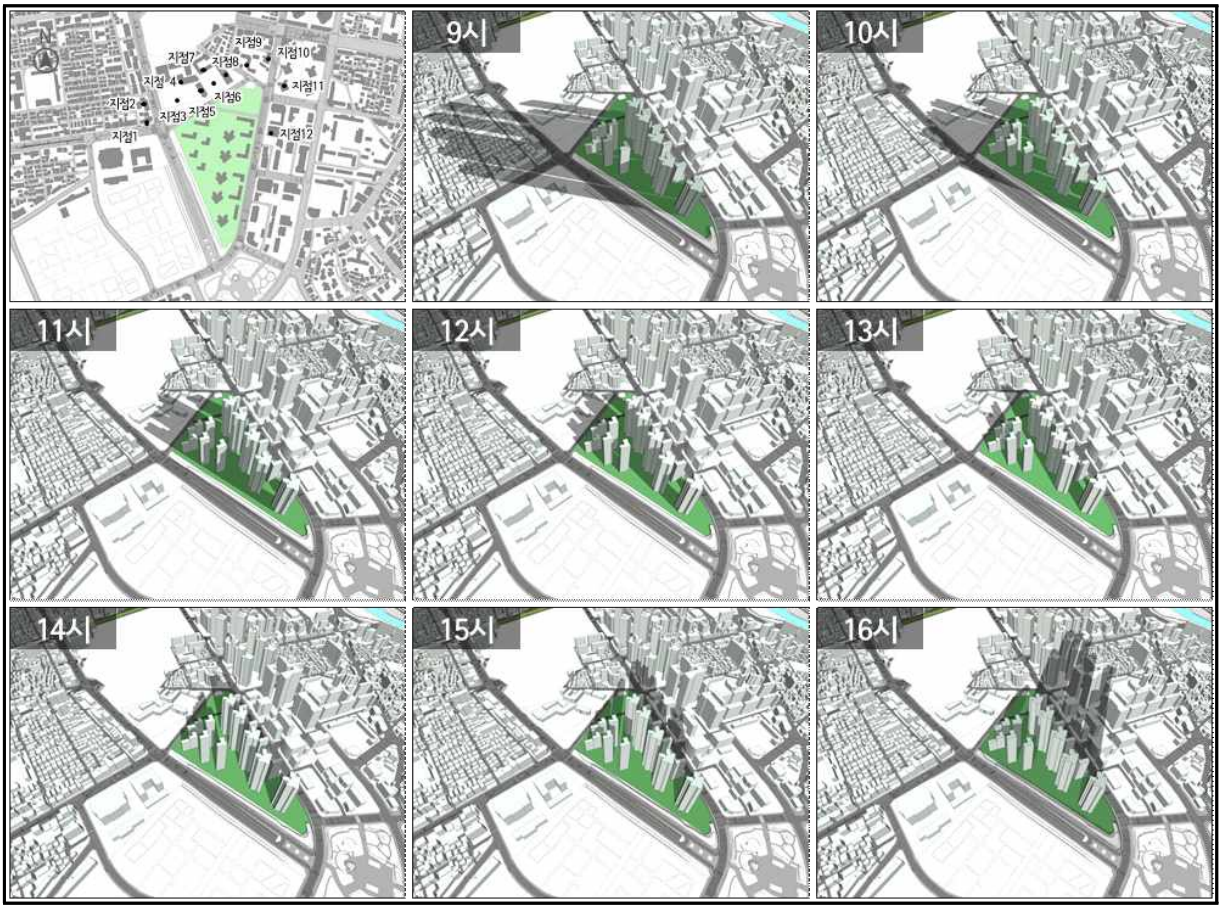
1) 일영예측 시뮬레이션

◦ 일조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대상지 개발완료시 북측 일부 지역의 경우 일조영향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일영 예측결과]

구 분	총 일조시간 (08:00~16:00)	연속 일조시간 (09:00~15:00)	총 4시간 만족 여부	연속 2시간 만족 여부	수인한도 만족 여부
분석지점1	6:15	5:15	O	O	O
분석지점2	6:20	5:20	O	O	O
분석지점3	4:15	3:15	O	O	O
분석지점4	5:10	4:10	O	O	O
분석지점5	3:40	2:40	X	O	O
분석지점6	3:40	2:30	O	X	O
분석지점7(체육장)	6:40	3:00	O	O	O
분석지점8(교사동)	5:25	3:15	O	O	O
분석지점9(교사동)	7:10	4:30	O	O	O
분석지점10(교사동)	7:30	5:30	O	O	O

[일영예측 시뮬레이션]



다. 저감방안

○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공동주택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96년 3월 서울고법(사건번호 94나11806) 「일조권피해 아파트값 하락 등 손해배상판결」일조권 분쟁 사건의 판례가 사용되고 있음.

○ 대상지 건물의 최고 층수는 일조 등에 관한 높이제한 규정을 고려하여 배치 및 층고를 결정하였으며, 이격거리 확보 등을 검토함으로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 분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비고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계획지구인 경우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계속)]

구 분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건축법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4.5.5 휴식·여가·보행 친화공간

가. 현황

- 현재 대상지 내에는 꿈동산어린이공원이 있으며,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고 대상지 인근 근린공원 등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이용 및 휴식공간 확보와 주변과 연계된 도시정비를 위한 대상지 정비계획이 필요함.

2)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가) 정비계획 기본구상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있는 주거환경 구현을 위한 '정비계획(공공기획 포함)'을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함

나) 대지 내 공지계획

-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여 광장 및 휴식, 만남의 공간 조성하고 공공의 이용이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계획
-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율을 향상시키고 지상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보

다)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동선

- 내부의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현황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보행동선 계획
- 주민의 보행활동이 발생할 지점의 연결동선을 계획하여 각 동으로의 접근과 단지 내 편의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단지 내 차량동선을 분리시켜 보행활동의 단절 및 저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흐름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차량출입구의 지상 구간 노출은 가급적 짧게 계획
- 주차시설은 최대한 지하로 계획하여 지상으로는 최소한의 긴급차량 동선만 계획

4.6 사회·경제·환경분야

4.6.1 인구 및 주거

가. 현황

1) 인구현황

○ 양천구의 2020년 기준 총인구는 457,781명, 세대수는 180,633가구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지가 위치한 신정6동의 인구는 30,075명이며, 8,296세대로 조사됨.

[연도별 인구현황]

연 도	인구(명)	세대수	인구증가율 (%)	세대당 인구	인구밀도(명/㎢)	
						면적(㎢)
2016	481,845	177,434	-1.47	2.69	27,681	17.4
2017	475,018	176,649	-1.42	2.67	27,289	17.41
2018	468,145	176,498	-1.45	2.63	26,894	17.41
2019	462,285	177,256	-1.25	2.58	26,559	17.41
2020	457,781	180,633	-0.97	2.51	26,301	17.41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동별 인구현황]

연 도	세 대	인구수(명)	세대당 인구
양천구	180,633	457,781	2.51
신정6동	8,296	30,075	3.02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2) 인구증가

가) 인구이동

○ 양천구 인구증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총 전입 64,081명, 전출 68,021명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 3,940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인구이동 현황]

구 분	총 이 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순 이 동
			구내이동	구간이동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출	
2016년	65,385	74,404	24,067	25,381	26,513	15,937	23,824	-9,019
2017년	54,797	62,729	17,134	22,226	23,721	15,437	21,874	-7,932
2018년	54,579	62,414	16,607	22,383	22,756	15,589	23,051	-7,835
2019년	50,256	56,733	14,024	21,068	22,060	15,164	20,649	-6,477
2020년	64,081	68,021	19,084	27,259	25,827	17,738	23,110	-3,940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나) 인구동태(동별)

○ 양천구 인구동태를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출생 1,875명, 사망 1,921명으로 46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인구이동 현황]

구 분	출생 (명)			사망 (명)		
	계	남	여	계	남	여
2016년	3,526	1,803	1,723	1,898	993	905
2017년	2,876	1,474	1,402	1,805	957	848
2018년	2,387	1,185	1,202	1,842	1,013	829
2019년	2,222	1,203	1,019	1,900	1,027	873
2020년	1,875	977	898	1,921	1,029	892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3) 주거

가) 현황

○ 양천구의 2020년 기준 주택종류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가장 많은 90,788호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40,382호 순으로 조사됨.

[주택종류별 현황] **(단위 : 호)**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소 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영업겸용 주택				
2016년	137,651	9,547	1,458	6,209	1,880	85,474	4,531	37,225	874
2017년	137,056	8,370	845	5,712	1,813	85,758	4,265	37,784	879
2018년	137,850	7,990	699	5,515	1,776	85,921	4,225	38,855	859
2019년	139,938	7,818	641	5,400	1,777	87,387	4,144	39,730	859
2020년	143,769	7,698	617	5,319	1,762	90,788	4,042	40,382	859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나) 주택소유현황

○ 양천구의 2020년 기준 주택소유 가구는 총 166,044가구로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7.4%로 조사됨.

[주택종류별 현황] **(단위 : 호)**

구 분	주택소유 현황					주택소유 가구		
	총 주택수	개인소유	동일시군구 거주자 소유주택	타시군구 거주자 소유주택	타시도 거주자 소유주택	총 가구수	주택소유가구	가구의 주택 소유율
2016년	137,651	123,445	89,961	15,785	17,699	163,253	93,927	57.5
2017년	137,056	123,287	90,362	15,379	17,546	162,045	93,837	57.9
2018년	137,850	123,917	90,357	15,679	17,881	162,039	93,816	57.9
2019년	139,938	124,899	90,219	15,958	18,722	162,867	93,766	57.6
2020년	143,769	126,845	91,238	15,874	19,733	166,044	95,327	57.4

자료 : 제33회 2021 양천구 통계연보, 양천구청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시

○ 공사시 현장근로자 투입에 따른 인구유입이 예상되나, 이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일시적인 변화이므로 지역적 인구의 변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운영시

○ 본 사업인 양천구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이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X

첨부자료

1.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4년 12월 16일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심의의견	조치사항	비 고
1	○ 구역면적 : 88,842.0㎡ ○ 순부담면적 : 4,916.3㎡ ○ 세대수 : 1,881세대(임대주택 293세대) ※ 법적상한임대 208세대, 기부채납임대 85세대	○ 수정 반영	수정 사항
	○ 입체보행교는 목동9단지와 연결성 고려하여 계획 할 것	○ 해당 사항을 지침 및 도로 결정 조서 내 명시하였음	
	○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 향후 일반 시민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담보방안을 제시할 것	○ 해당 사항을 공공보행통로 지침 내 반영하였음	
2	○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공원 배치계획, 건축물 배치구간 및 전면공지 조성 등에 관한 계획(시행지침 포함) 유지	○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원의 위치, 저층배치구간, 전면공지 등을 유지하여 계획하였음	조건 사항
	○ 경관녹지는 보행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연결 녹지로 변경 검토	○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연결녹지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음	
3	○ 향후 단지별 녹지시설 유형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검토	○ 8단지의 입지 특성상, 양천공원과의 보행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연결녹지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음	권고 사항
	○ 공원의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 진행	○ 해당 사항을 지침 및 공원 결정 조서 내 명시하였음	